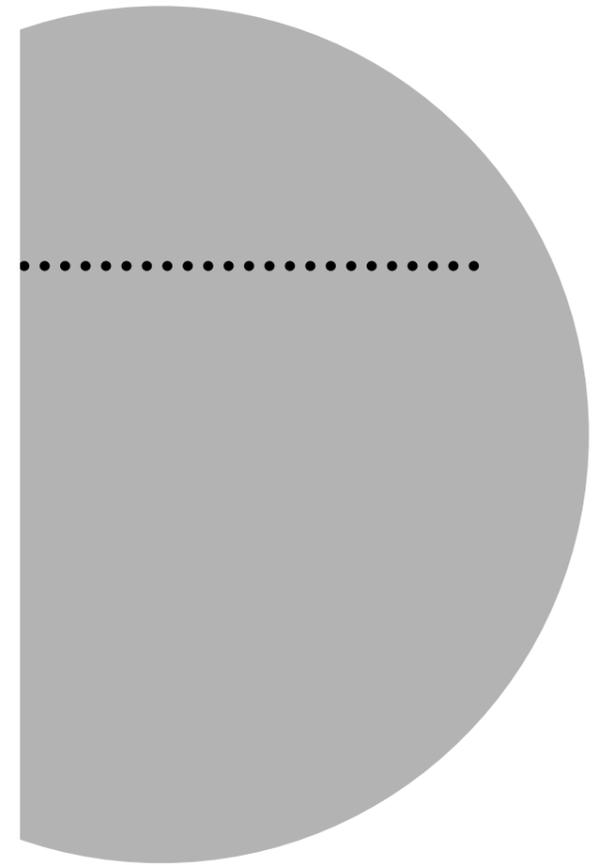


제24호/2005·12·1



조정남[®] 편

교 양 사 회



24 2005 Winter

시대의 눈



특 집 변화하는 국적정책

〈제1부〉 세계화와 국적문제

6 국적의 문호개방시대 - 조정남

〈제2부〉 각국의 국적문제

- 26 〈미 국〉 개방성과 폐쇄성 간의 갈등 - 우평균
- 47 〈러시아〉 이민유입 장려와 통제 사이의 방향 - 김인성
- 66 〈E U〉 시민권의 발전과 한계 - 김용찬
- 76 〈중 국〉 단일국적제와 그 변용의 확대 - 조정남
- 100 〈일 본〉 배타적 국적정책 재검토 확산 - 고모다 마유미
- 116 〈한 국〉 폐쇄적 민족주의 신화 초극의 과제 - 송정호

〈제3부〉 국적정책 자료

137 세계의 국적정책 비교표

논 단

- 184 다시 멜팅 팻(Melting Pot)으로! - 송태희
- 198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애국 모델 - 王 敏

포커스

209 '무슬림동포단'의 변천 - 후삼 탐맘

민족학

215 카자흐스탄민족들의 민족적 자각 - 압사달로프

기획연재 ①

223 민족으로 본 한국문학 - 여태천

특집 변화하는 국적정책

<제1부> 세계화와 국적문제

국적의 문호개방시대 - 조정남

<제2부> 각국의 국적문제

- <미 국> 개방성과 폐쇄성 간의 갈등 - 우평균
- <러시아> 이민유입 장려와 통제 사이의 방향 - 김인성
- <E U> 시민권의 발전과 한계 - 김용찬
- <중 국> 단일국적제와 그 변용의 확대 - 조정남
- <일 본> 배타적 국적정책 재검토 확산 - 마유미
- <한 국> 폐쇄적 민족주의 신화 초극의 과제 - 송종호

<제3부> 국적정책 자료

세계의 국적정책 비교표





국적의 문호개방시대

조정남 (고려대 교수)



자본과 인간과 문화의 전 전 지구적 규모에서의 교류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세계화가 전면적으로 기세를 확대해 가면서 나타내는 국제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국민국가체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한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다. 세계화의 확대과정은 이를 달리말해 국가와 국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내용의 변화를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이들 국가체제의 전반적인 모습과 성격의 변화마저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수반한 기존 국가체제 변화 내용에는 국경의 상대화, 국민의 구성변화, 민족주의의 내용변화 등이 그 주된 내용일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존의 특정국가를 구성해온 가장 핵심적인 내용물들이기도 하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국가체제의 변화의 모습을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나뉘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기존 국민국가체제를 구획해 왔던 국경의 상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개별 국가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로서 그를 다른

것으로부터 구획해 왔던 국경이라는 선이 과거에 가져왔던 기능과 권위를 점점 잃어 가면서 그것이 가지는 ‘차단’과 ‘구획’의 의미가 약화되고 상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국민국가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물의 하나인 ‘국적제도’(citizenship)¹⁾의 급격한 내용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시대상황의 변화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국경의 상대화’와 ‘국적제도의 변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서로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화현장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이들 두 가지 중심적인 현상 중에서 국적제도에 초점을 맞춰, 시대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변화를 계속해 가는 국적제도의 기능의 변화는 물론, 그러한 기능변화에 수반된 내용변화를 비교적인 맥락에서 살피려 한다.

국적제도의 변화는 그동안 한 국가 내에 많은 ‘민족’들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적’으로 이들을 통합하고 그것으로 국민의 유대의 지표로 삼으면서 국가적 통합을 유지해 왔던 ‘국민국가’(nation-state)가 현금에 이르러 그들이 지탱 시켜왔던 ‘국가와 민족간의 불일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국적이란 당초 “개인을 특정국가에 연결시키는 법률적인 끈”이라는 생각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유럽에서 성립되면서 이것이 중세 봉건국가에서 중요시된 군주에 대한 신민들의 충성의무를 계승하여, 초기의 국민국가형성에서도 국민들에게 충성의무와 연계된 것으로 국민국가 형성 초기단계까지 이어졌다. ‘주권재민’이 확립된 오늘날에는 국적을 소유함으로써, 국민은 그 국가에 속한다고 하는 신분관계를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라는 개념은 그 동안 서로 별다른 구별 없이 혼용되어오면서 ‘민족’=‘국가’라는 오해마저 불러일으켜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살피면 이들 간의 관계는 대단히 다양하다. 단순히 ‘1민족 1국가’를 내용으로 하는 ‘단일민족국가’에서부터 ‘1국가 내에 다양한 민족집단’이 공존하고 있는 ‘다민족국가체제’로 이를 양대 별 할 수 있으나, 이들 유형의 구체적인 모습은 대단히 다기하게 전개되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내용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국민국가적인 틀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시대에는 이러한 개별국가들 간의 민족 구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배타적인 국적제도를 유지시키면서 자국의 국

1) 서양의 경우는 국적(nationality)과 시민권(citizenship)을 구별하여 사용기도 한다. 여기서 국적자는 국가의 소속원을 일반적으로 지칭하지만, 시민권자는 국적자중에서 참정권이나 기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지칭한다. 즉 국적자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시민권은 보다 협소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를 혼용한다.

2) 예컨대 벨기에에는 동일종교이나, 양대 민족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스위스는 두 가지의 종교, 세 가지의 언어, 네 개 민족으로 국가가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대표적인 다민족국가들에서 존재하는 민족집단은 수 십, 수 백 종을 넘는 경우도 있다.

가적 통일성과 민족적 통합성을 강하게 유지시키려 애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국가적 통일성의 유지를 위해 동원되어 왔던 국적부여에서의 속인주의의 강조, 단일국적제도에 대한 집착, 귀화제도의 엄격한 제한, 국적포기의 제한 등과 같은 폐쇄적인 국적제도는 세계화의 새로운 질서의 도래와 함께 크게 그 내용과 의미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척되고 있는 오늘날의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현실에서는 기존의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배타적인 국적제도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인적교류도 안정적인 외교관계의 유지와 발전도 어렵게 되어갈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제대로 수용할 수도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도 없게 되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에서 개별국가들은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대처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관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지금까지 자국이 견지해오던 국가적인 독립성과 민족적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새롭게 제기된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그런 노력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적제도에 대한 다양한 보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선 기존의 폐쇄적이고 단선적인 국적제도를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이를 개방적이고 선택적인 내용으로 바뀌어나가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내용을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속지주의 용인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국적부여의 기준으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이를 대별할 수 있다. 속인주의란 국적부여 대상자의 국적부여는 부모의 혈연적인 계승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상 ‘혈통주의’라고도 한다. 한편 속지주의는 국적의 부여는 국적부여 대상자가 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칭 ‘출생지주의’라고도 한다.

전통적으로 국적의 부여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많았으나, 최근 인적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점차 국적부여의 기준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시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국적부여의 기준으로는 혈통적인 순수성을 중히 여기면서 부, 모가 자국적인 자의 자손들만이 부, 모의 국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부, 모 양계 혈통주의는 점점 그 기준을 확대시키면서, 부, 모 어느 일방만이 자국적인 자에게는 자 국적을 계승할 수 있는 제도로 확대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뿐 만 아니라, 현재는 이같이 전통적으

로 혈통주의를 견지해 오던 나라들의 경우에 서도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와는 다른 속지주의적 영역을 확대시켜 가면서, 속인주의와 속



‘국경의 상대화’와 ‘국적제도의 변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면서 서로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화 현장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주의의 두 가지 원칙을 공존시켜가고 있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며, 현재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나라 수는 47개국에 이른다.³⁾

국적부여 기준에서의 확대경향은 다분히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즉 과거에 없던 국가 간의 인적교류의 확대현상은 결혼이나 취업, 이민, 난민, 유학 등의 다양한 형태로 외국인들의 자국 내 유입이 급증할 뿐 아니라, 이와는 달리 동일한 이유로 자국민들의 해외이주 또한 증가일로에 있다. 이렇듯 자국민의 해외이주와 외국인들의 자국 내 유입의 증가는 기존의 폐쇄적인 국적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게 만들었다. 아무리 혈통의 순수성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제대로 자국 국적을 방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자국민들이 현지의 국적취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국내외적인 민족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자국의 국민임을 상징하는 국적제도 그 허용의 범위를 넓혀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요청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교적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속인주의를 원칙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도 수많은 예외규정을 설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당수의 국가들에서는 그들의 국적부여의 원칙을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존시키는 방향으로의 실질적인 정책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중국적제 문제

국적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세계화에 대한 적응양태의 하나는 이중국적제도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중국적은(dual nationality)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동시에 2개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3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

3) US/Afghanistan/Algeria/Andorra/Angola/Argentina/Armenia/Barbados/Belize/Benin/Bolivia/Canada(1977년 2월14일 이후 출생자)/Central African Republic/Chile/Costa RicaCuba/Dominican Republic/Ecuador/EL Salvador/Equatorial Guinea/France/Gambia/Guatemala/Guinea-Bissau/Guyana(1980년 이후)/Honduras/India/Ireland/Jamaica/Lesotho(1966.10.3이후 출생자)/Mauritius/Mexico/Nepal/New Zealand(1949.1.1 이후 출생자)/Nicaragua/Niger/Pakistan (1951.4.13 이후 출생자)/Panama/Paraguay/Peur(18세 때 등록)/St.Lucia(1979.2.22이후 출생자)/St.Vincent/Samoa (1972.8.9 이후 출생자)/Trinidad and Tobago/Tuvalu(1986.9.15 이후 출생자)/Uruguay/Vanuatu/Venezuela/Zambia 등

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중국적' (multiple nationality) 또는 복수국적(plural nationality)이라는 용어로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⁴⁾

당초 근대적 국민국가의 구성요소는 1933년의 몬테비데오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법인격을 갖는 국가의 구성요소로 '항구적인 인구집단' (permanent population), '확정된 영토' (defined territory), '정부' (government), '여타 국가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capacity to enter relation with the other states) 등을 들고 있다.⁵⁾ 한편 이렇게 형성된 국가는 적절한 방식으로 자기를 구성(organize itself)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국제 법에 따른 타국의 권리행사 외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축된 주권국가의 개념은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강력하고 보편적인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또 혁명을 통해 근대 국민국가의 모델을 만든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의 이념이 이중국적을 부정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프랑스 혁명은 신민사이의 법적 차별을 철폐하고 그들에게 개별화되고 보편적인 시민(citoyen)의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그들 전체를 '단일불가분의 나씨옹' (nation une et indivisible)으로 구조해 냈다. '나씨옹'은 시민의 공동체를 뜻하며 그것은 단일체의 성원들이 선택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성원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 소속한 만큼 그 소속은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화주의자들 믿음이었다.⁶⁾ 뿐만 아니라,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헤이그협약' (Hague Convention Concerning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도 전문에서 "모든 사람은 국적을, 그리고 단 하나의 국적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공동체의 일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국가형성 초기 단계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배타적 단일국적의 원칙은 주권국가의 또 다른 속성이 결과적으로 이중국적을 결과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몬테비데오협약이 명시하는 국가의 자기구성의 자유는 국가의 필수적 요소인 인구집단의 경계를 확정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헤이그협약은 "각 국은 자국법에 따라 누가 국적자인지를 결정한다", "어떤 사람이 특정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모든 문제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결

4) 다중국적(multiple nation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제법규로는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1997)가 있으며, 과거에는 'double nation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한 국제법규도 존재했다. 예컨대 'Protocol Relating to Military Obligations in Certain Cases of Double Nationality' (1930)

5) Art.1,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6) 이철우, "충성과 소속의 분열과 조화", 정인섭 편 『이중국적』(사람생각,2004), p.65

정된다.”고 선언했다.⁷⁾ 즉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것은 개별국가의 배타적인 권한이므로 국가는 개인에게 자기의 국적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만을 결정하며 그 사람에게 대해 다른 국가의 국적을 부여하거나 하지 않는데 관여할 수 없다. 즉 주권의 최고성과 국적결정의 배타성은 주권존중의 원칙과 국적결정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주권국가가 한 개인을 자기의 성원으로 간주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헤이그협약 또한 단일국적의 이상과 개별당사국의 국적결정의 자율성을 선언하자마자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는 그가 국적을 가진 각각의 국가에 의해 국적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갈등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⁸⁾

여기에 이르면 이중국적이 과연 근대 국민국가의 주권원리에 반하는 이단적 현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일부 학자들은 단일국적주의가 세계적인 대세이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는 드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중국적은 허용 된다” 또는 “이중국적은 불허 한다”고 규정한 입법은 드물다.⁹⁾ 단지 각 국은 각자의 입법관할권에 의해 자국의 국적요건만을 정할 뿐이다.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국민의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는가, 외국으로부터 귀화해 오는 자에게 원국적의 포기를 요구치 않는다는가하여 복수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을 뜻한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중국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근대 국가의 모델을 만드는데 소재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공론을 주도해 온 강대국들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부터, 그리고 국가주권이 ‘최고수위’에 달하여 이중국적이 그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었다고 묘사되는 19세기 후반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¹⁰⁾ 이렇듯 이중국적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국제협약의 변화에서도 가시화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거 이중국적 방지를 위한 내용이 기초를 이루던 현상이 역전되기 시작했다. 국제적 이동의 빈발과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규범의 압력 속에서 1993년에 체결된 스트라스부르그협약 제2차 개정의정서 (Second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Cases of

7) Art.1,2, Hague Convention Concerning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8) Art. 3, Hague Convention Concerning Certain Ques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of Nationality Laws.

9) 러시아연방 헌법 제62조 제1항은 “러시아연방의 시민은 러시아연방의 연방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외국의 시민권(이중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국적법 제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철우, 같은 책, pp.65-67

Multiple Nationality and Military Obligation in Cases of Multiple Nationality)는 출생 또는 미성년시 부터 거주한 당사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여성, 부모의 국적을 수반 취득하는 아동의 원 국적 보유를 허용하는 당사국의 입법을 허용했다.¹¹⁾

이러한 추세는 1997년의 유럽국적협약(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으로 이어졌다. 여기에서는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 등 몇 가지 정해진 사유 외의 이유로 국적을 상실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외국국적 또는 자국적 취득시 원국적의 상실 또는 포기의무를 당사국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아동의 선천적 복수국적과 혼인에 의해 배우자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는 자의 복수국적, 그리고 후천적 국적 취득 시 원 국적 포기 또는 상실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cannot be reasonably required)경우의 복수국적은 당사국이 반드시 허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¹²⁾ 여기에 이르면 이제 이중국적의 발생은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이중국적을 인정할 의무가 있다는 국제규범이 생겨난 것이다.

이처럼 이중국적은 근대 국민국가의 구성 원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중국적제가 가지는 필연성의 측면에 더해 식민지가 독립을 쟁취한 20세기 중엽이후 이중국적제가 널리 확산되는 커다란 계기를 만들었다. 식민지가 독립하기 전에는 시민권의 제한을 전제로 지배국 국적을 식민지에 연장하거나 지배국과 식민지를 포함하는 제국에의 소속개념으로써 식민지 주민을 포섭하였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발생할 여지가 적었다. 그러던 것이 식민지의 독립에 의해 지배국과 유대를 가진 구 식민지 주민 및 식민지 출신의 이민들, 그리고 구 식민지로 이주한 지배국 출신자들의 이중정체성의 문제가 대두했고, 이는 국적정책에 반영됐다. 많은 국가들은 자국적 취득 및 유지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던 관대한 제도와 또 구 지배국과 독립국 사이에 특별협정을 통해 이중국적을 허용함으로써 그러한 요구에 대응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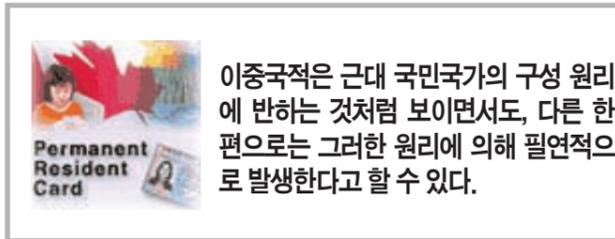
1970년대 이후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민(시민)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경우는 물론, 후천적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한 자국의 국적을

11) Art.1, Second Protocol Amending the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Cases of Multiple Nationality and Military Obligations in Cases of Multiple Nationality.

12) Arts.7, 14(1),15, 16, European Convention on Nationality. 이 협약은 국적결정 관한 주권국가의 권한, 국적의 권리와 무국적 방지, 각종차별의 금지, 귀화의 요건인 거주기간, 국적상실의 사유, 국적포기의 자유, 국적에 관한 절차, 복수국적, 그에 수반되는 병역의무, 국가승계(state succession)로부터 발생하는 국적의 문제, 국가 간 정보교환을 다루는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4월 현재 25개국이 서명한 12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이 협약은 비유럽국가를 포함하여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도 가입의 문호를 열어놓고 있으며, 그 규정의 내용은 향후 중요한 국제법적 기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13) 이철우, 같은 책, p. 65.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국내법을 수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캐나다가 1977년에 그러한 정책을 채택하였고, 이어 아



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고 영국, 멕시코 등이 차례차례 그러한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정하였다.¹⁴⁾ 그리고 미국과 같이 외국국적의 취득을 여전히 자국 국적의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국가들조차도 실제 국내법의 운용에서 자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당사자를 계속 자국민으로 쳐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¹⁵⁾

한편 세계적으로 봐도 국적정책에서의 개방화가 일반적인 추세다. 시기적으로 보면 세계 2차대전이 끝나면서 이중국적제도의 채택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를 이러한 경향을 선두 해 왔으며, 근래에는 다양한 목적에서 이중국적제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1971년에는 기리바스가 자국민의 해외이민에 대한 배려로 이중국적제로 전환했으며, 타이와 돈가가 외국자본의 유치와 목적에서 각각 국적과 귀화에 대한 법을 개정했다.¹⁶⁾ 1996년에 캄보디아는 자국에 투자한 중국인들을 위해 국적법을 개정하여 이중국적을 허용했으며, 벵갈도 1998년에 이중국적제를 실시했다.¹⁷⁾ 파키스탄은 2002년8월29일 미국과 스웨덴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국민들에게 이중국적을 승인했고,¹⁸⁾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은 2003년8월29일 이중국적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조치로 수백만 명의 해외거주 필리핀들이 혜택을 받았다. 인도 정부도 1955년 이래 이중국적을 승인치 않아왔으나,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승인해 오고 있다. 멕시코 등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이중국적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는 2001년8월 전국 여론조사를 거쳐 법률개정을 하여 이중국적을 승인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상호간의 이중국적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T. Alexander Aleinikof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Process and Policy, 4th ed.,(West Group,1998), P.82.
 15) 석동현, "이중국적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과 한국의 대응모색", <이중국적>, p.194.
 16) Graham Hassall, "Citizenship in the Asia-Pacific: a Survey of Contemporary Issues," p.61.
 17) "Instruction regarding submission of application of dual nationality, July 1, 1998," [http://www. Bangladesh ConsulateLA.com](http://www.BagladeshConsulateLA.com).
 18) "Dual nationality allowed," "Notifications," Embassy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Washington, D.C. August 29, 2002.

이들 국가들이 이중국적정책으로 선회하는 이유는 이중국적제가 국가와 개인들에 있어서 이로우미 더욱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스페인은 1950년대 이래 계속 이중국적제를 확대 해 오면서 특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상호 이중국적협정에 조인 했다. 1950년 후반 들어 스페인은 칠레(1958년5월24), 페루(1959년5월16일), 파라과 이(1959년6월25일) 등과 각각 상호 이중국적 협정을 체결했으며, 1960년대에는 또 볼 리비아(1961년), 과테말라(1961년), 리콴라과 (1961년), 에콰도르(1964년), 혼두라스 (1966년), 도미니카(1968년), 알젠틴 (1969년), 콜롬비아(1979년)와도 국적협정을 각 각 체결했다. 이들 국가들은 전부 과거 스페인 식민지로, 그곳에서 많은 스페인들이 살 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의 공식언어도 스페인어다. 이 이중국적정책은 쌍방 주민 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 줬으며, 이러한 환경아래서 스페인은 1978년12월29일 헌법 을 개정 이중국적 정책을 확정했다.¹⁹⁾

해외의 인도인들의 수는 약 2000만 명으로, 약 110개국에 분포되어 있다. 이들의 총수입은 1600억 달러로 인도 국민총수입의 1/3에 해당하는 액수다. 매년 평균 100 억 달러의 인도로 송금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 최대의 외환 수입이다.²⁰⁾ 이러한 해외 인도인들의 성공은 그들이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치지 않고, 인도의 영예를 높이는데 도 기여하고 있다. 이들 해외인도인들의 상당수는 자기들을 인도인으로 보고 있으며, 인도에 대한 강한 유대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국적의 보유를 희망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인도인들의 바람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이 근래 인도정부의 전략적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1999년3월, 인도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인도계 후예 들을 위한 '교포카드' 제를 도입, 이들이 귀국하여 체제하거나, 재산취득, 자녀교육 등 다방면의 편의제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²¹⁾ 인도정부는 또 2000년 L.M.Singhvi (전 주영인도대사였고 당시 국회의원)를 책임자로 하여 다소 헌법을 손 질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중국적정책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 켰다. 이 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우선 매년 1월9일을 '해외인도인의 날' 로 정해 이들을 격려하고 특별한 공헌을 한 해외인 도인을 선발하여 표창기로 하였다.²²⁾ 2003년1월9일 제1차 해외인도인의 날 경축대회 석상에서는 인도총리는 인도는 곧 이중국적제를 실행할 것이라고 정식 선언했고, 이 어 동년 5월9일, 인도의회는 1955년에 제정된 국적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켜, 12월23일

19) Ruth Donner, The Regulation of Nationality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Transnational Publishers, 1994 (second edition), pp.203-204.

20) 丘立本, "從國際僑業新動向看我國僑業政策", 《華僑華人歷史研究》, 2004年第2期, 第9頁.

21) 張應龍 黃朝暉: "印度僑民政策研究", 《僑務工作研究》, 2004年第6期, 第23頁.

22) 賈海濤: "印度的雙重計籍計劃: 背景 內容 前景", 《學術研究》, 2003年第9期, 第148-51頁. 1月9日正是甘地1915年雙南非回到印度領導獨立運動的日子, 選擇這一日子作?海外印度人節意義深遠.

에는 이중국적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국적법이 인도의회의 최종비준과 인도대통령의 공포로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 정책으로 인도는 16개국들과 이중국적을 상호 인정케 됐다.²³⁾

호주 또는 많은 국민들을 미국과 유럽등지의 고급기술영역에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정부는 2001년8월3일, 호주 연방이민 및 다문화사무부장이 호주정부가 공민법 개정을 결정했다고 선포하고, 호주국민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부터는 보다 많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스럽게 모국으로 돌아오거나 또 모국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²⁴⁾

필리핀도 2003년에 1967년에 제정된 국적법을 개정하여 이중국적제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개정국적법에서는 자국에서 태어난 외국국적인 자도 필리핀에 대한 충성선서를 하면 필리핀국적 내지는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는 투표권 및 재산보유권도 부여케 하였을 뿐 아니라, 해외 필리핀인들에게도 이중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모국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²⁵⁾ 세계2차대전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중국적제도의 확산에 수반하여 중국에서도 이 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정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 국적을 시의에 맞게 개정, 이중국적제를 회복하여 다른 외국과의 형평을 맞추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²⁶⁾

권역별 동향

북미-대양주

대표적 이민국가인 미국, 캐나다, 호주는 모두 출생지주의 국가로서 자국 내에서 출생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해 왔기 때문에 이중국적이 발생하기 쉬운 나라라고 말할

23) 이 16개국은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랄리아, 키프러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델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Latest update on dual nationality (overseas Indian citizenship), December 23, 2003", Consulate General of India, New York, U.S.A. 또 Immihelp.com에서도 유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印度政府只同意7個國家的海外印度人可以申請印度國籍. 這7個國家是美國'英國'加拿大'澳大利亞'新西蘭'新加坡和馬來西亞.", 賈海濤: "印度的雙重國籍計劃: 背景'內容'前景", 第150頁. 這種說法顯然有誤.

24) "澳大利亞修改法案, 將允許其公民擁有雙重國籍", <http://www.sina.com.cn>, 2001年8月3日 中國新聞網.

25) "菲律賓總統簽署雙重國籍法案", <http://www.sina.com.cn> 2003年8月29日 新華網.

26) <http://www.sina.com.cn> 2003年8月29日.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출생에 의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자국 시민에 대해 국적을 선택하는 제도가 없고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이중국적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중국적을 지지하거나 장려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국적은 용인(recognize)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시민권 소지자가 외국국적을 별도로 취득하거나 혹은 동시에 보유하는 것에 관해서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치 않고 미국 시민권을 박탈치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실질적으로는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미국의 법률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가 출생과 동시에 혹은 외국인과의 혼인, 인지, 입양 등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케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그가 미국시민권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에 귀화한 외국인 중 귀화시민이 된 이후에도 전 국적을 계속 보유한 사람과 자국시민 중 외국에 귀화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그 국가에서 특별한 행위 (군복무, 투표, 공직취임 등)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만 18세에 도달한 이후 스스로의 진술이나 행위 등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여 미국 시민권자로 처우하게 된다.²⁷⁾

미국은 1795년 이래 귀화하는 자에게 타국에 대한 충성포기를 선서하도록 했지만 이는 이민 출신 국들이 영구충성의 원칙을 유지하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갖지 못했고 그 후에도 선서의 내용에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미국에서 출생한 자의 선천적 이중국적에 대해서도 방임적이었다. 반면 해외 거주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하여, 1868년 영구충성의 원칙을 폐기한 후에는 외국에의 귀화를 미국시민권 상실의 사유로 간주하는 한편 유럽 국가들과의 협약(벤크로프트협약)을 통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자의 미국시민권을 상실케 했다. 그러한 내용의 규정은 1907년 국적이탈법(Expatriation Act)에 삽입되었고, 1940년의 국적법(Nationality Act)에서는 외국에서의 병역이나 선거권행사를 국적상실의 사유로 규정했으며, 1952년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이를 계승했다.²⁸⁾ 그러나 제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제거되어 현재는 정해진 몇 가지 행위를 국적포기 의사로써 자발적으로 행한 (voluntarily performing)경우에 한해 국적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다.²⁹⁾

27) 석동현, 같은 책, p.196.

캐나다 또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 시민권법은 1946년부터 자국에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 전 국적의 이탈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또한 1977년에는 캐나다 시민이 외국국적을 임의로 취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이유로 캐나다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³⁰⁾ 1994년 캐나다 하원의 시민권 및 이민에 대한 상임위원회는 외국국적을 임의로 취득한 캐나다 시민에 대한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하는 가능성을 언급한 보고서를 발행한바 있지만 법률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호주의 시민권법은 1948년 제정 이래 호주에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 전 국적의 포기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종전의 소속 국가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경우, 호주 시민권과 전 국적을 함께 가지는 이중국적이 될 수 있다.³¹⁾

유럽

유럽지역도 세계화의 동반현상인 이주 외국인노동자의 증가와 정주, 국제결혼의 증가, 유럽공동체 역내에서의 자유이동 필요성 증가 등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중국적 문제에 관하여 매우 유연하고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국적조약'이 1997년에 새로 마련되었다. 이 조약 제14조는 체약국에 대해 출생과 혼인에 의하여 다른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이 그 국적들을 함께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는 후천적 이중국적의 허용여부에 관해 체약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① 자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자국적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상실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② 자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를 위해 외국 국적의 이탈 또는 상실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체약국이 각 자국의 국내법에서 어떻게 정하든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약국의 국내법적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중국적을 실질적으로 용인하는 유럽국적조약의 이 같은 내용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유럽 각국이 이민문제에 관한 시각의 변화, 유럽공동체 내 협력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귀화 등 후천적 국적변경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을 용인하거나 혹은 이중국

28) Peter Spiro, "Dual Nationality and the Meaning of Citizenship," Emory Law Journal 46, pp.1411-85

29) T, Alexander Aleinkoff, "Between Principles and Politics : US Citizenship Policy," in T, Alexander Aleinkoff and Douglas Klusmeyer, eds., From Migrants to Citizens,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0), pp.136-37.

30) 이철우, 같은 책, p.69.

31) 석동현, 같은 책, pp.198-199.

적을 문제삼지 않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만간 더욱 보편화되어 이중국적은 더 이상 허용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되, 그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국적의 저축에 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국적법적 노력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³²⁾

영국은 일종의 '제국 국적' (imperial nationality)을 운영하고 있어 이중국적에 대하여도 매우 개방적이었다. 1981년까지 출생지주의를 기본으로 한 영국은 선천적 이중국적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귀화에 의한 자국적 취득에 대해 원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귀화외국인에 대해 전국적 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영국인이 외국국적을 임의로 취득하더라도 영국국적은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1981년 국적법 개정논의 과정에서 외국국적을 임의 취득한 경우의 국적상실문제에 관해 검토되었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고, 그 밖에 이중국적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 연방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이중국적을 보유하는 문제에 관하여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용인하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³³⁾

프랑스 또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 전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않으며(1889년부터), 프랑스인의 외국국적을 임의로 취득한때에도 프랑스 국적은 소멸되지 않는다.³⁴⁾ 근대 국적법의 효시를 이루는 1804년 프랑스 민법전에서 외국에의 귀화,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타국의 공무담임, 귀환의 의사가 없는 국외이주, 외국인 남성과의 혼인을 국적상실의 사유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외국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의 표시가 있을 때에만 국적이 상실되도록 했다.³⁵⁾ 뿐만 아니라 혈통주의에 의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해외이주자의 자손들에게 국적선택을 강요치 않았으며 프랑스에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는 처음부터 원 국적 포기를 요구치도 않았다. 또 1851년부터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를 부모 하여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 즉 이민 3세대에게 출생과 더불어 국적을 부여하는 이중출생지주의(double naissance)를 채택했고, 1973년에는 식민지 독립 후 식민지 출신의 이민들을 위해 이를 확대하여 부모 중 1인이 프랑스의 구 영토 중 한곳에서 그 영토가 프랑스주권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에 출생했고, 본인이 그 이후 프랑스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프랑스 국적을 부여했다.³⁶⁾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로서 프랑스에서 태어난 자, 즉 이민2세대는 성년의 도래와 프랑스에서의 거주를 요건으로 국적을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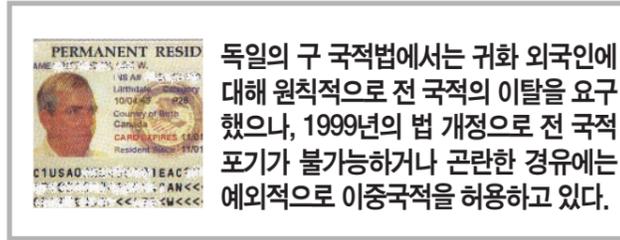
32) 위의 책, pp.199-200.

33) 이철우, 같은 책, p.68.

34) 석동현, 같은 책, p.201.

35) 1945년에는 이것도 폐지하여 외국 국적의 후천적 취득을 프랑스국적의 상실사유로부터 완전히 제외했다.

할 수 있었다. 이민2세대와 3세대로서 프랑스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자에게는 처음부터 프랑스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



독일의 구 국적법에서는 귀화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 국적의 이탈을 요구했으나, 1999년의 법 개정으로 전 국적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시에 보유하게 된 자에게는 처음부터 국적선택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서 19세기에도 이중국적을 갖는 이민이 적지 않았고, 특히 이중출생지주의를 구 식민지에 연장한 후에는 이중국적이 양산됐다.³⁷⁾

독일의 경우는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이중국적의 허용정도를 늘려가는 추세다. 1998년에 성립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연립정권은 독일 내 외국인의 통합을 위해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추진도중에 실시된 총선 패배로 그 실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1999년의 국적법 개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출생지주의를 도입하면서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에 의하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성년에 달한 이후 23세까지 사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독일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종전의 국적법에서는 귀화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 국적의 이탈을 요구했으나, 1999년의 법 개정으로 전 국적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³⁸⁾ 특히 독일은 해외의 독일민족 성원과의 유대의 재생산, 강화하기 위한 이중국적은 일찍부터 넓게 인정되었다. 1913년의 제국국적법은 출신 란트(Land)의 동의를 얻은 자는 독일국적을 상실함이 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독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냉전시대와 탈냉전시대에는 독일 혈통을 갖는 재외동포(Aussiedler)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재외동포들은 심지어 독일 본토에 정착하지 않고도 귀화가 가능하여 폴란드에 거주하던 20만 명이 현지에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었다.³⁹⁾

이탈리아는 1992년 국적법 개정으로 이중국적의 유형에 관계없이 이중국적을 전면 허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1983년 국적법에서는 선천적 이중국적 소지자에 대해 성년에 달한 후에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지만 동 조항은

36) 구 식민지에 대한 특례는 1993년에 폐지됐다.

37) 이철우, 같은 책, p.68.

38) 석동현, 같은 책, p.201.

1986년에 효력이 정지되고 1992년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1983년 국적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었으나, 1992년 개정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이탈리아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탈리아에 귀화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전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스웨덴은 과거 이중국적을 부정하는 법제였으나 2001년에 개정된 국적법은 스웨덴 국민이 외국국적을 갖더라도 스웨덴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스웨덴에 귀화한 외국인에 대해 전국적을 계속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국적을 허용했다. 스위스 또한 자국민이 외국에 귀화하더라도 스위스 국적을 자동 상실키 않으며, 1990년의 국적법 개정시 스위스에 귀화하는 외국인에게 전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던 동 법 제17조를 폐지함으로써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됐다.⁴⁰⁾

중남미 지역

중남미 각국은 1990년대 이후 차례로 이중국적을 인정코 있다. 콜롬비아가 1991년, 도미니카공화국이 1994년, 에콰도르 및 코스타리카가 1995년, 브라질이 1996년, 멕시코가 1997년에 각각 국적관계법을 개정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이중국적을 인정했다.

미국에 다수의 이민자를 두고 있는 중남미 각국이 도미노식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에 거주하는 자 국민들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국 국적을 계속 유지시켜 줌으로서 미국 내 자국민 지위의 인정을 증진하는 한편, 자국의 국내경제에 대한 기여효과를 계속 지시키려는 국민차원의 고려를 그 바탕에 깔고 있다.

중남미의 대표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의 경우, 국적에 관한 기본원칙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이중국적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이었지만 1997년에는 아예 헌법을 개정하여 이중국적을 정식으로 허용하면서 이중국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뒀다. 1997년 이전의 멕시코 헌법은 멕시코 국민이 외국국적을 가진 취득하면 멕시코 국적을 상실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헌법은 출생에 의한 생래적 멕시코인과 귀화에 의한 멕시코인을 구분하여, 생래적 멕시코인의 경우는 어떤 사유

39) 이철우, 같은 책, p.71.

40) 석동현, 같은 책, p.202.

로도 멕시코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요컨대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멕시코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헌법의 취지에 따라 1998년에 성립된 국적법 경과규칙은 헌법개정 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멕시코 국적을 상실한 생략적 멕시코인에 대해 1998년3월20일부터 5년간 서면으로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이미 취득한 외국국적을 상실함이 없이 멕시코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였다.⁴¹⁾

아시아 지역

이 지역은 그 동안 대체적으로 국적문제에 있어 폐쇄성을 견지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점차 개방적인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는 이중국적을 억제, 방지하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 운용과정에서는 엄격하게 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관하여, 일본은 1984년의 국적법 개정 때 중전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변경하면서 선천적 이중국적의 방지, 해소 수단으로 기존의 국적유보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한바 있다.

국적보유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일본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일본 국민 중 호적법이 정한 기한(3개월)내에 일본국적의 유보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출생시에 소급하여 일본국적을 상실 되는 제도로 선천적 이중국적자 중 국적유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생과 동시에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과가 됨으로써 동 제도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조기에 일부 정리시켜 주는 한편,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공분상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익한 기능을 한다. 동 제도는 원래 일본 구 국적법이 일본계 이민을 받아들인 주요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일본국민의 자로 출생한 사람을 위해 그 사람들이 거주국에 동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제도였지만, 이것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이 된 국민전부에게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01년 8월 당시 페루정부가 후지모리 전 페루대통령의 인도를 요청하였때 동인이 일본국적을 계속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요청을 거부하여 논란이 된 바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일부 언론은 일본정부가 남미지역의 일본계 2,3세에 대해 이중국적 상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논평하기도 하였다.

국적선택제도는 20세 이전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22세까지, 20세에 달한 후에 이

41) 위의 책, p.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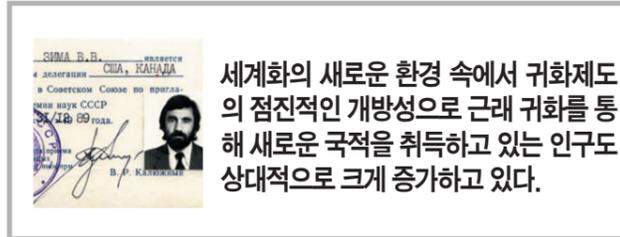
중국적이 된 자는 이중국적이 된 때부터 2년 내에 각각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법무대신의 국적선택의 최고절차를 거쳐 일본국적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중국적자가 일본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외국국적을 이탈하는 방법 또는 일본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뜻의 선언을 하는 방법 중 임의로 택할 수 있는 바, 선택의 선언을 한 사람에게 대해 그가 실제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중국적 상태가 그대로 존치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일본 법무성 민사국장의 2003년 7월 17일자 참의원 법무위원회 답변에 의하면 그때까지 국적선택을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법무대신의 최고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이는 국적선택 불이행 이유로 한 일본국적의 상실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결론이 된다.

다음으로 후천적 이중국적에 관해서 보면, 일본 국적법은 자국에 귀화하는 외국인 본인에게 전 국적 상실증명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귀화자가 많은 국가에 정례적으로 그 명단을 송부해 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적법이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외국인 본인에 대해 6개월 내에 반드시 전 국적을 포기한 후 그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시킴으로써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중국적을 엄격히 금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1980년 9월 10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제정된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의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허용치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적입법례 중에서도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음을 보기 드물게 직설적으로 규정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국적법은 심지어 대부분의 국가가 불가피하게 용인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에 대해서도 그 발생을 용인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중국 공민의 자로 외국에서 출생한 자가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후천적 이중국적 역시 단호하게 차단하고 있으며, 외국에 정주하는 중국공민으로서 외국에 귀화한 자는 중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고, 중국에 귀화하거나 중국국적의 회복을 허가받은 자는 전 국적을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대만은 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찍부터 이중국적을 허용해오고 있는 나라다. 즉 자국에 귀화하는 외국인에 대해 전 국적의 포기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허가를 받았을 때만 대만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반대 해석하여 보면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당사자가 대만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신청을 하기 전에는 그

리고 정부가 동 국적상 실을 허가하기 전에는 대만국적을 계속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귀화제도의 점진적인 개방성으로 근래 귀화를 통해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도 오랫동안 후천적 이중국적을 불허해 왔지만,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국적법상으로는 인도에 귀화하려는 자는 필수적으로 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인도 국민이 임의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인도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지만, 2003년1월, 인도정부는 침체된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술협력 등의 촉진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과 인도계 외국인에 대해서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방침을 표명했다.⁴²⁾ 인도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영미권에 유학, 체류 중인 자국민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점에 비추어 해외의 우수한 자국 인력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필리핀은 2003년 8월 외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과 필리핀계 외국인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민권 보유 및 재취득에 관한 법률' (Citizenship Retention and Reacquisition Act of 2003)을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입장이 되었다. 종전 시민권에 의하여 생래적 필리핀인으로서 외국 귀화를 이유로 필리핀 시민권을 상실했던 사람들은 새 법률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충성서약을 통해 필리핀 시민권을 재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새 법률 시행 후에 외국으로 귀화하는 사람은 동일한 충성서약에 의해 필리핀 시민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률의 제정의 효과로서 재외필리핀인이 필리핀 내에서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금지 및 투자관련 규제를 받지 않게 됨으로써 인하여 필리핀 내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 최근 이중국적제 문제가 대단히 큰 사회문제가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이중국적제에 대한 논란은 이중국적 허용여부는 이중국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허용하지는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으로나마 이중국적을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규제를 가하여 방지, 억제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다.

이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것은 국제조류와도 맞지 않고 재외동포들의 체류국 내 지위향상이나 모국에 대한 기여 노력에 역행하는 폐쇄적 처사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이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정부당국에서는 이중국적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념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적저촉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42) 『朝日新聞』, 2003년1월14일자.

감안할 때 이중국적의 허용함은 결코 적절치 못하고, 그 보다는 재외동포들이 이중국적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유, 즉 한국계 외국인의 국내 출입 및 국내취업, 부동산 보유, 자산 투자 등 경제활동의 불편 또는 제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 인식의 산물로서 마련된 법률이 바로 1999년9월에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다. 이와 같이 한국이 재외동포들의 이중국적 허용요구를 정면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수용한 것은 논리적인 사유 외에도 이중국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⁴³⁾

귀화제도의 확충

국적제도의 세계화는 '귀화제도'의 확대를 통하여서도 서서히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귀화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들의 국적이 아닌 타국의 국적을 새롭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인적이동이 전에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화 현상의 직접적인 반영이기도 하다.

원래부터 귀화는 기존의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귀화에 따른 특별한 조건이나 일정한 조건의 부여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일반적인 규범의 하나다. 그러나 특정인이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려할 때 부과되는 조건이나 제한의 기준이나 내용이 세계화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귀화제도의 점진적인 개방성으로 근래 귀화를 통해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귀화의 조건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역시 귀화신청자가 자국에서 거주한 기간이며, 이에 최소 1년(South Africa)이상에서부터 최고 30년 이상(United Arab Emirate)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귀화를 위한 거주기간을 5-10년 사이로 잡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5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귀화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개방적인 입장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43) 석동현, 같은 책, pp.204-208.

◆ 귀화 조건

거주연수	해 당 국 가
1년 이상	South Africa
2년 이상	Argentina/ Australia/Bolivia/Peru
3년 이상	Andorra/ Armenia/ Canada/Honduras/Israel New Zealand/Paraguay/Uruguay/Uzbekistan
5년 이상	US/ Afghanistan/ Barbados/ Belgium/ Belize/ Brazil/ Bulgaria/ Cambodia/ Cape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ile/ Colombia/ Congo/ Coata Rica/ Cote d' Ivoire/ Croatia/ Dominican Republic/ EL Salvador/ Fiji/ Finland/ France/ Guinea-Bissau/ Haiti/ India/ Iran/ Jamaica/ South Korea/ Lesotho/ Libya/ Mali/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exico/ Micronesia/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therland/ Panama/ Poland/ Rumania/ Russia/ Samoa/ Sao Tome and Principe/ Saudi Arabia/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lovakRepublic/ Swaziland/ Sweden/ Syria/ Taiwan/ Tanzania/ Thailand/ Togo/ Tonga/ Tunisia/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Venezuela
7년 이상	Algeria/ Bahamas/ Belarus/ Denmark/ Grenada/ Kenya/ Norway
8년 이상	Germany/ Hungary/ Ireland/ Papua New Guinea/ St. Lucia/ Trinidad and Tobago
10년 이상	Angola/ Austria/ Benin/ Bhutan/ Botswana/ Burkina Faso/ Congo Republic/ Djibouti/ Equatorial Guinea/ Gabon/ Guatemala/ Indonesia/ Italy/ Lithuania/ Luxembourg/ Moldova/ Monaco/ Philippines/ Portugal/ Rwanda/ Singapore/ Slovenia/ Spain/ Sudan/ Vanuatu/ Yemen
12년 이상	Switzerland
15년 이상	Chad/ Estonia/ Jordan/ Nepal/ Nigeria
20년 이상	Eritrea/ Qatar
25년 이상	Bahrain
30년 이상	United Arab Emirate

〈참고 자료〉 :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Investigations Services, *Citizenship Laws of the World* (March 2001) 등을 중심으로 재 정리.



개방성과 폐쇄성 간의 갈등

우 평 균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들어가는 말

탈냉전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이 동시에 범세계적으로 일었고, 이러한 현상은 현 시대의 국제질서를 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정보화와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지식정보화시대의 전면적인 도래는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기존의 영토에 경계한 국경을 초월하는 무수한 이동과 정보교류의 실체를 드러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민족국가(nation state)의 자기 정체성 강화에 대한 요구와 주장도 지구 곳곳에서 제기되었으며, 일민족국가 혹은 다민족국가이든지 간에 한 국가의 국가적 동질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왔다. 특히 2001년 9·11 테러의 교훈은 전통적인 국가간의 정보와 인적 교류의 급속한 팽창 가운데 이를 악용할 수 있는 테러 집단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많

은 나라들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국가의 자기 정체성은 자국민에 대한 일반적인 소속감을 부여하는 기제에 의해 규정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국적' (nationality)에 대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하는 국민됨의 요건은 근대민족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골간중의 하나였으며, 글로벌화로 대변되는 현대 세계의 질서 속에서도 굳건히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근원이다.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규정된 국적의 요건 이외에도 출생 시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자국민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외국인으로서 자국의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과거의 냉전체제하에서는 물론이고 현재의 세계화시대를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국적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갖고, 미국의 국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려 한다.

다민족국가로서 역사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온 미국의 국적법 관련 사항은 미국의 독특한 다인종적, 역사적, 시민적 권리 구성의 일부로 전개되어 왔으며, 세계 각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 만든 국가의 속성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국적법은 세계의 다른 다민족국가들에 시금석이 될 만한 조항들과 의미들을 가진 국적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글에서는 주로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 (Immigraton and Nationality Act, 이하 국적법) 조항을 통해 국적 취득의 요건, 이중국적 정책, 국적 상실과 추방 요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려 한다. 미국의 국적법은 2005년 10월 현재 2006년 1월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국적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미 의회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이미 여러 건의 국적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법안들은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이민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또한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에 가족이 있는 난민의 수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에 가족이 있을 경우 난민 수용 여부를 우선 심사하는 '우선 순위(priority) 3'의 범주에 북한과 미얀마를 추가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였다.²⁾ 이 점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적 및 이민법이 연계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 공화당 존 매케인과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불법 체류자도 절차를 거쳐 최장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주권(그린 카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공화당 상원 의원 존 코르닌과 존 킴은 불법 체류자를 일단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다음 취업 비자(워킹 비자)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의 척 헤이켈 상원의원은 테러·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미국에 최소한 5년 이상 살면서 세금을 냈으면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린 뒤 체류를 허가하는 법안을 2004년 10월 25일 제출했다. 그러나 동 법안에서는 영어구사능력이 떨어지면 강제로 송환되도록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5년 10월 27일.

이민 대상에는 기존의 난민 그룹 이외에도 난민에 준하는 외국인들을 미국 정부가 수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 인권정책 및 제3세계에 대한 미국 외교 정책의 인식 수준과 미국 시민사회에서의 의회에 대한 법안 개정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2005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적 및 이민법의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국적 취득의 요건

1) 시민권 부여의 방식

시민권 획득에는 세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존재해 왔다. 그것은 속인주의(혈통주의),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그리고 귀화이며 모든 국가는 이들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이상, 즉 이들의 다양한 조합을 사용해 왔다. 미국은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방식으로 속지주의(jus soli)와 속인주의(jus sanguinis)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속지주의는 지연에 의해서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을 말하며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준다. 속인주의는 혈통에 의해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방식이며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한 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혼인에 의거하여) 자녀로 출생했을 경우에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국적법 301조).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쪽이 자녀 출생 당시 시민권자인 경우 자녀는 미국 영토 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영토 밖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출생과 더불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국적법에는 미국 밖의 영토나 속령에서 출생한 서출(out-of-wedlock) 자녀를 포함한 특정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있다. 이것에 부속되는 국적법 309(a)은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와 서출 자녀 조항, 309(b)는 미국 시민권자 어머니와 서출 자녀 조항에 해당되며, 이 중 309(a)는 다음과 같다.³⁾

- ◆ 신청자와 아버지간의 혈연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 ◆ 아버지가 신청자의 출생당시에 미국 국적(the nationality of the United States)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미국의 난민 수용 우선 심사 3개 범주 가운데 '우선 순위 1'은 개인 단위로 '절박한 보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적용되며, '우선 순위 2'는 집단 난민에 해당 된다. '우선 순위 3'은 가족 재회의 경우를 말한다. 조선일보, 2005년 9월 6일.

3) Acquisition of U.S. Citizenship By a Child Born Abroad, http://travel.state.gov/law/info/info_609.html.(검색일: 2005.10.18).

◆ 신청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는 재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약에 동의(agreed in writing) 하여야 한다.



미국은 시민권 방식으로 속지주의는 자연과 영토 내에서 출생한 자인 반면 속인주의는 혈통에 의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한 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 18세 이하인 동안에는

- 신청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률하에서 정당화된다.
- 아버지가 아버지임을 맹서하의 서약으로 인정하며
- 신청자인 부성(父性)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된다.

이 경우 시민권자인 부모의 실제 결혼 여부, 부모지위의 합법성이나 인정성 및 증거, 그리고 부모의 미국 내 거주여부 등과 관련된 구비요건들이 시시각각 달라진다. 따라서 출생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자녀의 시민권 취득 여부를 관할한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이민 및 국적법’ 301조

INA: ACT 301 - NATIONALS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Sec. 301. [8 U.S.C. 1401] The following shall be nationals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 (a) a person born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 (b) a person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a member of an Indian, Eskimo, Aleutian, or other aboriginal tribe: Provided, That the granting of citizenship under this subsection shall not in any manner impair or otherwise affect the right of such person to tribal or other property;
- (c) a person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of parents both of whom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ne of whom has had a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utlying possessions,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 (d) a person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of parents one of whom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has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continuous period of one year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and the other of whom is a national, but not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 (e) a person born in an outlying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of parents one of whom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has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continuous period of one year at any time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 (f) a person of unknown parentage found in the United States while under the age of five years, until shown, prior to his attaining the age of twenty-one years, not to have been born in the United States;

(g) a person born outside the geographical limit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of parents one of whom is an alien, and the othe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period or periods totaling not less than five years, at least two of which were after attaining the age of fourteen years: Provided, That any periods of honorable service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r periods of employment wi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1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unities Act (59 Stat. 669; 22 U.S.C. 288) by such citizen parent, or any periods during which such citizen parent is physically present abroad as the dependent unmarried son or daughter and a member of the household of a person (A) honorably serving with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r (B) employ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defined in section 1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mmunities Act, may be included in order to satisfy the physical-presence requirement of this paragraph. This proviso shall be applicable to persons born on or after December 24, 1952, to the same extent as if it had become effective in its present form on that date; and

(h) a person born before noon (Eastern Standard Time) May 24, 1934, outside the limits and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n alien father and a mother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had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302 persons born in Puerto Rico on or after April 11, 1899.

308조

INA: ACT 308 - NATIONALS BUT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Sec. 308. [8 U.S.C. 1408]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301 of this title, the following shall be nationals, but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1) A person born in an outlying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on or after the date of formal acquisition of such possession;

(2) A person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of parents both of whom are nationals, but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have had a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utlying possessions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3) A person of unknown parentage found in an outlying possession of the United States while under the age of five years, until shown, prior to his attaining the age of twenty- one years, not to have been born in such outlying possession; and

(4) A person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its outlying possessions of parents one of whom is an alien, and the other a national, but not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prior to the birth of such person,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period or periods totaling not less than seven years in any continuous period of ten years-

(A) during which the national parent was not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continuous period of more than one year, and

(B) at least five years of which were after attaining the age of fourteen years.

The proviso of section ~~301(g)~~ shall apply to the national parent under this paragraph in the same manner as it applies to the citizen parent under that section.

309조

INA: ACT 309 -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Sec. 309. [8 U.S.C. 1409]

(a)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c), (d), (e), and (g) of section 301, and of paragraph (2) of section 308, shall apply as of the date of birth to a person born out of wedlock if-

- (1) a blood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 and the father is established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 (2) the father had the nationality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the person's birth,
- (3) the father (unless deceased) has agreed in writing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the person until the person reaches the age of 18 years, and
- (4) while the person is under the age of 18 years-
 - (A) the person is legitimated under the law of the person's residence or domicile,
 - (B) the father acknowledges paternity of the person in writing under oath, or
 - (C) the paternity of the person is established by adjudication of a competent cou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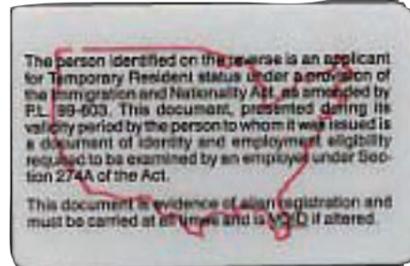
(b)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405, the provisions of section 301(g) shall apply to a child born out of wedlock on or after January 13, 1941, and before December 24, 1952, as of the date of birth, if the paternity of such child is established at any time while such child is under the age of twenty-one years by legitimation.

(c)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a person born, after December 23, 1952,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out of wedlock shall be held to have acquired at birth the nationality status of his mother, if the mother had the nationality of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of such person's birth, and if the mother had previously been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utlying possessions for a continuous period of one year.

2) 아동시민권법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들에게 자동시민권을 부여해주는 새로운 법률이 2001년 2월 27일 '아동시민권법' (The Child Citizenship Act)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특정 외국태생 자녀(입양 포함, certain foreign-born, biological and adapted children of American citizens)로서 현재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 자녀들은 출생 당시에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했으나, 그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s, LPRs)로 미국에 들어올 때 시민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 법에 해당되기 위해서 자녀가 구비해야 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⁴⁾

4)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http://travel.stste.gov/family/adoption/info_457.html.(검색일: 2005.10.18).



◆ 적어도 1명의 미국 시민권자 부모 (출생이나 귀화를 통해서)가 있어야 한다.

◆ 18세 이하이어야 한다.

◆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률적(legal)이고 물리적인 보호(physical custody)를 받으며 미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합법적인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덧붙여, 자녀가 입양되었으면, 입양은 정식입양(full)이어야 하며, 마지막 입양(final)이어야 한다.

아동시민권법 하에서 자신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N-600 신청을 제기하여 자녀의 시민권증

서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여권사무소(U.S. Passport Agency)나 우체국에 가서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시민권법 하에서 미성년 입양자녀를 위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N-643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3) 귀화한 시민권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는 미국 내에서 출생했거나 귀화하여 미국의 관할 하에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귀화(naturalization)는 외국인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의 시민이 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거주규정을 채운 사람들은 귀화과정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에 필요한 일반적(general requirements) 요건은 다음과 같다.⁵⁾

◆ 일반적인 거주요건은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받은 후 최소 5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이 요건이 3년으로 경감된다.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시민권을 취득한 날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거주(physical presence)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 신청에 앞서 적어도 5년(혹은 3년)의 절반 기간을 실제로 미국에 거주했어야만 한다.

5) Naturalization. <http://uscis.gov/graphics/services/natz/index.htm>.(검색일: 2005.10.18).

◆ 관할지역 거주요건(jurisdictional requirements):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기 직전에 최소한 3개월 동안 신청을 접수한 주 또는 이민국 관할지역(USCIS District)에 거주했어야 한다.



귀화는 외국인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의 시민이 되는 과정이며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거주규정을 채운 사람들은 귀화과정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영어 구사력: 신청자는 통상적인 영어사용에 있어서 단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포함한 영어 이해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 신청자가 간단한 단어와 구절을 읽고 쓸 수 있다면 이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 미국 역사와 미국 정부에 대한 지식: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구두로 질의 응답하는 순서가 있다. 인터뷰 당사자가 언어조건에서 면제된 자라면 통역관을 동반할 수 있다. 심신장애나 발달장애로 인해 인터뷰에 응할 수 없는 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65세가 넘는 자로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한 자에게는 특별고려(special consideration) 혜택이 주어진다.

◆ 좋은 도덕적 성품(good moral character): 시민권 신청자는 반드시 좋은 도덕적 성품을 소유한 자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하기 5년 전부터 귀화가 완료되기까지 이러한 좋은 도덕적 성품을 보여주면 되지만 이 기간이 정부당국에 의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성품이란 법률적으로 상세히 규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민법에 좋은 도덕적 성품에 반하는 일부 예들이 명시되어 있다. 즉 습관성 알콜중독자, 한 가지 이상의 반도덕적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5년 이상의 가중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 매음과 매춘의 가담자, 외국인 밀입국업자, 가중범죄자(Aggravated Felony)로 유죄선고를 받은 자 등이다. 좋은 도덕적 성품을 갖지 못한 자들의 대표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30그램 이하 마리화나의 단순 소지를 제외한 마약단속법을 위반한 경우, 주로 도박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경우, 도박단속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민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180일 이상 수감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살인을 저지른 경우, 일부다처제 혼인 행위를 한 경우, 간통을 범한 경우, 선발된 징병등록(selective service)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족 부양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보고 및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⁶⁾

◆ 헌법조항의 준수와 미국의 질서와 안녕에 대한 마음자세(attachment to the

6) 강석희, 『미국 이민, 제대로 알고 떠나자』(서울: 평민사, 2004), p. 295.

principles of the U.S. Constitution and favorable disposition toward the United States): 시민권 신청자는 충성서약을 함으로써 미국의 헌법조항을 준수할 것이며, 미국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요건이 이와 같은데 반해서,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의 부류도 명시되어 있다.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 및 전제주의 집단의 당원 또는 옹호자, 미국의 폭력전복을 옹호하는 자, 파괴행동분자, 미국의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간행물을 저작하거나 발행하는 자, 미군탈영자, 축출명령을 받은 자, 이방인적인 행동 때문에 군 훈련 및 복무로부터 자격 해지된 자 등이다. 그러나 귀화금지법이 오로지 이런 부류에 속하는 자들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민 및 국적법’ 324조
INA: ACT 324 - FORMER CITIZENS OF UNITED STATES REGAINING UNITED STATES CITIZENSHIP

Sec. 324. [8 U.S.C. 1435]

(a) Any person formerly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o (1) prior to September 22, 1922, lost United States citizenship by marriage to an alien, or by the loss of United States citizenship of such person's spouse, or (2) on or after September 22, 1922, lost United States citizenship by marriage to an alien ineligible to citizenship, may if no other nationality was acquired by an affirmative act of such person other than by marriage be naturalized upon compliance with all requirements of this title, except-

- (1) no period of residence or specified period of physical presence within the United States or within the State or district of the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application is filed shall be required; and
- (2) the application need not set forth that it is the intention of the applicant to reside permanently within the United States.

Such person, or any person who was natur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317(a) of the Nationality Act of 1940, shall have, from and after her naturalization, the status of a native-born or naturalized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ichever status existed in the case of such person prior to the loss of citizenship: Provided, That nothing contained herein or in any other provision of law shall be construed as conferring United States citizenship retroactively upon such person, or upon any person who was natur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317(a) of the Nationality Act of 1940, during any period in which such person was not a citizen.

(b) No person who is otherwise eligible for natu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be naturalized unless such person shall establish to the satisfaction of the Attorney General that she has been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attached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an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and up to the time of admission to citizenship, and, unless she has resided continuously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date of her marriage, has be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prior to filing her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c)(1) A woman who wa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and (A) who has or is believed to have lost her United States citizenship solely by reason of her marriage prior to September 22, 1922, to an alien, or by her marriage on or after such date to an alien ineligible to citizenship, (B) whose marriage to such alien shall have terminated subsequent to January 12, 1941, and (C) who has not acquired by an affirmative act other than by marriage any other nationality, shall, from and after taking the oath of allegiance required by section 337 of this title, be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have the status of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by birth, without filing an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and notwithstanding any of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title except the provisions of section 313: Provided, That nothing contained herein or in any other provision of law shall be construed as conferring United States citizenship retroactively upon such person, or upon any person who was natur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317(b) of the Nationality Act of 1940, during any period in which such person was not a citizen.

(2) Such oath of allegiance may be taken abroad before a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of the United States, or in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Attorney General or the judge or clerk of a court described in section 310(b).

(3) Such oath of allegiance shall be entered in the records of the appropriate embassy, legation, consulate, court, or the Attorney General, and, upon demand, a certified copy of the proceedings, including a copy of the oath administered, under the seal of the embassy, legation, consulate, court, or the Attorney General, shall be delivered to such woman at a cost not exceeding \$5, which certified copy shall be evidence of the facts stated therein before any court of record or judicial tribunal and in any department or agency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d)(1) A person who wa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t birth and lost such citizenship for failure to meet the physical presence retention requirements under section 301(b) (as in effect before October 10, 1978), shall, from and after taking the oath of allegiance required by section 337 be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have status of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by birth, without filing an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and notwithstanding any of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title except the provisions of section 313. Nothing in this subsection or any other provision of law shall be construed as conferring United States citizenship retroactively upon such person during any period in which such person was not a citizen.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of subsection (c) shall apply to a person regaining citizenship under paragraph (1) in the same manner as they apply under subsection (c)(1).

327조

INA: ACT 327 - FORMER UNITED STATES CITIZENS LOSING CITIZENSHIP BY ENTERING THE ARMED FORCES OF FOREIGN COUNTRIES DURING WORLD WAR II

Sec. 327. [8 U.S.C. 1438]

(a) Any person who, (1) during World War II and while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erved in the military, air, or naval forces of any country at war with a country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was at war after December 7, 1941, and before September 2, 1945, and (2) has lost United States citizenship by reason of entering or serving in such forces, or taking an oath or obligation for the purpose of entering such forces, may, upon compliance with all the provisions of title III, of this Act, except section 316(a), an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b), be naturalized by taking before the Attorney General or before a court described in section 310(b) the oath required by section 337 of this title. Certified copies of such oath shall be sent by such court to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by the Attorney General to the Secretary of State.

(b) No person shall be naturalized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unless he-

(1) is, and has been for a period of at least fiv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aking the oath required in subsection (a),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attached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 and

(2)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for permanent residence and intends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c) Any person natur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or any person who was naturaliz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323 of the Nationality Act of 1940, shall have, from and after such naturalization, the status of a native-born, or naturalized,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whichever status existed in the case of such person prior to the loss of citizenship: Provided, That nothing contained herein, or in any other provision of law, shall be construed as conferring United States citizenship retroactively upon any such person during any period in which such person was not a citizen.

(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World War II shall be deemed to have begun on September 1, 1939, and to have terminated on September 2, 1945.

(e)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who during World War II served in the armed forces of a country while such country was at war with the United States.

329조

INA: ACT 329 - NATURALIZATION THROUGH ACTIVE-DUTY SERVICE IN THE ARMED FORCES DURING WORLD WAR I, WORLD WAR II, THE KOREAN HOSTILITIES, THE VIETNAM HOSTILITIES, OR IN OTHER PERIODS OF MILITARY HOSTILITIES

Sec. 329. [8 U.S.C. 1440]

(a) Any person who, while an alien or a noncitizen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has served honorably as a member of the Selected Reserve of the Ready Reserve or 1/in an active-duty status in the military, air, or naval forces of the United States during either World War I or during a period beginning September 1, 1939, and ending December 31, 1946, or during a period beginning June 25, 1950, and ending July 1, 1955, or during a period beginning February 28, 1961, and ending on a date designated by the President by Executive order as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Vietnam hostilities, or thereafter during any other period which the President by Executive order shall designate as a period in which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re or were engaged in military operations involving armed conflict with a hostile foreign force, and who, if separated from such service, was separated under honorable conditions, may be naturalized as provided in this section if (1) at the time of enlistment, reenlistment, extension of enlistment, 1/ or induction such person shall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the Canal Zone, America Samoa, or Swains Island, or on board a public vessel owned or operated by the United States for noncommercial service, 1/ whether or not he has been lawfu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for permanent residence, or (2) at any time subsequent to enlistment or induction such person shall have been lawfu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for permanent residence. The executive department under which such person served shall determine whether persons have served honorably in an active-duty status, and whether separation from such service was under honorable conditions: Provided, however, That no person who is or has been separated from such service on account of alienage, or who was a conscientious objector who performed no military, air, or naval duty whatever or refused to wear the uniform, shall be regarded as having served honorably or having been separated under honorable cond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No period of service in the Armed Forces shall be made the basis of a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under this section if the applicant has previously been naturalized on the basis of the same period of service.

(b) A person filing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comply in all other respects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title, except that-

(1) he may be naturalized regardless of age, and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ection 318 as they relate to deportability and the provisions of section 331;

(2) no period of residence or specified period of physical presence within the United States or any State or district of the Service in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quired; 2/

(3) service in the military, air, or naval force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oved by a duly authenticated certification from the executive department under which the applicant served or is serving, which shall state whether the applicant served honorably in an active-duty status during either World War I or during a period beginning September 1, 1939, and ending December 31, 1946, or during a period beginning June 25, 1950, and ending July 1, 1955, or during a period beginning February 28, 1961, and ending on a date designated by the President by Executive order as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Vietnam hostilities, or thereafter during any other period which the President by Executive order shall designate as a period in which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re or were engaged in military operations involving armed conflict with a hostile foreign force, and was separated from such service under honorable conditions; and 2/

(4) 2/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law, no fee shall be charged or collected from the applicant for filing a petition for naturalization or for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upon citizenship being granted to the applicant, and no clerk of any State court shall charge or collect any fee for such services unless the laws of the State require such charge to be made, in which case nothing more than the portion of the fee required to be paid to the State shall be charged or collected.

(c) 3/ Citizenship granted pursuant to this section may be revok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40 if the person is separated from the Armed Forces under other than honorable

conditions before the person has served honorably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five

years. Such ground for revocation shall be in addition to any other provided by law, including the grounds described in section 340. The fact that the naturalized person was separated from the service under other than honorable conditions shall be proved by a duly authenticated certification from the executive department under which the person was serving at the time of separation. Any period or periods of service shall be proved by duly authenticated copies of the records of the executive departments having custody of the records of such service.

FOOTNOTES FOR SECTION 329

INA: ACT 329 FN 1

FN 1The phrases “, reenlistment, extension of enlistment,” and “or on board a public vessel owned or operated by the United States for noncommercial service,” were added by section 1080(a)(1)and (2)of Public Law 105-85, dated November 18, 1997.

As stated in section 1080(b)of Public Law 105-85, the effective date of change is as follows:

(b) Effective Date.--The amendments made by subsection (a) shall apply with respect to enlistments, reenlistments, extensions of enlistment, and inductions of persons occurring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Section 1702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4, Public Law 108-136, dated November 24, 2003, further amended paragraph (a) by inserting as a member of the Selected Reserve of the Ready Reserve.

INA: ACT 329 FN 2

FN 2Section 1701(b)(2)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4, Public Law 108-136, dated November 24, 2003, amended paragraph (b)(2) by striking and at the end of the paragraph; by striking the period at the end of paragraph (b)(3) and inserting and by adding a new paragraph (b)(4).

EFFECTIVE DATE: The amendments made by sections 1701(b)(relating to naturalization fees) contained in paragraph (b)(4) shall take effect on October 1, 2004.

INA: ACT 329 FN 3

FN 3Section 1701(c)(1)(B)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04, Public Law 108-136, dated November 24, 2003, added a new paragraph (c). This paragraph applies to citizenship granted on or after the date of enactment of Public Law 108-136, which is November 24, 2003.

이중국적 정책

이중국적(dual nationality)의 개념은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



이중국적(dual nationality)의 개념은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은 자신의 정책에 기초를 두는 자신만의 시민권 법률을 갖고 있다.

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은 자신의 정책에 기초를 두는 자신만의 시민권 법률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각기 다른 법률의 자동적인 적용에 의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를 가진 아이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과 태어난 나라의 시민권을 모두 갖게 된다.

미국 시민은 결혼을 통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거나, 혹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서 이중국적을 갖게 된다. 외국이중국적 취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해도 자국의 시민권을 박탈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은 미국에서의 귀화과정을 통해서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속지주의에 반해 속인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이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도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③ 미국 시민이 외국에 귀화할 경우 그 나라가 미국 시민으로 하여금 미국 시민권 포기를 강요하지 않고 미국 시민 스스로도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경우

미국법은 이중국적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하나의 시민권만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또 다른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외국의 시민권을 요청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잃게 된다. 미국 시민권이 상실되기 위해서, 법은 자유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도로 외국의 시민권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이중국적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의도는 당사자의 선언(statements) 혹은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미국 정부는 이중국적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야기하게 될 문제점으로 인해 '사실상의 정책'(as a matter of policy)으로 그 위상을 갖추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의 미국 시민에 대한 이중국적 요구는 미국의 법률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중국적은 외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지원

7) Dual Nationality. http://travel.state.gov/travel/cis_pa_twlcis/cis_1753.html.(검색일: 2005.10.18).

8) ibid.

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제약시킬 것으로 여긴다.⁸⁾ 이중국적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allegiance)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국적은 미국과 특정한 외국, 양자에 대한 충성 부담을 주고 있다. 이중국적자들은 양 국의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요구된다. 양 국 모두 자신의 법률을 강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양 쪽 해당국을 여행할 경우에 그러하다.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은 이중국적자를 포함해서, 미국에 들어오고 나갈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 여권을 사용하면 미국 시민권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시민권 포기 혹은 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 역시 미국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수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 대사관에 있는 적합한 양식을 이용하거나 영사관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중국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적을 보유한 경우를 들 수 있다. 1968년까지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시민권 수용을 미국이 아닌 외국정부에 대한 충성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미국 시민권을 말소시켰다. 그러나 1968년 미국 대법원은 Afroyim vs. Rusk 사건을 통하여 외국 시민권을 수동적으로 (passively) 얻은 미국인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판례는 남겼다. 대법원의 결정 이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임시 거주 기한(temporary resident expires)만 허용되는 이스라엘 시민권을 수동적으로 받고 있다. 이스라엘에서의 시민권 발급 절차는 대단히 기술적으로, 미국에서처럼 새로운 시민권 전환을 의미하는 서약을 포함한 일체의 행사가 없다. 이스라엘 내무부는 시민권 허용의 조항을 담고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며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시민권의 수동적 수용' (passive acceptance of citizenship)의 증거로 인정해 주고 있다.⁹⁾

국적 상실과 추방 요건

미국 출생 시민권자나 귀화 시민권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도로 다음 중 어떠한 행위이든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 미국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¹⁰⁾

- ① 18세 이후에 외국에 귀화하거나 충성선서를 하는 경우

9) Arnold Dashofsky, Jan Deamicis, Bernard Lazerwitz, and Ephraim Tabory, American Abroad: A Comparative Study of Emigrants from the United States (New York: Plenum Press, 1992), pp. 38-52; 우평균, "해외미국인 이주의 특성과 시민권문제: 이스라엘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 민족연구, 제5호 (서울: 한국민족연구원, 2000), pp. 8-17. 참조.

10) citizenship.http://uscis.gov/graphics/services/natz/citizen.htm.(검색일: 2005.10.20).

② 미국과 전쟁 중인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거나 복무하는 경우 혹은 외국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③ 외국 정부의 관직 또는 직위를 맡거나 정부에 취업하여 활동한 당사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에 충성선서를 하는 경우

④ 국무성 서식으로 외교관 또는 영사관 직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시민권 포기를 선언하거나 미국이 전쟁 중에 있을 때 공식적인 서면으로 시민권 포기를 선언해도 국적을 상실당한다.

⑤ 미국에 대해 반역 행위를 하거나 미국 정부의 폭력 전복을 시도하거나 미국에 대항하여 무기를 드는 경우에도 국적을 상실당할 수 있다.

미국 국적을 상실하는 이상의 요건들에 전제되는 것은 국적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인 경우에만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포기한 국적을 회복하는 방법은 국적 포기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국적 포기가 강요 때문이거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국적을 버렸다는 이유가 있으면 국적을 되찾을 수 있다.

국적 포기자가 국적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권자로 권리 행사를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 여권 신청을 들 수 있다. 미국 여권을 신청한 후 거부되었을 때 국적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국적 회복이 거부되면 국무부에 행정 상소를 할 수 있다.

미 영사관을 통해 시민권자 신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 들어오면서도 공항에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 할 수 있다. 공항에서 국적이 포기되었으므로 미국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가입국이 되는 경우 연방 법원에서 시민권 회복재판을 받게 된다. 이민과 국적법 제324조는 과거에 미국 시민권자였다가 미국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¹⁾

◆ 1922년 9월 22일 이전에 미국 시민이었고, 이방인(an alien)과 결혼으로 인한 미국 시민권 상실, 혹은 그와 같은 사람의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상실, 혹은 1922년 9월 22일 당일 혹은 그 이후에 시민권 취득 부적격자와의 결혼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은 결혼 이외의 그러한 사람이 취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한 다음의 요건들을 제외하고는 귀화(시민권 재취득)가 허용된다.

(1) 미국 내 혹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미국의 주(State)나 구역(district) 내에서 실제로 거주하거나 특정한 기간 동안 살지 않은 경우.

11) Act 324-Former Citizens of United States Regaining United States Citizenship. <http://uscis.gov/IpBin/Ipext.dll/inserts/slb/slb-1/slb-22/slb-8759?f=templates&fn=documentframe.html#slb-act324>.(검색일: 2005.10.20).

(2)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를 표명할 필요가 없다.

◆ 1922년 9월 22일 이전에 상기의 해당사항에 의해 결혼한 미국시민이었던 여성이 1941년 1월 12일까지 결혼이 종료되었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남자와 혼인하였으나 동법 337조에 명시된 ‘충성의 맹서’ (oath of allegiance)를 하는 여성은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지위와 동등하며, 귀화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1) 충성의 맹서는 외국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 앞에서, 혹은 미국 내에서 법무장관 앞에서, 혹은 310(b) 항에 제시된 법원 판사나 서기 앞에서 거행한다.

(2) 충성의 맹서는 기록을 남기면 복사본을 만들어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여성에게 전달된다.

동법 327조는 2차 대전 당시에 외국군대에 입대함으로써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329조에서는 일차 대전, 이차 대전, 한국전쟁 교전, 베트남 전쟁 교전, 혹은 다른 시기의 군사적 교전에서 적극적인 의무 수행(active-duty service)을 통한 귀화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국적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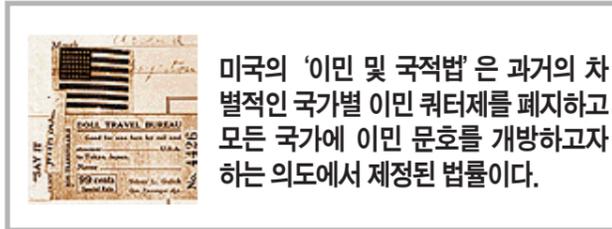
미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이방인에 개방적이며, 역사적 구속이 상당히 결여되어 왔다는 특성이 있다. 많은 미국내 민족집단은 미국영토에 어떤 역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영토에 대한 특별한 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미국국민이 되기 위한 방식도 많은 유럽국가들과 비교하면 이성적인 경향이 강하다. 한마디로, ‘미국인인 것’이라는 것은 미국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민주주의, 평등, 그 밖의 가치등과의 관계에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체에서 국민이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이들 가치에 대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¹²⁾

미국의 이민과 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비시민권자의 자녀,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이민을 통해 미국에 들어온 자들과 미국 시민으로서 외국에서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모두 폭넓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구와 총합적인 국력의 원천으로서의 이민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되어 있는 미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미국이 국내적으로 다양한 민족들을 동일한 시민권의 견지에서 포용하고 있다는

12) William Safran, 김용찬역, “민주주의 체제의 시민권과 국적”, 조정남 편 『현대정치이해』(서울: 교양사회, 2003), pp.485-486.

사실 자체가 미국과 세계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촉진하고 인적 자본(human power)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은 과거의 차별적인 국가별 이민 쿼터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가에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런 점에서 미국의 국적과 이민정책은 외교정책의 일부이며, 그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국적관련 법안은 이와 같은 미국적인 인구 구성의 특성을 담고 있으며, 또한 내용적으로 폭넓으면서도 엄격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 국적법의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방성

미국으로 이주한 비시민권자, 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요건들을 제시함으로써 폭넓은 대상을 예비 시민권자로 설정하고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속지주의적인 시민권 부여 방식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혈통에 의해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속인주의 방식을 가미함으로써 시민권 획득의 대상을 폭넓게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 부여대상이 다섯 가지 범주로 설정되고 있다. 그것은 ①미국 출생자(U.S. born), ②비미국시민권자(not a U.S. Citizen), ③귀화시민권자(naturalized), ④미국인 부모를 가진 외국 출생자(born abroad to American parents), ⑤미국령 내 출생자(U.S. territory) 등을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부류의 시민권 부여 대상자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비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출생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미국 이주자 중에서도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히스패닉(Hispanics)의 경우 1985년에서 1990년 사이 미국의 중서부(midwestern) 주들에 정착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비율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³⁾ 결국 실제적으로는 속지주의의 결과로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는 비시민권자의 자녀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절차적 엄격성

출생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을 갖는 경우와 달리,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거주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부여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반적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요건을 갖춘 후에 최종적으로 외국에 서는 미국 영사 앞에서, 미국 내에서는 법무장관 혹은 법원 판사나 서기 앞에서 충성의 맹서를 통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절차와 의례를 통해 시민 권 취득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공식 기록으로 남겨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에게도 기념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고 있다.

3) 국가와 헌법, 질서에 대한 강조

영주권자가 귀화를 통해 시민권자의 자격을 얻는 경우는 물론이고 과거에 미국 시 민권자였다가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미국 시민권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도 국가 에 대한 충성서약을 통해 미국헌법 조항의 준수와 미국의 질서와 안녕에 대한 마음가 짐을 표명하고 이를 절차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미국 시민권 신청자 개 인의 좋은 도덕적 성품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성립하는데 제1 의 요건인 헌법과 그것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질서에 대한 준수를 다짐함으로 서 시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데에 시민권 획득의 본질적인 의의를 둔다. 또한 미국 시민 권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국적을 다시 회복하기 힘든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으로 18세 이후에 외국에 귀화하거나 충성선서를 하는 경우, 그리고 미국과 전쟁 중인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거나 복무하는 경우 혹은 외국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는 경우 를 제시함으로써 외국 군대 입대 관련 사항을 시민권 취득의 요건으로 중시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하거나 미국 정부의 폭력적 전복 을 시도하거나 미국에 대항하여 무기를 드는 경우도 국적 상실과 취득 불가의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외교정책과의 연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영주권을 제공 하는 문제는 외국에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판단 과 대책이 사료되어 있는 정책적인 고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시대에는 소련 과 동유럽에서 탈출하거나 망명신청을 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¹³⁾ 민주주의의 범세계적인 확대와 그것을

통한 테러 요인 제거와 국제 평화 확보를 대외 정책의 기조로 내세운 부시 행정부하에서도 자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부자유한 체제로 인해 자국을 탈출하거나 망명하는 사람들을 미국이 지원하고 미국으로 오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9월 미국 상원에서 북한 인권 법안이 통과되고 하원과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법안이 발효되면서 탈북자를 실제로 미국 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자, 기존의 난민 개념만으로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적인 탈북자에 대해 난민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즉 북한 인권법과 민주주의 촉진법, 이민 및 국적법 등이 현 부시 행정부의 외교 노선에 따라 일체적으로 작동하며 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과 탈북자 수용, 그리고 이들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 여부, 그리고 이들이 미국에 정착할 때 영주권자의 시민권 부여 문제가 정책과 법이 동시에 연계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탈북자의 경우 향후에 난민 심사 대상에 추가되더라도 그에 따른 조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당장은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¹⁴⁾ 북한과 미국과의 향후 협상과정과 북한의 억압적인 체제하에서 탈출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거나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경우 가변적으로 될 수도 있다.

맺는 말

미국의 ‘이민 및 국적법’은 과거의 차별적인 국가별 이민 쿼터제를 폐지하고 모든 국가에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물론 한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의 숫자는 제한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대한 제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확립된 규칙과 절차에 의해 미국 시민권자, 즉 미국적 취득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에 이주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 모두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이주하여 인구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고 있는 히스패닉이나 중국 등 아시아인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혹은 단순 이주자, 혹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미국 경제의

13) 1956년 봉기 이후 헝가리인, 카스트로 정권수립 후의 쿠바인, 소련으로부터의 유대인, 베트남 난민 등 공산주의 국가로부터의 수십만 명의 정치망명자를 받아 들인 데서도 나타난다.

14) 1990년을 기준으로 미네소타(Minnesota)는 ①79(%), ②11, ③5, ④4, ⑤1(원문자는 본문의 시민권부여 대상 5부류와 순서 일치), 아이오와(Iowa)는 ①78, ②14, ③5, ④2, ⑤1, 네브라스카(Nebraska)는 ①82, ②11, ③5, ④2⑤0, 아칸사스(Arkansas)는 ①71, ②18, ③6, ④2, ⑤3, 네바다(Nevada)는 ①58, ②29, ③11, ④1, ⑤1, 테네시(Tennessee)는 ①72, ②10, ③8, ④3, ⑤7, 조지아(Georgia)는 ①48, ②29, ③12, ④3, ⑤8, 메릴랜드(Maryland)는 ①42, ②136, ③13, ④3, ⑤6 을 나타내고 있다. James H. Johnson Jr., Karen D. Johnson-Webb, and Walter C. Farrell Jr., "Newly Emerging Hispanic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A Spatial Analysis of settlement Patterns, In Migration Fields, and Social Receptivity," Frank D. Bean and Stephanie Bell-Rose, eds., Immigration and Opportunity (N. Y.: Russell Sage Foundation, 1999), pp. 288-301.

하부 구조를 뒷받침하면서 숫자가 늘어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현상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면서 그 중에 미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여 미국 정부가 현재의 이민 및 국적법의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여러 단계를 통해 변천해온 현재의 이민 및 국적법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들은 당분간 변함없이 유지될 듯하다. 미국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이민자 숫자의 증감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요건들은 이에 관계없이 그 골간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적법은 이민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방적인 성격, 즉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혹은 어느 지역에서도 원한다면 요건을 갖추어 미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요건이 까다롭고 정교한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서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제시할 수 있으며, 시대적인 상황의 변모에 따라 조금씩 변화의 양상을 담고 있는 개정 조항들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미국 국적법의 성격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도서안내

사상과 혁명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교양사회
조정남 편역 / 값 10,000원



이민유입 장려와 통제 사이의 방향

김인성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위원)



머리말

러시아연방의 국적제도는 1991년 11월에 국적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제정함으로써 성립되었다. 한편, 소연방의 몰락과 함께 독립국가연합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로부터 수백만의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이들 이민자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신속하게 부여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에 남아있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 법안은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거치게 된다. 몇 개의 대통령령

1) 이 외에 "러시아연방에서의 외국인 권한에 관한 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난민에 관한 러시아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еженцах)" 그리고 "이주난민에 관한 러시아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ынужденных переселенцах)"이 존재해 왔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국적취득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둘째, 이전 국적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많은 난민들에게는 불가능한 과제이다. 셋째, 지방관료들이 난민들의 거주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을 제외한다면 이 법안은 러시아의 국적정책과 관련한 유일한 실질적인 제도로서 기능하여 왔다.¹⁾ 한편, 푸틴 대통령 취임한 이후 2002년 5월에는 새로운 국적법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첫째, 소련의 몰락 이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이주는 일단락되었다. 둘째,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간 국적정책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이 나름의 국적법을 채택함에 따라 새로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 연방의 국적제도의 변화과정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국적취득제도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 속인주의 · 제한적 속지주의

러시아의 국적법은 속인주의와 제한적인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먼저 속지주의 원칙을 살펴보자. 1991년의 국적법 제14조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러시아 국민일 경우 아이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러시아 연방의 국민이다. 제15조에는 부모 중 한 명만이 러시아 국민인 경우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만일 다른 부모가 국적이 없는 경우, 아이는 자동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다. 한 부모의 국적이 다른 국가에 속해 있을 경우 부모에 의한 서면상의 동의가 있다면 아이는 출생지와 관계없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다.

한편, 이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이 함께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서면상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가 러시아 영토 내에서 태어났을 때 혹은 아이가 무국적자가 될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러시아 국적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 17조 2항에 의하면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무국적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1993년 개정에 의해 추가된 17조 1항은 속지주의적 성격을 한층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도 아이가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출생하였다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데, 이는 ‘부모가 속한 정부가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라는 규정이다. 러시아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이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국적제도는 제한적인 속지주의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2년의 새로운 국적법은 속인주의와 제한된 속지주의 원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제12조).

2) 출생 이외의 국적취득방법 : 자동국적부여(구법) · 간소절차(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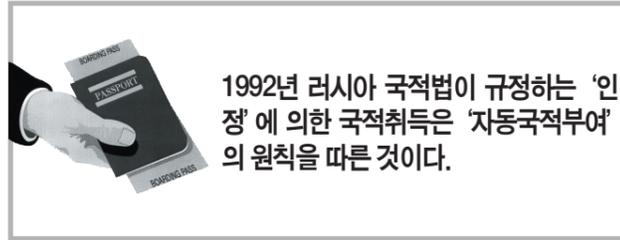
1991년 국적법상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절차로서는 출생 이외에도 ‘인정(認定 признание)’, ‘등록(регистрация)’, ‘국적편입’, ‘국적부활’, ‘영토변경 및 국제조약’ 등이 존재한다. 이들 중에서 특이한 것은 ‘인정’ 과 ‘등록’ 에 의한 국적 취득방법이다.

구소련 여권에는 소비에트 공화국이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구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인들은 여권에 의거하여 소속된 소비에트 공화국의 국민이 될 수도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 사태는 훨씬 더 복잡하였다. 소련정부의 이주정책과 직업, 교육, 혹은 가족관계 등의 이유에 의해 타공화국에 거주하는 소련인들이 많았다. 게다가 많은 수의 소련인들은 자신이 소속한 민족공화국이 아닌 다른 민족공화국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198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가 아닌 구소련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대략 2천5백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따라서 독립과 함께 각각의 구소련 국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국적취득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 핵심적으로 고려된 사항은 ‘자국 내 영구거주자들에 대한 자동국적부여’ 와 ‘재외거주 자민족 구성원들의 국적부여’ 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인들에 대한 국적부여를 꺼려했던 발트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소련국가들이 ‘자동국적부여’ 의 원칙을 수용한 바 있다.

러시아 국적법이 규정하는 ‘인정’ 에 의한 국적취득은 바로 ‘자동국적부여’ 원칙을 따른 것이다. 동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현행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러시아 연방국민이 되지 않겠다는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법률효력발생일에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영구거주하는 모든 구소련 국민들은 러시아연방 국민으로 인정된다.”

한편 해외거주 러시아 민족들에게 러시아 국적을 손쉽게 부여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하였다. 동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1922년 12월 30일 이후에 러시아 영토 내에서 소련 국민으로 출생하였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소련 국민이었던 자의 자녀로서 소련 국적을 상실한 이들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구소련 시절에 러시아 영토 내에서 태어났거나 부모가 러시아 영토에서 영구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든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이 조항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 무엇보다도 구소련 영토 내의 러시아인들이었지만, 더 폭넓게는 구소련 시절 추방당했거나 이민한 러시아인들과 그 후손까지 그 범주에 포함되었다.

‘자동국적부여’의 원칙에 더하여 법안 채택 이후에 러시아에 이주한 구소련 시민들에게 손쉽게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방도가



1992년 러시아 국적법이 규정하는 ‘인정’에 의한 국적취득은 ‘자동국적부여’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1993년과 1995년 두 차례의 법안 개정을 통하여 마련되었다. 국적법 18조는 ‘등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d)항에 따르면 1992년 2월 6일 이후에 영구거주할 목적으로 러시아에 이주해 온 구소련 시민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연방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희망을 밝힐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²⁾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소련 국민이었던 자들은 거의 모두가 러시아 국적 취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2년 국적법에서는 ‘인정’과 ‘등록’에 의한 국적취득방법이 삭제되었다. 구소련 붕괴와 함께 시작된 대규모 이주가 대체적으로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이다. 대신 국적취득의 요건은 대폭 강화되었다. 타국적자로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거주등록시점으로부터 국적취득신청 시점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할 것, 2)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자일 것, 3) 합법적인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을 것, 4) 타국적 포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일 것, 5) 러시아어 구사능력이 있을 것.

5년 이상 거주와 러시아 구사능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국적법으로 인해 외국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요건은 대폭 강화되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소련 국적자들로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이다. 신법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 ‘간소절차’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제14조). 간소절차는 5년 상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즉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1) 부모 중 최소 1인이 노동능력이 없는 자로서 러시아 국민인 경우, 2)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구소련 국민인 경우.

간소절차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그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법규정을 통해서는 러시아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러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3년 11월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 이 법안의 18조 (d)항은 1996년 5월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거의 모든 구소련 국민들에게 자동적으로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와 의회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2002년까지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 개정으로 인해 동법 제14조의 간소절차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확대되었다: 1) 부모 중 1인이 러시아 국민으로서 러시아 영토 내에 영구거주하고 있는 자(1-a항), 2)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구소련 국민(1-b항), 3) 2002년 7월 1일 이후 러시아 교육기관에서 중등 혹은 고등 전문교육을 받은 자로서 구소련 국가의 시민인 자(1-c항), 4) 러시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 출생자로서 구소련 국적자(2-a항), 5) 러시아 연방국적자와 3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2-b항), 6) 노동능력이 없는 자로서 노동능력이 있는 러시아 국적의 자녀를 둔 자(2-c항), 7) 2002년 7월 1일 현재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거주등록이 된 자로서 노동능력이 없거나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구소련 국민(3항), 8) 2002년 7월 1일 현재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 거주등록이 되어있거나 임시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무국적자, 또한 거주등록이 없는 자로서 2006년 1월 1일까지 러시아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4항), 9) 대조국전쟁 참전용사들. 법안 개정에 따라 더 많은 이들이 보다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구소련국민 거의 모두에게 용이한 국적취득절차를 제공했던 구법에 비하면 국적취득이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3) 국적의 변경 : 국적박탈 불인정 · 자발적 국적포기

1991년과 2002년 국적법은 모두 국적박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1년 국적법 제1조 2항은 “러시아연방에서는 그 누구도 국적이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2년 국적법 제4조 4항에서도 러시아연방 국민은 국적이나 국적변경의 권리가 박탈당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국적취득이 취소될 수는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 러시아연방 국적을 취득할 당시 거짓된 진술을 하였거나 조작된 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이다(구법 24조 1항, 신법 22조).

한편 러시아 국민은 국적포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91년 국적법 제23조 1항에 따르면 “러시아연방국적으로부터의 이탈은 현행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조항이 국민의 국적포기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신법에는 자발성의 원칙이 더해졌다. 2002년 국적법 제19조 1항 러시아연방 영토 내에 거주하는 이의 러시아연방 국적포기는 이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적포기권의 행사에는 몇 가지 단서가 붙어있다. 1991년 국적법은 국적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다. 첫째는 군복무 혹은 대체복무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복무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23조 3-a항)이고 둘째는 재판이 진

행중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23조 3-b항)이다. 새로운 국적법에는 여기에 한 가지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다. 제20조 3항에 따르면, 다른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국적포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다중국적문제 : 제한적 이중국적 · 암묵적 다중국적

소련방의 몰락과 함께 구소련 영토 각지에 남아있는 러시아인들 보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부터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보수주의적인 색채가 농정되면서 옐친 정부는 자민족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1993년 6월에 국적법 개정을 통하여 이중국적제도를 도입하였다. 구법 제3조와 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중국적은 원칙적으로 타국과의 국제조약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이중국적에 관한 조약은 1994년 11월 25일 투르크메니스탄과 1996년 12월 15일 타지키스탄과 각각 체결되었으나,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조약은 2005년 5월 효력을 상실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조약문 제4조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들은 모든 권한과 자유를 보장받되, 거주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이중국적자들은 병역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나, 두 국가 모두에서 병역의무를 질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영구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군대에서 복무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운용된다. 교육, 의료, 기타 복지 혜택은 거주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중국적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헌법과 국적법에서 쓰이고 있는 ‘여타의 국적(иное гражданство)’이라는 용어이다. 이중국적은 국제조약에 의해서만 허용되지만, 여타의 국적을 취득한 러시아국민의 러시아국적이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은 ‘오직 러시아 국적자’로만 간주될 따름이다. 이들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이론상 그리고 실제적으로 러시아 국민은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적법은 원칙적으로는 ‘조약에 의한 이중국적 허용’에 기초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다중국적의 암묵적 허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외 러시아인 정책

198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가 아닌 구소련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은

대략 2천5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재외러시아인 정책은 민족적 러시아인들(에프니취스끼에 루스끼에 этнические русски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러시아 공화국 내부에 영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들(이를 테면 타타르인들, 바쉬키르인들, 카프카즈의 여러 민족들 등),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미 러시아화된 제민족들(한인, 우크라이나인, 벨로루시인, 유대인, 폴란드인 등)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을 지칭하는 명칭 자체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동포(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러시아인(россияне)'³⁾, '러시아어 사용자(русскоязычные)'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⁴⁾ 근외 거주 순수 러시아 민족은 2천5백만 이라면, '러시아어 사용자'의 수는 3천9백만 명에 달한다.⁵⁾

집권 초기 엘친 정부의 재외러시아인 정책에는 당시의 서구지향적인 외교정책의 영향력이 강하게 배어있었다. 이에 따라 1991년 국적법은 국적취득의 자격을 현재 러시아 영토에 영구거주하고 있는 자들과 과거 러시아 영토에 거주했던 자들이나 이들의 자손으로 한정 짓고 있다. 그러나 1992년 말부터 러시아 외교정책에 민족주의적 성격이 배어나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국적법도 중요한 개정을 거치게 된다. 무엇보다도 국적취득의 자격이 모든 구소련 국민들로 확대되었으며, '등록'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절차도 대폭 간소화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구소련 지역 거주 러시아인들이 각국에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전달하는 지렛대로서 역할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민족으로서의 러시아인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소수민족들까지도 러시아인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영향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였다. 특히 이들이 민족차별이나 분쟁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국제기구를 통하여 이들 국가의 차별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이들의 보호를 이유로 각종 압력을 행사해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쌍무협정의 체결을 요구하고, 러시아군을 주축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주도함으로써 구소련국가들을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권 내에 묶어두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2002년 새로운 국적법의 도입은 재외러시아인 정책의 급격한 선회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동포'에 대한 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간소절차'가 도입되었지만, 구소련국민으로서 무국적자이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러시아 국민의 자녀에 한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의 법률자문위원인 쿠타핀 교수는 새로운 국적법의 필요성

3) '러시아인'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루스끼 русские'로서 인종적인 러시아인을 의미하며, 또 다른 하나는 '로시아닌 россиянин'으로서 러시아 국민을 지칭한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 참조 바람. Sven Gunnar Simonen, "Compatriot Games: Explaining the 'Diaspora Linkage' in Russia's Military Withdrawal from the Baltic States," *Europe-Asia Studies*, Vol. 52, No. 5, 2001, pp. 773-774.

5) Лилия Графова, "Легализовать нельзя допротировать,"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No. 23, 2002.



2002년 새로운 국적법의 도입은 재외 러시아인 정책의 급격한 선회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동포'에 대한 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⁶⁾ 첫째, 지난 10년 동안 구소련 국민으로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

했다. 1992년 국적법에 의해 구소련 국민들 모두에게는 특혜가 부여되었으며, 희망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 특혜를 이용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이미 450만 명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였다.⁷⁾ 둘째, '동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구소련 국가의 국민들 모두가 러시아 동포가 될 수는 없다. 러시아 영토 내에 근거를 둔 민족들을 '동포'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는 동포란 러시아 국민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외동포정책은 근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가내부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9.11 이후 국제적으로 테러의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다.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국가의 내부 안정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003년 국적법 개정은 일부 구소련 국민들의 러시아국적 취득을 무척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그 대상은 러시아 영토 내에 영구거주하고 있는 자들에 크게 한정된다. 2003년 현재 구소련 여권을 가지고 러시아에 영구거주하고 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의 수는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신국적법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가 되는 셈인데, 이들을 모두 강제추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들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임시적인 법률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6년까지라는 시한을 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새로운 법안의 채택을 통하여 분명해진 점은 재외(특히 근외) 거주 러시아인들을 잠정적인 러시아 국민으로 간주하던 정책을 푸틴 정부가 더 이상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외 동포 정책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는,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와 재외 러시아인들 정책간의 관련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구소련 국가들의 자민족화 정책으로 인해 그 동안 재외 러시아인들의 권리 문

6) Наталья Абрацетова, "Гражданство России должно защищать и человека, и государство,"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No.216 (2526), 20 ноября 2001.

7) Олег Кутафни, "Пора урегулировать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гражданином и государством адекватно новым реалиям,"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No.97(2651), 22 мая 2002.

8) Роман Кириллов, "Назад СССР," Известия, 23 сентября 2003.

제와 관련하여 이슈로 제기되었던 러시아어의 공식어 인정 문제, 이중국적조약 체결의 종용 등은 러시아 정부의 외교정책이슈에서 급격히 사라져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외 러시아인들을 러시아로 유입하려는 정책 역시 중단되었다. 이는 이민희망자들은 거의 모두가 러시아에 정착해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국경 통제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범죄나 테러와 연관된 이들이 러시아에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및 난민정책

1) 외국인 노동자 및 난민 정책 방향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나 난민들에 대한 정책 방향은 그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치·경제·사회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나 격심한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 말기 민족주의의 발흥과정에서 발생한 민족분쟁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러시아의 경우, 이 이슈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러시아민족정서나 국가안보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의 대규모 유입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최근 중국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에 대규모로 유입됨에 따라, 제정러시아 말기 제기되었던 “황색 위협(желтая опасность)”이라는 경고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황색위협’이라는 용어는 1908년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제정러시아의 총독이었던 운테르베르케르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려인들이 극동지역을 장악함에 따라 태평양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상황이 악화되었다. 고려인들이 러시아 주민들과 동화될 것이라고 여길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고려인들은 남우수리 지역에 40년 동안이나 살고 있지만 자신들의 민족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모든 측면에서 우리와는 이질적인 민족으로 남아있다. 황색위협은 프리아무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나는 이 지역이 경작지로 변해 고려인의 것이 되는 것 보다는 황무지이더라도 러시아인의 것으로 남아있기를 바란다.”⁹⁾

물론 고려인의 이 지역에 대한 기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존재하였다. 이와 관

9) В.А. Ионцев, Н.М. Лебедев, М.В. Назаров, *Эмиграция и репатриация в России* (М.: По печателство о нуждах российских репатриантов, 2001), стр. 369.

련하여 그라베리는 러시아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고려인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유용한 요인을 제공하였다. 고려인들의 정착과 그들의 문화의 도입은 타이가의 깊은 지역에 오직 유용함만을 가져왔다. 만일 진작 이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프리아무르의 많은 지역들은 황무지가 아니라 고려인들에 의해 개간된 오아시스들이 들어섰을 것이고, 우리의 개척자들이 그 주변에 정착했을 것임에 틀림없다.”¹⁰⁾

백여 년 전에 제기되었던 이러한 논쟁은 현재 러시아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50년 후에는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이 개간되어 중국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¹¹⁾ 중국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회적인 긴장이 조성되며, 천연자원의 수탈이 이루어지고, 외화가 유출되며, 범죄가 증가하고, 주민들의 보건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의 민족정서가 용납할 수 없는 가장 큰 위험은 극동과 시베리아의 인종적인 균형이 깨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주권이 상실될 것에 대한 우려이다.¹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슈는 불법이민자들 문제이다. 이들과 국가안보와의 관련성은 2001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의 성명서를 통해 제기되었는데, 이 이후로 러시아 정부는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003년 3월 행정부령으로 발표된 “이민 과정 규제 개념(Конц ещя регулпрования мпграцпнных процессов в Росснпской федерации)”은 불법이민의 문제를 테러의 확산과 연계시키고 있다. 카프카즈 지역과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은 사회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테러조직 형성 및 정치적 극단주의를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연방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두 번째로 지적할 점은 경제적 요인이다. 러시아의 노동시장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 러시아정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기업들의 6%가 노동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2년에는 이 비율이 30%로 크게 증가하였다.¹³⁾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현재 매년 3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고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열 배가 러시아에서 불법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으

10) Там же, стр. 368.

11) Там же, стр. 369.

12) Галпа Вптковская, “Угрожает ли безопасность Росснпкптаяская мпграцпня?”, *Врпфпнг м оскоского центра карнегп, Август, 1999*, стр. 1.

13) Irina Ivakhniouk, “Illegal Migration: Russia”, *European Security* (Vol. 13, 2004), pp. 41.

로 알려지고 있다.¹⁴⁾ 러시아에서 특히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는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보수는 적은 사업장들로서,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불법노동자들로 알려져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많지만, 버스나 트롤리 등의 운전기사나 중소기업 노동자, 소규모 상인들을 위시하여 러시아인들이 꺼리는 업종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불법이민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강제 추방될 경우 러시아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¹⁵⁾

세 번째로 염두에 둘 점은 사회적 요인으로서 러시아 인구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극히 부족한 국가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총면적은 1,707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세계 육지 면적의 1/8, 한반도 면적의 약 75배에 해당한다.¹⁶⁾ 한편, 인구밀도는 극히 낮아서 1평방 킬로미터당 인구가 9명이 채 안 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5억 정도가 러시아의 적정 인구라는 발언을 한 바도 있다.¹⁷⁾ 인구부족현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수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2000년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 인구는 1억4천5백3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매년 30만~80만 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¹⁸⁾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0년경에는 1억4천만 명으로, 2050년이 되면 러시아 인구는 현재의 40% 수준인 9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인구 중에서 노동가능연령인구는 현재의 60%에서 47%로 감소되며,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에서 4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¹⁹⁾ 따라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요구되지만 이를 통해서 부족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러시아의 인구부족 및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민의 유입을 통하여 해결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과 관련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이민정책개념(Концепция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을 수립할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으며, 러시아 의회 내부에서는 몇 가지 대안이 나오기도

14) Ibid., p. 42.

15) Леонид Жмырев,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России: контуры появляются”, (<http://antropotok.archipelag/text/a093.htm>: 검색일 2005. 11. 2)

16) 김우승, “러시아문화와 집단주의”, 『현대 러시아의 이해』, 현대러시아 연구회 편 (서울: 퇴설당, 2001), p. 63.

17) С. Новорудский, С. Попова, Н. Ратгани, Е. Шестернина, “Мистер, нет!”, *Известия*, 2002. 8. 14.

18) Валерий Елизаров,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кризис в России: факторы и последствия”, (<http://antropotok.archipelag/text/a115.htm>: 검색일 2005. 11. 2)

19) Irina Ivakhniouk, op. cit., pp. 41-42.



러시아의 인구감소 및 노동력 부족문제는 이민유입을 통하여 해결하는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나 포괄적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이민정책 개념”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하였다. 아직까지 “이민정책개념”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대신에 2003년 3월 “이민 과정 규제 개념”이 발표되었지만, ‘규제’라는 용어

가 함축하고 있듯이 초점은 이민과정에 대한 통제에 맞추어져 있다. 러시아 내부에는 아직까지도 타민족의 유입이나 타국가의 자본의 도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정책의 대체적인 윤곽의 형성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인 노동자 및 난민 정책의 현실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된 법률로서는 “국적법”과 함께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법률(이하-외국인 지위법)”이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러시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규칙의 미비와 다른 연방법들과의 모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춘 법규정들로 인해 실제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러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는 극히 어렵다. 이를테면 외국인 지위법에는 외국인들이 러시아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거주등록이 필요한데, 거주등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직장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거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외국인들에게는 제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지위법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수준이나 계약기간의 설정이나 연장 혹은 계약파기, 의료보험혜택 등 이들의 노동조건이나 복지는 법률적 공백상태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들이 계약이나 여타의 문제로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절차 역시 마련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백오십만에서 많게는 천오백만까지로 다양하게 추산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사오백만 정도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²⁰⁾ 이들 중 약 80%는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가, 비자상의 체류기간을 넘겨

²⁰⁾ Ibid., p. 40.

서 불법노동자가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현재 러시아 당국은 이들을 합법화하기 보다는 통제하려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취업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난민들의 처지 역시 불법취업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소련 말기에 민족주의의 열기가 거세짐에 따라 이 지역 내에는 다수의 민족간 분쟁이 목격되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압하지아, 트랜스드네스트르, 남오세티아, 타지키스탄, 그리고 체첸 등 무려 6개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구소련이 간여했던 아프간 전쟁난민과 스탈린 시기 강제이주된 민족들이 귀환하지 못하고 구소련 지역을 떠들게 됨에 따라 발생한 난민 문제 등이 겹쳐지면서 난민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1993년 개정된 국적법이나 난민법에 따라 이들 피난민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투르크-메스헤텐인들을 예를 들어보자. 이들은 원래 그루지야에 거주하던 이들로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되었다. 한편 1989년 소련당국의 결정에 의해 9만명의 투르크-메스헤텐인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나게 되었고, 이들 중 약 1만5천명은 러시아의 크라스노다르 크라이에 정착하였다. 1992년 국적법상 이들은 영구거주목적으로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구소련 국민들로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않겠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까지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²¹⁾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가 이들에게 거주등록을 허가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러시아에서 거주등록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서류작성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심지어 실제 거주지역에 합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거주등록이 없다면 소유자는 공식적으로는 그곳에 살지 않고 있는 셈이 된다. 이처럼 러시아 연방법의 모순과 현지 행정부서의 전횡이 난민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론

러시아 연방의 성립 이후 십여 년 동안 러시아의 국적정책은 큰 변화를 보여 왔다. 속인주의와 제한적 속지주의는 그 원형을 유지해 왔지만 국적취득과 관련해서는 '인정'과 '등록'에 의한 자동국적부여의 원칙이 폐기되고, 그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며

21) В.Галдаш, "Миграция и право : Краснодар", <http://www.memo.ru/hr/refugees/sem5ru/Chapter2.htm> (검색일 2005. 11. 2)

일부에 한하여 '간소절차'를 통해 용이한 국적취득을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 조약에 기반한 '이중국적허용'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조약연장을 거부하고, 다른 구소련국가들이 조약체결에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사실상의 효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옐친 시기와 푸틴 시기의 국적정책의 변화는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적정책과 관련된 이슈영역이 바뀐 탓에 발생하였다. 옐친 시기 국적정책의 틀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혹은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지위 향상과 이들에 대한 용이한 러시아 국적 부여에 의해 규정되었다. 푸틴 정부의 국적정책은 민족간 국경이동은 이미 일단락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과거에 러시아인들에게 부여했던 특혜조항을 없애고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른 한편,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연방정부의 국적정책은 대규모 유이민의 발생으로 야기되는 사회·정치적 혼란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개념'의 수립, 국적 및 이민자 관련 법안들간 상호모순의 해결, 국적법 관련 하부시행규칙의 수립, 외국인들에 대한 법적 보호의 강화 등은 러시아 국적정책과 관련하여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1세기의 정치상황을 이론과 실제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

현대정치학의 이해



격변기의 시대상황에 대응하면서 다면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현대의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위한 기본서!!

■ 주요목차

- 1부/ 현대 정치학의 기본
- 2부/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 3부/ 현대의 정치현상



III 교양사회 조정남 편 / 값 20,000원

'러시아 연방 국적법'은 1991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1993년과 1995년 개정된 후, 2002년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국적취득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다음은 새로운 국적법의 영역발췌문이다.



FEDERAL LAW

ON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NO. 62-FZ OF MAY 31, 2002)

Adopted by the State Duma April 19, 2002
Approved by the Federation Council May 15, 2002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The Subject Matter Regulated by the Present Federal Law
The present Federal Law comprises the principles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nd the rules governing relations connected to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It sets out grounds, terms and procedure for the acquisition and termination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rticle 2. Legislation on the Citizenship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issues of citizenship in the Russian Federation are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present Federal Law and also by other regulatory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enacted pursuant thereto.

Article 3. Basic Terms

The following basic terms are used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Federal Law:

"citizenship of the Russian Federation" means a stable legal relation of a pers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 that manifests itself in an aggregate of their mutual rights and duties;

"another citizenship" means the citizenship (allegiance) of a foreign state;

"dual citizenship" means that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has the citizenship (allegiance) of a foreign state;

"foreign citizen" means a person who is not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and who has the citizenship (allegiance) of a foreign state;

"stateless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not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and who has no proof that he/she has the citizenship of a foreign state;

"child" means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residence" means that a person is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outside of it;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means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in the State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territory of the RSFSR within the administrative border of the RSFSR as of the date of emergence of circumstances relating to the acquisition or termination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under the present Federal Law;

"the general procedure for acquisition or termination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means a procedure for considering issues concerning citizenship and making decisions on issues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by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respect of persons subject to the ordinary conditions set out in the present Federal Law;

"the simplified procedure for acquisition or termination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means a procedure for considering issues concerning citizenship and making decisions on issues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in respect of persons who enjoy the preferential treatment conditions set out in the present Federal Law;

"change of citizenship" means the acquisition or termination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residence permit" means the personal identity document of stateless person issued to confirm permission of permanent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a stateless person or a foreign citizen and confirming their right of free exit from the Russian Federation and return to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4. The Principles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nd the Rules Regulating Issues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1. The principles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nd the rules regulating issues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shall not contain provisions imposing restrictions on citizens' rights by virtue of the social, racial, ethnic, language or religion belonging.
2. The citizenship of the Russian Federation is uniform and equal, irrespective of the basis on which it is acquired.
3. Russian Federation citizen's residence outside of the Russian Federation does not terminate his/her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4. The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not be deprived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r of the right to change it.
5. The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not be exiled out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handed over to a foreign state.
6.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encourage the stateless persons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to acquir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7. The fact that a person has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r that a person had USSR citizenship before shall be determined under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RSFSR or the USSR,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USSR effective as of the date of onset of the circumstances to which the person's having a specific citizenship is related.

Article 5.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following are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 a) the persons having citizenship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of the date when the present Federal Law enters into force;
- b) the persons who have acquired citizenship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compliance with the present Federal Law.

Article 7. The Granting of Defence and Protection to Russian Federation Citizens Staying Outside of the Russian Federation

1. The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who stay outside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granted the Russian Federation's defence and protection.
2. The governmental bod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diplomatic missions and consular institutions of the Russian Federation located outside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officials of the said missions and institutions shall assist in Russian Federation citizens' getting an opportunity to enjoy the full scope of all the right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federal constitutional laws, federal laws, generally accepted principles and norms of th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laws and rules of the states where Russian Federation citizens reside or stay, and also an opportunity for defending their rights and law-protected interests.

Article 8.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nd the Marriage

1. Marriage or divorce between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a person not having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shall not cause a change in the citizenship of these persons.
2. Change of citizenship by one of the spouses shall not cause a change in the citizenship of the other spouse.
3. Divorce shall not cause a change in the citizenship of the children borne in wedlock or adopted children.

Article 9. The Citizenship of Children

3.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f a child shall not be terminated if the child is going to become a stateless person as the result of such termination.

Chapter II. Acquisition of the Citizenship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12. Acquisi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by Virtue of the Birth

1. The child shall acquire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by virtue of the birth if as of the date of birth of the child:

- a) both his/her parents or his/her single parent have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irrespective of the child's place of birth);
- b) one of his/her parents has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nd the other parent **is a stateless person** or has been recognised as a person unaccounted for or if the whereabouts thereof are unknown (irrespective of the child's place of birth);
- c) one of his/her parents has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nd the other one is a foreign citizen, on the condition that the child has been born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if otherwise he/she is going to **become a stateless person**;
- d) both his/her parents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re foreign citizens or **stateless persons**, on the condition that the child has been born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states where his/her parents are citizens do not grant their citizenship thereto.

2. A child who stay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whose parents are unknown shall become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if the parents fail to appear within six month after the time the child was found.

Article 13. Admission into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n General Terms

1. The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18 and have dispositive capacity are entitled to file a naturalisation application asking for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n general terms on the condition that the said citizens and persons:

- a) have been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since the day when they received a residence permit and to the day when they file the naturalisation application asking for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for five years without a break, except for the cases specified in Part 2 of the present article. The duration of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deemed without a break if the person left the Russian Federation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in one year;
- b) undertake to observe the Constitu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legisl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 c) have a legal source of means of subsistence;
- d) have filed applications with the competent body of foreign state whereby they waived their other citizenship. No waiver of foreign citizenship is required if this is envisaged by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the present Federal Law or if the waiver of another citizenship is impossible due to reasons beyond the person's control;
- e) are in command of the Russian language; the procedure for assessing the level of knowledge of the Russian language shall be established by regulations on the procedure for considering issues concerning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2. The duration of stay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established by Item "a" of Part 1 of the present article is reduced to one year if any of the below grounds exist:

- a) the person is born in the territory of the RSFSR and was a USSR citizen in the past;
- b) the person has been in marriage with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at least for three years;
- c) the person who lacks dispositive capacity has a son or daughter who has dispositive capacity and who has reached the age of 18 and is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 d) the person has high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the person has a profession or qualification of interest for the Russian Federation;
- e) the person has been granted asylum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 f) the person has been recognised as a refugee in the manner established by a federal law.

3. A person having special merits before the Russian Federation may be admitted into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without the need for observing the conditions stipulated in Part 1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14. Admittance into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in a Simplified Manner

1. The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who have reached the age of 18 and who have dispositive capacity are entitled to file naturalisation applications asking for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in a simplified manner without observing the conditions set out in Item "a" of Part 1 of Article 13 of the present Federal Law if these citizens and persons:

a) have at least one parent lacking work capacity who is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b) had USSR citizenship, resided and reside in the states that had been incorporated in the USSR, have not become citizens of these states and as a result remain stateless persons.

2. A child and a person lacking dispositive capacity who are foreign citizens or stateless persons shall be admitted into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in the simplified manner without the need to observe the conditions set out in Part 1 of Article 13 of the present Federal Law:

a) a child whose one parent has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n the application of this parent, given the consent of the other parent to the child's acquiring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Such a consent need not be sought if the child resides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b) a child whose single parent has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n the parent's application;

c) a child or a person lacking dispositive capacity who is under tutorship or guardianship: on the application of the guardian or tutor being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Article 15. Reinstatement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The foreign citizens and **stateless persons** who have had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before may have their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reinstated in compliance with Part 1 of Article 13 of the present Federal Law. In such a case the duration of their stay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be cut to three years.

Article 16. Grounds for Rejecting a Naturalisation Application Asking for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nd an Application for Reinstatement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The naturalisation applications asking for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nd the application for reinstatement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filed by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rejected:

a) persons who advocate changing by force the fundamentals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who otherwise create a threat to the secu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b) persons who were evicted out of the Russian Federation under a federal law during the five-year term preceding the date of filing of the naturalisation application asking for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r the application for reinstatement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c) persons who have used forged documents or provided deliberately untrue information;

d) persons who undergo military service, service with the security bodies or law-enforcement bodies of a foreign state, except as otherwise envisaged by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e) persons whose previous conviction for the committal of felonious crimes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broad, such crimes being recognised as such under a federal law, has not been cleared or expunged;

f) persons who are criminally prosecuted by the competent bod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competent bodies of foreign states for crimes recognised as such under a federal law (before the court verdict or decision in the case);

g) persons who have been convicted and who serve a sentence in the form of imprisonment for actions subject to prosecution under a federal law (before the expiration of sentence term);

h) persons lacking a legal source of means of subsistence as of the date when they file the naturalisation application asking for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r during the five-year term of their uninterrupted stay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except as another term of stay i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is established by the present Federal Law for the purposes of filing a naturalisation application asking for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rticle 17. Choosing Citizenship in the Case of a Change in the State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When a change occurs in the State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under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persons residing in the territory which switched its state belonging shall have a right to choose citizenship (right of optation) in the manner and within the term established by a relevant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Chapter III. Termination of the Citizenship
of the Russian Federation

Article 20. Grounds for Denial of Surrender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No surrender of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shall be permitted if the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 a) has an undischarged obligation owing the Russian Federation under a federal law;
- b) has been held accountable in a criminal case as a defendant by the competent bod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or a court verdict that has become final and is subject to execution exists as concerning the citizen;
- c) has no other citizenship and guarantees of acquiring one.**

Article 21. Choosing Another Citizenship (Optation) in the Case of Change of the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When territorial transmutations occur as the result of a change of the State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under an international treaty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citizen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siding in the territory which has undergone the said transmutations shall be entitled to retain or change their citizenship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international treaty.

Chapter V. The Citizenship of Children in the Case of Change
in the Citizenship of the Parents, Tutors and Guardians.
The Citizenship of Persons Lacking Dispositive Capacity

Article 24. Changing the Citizenship of a Child in the Case of Acquisition or Termination of His/Her Parents' Citizenship

2. Child's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shall be terminated when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f both his/her parents or single parent is terminated on the condition that the child is not going to become a stateless person.

Article 25. The Citizenship of a Child in the Case of Acquisition or Termin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f One of His/Her Parents

3. If one of the parents having another citizenship acquires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nd the other parent is a stateless person their child may acquir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n the application of his/her parent acquiring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4. If one the parents who acquires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is a stateless person and the other parent has another citizenship their child may acquir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n the application of both parents.
5. If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f one of the parents is terminated and the other parent remains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their child shall retain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The child's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may be terminated simultaneously with the termin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f one of the parents if the other parent being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has granted his/her consent in writing, provided the child is not going to become a stateless person.

Article 26. The Citizenship of Children in the Case of Adoption

1. When he/she is adopted by foreign citizens or a foreign citizen, a child being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shall retain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Th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of a child adopted by foreign citizens or a foreign citizen may be generally terminated on the application of both adoptive parents or the single adoptive parent, provided the child is not going to become a stateless person.
2. A child adopted by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or by spouses being Russian Federation citizens or by spouses of which one is a Russian Federation citizen and the other a stateless person shall acquire Russian Federation citizenship as of the date of his/her adoption, irrespective of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on the application of the adoptive parent being a citizen of the Russian Federation.

(출처) <http://www.legislationline.org/Index.php?topic=0&subtopic=0&subsubtopic=0&intst=0&eu=0&country=34>



시민권의 발전과 한계

(Citizenship of the European Union)

김 용 찬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위원)



유럽연합 시민권 제기 배경

유럽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y)는 회원국 국민들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련된 사안보다는 시장이슈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개인들은 ‘시민들’ 이라기보다는 ‘노동자’ 라는 경제 행위자로 유럽공동체의 법규에서 간주됐다. 유럽공동체 시민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1974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제기되었으며, 이후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에 제출된 보고서들에서 유럽연합 시민권 추진의 당위와 제반 시민의 권리들에 대한 의견들이 표명되었다. 한편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the Single European Act)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주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이주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시민에 관한 정

1) Raymond Aron, "Is multinational citizenship possible?" *Social Research*, Vol. 41, No. 4, p. 653.

의는 개별 회원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정 국가들이 후진적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노동자들이 선진복지국가로 대규모 이주를-“사회적 관광”(social tourism)으로 지칭되는-의도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²⁾

유럽공동체는 공동체에 대한 유럽시민들이 가지는 귀속감과 시민들로부터의 정당성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탄생과 더불어 기존 유럽통합 운동이 내재하고 있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진정한 유럽통합을 위해서는 유럽정체성(European identity)의 형성을 통해 유럽시민들의 유럽연합에 대한 귀속감과 유럽연합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동의식 속에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Maastricht Treaty)³⁾의 체결을 기점으로 유럽연합 시민권의 제시와 다양한 문화정책 등이 도입됐다.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연합 시민권의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첫째 외국인과 달리 유럽연합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주와 거주 보장, 둘째 회원국 국민들의 지위향상, 셋째 유럽연합 시민권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의 참여를 통한 유럽연합의 “민주성 결핍”(democratic deficit)의 극복, 넷째 유럽연합 시민권을 통한 유럽통합 프로그램의 사회적 정당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럽정체성의 형성.⁴⁾ 유럽연합 시민권은 유럽통합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민주성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또한 유럽의 완전한 통합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유럽정체성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도입됐다.

유럽연합 시민권의 형성과 발전

유럽연합 시민권은 교차경계(cross-border)적 성격을 가진 그리스 시민권의 전통을 따르기 보다는 지역과 로마에 대한 이중의 충성심과 시민권을 인정했던 로마제국의 시민권 개념에 근접해있다. 로마제국의 시민권이 제국 내에서의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주와 교역을 허용하고 개별 지방에 대한 귀속감과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럽연합의 시민권도 개별국가의 시민권을 대신하기 보다는 보완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주와 교역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⁵⁾

2) David Dunkerley, Lesley Hodgson, Stanislaw Konopacki, Tony Spiby and Andrew Thomson (eds.), *Changing Europe: Identities, nations, and citizens* (London: Routledge, 2002), pp. 12-14.

3)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유럽연합을 구성하는 유럽공동체, 공동의교안보정책, 내부 및 사법 정책의 협력의 세 기둥을 제시했다. 유럽통합의 심도 깊은 발전을 위해 제기된 유로화와 유럽연합 시민권 등이 구체화되어 제기되었다.

4) David Dunkerley, Lesley Hodgson, Stanislaw Konopacki, Tony Spiby and Andrew Thomson (eds.), *op. cit.*, p. 15.

5) Andreas Follesdal, “Citizenship: European and Global,” Nigel Dower and John Williams (eds.), *Global Citizenship*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2), p. 71.



유럽연합 시민권의 도입은 유럽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주와 거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회원국가의 시민은 여행 혹은 거주 시에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다.

유럽연합 시민권은 유럽연합조약에 의해 구체화 되어 나타났지만 시민권에 관한 조항 중 자유로운 이주에 관한 내용은 보다 오랜 유

럽통합의 역사에 토대를 둔다. 1957년 로마조약(the Rome Treaty)은 “자본, 노동,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를 포함하는 노동시장 개방을 추진하고자 했다. 로마조약에서 사람의 이주는 노동력에 한정된 것으로, 즉 역내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과 피고용에 의한 노동의 이주에 국한되었다.

한편 1986년에 체결된 단일유럽의정서에서 유럽공동체는 국경 없는 공동체를 조성하고 역내국경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유럽회원국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 및 검색을 폐지할 것을 의도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당시 제기된 고용 및 사회보장 등과 관계없이 유럽연합 시민의 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주와 거주권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유럽연합조약에서의 유럽연합 시민권 도입에 영향을 미쳤다.⁶⁾

유럽공동체와는 별도로 유럽 개별국가들에 의해 1985년 체결된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조약체결국가 간에 국경에서의 검색행위의 점차적인 폐지와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표로 했다. 1990년에 체결된 쉥겐 2차조약을 통해 역내국경에서의 검색의 폐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안보 관련 법률의 적용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했다. 조약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규정과 난민문제에 대한 회원국의 공동규정을 마련했다. 쉥겐조약은 1995년부터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으며 조약가입국 7개국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었다. 2001년까지 15개 유럽 국가들이 조약의 회원국가가 됐으며 해당 국가들에서 조약 내용이 실행에 옮겨졌다. 1997년 유럽연합 이사회는 쉥겐조약을 암스테르담 조약에 편입시켰다. 구체적으로 비자, 난민, 이민, 그리고 자유로운 통행에 관련된 정책들과 경찰 및 사법협력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졌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쉥겐조약의 참여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규정이 적용되었으며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쉥겐조약국이기에 때문에 자유로운 통행지역으로 포함되었다.⁷⁾

쉥겐조약은 유럽에서의 이주 통제와 관련해 상반되는 영향을 미쳤다. 우선 ‘합법적’으로 조약국들에 입국하는 제3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의 도입과 망명 지

6) 이규영, “쉥겐조약과 유럽시민권”, 『유럽연구』 제17권(2003), 51쪽.

7) 이규영, 위의 글, 52-57쪽.

원(asylum application)을 받은 국가의 책임을 실체화했다. 반면 외국인의 역내 국가로의 입국은 더욱 제한적이 되었으며 조약국 내부에서의 통제도 더욱 강화되었다.⁸⁾ 실질적으로 쉥겐조약은 역외 국민의 난민 혹은 망명 신청, 고용을 위한 조약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막는 역할을 해왔다. 독일의 경우 1993년 쉥겐조약의 바탕 위에 사민당(SPD)과 기민련(CDU)의 합의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개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들을 경유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망명신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결국 1990년대 독일정부의 이주민 입국에 관한 통제 강화와 더불어 위의 조치를 통해 망명허용에 관한 규정이 보다 제한적으로 변화했다.⁹⁾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는 “유럽연합의 시민권”이라는 표제가 달린 새로운 Part II가 추가되었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연합 시민권이 두 번째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조약에 의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소유한 시민은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의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조약은 유럽시민에게 네 개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주와 거주권, 거주국에서의 지역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투표와 입후보의 권리, 제3국에서의 유럽연합 시민의 외교적 보호의 권리,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에 대한 청원과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호소의 권리를 제시했다.¹⁰⁾

암스테르담 조약(the Amsterdam Treaty)은 개별국가 시민권과 유럽연합 시민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유럽연합의 시민권은 국가의 시민권을 대체하지 않으며 보완한다”는 규정을 통해 유럽연합과 회원국 시민권의 관계를 표명했다.¹¹⁾ 유럽연합 시민권의 도입은 연합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주와 거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회원국가의 시민은 여행 혹은 거주 시에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다.¹²⁾ 이러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의 유럽연합과 민족국가 시민권과의 관계에 대한 천명은 유럽연합 시민권이 개별국가 시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현재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유럽연합 시민권 규정에 의한 개별국가 시민권에 대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공통된 인식의 기초를 바탕으로 위의 규정이 도출되었다.

8) Grete Brochmann, “Controlling Immigration in Europe,” Grete Brochmann and Tomas Hammar (eds.), *Mechanisms of Immigration Control: A Comparative Analysis of European Regulation Policies* (Oxford: Berg, 1999), pp. 309-310.

9) Eli Nathans, *The Politics of Citizenship in Germany: Ethnicity, Utility and Nationalism* (Oxford: Berg, 2004) p. 251.

10) Marco Martiniello, “The Development of European Union Citizenship,” Maurice Roche and Rik Van Berkel (eds.), *European Citizenship and Social Exclusion* (Aldershot: Ashgate, 1997), p. 36.

11)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덴마크의 국민투표 부결이 직접적으로 유럽연합 시민권과 개별국가 시민권의 관계를 규정하는데 기여했다. 시민권 관계의 표명은 유럽시민권과 관련해 개별 회원국가의 주권을 강화한 것이고 국가들의 연합으로서의 유럽공동체의 모델을 강조한 것이다. David Dunkerley, Lesley Hodgson, Stanislaw Konopacki, Tony Spiby and Andrew Thomson (eds.), *op. cit.*, p. 20.

12) Follesdal, *op. cit.*, p. 72.

유럽연합 시민권의 한계

유럽연합 시민권은 유럽연합 시민의 정치, 법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인 권리는 투표권과 입후보 권리를 포함하며 시민권 취득의 원칙을 통해 법적인 지위도 부여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시민의 시민·사회적 권리(civil and social right)는 직접적으로 유럽연합 시민권에서 다뤄지기 보다는 복지 혜택의 측면에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사회적 장”(the Social Chapter)에서 다뤄지고 있다. 유럽연합 시민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시민의 덕(civic-virtue) 혹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구체적인 의무들을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 의무를 수행할 기회에 대한 언급도 없다. 유럽연합 차원의 군복무도 없으며 세금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징적으로라도 유럽연합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유럽인”(good European)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¹³⁾

유럽연합 시민권은 국민국가의 시민권과 비교해볼 때 많은 제약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연합 시민은 오직 거주국가의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만 투표와 입후보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거주권과 관련해서도 재정과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만이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으며 실업 노동자들의 이주와 공공 서비스 분야의 진출은 극히 제한

국민국가 시민권과 유럽연합 시민권 비교¹⁴⁾

시 민 권	유럽연합 시민권
국가와 지역선거 투표권과 입후보 권리	지역과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투표권 및 입후보 권리(Art. 8B)
청원과 국민투표의 권리	청원과 옴부즈맨에 대한 호소의 권리(Art. 8D), 시민전체 투표에 관한 조항 부재
군복무 및 대안 서비스에 대한 의무	부재
영토 안에서의 이주와 거주 자유	역내에서의 이주와 거주 자유(Art. 8A)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고용의 권리	부재하며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중요

※ 주: Art.는 부록에 있는 조항을 의미.

13) Andreas Sobisch, "The European Union and European Citizenship," Ian Davies and Andreas Sobisch (eds.), *Developing European Citizens* (Sheffield: Sheffield Hallam University Press, 1997), pp. 85-86.

14) Elspeth Guild, "The Legal Framework of Citizenship of the European Union," David Cesarani and Mary Fulbrook (eds.), *Citizenship, Nationality and Migration in Europe* (London: Routledge, 1996), pp. 47-49.

된다.¹⁵⁾

유럽연합 시민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모두 유럽연합의 시민이 될 수 있지만 결국 회원국의 시민권은 개별국가가 결정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시민권의 획득은 절대적으로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시민권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은 속인주의(jus sanguinis)를 택하면서 엄격한 국적취득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프랑스는 보다 자유적인 속지주의(jus soli)의 원칙을 국적취득과 관련해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속지주의 원칙에서 1981년 국적법 개정 이후 속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⁶⁾ 이처럼 개별국가의 시민권 취득 관련 정책이 상이하기에 이주민들의 유럽연합 시민권 취득은 결국 유럽연합의 규제 조정에 의해 조정될 여지가 없으며, 개별국가의 시민권 획득에 의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유럽연합 시민권은 철저하게 개별 회원국의 시민권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주민들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시민권은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과 보호의 규정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형편이다. 비유럽 지역으로부터의 이주민들은 유럽국가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했음에도 유럽연합 시민권의 수혜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역내에서 유럽연합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주와 거주 보장, 외국인들의 실업과 저임금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통제는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¹⁷⁾

이주민 혹은 외국인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 시민권 강화의 노력은 외부에 대해 “유럽의 요새화”¹⁸⁾를 실현하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연합 시민권의 강화를 통해 유럽의 단결과 블록화는 이를 수 있겠지만 외부 혹은 유럽 내부에서조차도 철저히 분리된 배타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래의 통합을 위한 이념적 기반과는 상당한 괴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 시민권의 위기?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은 10개국의 추가 가입으로 25개 회원국을 가진 조직으

15) Martiniello, *op. cit.*, p. 39.

16) David Dunkerley, Lesley Hodgson, Stanislaw Konopacki, Tony Spiby and Andrew Thomson (eds.), *op. cit.*, pp. 17-18.

17) 김시홍, “유럽연합 시민권과 정체성의 사회적 차원”, 『유럽연구』 제18호(2003), 100-101쪽.

18) Michael Mann은 유럽통합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주변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특히 이주민 정책에서 유럽외부에 대한 제한과 통제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며 ‘Fortress Europe’의 건설은 유럽 내에서 동과 남을 서유럽과 분리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Michael Mann, “Nation-States in Europe and other continents: diversifying, developing, not dying,” John Hutchinson and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1* (London: Routledge, 2000), pp. 367-368.



유럽연합시민권은 개별국가 결정한다. 따라서 유럽연합 시민권의 획득은 절대적으로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시민권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 확대되었다.¹⁹⁾ 회원국 수의 증가로 유럽연합의 시민은 더욱 늘어나게 됐지만 유럽연합 시민권의 각 조항들은 실행에 있어 더욱 큰 난

관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주와 거주를 보장하고 있는 시민권 조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한 동유럽으로부터의 노동력의 대규모 이주와 거주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등의 서유럽국가들은 신생 회원국들의 노동자가 자국에서의 고용을 몇 년씩 유예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입국 노동자들의 이주와 거주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연합 시민권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주와 거주를 개별국가의 이해를 고려해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시민권은 도입과 실행 이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가입교섭 중에 있는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 시민권 조항들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극히 이질적인 터키의 가입은 유럽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 시민권의 발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수백 만의 터키인들이 기존 유럽연합 국가들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은 설사 서유럽국가들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을 통한 터키인들의 집단적인 이주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회원국들은 더 강도 높은 입국 및 고용제한 조치를 터키인들에게 가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사실상 유럽연합 시민권의 의도와 규정을 무력화시킬 여지도 큰 것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유럽헌법과 관련한 2005년 5월과 6월의 국민투표가 계속 부결된 것은 유럽통합 과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반세기 동안 유럽통합의 중요한 축이었던 프랑스에서의 유럽헌법의 부결은 유럽연합의 통합 수준을 드러낸 것이며 민족정체성을 초월하는 유럽정체성의 창출 가능성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웅변해준 것이다. 유럽헌법에 대한 개별국가 시민들의 반감에 비추어볼 때

19) 영국에 의해 주도되어 온 유럽연합의 확대는 유럽연합의 초민족적인 권위(supra-national authority)를 더욱 약화시키며 유럽통합 주창자들이 추구해온 유럽연방의 이상을 형해 시키고 있다. 또한 확대된 유럽연합은 결국 그 규모로 인해 자유적이며 민주적인 시민권의 발전을 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 Percy B. Lehning, "European Citizenship: A mirage?" Percy B. Lehning and Albert Weale (eds.), *Citizenship, democracy and justice in the new Europe* (London: Routledge, 1997), pp. 192-193.

유럽연합의 시민권이 아무리 회원국가의 시민권을 보완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시민들에게서 유럽연합 시민권에 대한 인식은 극히 회의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시민이 자연적으로 부여된 자신의 권리를 거부하는 형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서 조성될 가능성이 큰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이후 유럽연합 시민권이 단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새롭게 가입한 혹은 가입할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 이외에 기존 회원국들 내의 이주민 혹은 외국인 문제 또한 유럽연합 시민권의 취지와 그 시행에 있어 고려해야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쉥겐조약을 통해 회원국들은 외국인과 이주민의 입국에 대한 공동대응과 제한을 시행해 왔지만 이미 정착해 살고 있는 이주민과 외국인들을 유럽연합 시민권 내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떠한 정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현재 유럽에는 2000만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유럽국가들에 살고 있다. 영국의 파키스탄인, 독일의 터키인²⁰⁾, 프랑스의 북아프리카인들이 해당국가 무슬림들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파리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동은 이들 무슬림들이 대부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개별국가에 살고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차별이 내재화 되어 있으며 이들은 사실상 '이등시민'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개별국가에서 이등시민으로 인식되는 무슬림들이 특별한 규정이나 정책의 준비 없이 유럽연합 시민권과 문화정책 내에서 유럽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주권국가의 시민권을 대체하지 못하는 유럽연합 시민권이 이들 이등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한편 유럽연합 내의 외국인들은 영주권자이거나 혹은 단순 체류자에 관계없이 유럽연합 시민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이들 외국인의 존재는 급격히 증가해왔지만 유럽연합의 시민권은 아직도 폐쇄성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이들 제3의 국적을 소유한 역외시민권자를 포괄하는 유럽연합 시민권의 재확립은 현재 유럽통합의 수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유럽연합의 확대와 이주민 및 외국인 문제는 유럽연합 시민권의 발전과 시행에 큰 난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유럽연합 시민권의 발전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럽통합과 유럽연합의 확대과정에서 개별국가들의 주권이 재차 강조되고 확인되는 현시점에서 회의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 독일에는 2001년을 기준으로 약 300만의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200만 명 정도가 터키인들이다. 독일은 남유럽 국가들로부터 노동자를 수입하다가 터키와 유고슬라비아 등지의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외부노동자"(guestworker)를 받아들였다. 1973년 독일정부의 외부노동자의 유입 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터키인들은 가족 재통합 등의 방법을 통해 독일 내 거주민 숫자의 급증을 가져왔다. 정해조, "유럽시민권 형성에 있어서 민족성과 이질문화의 문제",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1호(2003), 189-190쪽.

〈부록〉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유럽연합 시민권 조항

CITIZENSHIP OF THE UNION

Article 8²¹⁾

1. Citizenship of the Union is hereby established.
Every person holding the nationality of a Member State shall be a citizen of the Union.
2. Citizens of the Union shall enjoy the rights conferred by this Treaty and shall be subject to the duties imposed thereby.

Article 8a

1. Every citizen of the Union shall have the right to move and reside free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s, subject to the limitations and conditions laid down in this Treaty and by the measures adopted to give it effect.
2. The Council may adopt provision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ave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reaty, the Council shall act unanimously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and after obtaining the as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Article 8b

1. Every citizen of the Union residing in a Member State of which he is not a national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to stand as a candidate at municipal elections in the Member State in which he resid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nationals of that State. This right shall be exercised subject to detailed arrangements to be adopted before 31 December 1994 by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and after consulting the European Parliament; these arrangements may provide for derogations where warranted by problems specific to a Member State.
2.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138(3) and to the provisions adopted for its implementation, every citizen of the Union residing in a Member State of which he is not a national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to stand as a candidate in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in the Member State in which he resid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nationals of

21)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Article 8에 다음의 문구가 추가되었다. "Citizenship of the Union shall complement and not replace national citizenship."

that State. This right shall be exercised subject to detailed arrangements to be adopted before 31 December 1993 by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and after consulting the European Parliament; these arrangements may provide for derogations where warranted by problems specific to a Member State.

Article 8c

Every citizen of the Union shall, in the territory of a third country in which the Member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is not represented, be entitled to protection by the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f any Member State, on the same conditions as the nationals of that State. Before 31 December 1993, Member States shall establish the necessary rules among themselves and start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required to secure this protection.

Article 8d

Every citizen of the Union shall have the right to petition the European Parlia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8d.

Every citizen of the Union may apply to the Ombudsma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8e.

Article 8e

The Commission shall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to the Council and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before 31 December 1993 and then every three years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Part. This report shall take account of the development of the Union.

On this basis,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Treaty, the Council, acting unanimously on a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and after consulting the European Parliament, may adopt provisions to strengthen or to add to the rights laid down in this Part, which it shall recommend to the Member States for adop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단일국적제와 그 변용의 확대

조정남 (고려대 교수)



이 글에서는 중국의 국적법의 내용을 살피고 이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쟁점현안들에 대해 개괄하려 한다. 중국은 1980년 국적법인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을 제정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비교적 일관성 있는 국적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중국 국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중국인들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는 점과 부모 양계 혈통주의의 견지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국적정책에서의 중국이 보이고 있는 단일국적제와 속인주의적 원칙은 최근의 다양한 국제환경의 변화가 중국과 중국인들의 세계에 많은 파급영향을 미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중국국적법의 내용을 조문별로 알아보고 이어 중국국적법의 쟁점현안과 중국의 해외화교들에 대한 국적정책을 차례로 알아보려 한다.

국적법 내용

통일적 국적 원칙

중국 국적법은 통일적 국적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나 이들 다민족집단들은 국적취득이나 국민으로서의 권리나 의무에서 평등하다는 이른바 평등적 국적권을 가진다. 즉 중국 내에 공존하고 있는 모든 민족 집단들은 그들의 민족적 차이와 구획에도 불구하고 국적에서는 '통일적 중화인민공화국국적'으로 통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적의 통일성에 대해 중국에서는 이는 중국이 聯邦制 國家가 아니라 單一制 國家이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개별 성원국의 존재를 상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민족집단들도 그들의 민족별 독자의 국적이 허용될 수 없으며 이들 모두가 통일적 중국국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국적법 제2조) 이렇듯 다양한 민족적 구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통일적 국적원칙은 다민족국가 중국에서의 궁극적인 목표인 '中華民族'으로의 민족 통합의 논리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현실적으로는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민족 집단에 대해 상당한 민족적 자율권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하나의 보다 큰 민족집단인 중화민족으로 뭉쳐내려는 의지는 결국 개별 민족집단에 대한 통일적 국적원칙의 견지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

중국국적제도는 이중국적(雙重國籍)을 허용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중국적은 특정인이 동시에 복수의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의당 관계국들 간에 국적을 둘러싼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제3조)는 논리로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중국적 금지에 대한 중국의 이런 입장에는 해외화교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현지 정착정책인 이른바 '落地生根' 정책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원시취득의 원칙

중국에서의 가장 정상적인 국적취득은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국적자 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부여되는 국적이며, 이렇게 중국인 부모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부여되는 국적취득방법을 '原始國籍' 이라고 칭한다. 원시국적제는 일반적으로 나뉘볼 수 있는 국적취득의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두 가지의 원칙을 혼합한 형태로, 이 원칙에 따르면, 부모 쌍방이나 그 일방이 외국인일 경우는,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중국영내에서 출생하더라도 그에게는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 (제4조) 중국에서는 국적형태를 원시국적(原始國籍)과 계유국적(繼有國籍)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시국적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 취득하는 국적을 말하는 것이며, 계유국적이란 출생이후 귀화나, 결혼 등의 친족관계의 변경, 이주 등으로 새롭게 얻게 되는 국적을 지칭한다. 그런데 특정 개인이 계유국적을 획득한 후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시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럴 경우 이른바 '쌍중국적' (雙重國籍) 즉 이중국적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중국적 취득은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보다는 개별 관계 국가 상호간의



중국국적제도는 이중국적 금지에 대한 중국의 이런 입장에는 해외화교들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현지정책정책인 이른바 '落地生根' 정책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법률적 상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며¹⁾, 해외출생 자녀에 대한 국적 부여에 있어서도 이 같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부모쌍방 혹은 일

방이 중국국민의 해외출생자녀에게는 중국국적이 부여된다. 그러나 자녀 출생 시 부모 쌍방이나 일방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있을 때는 그 자녀에게는 중국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5조)

따라서 중국에서는 해외출생 자녀의 국적취득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먼저는 속인주의의 원칙이다. 즉 부모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국적자인 해외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속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중국국적을 부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해외출생자의 국적부여에 있어서 적용되는 또한가지 원칙은 이중국적 배제의 원칙이다. 즉 해외에서 출생된 중국계 자녀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의 출생당시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외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이 자녀에게 중국국적을 부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국적자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국적을 부여치 않음으로써 중국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이중국적 불승인원칙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무국적자 자녀에 대한 속지주의 원칙

중국에 정주하고 있는 무국적이거나 국적불명 부모의 중국 내 출생 자녀에 대해서는 중국국적을 부여 한다. 부모가 무국적이거나 국적불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중국영내에 정주하고 있는 이상 중국 내에서 출생한 그들의 자녀의 국적취득에는 문제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공해상이나 외국영해 내를 항해중인 중국선박 안이나 외국영역을 비행하거나 착륙한 중국비행기에 승선한 상태로 출생한 자녀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의 적용으로 중국적을 부여한다. 이러한 무국적자나 국적불명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국적부여는 중국의 취하고 있는 국적부여의 한 가지 원칙인 속지주의원칙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제6조)

한편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인과 친족관계를 맺거나, 중국에 정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가진 경우 이들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전제하면 중국국적

1) 『香港商報』, 2004년11월03일자.

을 취득하는 귀화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귀화 신청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인의 친족이 된 자는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즉 부, 처, 모, 자, 여 혹은 동포 형제자매인 자로 이들의 근친중의 한 사람이 중국 국적 자일 때는 국적신청이 가능하다. 또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 중국가정에 입양되었을 때도 이들의 국적신청 가능하며, 또 중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남, 여) 또한 국적취득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중국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나 이 밖에 정당한 사유를 가진 자로 중국헌법의 준수와 자발적인 국적취득의 의사를 가진 사람은 국적취득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귀화자 이중국적 금지원칙

일단 중국국적 취득을 신청하여 귀화 결정이 이뤄져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외국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하다. 외국인이나 무국적자 국적취득 신청을 하여 이것이 승인되어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외국국적을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기서도 중국은 이중국적을 승인치 않은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8조)

따라서 외국에 정주하는 중국인으로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가 가져왔던 중국국적을 상실케 된다. 중국정부는 화교들의 거주국 국적취득을 일관되게 장려, 고무하면서 이들의 이중국적을 불찬성 해 왔다. 이는 중국 국적정책의 일관된 원칙이자, 이중국적문제를 둘러싼 개별국가간의 국적분쟁의 최소화는 물론, 해외화교들의 거주국에서의 착실한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도 유익한 정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국적선택을 통한 단일국적 정책은 어디까지나 개개인 각자의 독립적인 원칙으로 이러한 국적상실의 효력은 본인에 국한된 것으로, 그들 가족에게까지 이의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9조)

국적변경 '신청'의 원칙

중국국적자 중에서, 외국인의 친족이 되거나, 외국에 정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에 의해 중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제10조) 그러나 중국국적의 포기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아야 중국국적을 상실한다. 이 포기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행해야 하며, 이러한 포기신청에 대해서 주관기관의 비준이 필수적이며,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국적포기는 불가하다. (제11조) 국가공무원이나 현역 군인인 중국국적자는 국적포기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

는 국가공무원은 모든 국가기관 종사자,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법률기관종사 공무원 등을 말하며, 현역군인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근무 군인을 말한다. 이들 국가공무원과 현역군인은 ‘公職人員’으로 많은 국가적 기밀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국적을 포기하고 타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는 다대한 국익상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국적포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제12조)

과거 중국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또한 ‘신청’을 통해 다시 중국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적회복이 가능하려면 첫째, 과거에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던 자로 현재는 외국국적의 외국인일 것, 둘째, 현재는 반드시 외국인일 것, 셋째, 중국국적을 회복하였을 경우는 반드시 현재 보유중인 외국국적을 포기하여 이중국적자가 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제13조) 이렇듯 앞에서 본 중국국적의 취득, 포기, 회복은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9조의 경우는 제외, 이 경우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중국국적의 가입, 퇴출, 회복의 요구는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케 함으로써 기타 법률행위에 의한 자동취득, 상실 및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또, 국적의 가입, 포기, 회복신청은 반드시 신청인이 성인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들 행위에서의 만에 하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결과로 초래될 것을 미연에 예방하려 하고 있다. (제14조) 국적에 관한 사항의 변경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국 내에서는 시, 현 공안국이며, 외국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이나 영사기관으로 이를 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확보하려 했다. (제15조) 한편 국적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와 비준 또한 이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기 위해 이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에서 통일적으로 처리케 하고, 변경신청에 대한 증명서 또한 공안부에서 발행케 하고 있다. (제16조)²⁾

쟁점 현안

이중국적 문제

중국의 현행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雙重國籍)을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이러한 이중국적 불허원칙이 근래의 다양한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적절 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널리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

²⁾ <http://www.cnlawservice.com/chinese/tell/g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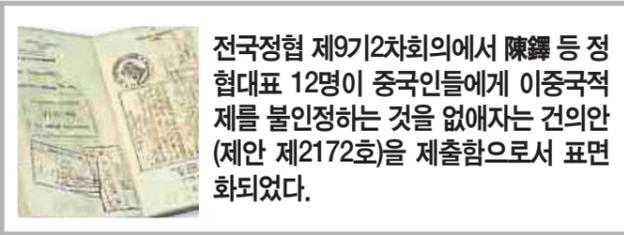
그 동안 중국은 앞에서 살핀 바대로 이중국적은 관계국들 간의 국적충돌을 야기 시킬 수 뿐 아니라³⁾ 해외 화교들의 보다 효과적인 현지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이 제도의 도입을 계속적으로 거부해 왔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이중국적 불허 방침은 세계화의 진척에 따라 근래 들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폐쇄적인 국적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중국적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의제기는 1999년에 열린 전국정협 제9기2차회의에서 陳鐸 등 정협대표 12명이 중국인들에게 이중국적제를 불인정하는 것을 없애자는 건의안(제안 제2172호)을 제출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중국은 그동안 이중국적 불허를 통해서 국가적 존엄과 외교업무, 교민업무, 국가안전보장의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그러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가기에는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래 들어 중국인들의 해외이주가 늘어나면서 해외거주 중국인들은 거주국에서의 제반 활동이나 생활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곳의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급속도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해외거주 중국인들의 증가와 이들의 거주국에서의 국적취득은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자를 양산하게 되나, 이들 이중국적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은 전통적인 거리를 두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과 그들의 조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상당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거주 중국인들과 조국인 중국과의 거리의 단축은 물론 이들의 바람직한 조국애와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도 기존의 이중국적제는 진향적으로 개정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이중국적제에 대한 건의에 대해 중국 공안부는 1999년6월25일의 답신을

3) 실제로 국적법은 국내법이기에 때문에, 이러한 국적법에 의해 규정된 국적귀속 문제는 실제로는 타국과의 사이에 많은 '국적충돌' 문제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국적충돌은 '적극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국적' 현상과 '소극충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무국적문제'로 이를 대별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중국적문제 만에 국한해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해외의 화교들의 경우, 그들은 국적 소속국에서는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이에 반해 거주국에서는 속지주의(출생지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을 경우, 이들의 거주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다. (거주국에서는 이를 인정할지 모르나, 중국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음) 북미와 유럽 등지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자녀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가족이 유학생활동을 마치고 중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이들(특히 그들의 자녀)은 대단히 어려운 국적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둘째, 동일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서, 이중국적현상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같은 혈통주의를 채택하는 A, B국의 남녀가 결혼할 경우,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자연스럽게 이중 국적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서로 다른 국적부여 원칙을 가진 두 나라의 남녀가 결혼할 경우, 그 자녀의 국적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셋째, 서로 다른 나라의 남녀가 결혼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 남자와 결혼하는 외국여자를 자국적에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자는 자연스럽게 원래의 소속국의 국적과 새롭게 시집간 국가 간의 이중 국적자가 되게 된다. 넷째, 외국에서 자녀를 입양했을 때 생기는 이중국적문제. 다섯째, 자발적으로 외국에 귀화했으나 원 국적상실을 원하지 않는 자.



통해, “‘국적법’이 20여 년 간 시행되어 오는 동안 이중국적 불인정의 원칙은 국적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을 했음

이 증명되고 있으며, 이 원칙은 당면한 국정과 국가의 근본이익에 부합됨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외국국적을 가진 중국인(華人)들의 결혼, 업무, 모국방문 등을 위한 중국의 출입국의 경우 이들의 거류, 여행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의 편의제공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국적제도의 보완의 필요성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당시 이중국적문제의 개선을 위한 건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 건의를 계기로 하여 해외거주 중국인들에 대한 이중국적 문제가 중국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⁵⁾

중국학자 曹思源은 국적이라는 것은 公民權의 전제로, 이는 모든 공민들이 가져야 할 제일의 권리로서 한 개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범죄일 수 없다고 주장, 이중국적제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보였다. 그는 외국에 나가 사는 중국인들은 조국의 국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인가의 여부는 당연히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현행 국적법은 외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거주국의 국적법을 취득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조국인 중국국적을 상실케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강제적으로 그들의 중국 국적을 박탈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이는 또한 해외 거주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은 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조국의 국적박탈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 또한 없다. 따라서 해외 중국인들에게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잘못된 국적법은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⁶⁾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중국적제에 대한 필요성은 캐나다,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중국인 사회에서도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⁷⁾ 이에 대한 개선의 요청은 이들에 의

4) 李安山, "화교화인국적문제쟁의", http://www.chinadaily.com.cn/gb/doc/2005-06/08/content_449642.htm (검색일: 2205/09/22)
 5) "把握人民的意願", 第2卷, (中國 新世界出版社, 2003年), pp.476-478
 6) 曹思源의 주된 입장은 "承雙重?籍, 容納海外華僑"으로 요약된다. www.chilicity.com, 2004年3月12日.
 7) 해외중국인 사회에서는 "중국정부는 용당 중국이민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이들에게도 중국국적을 보유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정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국해이며, 이는 불공정행위라고까지 주장한다. 矯海濤: "談雙重國籍 - 写在國共55周年之際", <http://creaders.net>, 2004年9月29日. 기타 국에서의 이중국적제 주장은 王輝耀, 『海歸時代』, (中國 中央編譯出版社, 2004) 및 "新西蘭僑胞陳宇呼求雙重國籍", 『國際先驅導報』, 2004年12月2日. <http://www.sina.com.cn> 2004年12月24日 등 참조.

해외 중국인 수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계 인구 총수는 3천4백 여만 명으로, 이들은 세계 160여개 국에 다양하게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지역별 분포는 아시아주에 2천6백7십여만명으로 전체 해외 중국계 인구의 78%가 모여 살고 있으며, 그 다음이 17%를 차지하고 있는 미주이고, 나머지는 유럽(2%), 대양주 (1.8%)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 화교 화인 인구 및 단체수

■ 인구 수는 천명 단위 / () 안은 화교 화인 단체수

연도	총계	아시아	미주	구주	대양주	아프리카
1993	37,144 (9,233)	31,752 (6,205)	3,976 (2,297)	869 (199)	432 (241)	115 (291)
1994	38,664 (9,255)	32,911 (6,210)	4,262 (2,310)	886 (201)	487 (243)	119 (291)
1995	39,042 (9,283)	32,984 (6,217)	4,542 (2,326)	899 (201)	498 (245)	119 (294)
1996	33,726 (9,294)	26,912 (6,217)	4,730 (2,336)	938 (203)	535 (244)	123 (294)
1997	33,726 (9,328)	27,071 (6,225)	5,020 (2,348)	945 (204)	564 (252)	126 (299)
1998	34,505 (9,342)	26,787 (6,231)	6,013 (2,352)	968 (204)	605 (253)	132 (302)

* 중화민국 각 대사관 조사 자료 종합
 * 1995년도 이전은 홍콩 인구를 포함, 1996년 이후는 홍콩 인구 불 포함
 <출처> 『華聲報』, (2000년5월6일자), <http://www.ocac.gov.tw>

이들을 신분 별로 보면 그 85%가 거주 국의 국적을 취득, 법적으로는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 버린 이른바 '華人' 들이며, 외국에서 장기간 생활은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중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華僑' 들은 겨우 3백만 명 정도이며, 또 전체의 3/4이 이민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해 중국의 당국자들에게도 계속 건의되어 왔다. 그러다가 全國政協 제10기 2차 회의에서 黃因慧가 다시 국국적법을 이중국적제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관계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제안 제0222호)를 제출하였다. 그는 이 건의서에서 기존의 중국국적법 중에서 제3, 5, 9조를 개정, 중국공민들이 중국국적을 보유하든가 포기하는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능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국적법 개정 제안에 대해 중국 공안부는 이를 '105' 입법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답신을 하고 관련부서에서의 검토를 시작했다.⁸⁾ 그런 검토 끝에 중국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적법의 개정이라는 직접적 방법은 회피하고 이에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적 중국인들에게 영구거주자격인 '녹색카드' (綠卡制度)를 교부하여 이들의 중국거주를 허용하는 편법으로 이에 대처하였다.⁹⁾

이렇듯 중국정부는 이중국적제 도입요청에 대한 대처태도는 대단히 신중하다. 2004년12월23일자 보도에 의하면 중국 국무원은 아직도 중국은 이중국적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조건은 성숙치 못했다고 판단, 이에 대신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외 중국인들의 모국에서의 장기거주와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영주카드(녹색카드)제도를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상황의 추이에 따라 이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과기부 부부장 劉燕華는 2004년12월29일 유학생들과의 한 좌담회 석상에서 중국이 앞으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인재를 흡수하기 위해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 현재 실행 중에 있는 해외우수인력 우대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¹⁰⁾ 비록 중국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외화교들에게 이중국적제를 부여하지 않아왔지만 세계적으로 봐도 약 70여 개 국이 이중국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등으로 지금은 국내외적 민족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패쇄적인 단일국적제는 전향적인 수정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렇듯 국적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민주당파인 中國民主建國會도 현행 국적법의 개정과 이를 통한 이중국적제 도입을 건의하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 또한 현재는 수많은 중국유학생들이 해외로 유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기술을 가진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에 취업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이들 해외중국인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이나 또는 모국으로의 자본과 기술이전 내지는 귀국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단일국적제는 더 이상 효과적인 국적제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¹¹⁾

화교들에 대한 국적정책

해외 화교정책

중국의 해외화교들에 대한 국적정책은 초기의 상당기간은 이중국적제를 채택하여

8) "全國政協十屆二次會議提案第0222號", "中華人民共和國公安部2004年5月10日公提字[2004]68號函復", 全國政協提案委員會, 『把握人民的意願』, (中國 新世界出版社, 2005年), pp.614-618.

9) 미화 총 200만 달러 이상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투자액은 구체적으로 '중국정부가 지정하는 투자산업목록에 포함된 산업에 50만 달러, 중국 서부지구와 국가보조개발중점지구에 50만 달러, 중국 중부지구에 100만 달러 이상 총 200달러 이상 투자필요) 李安山, "화교화인국적문제쟁의", http://www.chinadaily.com.cn/gb/doc/2005-06/08/content_449642.htm (검색일; 2005/09/22).

10) "國務院僑辦：實施雙重國籍案件還不成熟", <http://www.sina.com.cn> 2004年12月23日新貨雙. "中國官員：中國擬實行'雙重國籍'吸引海外優才", <http://www.sina.com.cn> 2004年12月29日貨夏經緯罔. 由于多個媒體採用"雙重國籍"的提法報道了這一消息，中國科技部不得不出面糾正這一說法。"劉副部長的原話是：目前國際上許多國家都非常重視對境外留學人員的吸引。例如印度採取了'雙重國籍'的方式，而我國是採取'永久居留權'作法也就是所謂的。" http://www.chinadaily.com.cn/gb/doc/2005-06/08/content_449642_4.htm

11) 『北京青年報』, 2005년3월13일자.

오다가 혁명 후의 신 중국 시기부터 지금과 같은 단일국적제로 변화되어 왔다.

화교들에 대한 국적정책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1909년 청대의 ‘大清國籍條例’는 부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공민 및 그 後裔들을 모두 ‘華僑’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적법에 입각한 화교의 개념과 지위를 분명히 했다. 그 후 1912년 중화민국정부는 ‘中華民國國籍法’을, 1924년1월에는 孫文이 광동 혁명정부 육해군 대원수 신분으로 반포한 ‘內政部僑務局保護僑民專章’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중화민국 인민을 ‘僑民’으로 규정하기도 했으며, 1929년에는 ‘中華民國國籍法’을 수정하면서 血統主義 원칙을 견지하고, 외국에 정주하고 있는 화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을 현재의 대만정부는 그대로 이어받아 이중국적제도를 허용해 오고 있다.¹²⁾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국적정책을 변경시켜, 종전까지의 이중국적을 버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자원적인 형식이나 거주국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의 이중국적을 허용치 않게 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해외 화교들의 대부분은 이미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고국의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케 되었다.

1955년 朱恩來 총리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단일국적 정책 원칙을 재차 천명함으로써 해외 화교들의 약 8할 가까이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의 국적을 포기한 이른바 ‘外籍華人’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80년9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이 정식으로 통과되었으며, 그 3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들의 이중국적을 불승인한다’고 못 박고, 제9조에서는 “해외거주 중국공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했다.¹³⁾

이렇듯 중국이 이중국적 정책을 버리고 해외 화교들에게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이들 해외화교 거주국들에 대한 외교적 고려와 또한 이들 해외화교들의 현지 정착의 가속화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수 천만 명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동남아 각국의 경우 이들 국가에서의 화교의 인구비중이 크고 이들의 그곳에서의 경제적 역할 또한 괄목한 상황에서, 그들 화교

12) 毛起雄, 林曉東 編著, 「中國僑務法律法規概述」(中國華僑出版社, 1994), p.4, 「香港商報」, 2004년11월03일자.

13) 혁명 후인 1957년12월에는 ‘中華人民共和國華僑事務委員會’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중국공민을 ‘華僑’로 칭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에는 홍콩과 마카오의 중국인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유학생, 관광객, 정부 파견 공무원, 국경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변경에 살고 있는 주민 등 일시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장기적으로 외국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華僑’로 파악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해외 중국인들에 대한 개념규정은 1984년 중국 國務院僑務辦公室이 행한 화교들에 대한 ‘신분해석’ 규정 확정 때였다. 여기서 ‘화교’는 반드시 해외에 살면서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민’이어야 하며, 이들은 또 반드시 외국에서 기반을 잡고 장기적으로 살아가는 정주자(定居)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중국의 해외 교포들에 대한 민족정책은 ‘화교’와 이와는 다른 현지 국적을 취득한 ‘華人’들을 분리하여 시행하기 시작했고, 또 이와는 달리 중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歸僑’들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설정하는 등 유형별 해외 동포 정책을 체계화했다고 볼 수 있다. 毛起雄, 林曉東 編著, 「中國僑務法律法規概述」(中國華僑出版社, 1994), p.3.

들의 모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공산당주도의 강경국가로 건설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이러한 중국이 해외교포사회와의 연계성이 강화하는 것은 그들 화교사회에 대한 거주국들의 경계심을 더욱 불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중국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해외 화교사회와의 연계성을 약화시킴으로서 오히려 거주국에서의 화교사회의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¹⁴⁾ 이와 연계된 또 한가지의 배경은 중국당국의 해외화교들에 대한 이른바 ‘落地生根’ 정책이다. 이는 해외화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落地)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生根) 그들을 위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고국을 위해서도 좋다는 논리다.

중국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해외교포들에 대한 정책은 시기별 차이를 두고 있으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現地化’와 ‘中華意識의 繼承’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은 해외 거주국에서 장기적으로 뿌리를 내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빨리 그곳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곳의 문화를 익혀, 그곳 현지의 떳떳한 국민으로써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연후에는 중국인 고유의 중화의식을 발양 시켜 중국계 상호간의 민족적 유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그들의 개인적인 안녕은 물론 모국에도 함양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거주국과 모국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교포정책을 지속 시켜왔다.

중국은 혁명 후인 1951년8월 中央華僑事務委員會에서 ‘關於華僑與東南亞革命運動關係呈毛主席和中央的報告’와 1952년1월 당 중앙의 ‘關於海外僑民工作的指示’ 등을 통하여 변혁기적 시대상황에서 해외 교포들이 거주국에서 장기적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 그들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이들의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현지화’와 ‘중화의식의 계승’ 등을 해외 화교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의 구체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들을 펼쳐나갔다.¹⁵⁾

중국이 해외 교포들의 거주국에서의 장기적인 생존과 발전을 위한 현지화 정책으로는 ‘단일 국적’ 정책과 거주국에서의 ‘정치활동 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강조해 왔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1909년 청조의 ‘국적법’ 이래 상당기간 ‘父系血統主義’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중국계도 상당 기간동안 의당 중국적이 유지되어 왔다.¹⁶⁾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화교들의 이중 국적 문제가 그들의 현지 정착과 발전을 위해

14) 『香港商報』, 2004년11월03일자.

15) 위의 책, pp.265-350.

16) 중국혁명 후 해외 화교 중에서 ‘이중 국적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컨대 태국의 경우 350만 화교인구 중에서 이중 국적자는 230만여명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들을 단일 국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했다. 50년대 초부터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 화교들의 이중 국적제 시정을 위해서 노력했다.

당시 중국정부는 화교들의 이중 국적제는 본인들의 항구적인 발전이나 또 거주 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라고 보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해외 화교의 85% 이상이 거주 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현지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1980년 國務院僑務辦公室¹⁷⁾도 ‘對外的華人工作方針政策的請示報告’를 제출, 중국의 화인들에 대한 정책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여기서는 먼저 해외 화인들에 대한 정책은 이들이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이들에 대한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들이 비록 일반 외국인들과는 달리 대부분이 중국적인 풍습 습관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중국 국내에 가족이나 친척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는 있기는 하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거주국의 공민이고 앞으로 그곳에서 계속하여 생활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들에게 해야 할 일은 그들이 거주국의 떳떳한 국민으로 자립하여 그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외 중국계들에 대한 현지화를 독려하기도 했다.¹⁸⁾

또한 해외 교포들에 대한 현지화정책은 1980년9월10일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 실시된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에서는 법적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그 중심적 내용은 단일 국적제가 바로 그것이다. ‘국적법’ 제3조에서는 ‘중화인민 공화국은 중국 공민들의 雙重國籍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중 국적제에 대한 반대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국적법을 통하여 중국 정부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던 이중 국적 반대의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해외 화교들의 자발적인 거주 국 국적 취득을 독려한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해외 교포들의 단일국적제로의 이행이 궁극적인 면에서 화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이며, 이는 또한 중국과 해외 교포들의 거주 국과의 발전과 상호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이다.¹⁹⁾

17) ‘國務院僑務辦公室’(僑辦)은 중국혁명 후인 1949년10월 교포문제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최초로 설치되었던 中國人民政府 華僑事務委員會의 후속기관이다. 1954년 中華人民共和國 華僑事務委員로 개칭,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광둥, 복건, 광서성 등에 華僑事務委員會가, 상해, 운남, 천진, 산둥, 강소, 절강, 허북, 강서 등에 僑務處가 설치 운영되었다. 그러나 문혁이 시작되자 이들 기구들은 활동을 중단, 그후 폐지되었다가 1978년1월 이를 계승하여 신설된 기구가 바로 ‘國務院華僑事務辦公室’(僑辦)이다. ‘僑辦’은 티벳을 제외하고, 29개의 일급 행정구, 그리고 그 하부기구가 1,300여의 현급 행정구에 설치되었다.

19) 위의 책, p.315.



1970년대 후반의 개혁개방기에 접어들어 귀국 화교들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이른바 ‘落實政策’으로 정책방향을 바꿔가기 시작했다.

귀국화교(歸僑) 정책

중국의 새로운 민족 환경에 대응한 귀국 화교(歸僑)들에 대한 정책

은 이를 한마디로 ‘落實政策’으로 말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귀교 정책을 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이들에 대한 수용과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²⁰⁾

50-60년대에 걸쳐 중국정부는 귀교들과 귀권들을 ‘地主分子’, ‘資產階級分子’ 등으로 매도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다. 그들이 가진 해외와의 연관성을 과장, 특수혐의 분자로 취급하는가 하면, 특하면 정치범으로 몰거나, 공직에서 배제하기까지 했다. 문화대혁명시기 이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의 정도는 한층 더했다. ‘외국 특무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이들을 당적이나 공직에서 추방하는가 하면, 강제적으로 노동개조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공산당에 입당하는 것, 군대에 가는 것, 대학에 진학하는 것, 인민대의원대회 대의원이 되는 것, 정협위원이 되는 등의 모든 것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제반 권리가 철저히 제한되었다.

이들에게는 이밖에도 국외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서신 왕래, 해외 가족 상봉, 결혼의 자유마저 제한되었으며, 중국 내에서의 가옥 소유권, 점유권, 사용, 처분권 등의 합법적인 재산 권익 또한 침범 당했다. 이들의 직접적인 국내 투자나, 각종 기업 자금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문혁 시기에는 이들의 사유재산이 몰수되어 국가 소유가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의 개혁개방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에서는 귀국 화교들에 대한 이 같은 지난날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고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이른바 ‘落實政策’으로 정책방향을 바꿔가기 시작했다.²¹⁾

중국은 1978년12월의 全國僑務工作會議 제2차 全國歸僑代表大會에서 중국으로 귀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화교 즉 ‘귀교’들에 대한 정책으로 ‘一視同仁, 不得歧視, 根據特点, 適當照顧’의 이른바 ‘16字原則’을 채택 실시하게 된다.²²⁾ ‘一視同仁, 不得歧視’ 원칙은 귀교, 귀권은 떳떳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한 구성원으로써, 이들은 국내의 다른 일반적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법률 및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중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져 결코 차별되거나 무시되지 않으며, 또한

19) 「中國僑務法律法規概論」, pp.132-133.

20) 위의 책, pp.121-136.

22) 위의 책, pp.121-123.

23) 위의 책, pp. 118-120.

의무에 있어서도 귀교와 귀권들은 다른 중국인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根據特点, 適當照顧’의 원칙은 이들 귀교, 귀권들은 다른 국내 일반 중국인들과는 다소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들은 그들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연히 외국 가족들과의 교류나 내왕 등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빈번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적당한 고려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하튼 개혁 개방기의 중국의 귀교, 교권들에 대한 ‘16자 원칙’은 이를 통해서 귀국 화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또 이들을 사회주의 건설 대열로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³⁾

그리고 1990년9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는 ‘中華人民共和國歸僑僑眷權益保護法’이 제정되고, 다음해 91년1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명문화되었다.²⁴⁾ 전문 22개조로 된 이 법은 제1조에서 법률 제정의 목적을 ‘귀교, 교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제2조에서는 華僑, 歸僑, 僑眷의 정의를 공식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화교’라는 것은 국외에 정주하는 중국 공민이라는 것이며, ‘귀교’라는 것은 모국으로 귀국하여 정주하고 있는 화교이며, ‘교권’이란 화교, 귀교의 국내에 있는 친척, 즉 화교, 귀교들의 배우자, 부모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손, 및 화교, 귀교와 장기간에 걸쳐 부양관계에 있는 그 밖의 친족을 말한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중국에서 법률에 의해서, 화교, 귀교, 교권의 정의가 공식화 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이는 중국 화교정책의 대상별 차별성을 구체화한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또 귀교와 교권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국가는 그들에 대해서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과 관계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귀교들에 대한 주거, 직장 등의 보장(제4조), 이들에 대한 인민대표대회 의석의 특별 배당(현재는 35명) 등의 보호책이 포함되어 있다.(제5조) 이밖에도 귀교와 교권들에 대한 사단 설립의 권리(제6조), 농장이나 입업장의 설치와 그 경영의 원조(제7조), 이들의 자본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지와 법적인 보호(제8조), 그리고 이들의 공익사업(교량, 도로, 노인 홈, 유치원 등의 건설) 경영에 대한 지방정부 지지 및 법적 보호, 세제 면에서의 우대(제9조), 가옥 사유의 보호(제10조), 귀교 자녀 및 화교 자녀들의

23) 위의 책, pp.119-121.

24) 하위법인 ‘歸僑歸眷權益保護法實施辦法’과 ‘省一級“歸僑歸眷權益保護法”實施辦法’ 등도 각각 제정 실시되었다.

중국 국내에서의 진학, 취직 배려(제11조), 화교로부터 송금된 돈의 보호(제12조), 유산 상속의 보장(제13조), 국외의 친지들과의 왕래, 통신의 보장(제14조), 친척 방문을 위한 출국 보장(제16조), 국외에서의 정주 보장(제17조), 유학의 보장(제18조), 국외에서의 권익 보장(제19조), 합법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관계기관,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제20조)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고 있다.²⁵⁾

귀교들의 권익보호와 이들의 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역과 도시 단위에서도 활발한데, 그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예의 하나가 최근 북경시가 해외 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귀국하여 창업할 것을 유도키 위해 제정 공포한 ‘北京市鼓勵留學人員來京創業工作若干規定’이다.²⁶⁾ 이 규정에서는 호적 관리상의 우대정책을 특별히 설정, 유학생들의 입출국의 자유를 보장함을 물론, 이들에게는 출국전의 호적지가 어디이든 이를 불문하고 북경에서 창업하는 것을 환영하며, 이들의 북경 거주기간 또한 자유로이 선택케 하고 있다. 또한 유학생들이 북경으로 돌아와서 직접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형태를 취하든, 아니면 간접투자의 방식을 취하든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유학생들의 해외에서의 경력과 학력 및 전문지식의 수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며, 또 개별 기업단위에 초빙된 경우의 보수는 그들이 구체적인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며, 또 이들이 북경에 와서 기술 개발이나 이와 관련된 영업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할 뿐 아니라, 또 이들이 과학기술구역 내에서 창업했을 경우 사업 기간 내에 취득한 수입 중에서 합법적으로 납세한 후의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자유로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까지 하고 있다.²⁷⁾ 북경시는 현재 외국에서 유학 중에 있는 유학생 30여만 명 중에서 그 80%가 중국에 돌아와서 창업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 중의 60%는 그 창업대상지를 북경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파악,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귀국 독려책을 통하여 이들의 북경에서의 효과적인 창업과 기술력의 발현을 통한 북경, 내지는 중국의 산업발전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이러한 일련의 귀교들을 위한 편의제공과 더불어 더욱 구체적으로 단일국적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의 중국 출입국과 중국 내에서의 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이 보다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 해외화교들이나 귀교들에 대해서 당장 중국국적법을 개정하여 대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현재 홍콩과 마카오 주민들에게 발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回鄉證’

25) 「中國僑務法律法規概論」, 제5장.

26) 「華聲報」, 2000년5월12일.

27) 이밖에도 북경시는 구체적으로 북경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려는 유학생들을 장려하기 위해 ‘북경시유학인원창업장’ 제도등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 <http://huashengnews.com/htm/news/qqhr.htm>



제도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외적 화인들에게 홍콩적인 방법을 차용하여 중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국적 화인들에게 '중국공민(해외)여권' (中國公民(海外) 护照)을 발급하여 이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제의 한바도 있다.²⁸⁾

그러나 더욱 본격적인 것은 이들 중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위에서 거론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적의 중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거주 자격인 '녹색카드' (綠卡)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國務院 비준을 거쳐 2004년8월15

일, 공안부장 周永康과 외교부장 李肇星이 '外國人在中國永久居留審批管理辦法' 을 정식으로 서명 발표함으로써 외국인 영주 거류증인 '녹색카드' 제도가 정식으로 발효 되면서 해외의 화교들을 포함한 영주외국인들에 국내거주에서의 제한이 대폭적으로 없어지고 각종 편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우선 영주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는 중국거주의 기한 제한이 철폐되었고, 출입국도 별도의 입국사증을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도 없이 이 녹색카드의 지참으로 자유로운 입출입이 보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주거주증을 받은 외국인은 중국에서의 그들의 거주나 주택은 물론 취업에서의 제한 또한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내국인들과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중국에서의 영주거주와 활동이 보장된 녹색카드제도는 그 부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 카드의 신청대상자로는 크게 4가지 부류를 들고 있는데 첫째,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과 사회발전을 크게 기여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고위간부, 둘째, 중국에 거액을 투자한 외국인, 셋째, 중국에 대해서 다대한 공헌을 했거나 국가가 특별히 필요한 외국인, 넷째는 부부결합이나 부모의 양육을 받는 미성년자, 친척들의 도움을 받는 노인들이 그들이다. 위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녹색카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를 접수한 공안기관은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되며,

²⁸⁾<http://www.cnwnc.com/20041103/ca1245850.htm>

녹색카드는 유효기간을 두 종류로 나눠 발급(5년, 10년)하며, 5년 유효카드는 미성년자에, 10년 유효 카드는 성인에게 발급된다.²⁹⁾

맺는 말

탈냉전적 세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세계화의 확산은 인적교류의 대폭적인 증가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과거에 없던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인적교류의 확산은 개별국가의 국적제도에 새로운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중국에 오랫동안 견지되어 오던 단일국적제 또한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확산에 따른 국내외적인 인적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직까지 원칙적인 수준에서는 기존의 단일국적제를 중심으로 한 원시국적제를 본격적으로 손질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운영과정에서는 변화된 내외환경을 상당부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과거에 없던 귀화제도의 확대, 조건부 이중국적제 허용 범위의 확대를 비롯하여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화교를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한 장기거주중인 '녹색카드' 제를 발급하는 등으로 착실하게 이중국적제에 근접한 정책적인 접근에 인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한적인 국적제도의 개방조치로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많은 전문학자들이나, 관계단체 또는 해외의 현지 화교사회는 중국정부가 더 이상 과거의 폐쇄적인 단일국적제를 폐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중국동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중국적제를 전면 실시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같은 국적정책에 대한 명분과 실제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가 향후 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치적 현안의 하나로 점점 강력하게 부상되고 있다.

29) 2003년 중국에 출입한 외국인 수는 2,200여만, 장기거주 외국인은 23만 여명. 『珠江時報』, 2004.08.21자.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国籍法

(1980年9月10日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通过，1980年9月10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第八号令公布实施)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取得、丧失和恢复，皆适用本法。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是统一的多民族的国家，各民族的人都具有中国国籍。

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不承认中国公民具有双重国籍。

第四条 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本人出生在中国，具有中国国籍。

第五条 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本人出生在国外，具有中国国籍；但父母一方为中国公民为并定居在国外，本人出生时即具有外国国籍的，不具有中国国籍。

第六条 父母无国籍或国籍不明，定居在中国，本人出生在中国，具有中国国籍。

第七条 外国人或无国籍人，愿意遵守中国宪法和法律，并具有下列条件之一的，可以经申请批准加入中国国籍：

- 1、中国人的近亲属；
- 2、定居在中国的；
- 3、有其它正当理由的。

第八条 申请加入中国国籍获得批准的，即取得中国国籍；被批准加入中国国籍的，不得再保留外国国籍。

第九条 定居外国的中国公民，自愿加入或取得外国国籍的，即自动丧失中国国籍。

第十条 中国公民具有下列条件之一的，可以经申请批准退出中国国籍：

- 1、外国人的近亲属；
- 2、定居在外国的；
- 3、有其它正当理由的。

第十一条 申请退出中国国籍获得批准的，即丧失中国国籍。

第十二条 国家工作人员和现役军人，不得退出中国国籍。

第十三条 曾有过中国国籍的外国人，具有正当理由，可以申请恢复中国国籍；被批准恢复中国国籍的，不得再保留外国国籍。

第十四条 中国国籍的取得、丧失和恢复，除第九条规定的以外，必须办理申请手续。未满十八周岁的人，可由其父母或其他法定代理人代为办理申请。

第十五条 受理国籍申请的机关，在国内为当地市、县公安局，在国外为中国外交代表机关和领事机关。

第十六条 加入、退出和恢复中国国籍的申请，由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审批。经批准的，由公安部发给证书。

第十七条 本法公布前，已经取得中国国籍的或已经丧失中国国籍的，继续有效。

第十八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

(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八次会议修正)

2000年10月23日至31日

第一条 为了保护归侨、侨眷的合法的权利和利益，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归侨是指回国定居的华侨。华侨是指定居在国外的中国公民。侨眷是指华侨、归侨在国内的眷属。本法所称侨眷包括：华侨、归侨的配偶，父母，子女及其配偶，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以及同华侨、归侨有长期扶养关系的其他亲属。

第三条 归侨、侨眷享有宪法和法律规定的公民的权利，并履行宪法和法律规定的公民的义务，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歧视。国家根据实际情况和归侨、侨眷的特点，给予适当照顾，具体办法由国务院或者国务院有关主管部门规定。

第四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及其负责侨务工作的机构，组织协调有关部门做好保护归侨、侨眷的合法权益的工作。

第五条 国家对回国定居的华侨给予安置。

第六条 全国人民代表大会和归侨人数较多地区的地方人民代表大会应当有适当名额的归侨代表。

第七条 归侨、侨眷有权依法申请成立社会团体，进行适合归侨、侨眷需要的合法的社会活动。归侨、侨眷依法成立的社会团体的财产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犯。

第八条 中华全国归国华侨联合会和地方归国华侨联合会代表归侨、侨眷的利益，依法维护归侨、侨眷的合法权益。

第九条 国家对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给予扶持，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其合法使用的土地，不得侵犯其合法权益。在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所在的地方，可以根据需要合理设置学校和医疗保健机构，国家在人员、设备、经费等方面给予扶助。

第十条 国家依法维护归侨、侨眷职工的社会保障权益。用人单位及归侨、侨眷职工应当依法参加当地的社会保险，缴纳社会保险费用。对丧失劳动能力又无经济来源或者生活确有困难的归侨、侨眷，当地人民政府应当给予救济。

第十一条 国家鼓励和引导归侨、侨眷依法投资兴办产业，特别是兴办高新技术企业，各级人民政府应当给予支持，其合法权益受法律保护。

第十二条 归侨、侨眷在国内兴办公益事业，各级人民政府应当给予支持，其合法权益受法律保护。归侨、侨眷境外亲友捐赠的物资用于国内公益事业的，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减征或者免征关税和进口环节的增值税。

第十三条 国家依法保护归侨、侨眷在国内私有房屋的所有权。依法征用、拆迁归侨、侨眷私有房屋的，建设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合理补偿和妥善安置。

第十四条 各级人民政府应当对归侨、侨眷就业给予照顾，提供必要的指导和服务。归侨学生、归侨子女和华侨在国内的子女升学，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照顾。

第十五条 国家保护归侨、侨眷的侨汇收入。

第十六条 归侨、侨眷有权接受境外亲友的遗赠或者赠与。归侨、侨眷继承境外遗产的权益受法律保护。归侨、侨眷有权处分其在境外的财产。

第十七条 归侨、侨眷与境外亲友的往来和通讯受法律保护。

第十八条 归侨、侨眷申请出境，有关主管部门应当在规定期限内办理手续。归侨、侨眷确因境外直系亲属病危、死亡或者限期处理境外财产等特殊情况急需出境的，有关主管部门应当根据申请人提供的有效证明优先办理手续。

第十九条 国家保障归侨、侨眷出境探亲的权利。归侨、侨眷职工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出境探亲的待遇。

第二十条 归侨、侨眷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出境定居，经批准出境定居的，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损害其合法权益。离休、退休、退职的归侨、侨眷职工出境定居的，其离休金、退休金、退职金、养老金照发。

第二十一条 归侨、侨眷申请自费出境学习、讲学的，或者因经商出境的，其所在单位和有关部门应当提供便利。

第二十二条 国家对归侨、侨眷在境外的正当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国际惯例，给予保护。

第二十三条 归侨、侨眷合法权益受到侵害时，被侵害人有权要求有关主管部门依法处理，或者向人民法院提起诉讼。归国华侨联合会应当给予支持和帮助。

第二十四条 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或者滥用职权，致使归侨、侨眷合法权益受到损害的，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应当责令改正或者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五条 任何组织或者个人侵害归侨、侨眷的合法权益，造成归侨、侨眷财产损失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六条 违反本法第九条第一款规定，非法占用安置归侨的农场、林场合法使用的土地，有关主管部门应当责令退还；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二十七条 违反本法第十三条规定，非法侵占归侨、侨眷在国内私有房屋的，有关主管部门应当责令退还；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二十八条 违反本法第二十条第二款规定，停发、扣发、侵占或者挪用出境定居的归侨、侨眷的离休金、退休金、退职金、养老金的，有关单位或者有关主管部门应当责令补发，并依法给予赔偿；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九条 国务院根据本法制定实施办法。省、自治区、直辖市的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可以根据本法和国务院的实施办法，制定实施办法。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10号）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已经2004年6月4日国务院第53次常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4年7月1日起施行。

总理 温家宝

二〇〇四年六月二十三日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归侨、侨眷的身份，由其常住户口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侨务工作的机构根据本人申请审核认定。

与华侨、归侨有长期扶养关系的亲属申请认定侨眷身份的，应当提供由公证机构出具的扶养证明。

第三条 华侨、归侨去世后或者华侨身份改变后，其国内眷属原依法认定的侨眷身份不变。

依法与华侨、归侨及其子女解除婚姻关系，或者与华侨、归侨解除扶养关系的，其原依法认定的侨眷身份丧失。

第四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重视和加强归侨、侨眷合法权益保护工作。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侨务工作的机构应当组织协调有关部门做好保护归侨、侨眷合法权益的工作，并组织开展本行政区域内归侨、侨眷权益保护的法律法规执行情况的监督、检查。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归侨、侨眷合法权益的保护工作。

第五条 华侨要求回国定居的，按照国家有关出入境管理的规定核发回国定居证明。

第六条 地方人民政府和有关部门对回国定居的华侨，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安置。

第七条 中华全国归国华侨联合会以及地方归国华侨联合会按照其章程开展活动，维护归侨、侨眷的合法权益。

归侨、侨眷有权依法申请成立其他社会团体，进行适合归侨、侨眷需要的合法的社会活动。

归侨、侨眷社会团体的合法权益以及按照章程进行的合法活动，受法律保护；其依法拥有的财产，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损害。

第八条 各级人民政府核拨给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的专项经费应当专款专用，任何组织和个人不得挪用、截留或者私分。

地方人民政府应当对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给予扶持。

第九条 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合法使用的土地、山林、滩涂、水面等资源，企业依法享有使用权，其拥有的生产资料、经营的作物、生产的产品，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损害；国家依法征收或者征用安置归侨的农场、林场的土地的，依法给予补偿。

第十条 在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所在的地方设置的学校、医疗保健机构，应当纳入地方人民政府的教育、卫生规划，统一管理。

第十一条 国家依法维护归侨、侨眷的社会保障权益。用人单位和归侨、侨眷应当依法参加当地的社会保险，缴纳社会保险费。参加社会保险的归侨、侨眷依法享受社会保险待遇。

地方人民政府对生活确有困难的归侨、侨眷，应当给予救济，并对其生产、就业给予扶持；依法保障丧失劳动能力又无经济来源的归侨、侨眷的基本生活。

第十二条 归侨、侨眷依法投资开发荒山、荒地、滩涂，或者从事农业、林业、牧业、渔业生产，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给予支持。

第十三条 归侨、侨眷在国内兴办公益事业，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给予支持，其合法权益受法律保护。

归侨、侨眷境外亲友捐赠的物资用于国内公益事业的，依法减征或者免征关税和进口环节的增值税。

归侨、侨眷及其境外亲友在境内投资的企业捐赠的财产用于公益事业的，依法享受所得税优惠。

归侨、侨眷境外亲友向境内捐赠财产的，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侨务工作的机构可以协助办理有关入境手续，为捐赠人实施捐赠项目提供帮助，并依法对捐赠财产的使用与管理进行监督。

第十四条 国家依法保护归侨、侨眷在国内私有房屋的所有权。归侨、侨眷对其私有房屋，依法享有占有、使用、收益和处分的权利，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犯。

第十五条 租赁归侨、侨眷的私有房屋，须由出租人和承租人签订租赁合同，并到房屋所在地的房产管理部门登记备案。租赁合同终止时，承租人应当将房屋退还出租人。

第十六条 依法拆迁归侨、侨眷私有房屋的，拆迁人应当按照国家有关房屋拆迁管理的规定给予货币补偿或者实行房屋产权调换。按照政府规定的租金标准出租的归侨、侨眷的私有房屋被拆迁的，补偿安置的办法由国务院建设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规定。

第十七条 华侨子女回国就读实施义务教育的学校，应当视同当地居民子女办理入学手续；归侨学生、归侨子女和华侨在国内的子女报考国家举办的非义务教育的学校，教育等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结合本地区实际情况给予照顾。

第十八条 侨汇是归侨、侨眷的合法收入，其所有权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延迟支付、强行借贷或者非法冻结、没收。

第十九条 归侨、侨眷需要赴境外处分财产或者接受遗产、遗赠、赠与的，有关部门和我国驻外国的外交（领事）机构或者外交部授权的其他驻外机构，可以根据归侨、侨眷的请求提供必要的协助。

第二十条 归侨、侨眷的通信自由和通信秘密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非法开拆、隐匿、毁弃或者盗窃归侨、侨眷的邮件。归侨、侨眷的给据邮件丢失、损毁、内件短少的，邮政部门应当依法赔偿。

第二十一条 归侨、侨眷申请出境的，有关主管部门应当在规定的期限内依法办理手续。

归侨、侨眷因境外直系亲属病危、死亡或者处理境外财产等特殊情况急需出境的，有关主管部门应当根据申请人提供的有效证明优先办理。

第二十二条 归侨、侨眷按照国家有关探亲规定享受出境探亲待遇。

第二十三条 按照国家规定退休（离休）的归侨、侨眷获准出境定居的，按照国家规定享受的退休（离休）待遇不变。其养老金可以委托他人领取，但需每年向原工作单位或者负责支付养老金的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由我国驻其所在国的外交（领事）机构或者所在国公证机构出具的本人生存证明文件。

归侨、侨眷退休（离休）后出境定居又回国就医的，按照当地有关规定享受相应的医疗待遇。

不符合国家规定退休条件的归侨、侨眷职工获准出境定居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辞职、解聘、终止劳动关系手续，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一次性离职费及相关待遇，已经参加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的，由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国家有关规定一次性结清应归属其本人的费用，并终止其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关系。

归侨、侨眷获准出境定居，出境前依法参加前款规定以外的其他社会保险的，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相应的社会保险待遇。

第二十四条 归侨、侨眷在获得前往国家（地区）的入境签证前，所在工作单位或者学校不得因其申请出境而对其免职、辞退、解除劳动关系、停发工资或者责令退学，并且不得收取保证金、抵押金。

归侨、侨眷按照国家有关探亲规定获准出境探亲的，在批准的假期内，其工作、租住的公房应当保留。

第二十五条 归侨、侨眷出境探亲或者定居的，按照规定可以兑换外汇；出境定居的，其领取的社会保险金、住房公积金可以按照规定兑换外汇汇出或者携带出境。

第二十六条 我国驻外国的外交（领事）机构根据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国际惯例，保护归侨、侨眷在境外的合法权益。

归侨、侨眷在境外有养老金、抚恤金等需要领取的，我国驻外国的外交（领事）机构可以根据其请求提供必要的协助。

第二十七条 归侨、侨眷的合法权益受到侵害的，有权要求有关主管部门依法处理，或者向人民法院起诉。对有经济困难的归侨、侨眷，当地法律援助机构应当依法为其提供法律援助。各级归国华

侨联台会应当给予支持和帮助。

第二十八条 经办侨务专项经费的机构、人员，违反本办法规定，挪用、截留、私分侨务专项经费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被挪用、截留、私分的侨务专项经费，由其主管部门责令追回。

第二十九条 国家机关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致使归侨、侨眷合法权益受到损害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条 本办法自2004年7月1日起施行。1993年7月19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归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同时废止。

中华人民共和国台湾同胞投资保护法

一九九四年三月五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通过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二十号）一九九四年三月五日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第一条 为了保护和鼓励台湾同胞投资，促进海峡两岸的经济发展，制定本法。

第二条 台湾同胞投资适用本法；本法未规定的，国家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对台湾同胞投资有规定的，依照该规定执行。

本法所称台湾同胞投资是指台湾地区的公司、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作为投资者在其他省、自治区和直辖市投资。

第三条 国家依法保护台湾同胞投资者的投资、投资收益和其他合法权益。

台湾同胞投资必须遵守国家的法律、法规。

第四条 国家对台湾同胞投资者的投资不实行国有化和征收；在特殊情况下，根据社会公共利益的需要，对台湾同胞投资者的投资可以依照法律程序实行征收，并给予相应的补偿。

第五条 台湾同胞投资者投资的财产、工业产权、投资收益和其他合法权益，可以依法转让和继承。

第六条 台湾同胞投资者可以用可自由兑换货币、机器设备或者其他实物、工业产权、非专利技术等技术作为投资。

台湾同胞投资者可以用投资获得的收益进行再投资。

第七条 台湾同胞投资，可以举办合资经营企业、合作经营企业和全部资本由台湾同胞投资者投资的企业（以下统称台湾同胞投资企业），也可以采用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投资形式。

举办台湾同胞投资企业，应当符合国家的产业政策，有利于国民经济的发展。

第八条 设立台湾同胞投资企业，应当向国务院规定的部门或者国务院规定的地方人民政府提出申请，接到申请的审批机关应当自接到全部申请文件之日起四十五日内决定批准或者不批准。

设立台湾同胞投资企业的申请经批准后，申请人应当自接到批准证书之日起三十日内，依法向企业登记机关登记注册，领取营业执照。

第九条 台湾同胞投资企业依照法律、行政法规和经审批机关批准的公司章程进行经营管理

活动, 其经营管理的自主权不受干涉。

第十条 在台湾同胞投资企业集中的地区, 可以依法成立台湾同胞投资企业协会, 其合法权益受法律保护。

第十一条 台湾同胞投资者依法获得的投资收益、其他合法收入和清算后的资金, 可以依法汇回台湾或者汇往境外。

第十二条 台湾同胞投资者可以委托亲友作为其投资的代理人。

第十三条 台湾同胞投资企业依照国务院关于鼓励台湾同胞投资的有关规定, 享受优惠待遇。

第十四条 台湾同胞投资者与其他省、自治区和直辖市的公司、企业、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之间发生的与投资有关的争议, 当事人可以通过协商或者调解解决。

当事人不愿协商、调解的, 或者经协商、调解不成的, 可以依据合同中的仲裁条款或者事后达成的书面仲裁协议, 提交仲裁机构仲裁。

当事人未在合同中订立仲裁条款, 事后又未达成书面仲裁协议的, 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十五条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기제를 통해 규명한 현대의 정치현상

현대정치의 이념구조

■ 주요 목차

- 현대의 정치이념
- 소련의 정치이념
- 중국의 정치이념
- 개도국의 정치이념

조정남 저 / 값 15,000원

교양사회





배타적 국적정책 재검토 확산

고모다 마유미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들어가며

세계화 시대의 도래는 일본의 외국인 사회를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었다. 전체 인구에 1.5% 정도에 불과한 외국인 사회지만 일본으로 하여금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제고를 불가피하게 만든 시대적 배경이 존재하는 것만은 명확하다.

일본의 외국인 정책을 고찰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서 이해해 두어야 되는 것이 국적 문제라 할 수 있다. 국적은 '일본인' 과 '외국인' 을 나누는 판단기준임과 동시에 사회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일본의 국적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일본 국적정책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일본 국적정책의 특징으로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은 '혈통주의' 적 입장에서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엄격한 의미의 국적 제도(국적법) 이외에도 이와 연관된 귀화제도, 재일외국인 정책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적법과 귀화제도, 그리고 재일외국인을 관리하는 입국관리법을 중

심으로 일본의 국적정책의 특징을 분석하고 최근의 추이와 변화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일본 국적법의 특징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일본 헌법학에서는 ‘국적’이란 ‘정식 국민 자격’을 말하며 국민이란 ‘일본국적을 보유하는 자’를 의미한다.¹⁾ 즉 일본에 있어 국적은 일본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인 동시에 법적지위를 결정하는 자격이며 일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적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적 취득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출생과 동시에 취득하는 방법과 출생 후에 취득하는 방법이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원칙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혈통주의와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생지주의(生地主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은 혈통주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등의 유럽국가들과 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혈통주의에 속한다. 한편 생지주의는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브라질, 칠레, 페루와 같은 이민국가들이 많다.²⁾

1950년에 제정된 국적법은 전전의 부계 혈통주의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국적 계승의 근거를 父의 혈통에서 찾는 것이다. 따라서 父가 일본인의 경우 그 아이도 일본국적을 취득하지만 母만이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가 부계 혈통주의를 유지해 온 이유는 이중국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계 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있었던 것도 혈통주의를 유지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파생하는 문제는 일본인이 아닌 父의 본국이 생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였다. 생지주의만을 채용하고 있는 국가는 본국 외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무국적 아이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주일 미군기지가 집중된 오키나와(沖繩)에서는 미국인 父와 일본인 母 사이에 태어난 많

1) 近藤敦, 『外國人の人権と市民権』(東京: 明石書店, 2001), p. 21.

2) 혈통주의 국가도 예외적으로 생지주의를 채용하거나 생지주의 국가도 혈통주의를 부분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은 혈통주의와 생지주의 양쪽을 병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奥田安弘, 『家族と国籍: 國際化の進むなかで』(東京: 有斐閣, 2003), p. 13.

구(舊)국적법 (1950년)	개정 국적법 (1984년)
제1조 아이는 다음 경우에 일본국 민으로 한다. 1. 출생시에 아버지가 일본국민일 때. 2. 출생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시에 일본국민이었을 때. 3. 아버지가 불명하거나 혹은 국적이 없 는 경우, 아버지가 일본국민일 때. 4. 일본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불명 확할 때, 또는 국적이 없을 때	제2조 아이는 다음 경우에 일본국 민으로 한다. 1. 출생시에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일본국민 일 때. 2. 출생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사망시에 일본국민이었을 때. 3. 일본에서 태어나고 부모가 불명 확할 때, 또는 국적이 없을 때.

은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었다.³⁾

1970년대 이후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국적법을 개정하는 국가
 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많아지면서 세계적 추세가 되었는데도 일본은 한동안 부계 혈
 통주의를 유지하였다.

일본이 국적법 개정에 착수한 계기가 된 것은 1979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
 차별철폐협약 때문이었다. “자녀의 국적취득에 있어 부모에게 동등한 권리 부여”(제9
 조)를 규정하고 있는 이 협약에 일본도 1980년에 서명하게 됨으로써 국적법 개정의 필
 요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4년에 국적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1985
 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에서는 부모 양계주의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부모 양계주의로
 의 전환은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환영받았다.

국적유일 원칙의 채택

일본 국적법의 특징으로는 ‘혈통주의 원칙’ 과 함께 ‘국적유일 원칙’ 을 들 수 있다.
 국적유일 원칙은 이중국적의 원칙적인 방지를 의미한다. 부모 양계주의 채택은 필연
 적으로 이중국적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수반한다. 일본정부는 84년 국적법 개정에서
 부모 양계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이중국적자의 증가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
 해 국적선택 제도와 국적유보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적선택 제도(국적법 제14-16조)는 이중국적자는 이중국적이 된 때가 20세 이전
 일 때는 22세까지, 20세 후일 때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일본국적을 선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장관으로부터 최고(催告)를 받으며 최

³⁾ 위의 책,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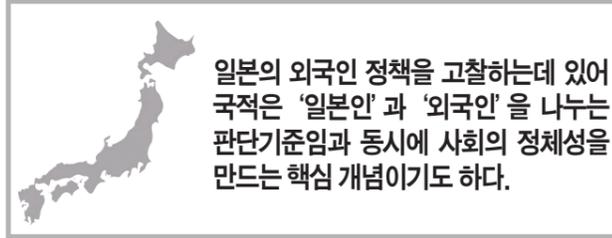
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일본국적은 상실된다.

국적선택 제도가 도
입된 국적법 개정 전까
지는 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일본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중국적자들에게 대하여 일본정부는 그들의 이중국적 유지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어머니가 일본인 경우에도 일본국적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일본정부는 이중국적자 증대를 우려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 양계주의 도입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국적자들에게 대하여 국적선택을 의무화시킴으로써 이중국적자의 증가를 방지하려 하였다.

한편 국적유보 제도(국적법 제12조)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국적과 일본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출생 3개월 이내에 일본국적을 유보하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이다. 부모 양계주의에 의해 외국국적과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와 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자에 국적을 부여하는 생지주의에 의해 2개 이상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모두에 해당한다.

이 국적유보 제도는 84년 개정법에서 신설된 것이 아니라 舊국적법의 국적유보 제도를 확장시킨 것이다. 원래 舊국적법 하에서는 생지주의를 취하는 외국에서 태어나



개정 국적법: 국적 선택제도 (일부 발췌)

제14조 제1항: 외국국적을 가진 일본국민은 외국 및 일본국적을 가지게 된 때가 20세 전인 경우에는 22세에 이르기까지, 그 때가 20세를 넘은 경우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한 쪽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제2항: 일본의 국적 선택은 외국의 국적을 이탈하는 것 외에는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5조 제1항: 외국국적을 가지는 일본국민이 제14조 제1항에 정하는 기한 내에 일본국적의 선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국적 선택을 해야 함을 최고(催告)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선택 선언을 한 일본국민은 외국국적의 이탈에 노력해야 한다.

제2항: 법무대신은 선택 선언을 한 일본국민이자 외국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자가 자기 희망으로 그 외국의 공무원직에 취임한 경우, 그 취임이 일본국적을 선택한 취지에 현저하게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는 그 자에 대하여 일본국적 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외국에서 태어난 자는 부모가 모두 일본인인 경우에도 국적유보를 하지 않으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1920년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일계(日系)이민 배척운동의 대응책으로서 미국과 일본의 이중국적자의 일본국적 상실을 유도하기 위해 1924년에 도입된 제도였다. 즉 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日系이민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다.⁴⁾ 그것이 1984년 개정법에서는 이중국적자 증가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활용된 것이다.

국적유보 제도의 확대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일본국민의 발생을 방지하고 일본국민의 범위를 호적부상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 그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 그렇게 볼 때, 국적유보 제도는 舊국적법 하에서의 '대외' 적인 성격에서 국적법 개정으로 '국내용' 적인 성격으로 바뀌면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본정부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이중국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대하여 병역의무·충성의무·의무교육 등의 충돌과 외교보호권의 충돌, 참정권 문제 등,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의 상실, 이중국적자와 단일국적자와의 불공평성, 출입국관리상의 문제, 중혼의 발생 등이 지적된다.⁶⁾

이러한 견해는 국가 입장 즉 공익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관점은 배제되어 있다. 세계화 시대에 도래에 의하여 인적 교류 확대와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국경 없는 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국가중심의 제도와 사고방식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유럽의 경우, 1997년에 유럽국적조약이 제정되어 이중국적 방지에서 이중국적 용인으로 전환되었다. 일본에서도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이중국적 용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당분간 국적유일 원칙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런데 일본도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의 억제, 방지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한편,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중국적을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국적의 선택은 외국국적의 포기 선언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외국국적의 이탈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외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중국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페루의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일본 국적법의 맹점을 시사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11월, 페루정부로부터 일본에 망명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인도를 요구받는데 대하여 일본정부는 그의 일본국적을 인정하면서 인도를 거부하

4) 김경득, "일본국적법 및 호적법개정과 재일한국인," 『가족법연구』, 제2호, 1988, p. 79.

5) 위의 글, p. 79.

6) 岡村美保子, "重国籍 我が國の法制と各國の動向," 『レファレンス』, 2003년 11월, p. 58.

개정 국적법: 국적 유보제도

제12조 제1항: 출생에 의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일본국민이자 국외에서 태어난 자는 호적법(1947년법률224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국적을 유보하는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그 출생시점에서 일본국적을 잃게 된다.

였다. 즉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이중국적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이는 정치적 문제를 다분히 담고 있으며 특별한 케이스로 보이지만 일본정부가 국적법 제도상의 애매모호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선택 제도가 이중국적의 방지·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1984년 국적법 개정에 대한 법무위원회 국회답변에서 “일본이 여태까지 번영해 온 하나의 요소로서 일본인으로서의 단일 민족의식”이 있으며 따라서 “혈통주의를 국적법의 기초로 두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⁷⁾ 이 발언이 보여주고 있듯이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법은 일본의 단일 민족의식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일 민족의식, 배외주의를 바탕으로 성립된 일본의 국적제도는 특히 현재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많은 문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민족관에 입각한 귀화제도

일본의 귀화제도

국적 취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출생에 의한 취득과 출생 후의 취득이다. 귀화 제도는 출생 후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즉 그것은 자기 의사에 의해 일본국민이 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가 보장된다.

현행 국적법에서 귀화는 ‘재량귀화’이며 법무국과 법무장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일본에서 귀화는 미국과 프랑스와 같이 법정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국적이 부여된다는 ‘계약 이 아니라 개인의 신청에 대한 국가의 재량 범위에서 여부가 결정되는 ‘단독행위’이다.⁸⁾ 다시 말해 일본의 귀화는 ‘귀복(歸伏)’, ‘귀순(歸順)’의 뜻이며 일본국민으로서 적합한 자의 선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⁹⁾ 그것은 결국 외국인에게

7) 第101回 衆議院法務委員會 10號 會議錄, 1984年 4月 17日, <http://kokkai.ndl.go.jp>(검색일: 2005년 6월 25일).

는 귀화의 권리가 부여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귀화 행정은 형식적으로 보면 법무성 민사국의 국적처리 사무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입국관리 행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정책의 일환이며 일본국가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투사되고 있다.¹⁰⁾

또 귀화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것 역시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적법은 외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최저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① 거주요건: 계속해서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한다.
- ② 능력요건: 20세 이상이며 법적인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 ③ 소행요건: 소행이 선량해야 한다. 범죄경력, 법 위반, 납세 수행 등이 심사 대상이 된다.
- ④ 독립생계 요건: 독립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이 있어야 한다.
- ⑤ 국적상실 요건: 귀화에 의해 일본국적 취득과 동시에 기존 국적은 상실된다.
- ⑥ 치안요건: 일본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도모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 또는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모든 귀화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자의 요건에 따라 필요요건이 완화되거나 면제된다. <표-1>은 법정요건이 다른 외국인의 귀화 필요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 일본인과 일본사회에 혈연관계, 가족관계, 지연(地緣)관계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귀화 필요요건이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위와 같은 관계가 없는 일반 외국인은 여섯 가지의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여성과 결혼한 남성 외국인, 일본국민이던 자의 아이, 일본에서 태어난 자 등은 거주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일본국민의 아이, 일본국민의 양자, 일본국적 상실자 등은 거주요건 단축에다가 독립생계요건도 면제된다. 그리고 일본남성과 결혼한 여성 외국인의 경우는 거주요건, 능력요건, 독립생계요건 세 가지가 면제된다. 즉 이상과 같은 것은 일본의 현행 귀화제도가 일본국적자와의 혈연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분명 제시하고 있다.

8) もりき和美, 『國籍のありか: ポータレス時代の人権とは』(東京: 明石書房, 1995), p. 259.

9) 위의 책.

10) 金英達, 『在日朝鮮人の歸化』(東京: 明石書店, 1990), p. 4.

〈표-1〉 일본국적법의 귀화 필요요건

	일반 외국인	일본국민의 夫	일본국민이던 자의 자	일본 출생자	일본출생자 2세	일본국민의 妻	일본국민의 子	일본국민의 양자	일본국적 상실자
① 거주요건	○	△	△	△	△	×	△	△	△
② 능력요건	○	○	○	○	○	×	×	×	×
③ 소행요건	○	○	○	○	○	○	○	○	○
④ 독립생계요건	○	○	○	○	○	×	×	×	×
⑤ 국적상실요건	○	○	○	○	○	○	○	○	○
⑥ 치안요건	○	○	○	○	○	○	○	○	○

주: ○는 요건 필요, △는 요건 완화, ×는 요건 불필요.
출처: 吉岡増雄, 山本冬彦, 金英達, 『在日外國人と日本社會: 多民族社會と國籍の問題』
(東京: 社會評論社, 1990), p. 30.

귀화제도와 재일한국인

전후 일본으로 귀화한 자 가운데 한국·조선 출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전후 일본의 귀화제도의 대상은 주로 재일한국인이었으며 일본의 귀화정책은 곧 재일한국인 정책이라 할 만하다.

패전 당시 일본에 체류하는 한인은 약 200만명에 이르렀으나 패전 직후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고 약 60만명의 한인들이 일본에 남게 되었다. 1946년 11월 GHQ 발령으로 재일한국인들은 일본국적은 보유하지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지되고 47년부터는 외국인등록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등 실질적으로 외국인으로 대우받아 거주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그리고 1952년 4월 30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구식민지출신 재일한국인은 일방적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즉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¹¹⁾ 이와 동시에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귀화를 제시한 것이었다.

외국인이 된 재일한국인들은 출입국관리령이 적용되었고 지문날인(指紋押捺)과 등록증 상시휴대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전상병자(戰傷病者) 유족등 원호법(援護法)'에는 국적·호적 조항이 설치됨으로써 국가보상 대상자에서도 배제되었다.

11) 일본에서 조선인에 대한 국적선택이 검토된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패전 직후 중의원 선거법 개정 위원회에서 내무장관은 "내지에 체류하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예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남조선군정청에 근무한 바그너도 "사정이 허용하면 조선인은 일본 또는 조선의 어느 쪽 시민권을 취득하는가 하는 명확한 선택권이 부여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田中宏, 『在日コリアン權利宣言』(東京: 岩波書店, 2002), p. 5.

〈표-2〉 재일한인의 귀화 추이

(단위: 명)

년도	1952	1953	1954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귀화자수	232	1,326	2,435	2,434	3,763	3,438	4,646	6,323	5,987	5,040	5,216	10,327	9,842	11,031

* 출처: 大森和人, “國籍事務の趨勢と今後の動向,” 『民事月報』, 1969年, 10月號, p. 86-87
; 日本法務省入國管理局(<http://www.moj.go.jp>).

52년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재일한인은 53만 5천명에 이르는 한편 이 때부터 귀화를 선택하는 재일한인도 매년 증가하였다.(〈표-2〉 참조)

그러나 구신민지 출신 재일한인이 귀화를 하는데 있어 아무 우대조치도 마련되지 않아 다른 일반 외국인과 같은 수속을 밟아야 하였으며¹²⁾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¹³⁾ 특히 일본의 입관·귀화 행정은 외국인에 의한 일본국적 취득을 극히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귀화자가 ‘일본인’ 과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¹⁴⁾

이러한 일본의 귀화제도가 재일한인에게 요구한 것은 “일본국적 취득=일본민족화” 였다. 일본정부가 오랫동안 귀화 요망자들에 대하여 ‘일본식 이름’ 을 강요해 왔다는 사실도 일본 귀화제도가 요구하는 ‘일본민족화’ 를 보여주고 있다. 법적인 강요는 아니지만 1984년까지는 귀화신청서에 “(귀화후의) 이름은 일본인으로서 어울리는 것으로 해 달라” 고 명기될 만큼¹⁵⁾ 행정 차원에서 귀화 요망자들에 대한 ‘일본식 이름’ 강요가 이루어져 왔다. 형식적으로 행정상의 강요가 없어진 현재도 차별을 두려워하는 귀화자들이 ‘일본식 이름’ 으로 개명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심적인 강요’ 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귀화를 통하여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된 재일한인은 일본국민으로서 많은 법적 효과를 얻게 된다. 우선 국내거주권이 영구적으로 확보된다. 재일한인의 생활을 위협하는 입관법 체제에서 해방된다. 또한 참정권을 획득하고 정치적 활동도 자유로워진다. 또한 국적조항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사회보장이 완전 적용된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효과에 가하여 일본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압력에서 해방된다.

귀화자로 구성되는 ‘성화회(成和會)’ 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귀화

12) 귀화요건이 완화되는 ‘일본국민이던 자’ 및 ‘일본국적을 상실한 자’ 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田中宏, 앞의 책, p. 5.

13) 그런데 일본정부가 재일한인에 대한 귀화 장려정책은 전개한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일기본조약이 맺어진 65년 이후 3년 동안 일본정부가 『관보(官報)』를 통하여 귀화 수속안내 등 귀화 선전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귀화 허가율이 비교적 높았던 사실을 감안하여도 적어도 한일조약 체결 직후에는 일본정부는 재일한인에 대하여 귀화를 장려했다고 볼 수 있다. 金英達, 『在日朝鮮人の歸化』(東京: 明石書店, 1990), pp. 18-19.

14) 柏崎千佳子, “國籍のあり方: 文化的多様性の承認に向けて,” 近藤敦, 『外國人の法的地位と人権擁護』(東京: 明石書店, 2002), p. 203.

15) 田中宏, 앞의 책, p. 23.

동기는 ‘자손을 위해서’로 43%에 이르렀다. 그 다음으로 사업상 이유 30.7%, 사회적 이유(차별, 불이익) 21.9%, 정치적 이유



일본의 귀화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혈통주의 국적법에 이념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도 단일민족관을 기본으로 하는 배제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3.6%이었다.¹⁶⁾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일본에서 앞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귀화를 선택한다는 제일한인 사회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제일한인의 귀화자수가 늘어나는 한편, 일본으로의 ‘동화’가 필요조건인 일본 귀화제도에 대하여 많은 제일한인들이 저항을 보였으며 귀화를 회피하였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일본의 귀화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법의 이념을 많은 부분에서 반영하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도 단일민족관을 기본으로 하는 배제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입관법과 국적문제

일계인(日系人) 우대 정책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해마다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2004년말 현재 외국인등록자수는 197만 3,747명에 이르며 일본총인구 1억 2,768만 7,000명의 1.55%를 차지한다.¹⁷⁾ 총 186개국의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며 외국인 증가와 함께 국적도 보다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에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국내 활동을 관리하고 있는 법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이다. 제일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입관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 입관법은 1951년에 제정되었고¹⁸⁾ 1980년 후반부터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라 1989년(1990년 6월 시행)에 크게 개정되었다.

일본은 국내 노동력만으로 고도 경제성장기를 달성하였으며 오랫동안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5년의 ‘프라자 합의’에 따른 급속한 엔고를 배경

16) 岡寛植, 『在日外国人と現状と未来』(東京: 白帝社, 1994), p. 273.

17) 法務省入國管理局, 『平成16年末現在における外国人登録者統計について』, 2005년 6월, <http://www.moj.go.jp/PRESS/050617-1/050617-1-1.pdf>(검색일: 2005년 11월 17일).

18) 당시는 ‘출입국관리령’으로서 제정되었고 1982년에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을 받아 난민인정제도를 포함시키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 제정되었다.

으로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시작되었다. 그 후 80년대 후반부터 노동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증대되면서 일본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1989년 입관법 개정의 요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모든 외국인을 취업 가능·불가로 분류하는 것, 둘째, 그 아래 체류자격을 정비·확대시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춘다는 것, 셋째, 단순노동자는 배제시키고 불법취업은 엄격히 단속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수입을 결정한 일본정부는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정비하는데 있어 특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 그것이 일계인(日系人)의 적극적 수입이었다. 즉 일본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데 혈통관계가 있는데 대하여 특별한 우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부분이 단기체류 자격으로만 입국이 가능하였던 日系人은 입관법 개정으로 3세까지에 한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정주자'¹⁹⁾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日系人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이 가능케 되었다. 사실상 日系人에 한하여 노동자로서의 체류가 합법화된 것이다.

그 결과 日系人 노동자는 급증하게 되었다. 원래 1980년대 초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한 日系人의 입국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1990년 개정 입관법이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日系人 노동자의 유입이 시작한 것이다.

<표-3>은 입관법 개정 이후 日系人 노동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주자' 또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체류자격으로 취업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日系人 노동자는 입관법이 개정된 1990년에는 71,803명이었으나 그 2년 후에는 두 배 이상인 16만 5,935명으로 급증하였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거듭하였으며 2001년에는 최대의 23만 9,744명을 기록하였다.

이들 日系人의 대부분은 남미 출신이다. <표-4>는 브라질과 페루 출신자가 입관법 개정 이후 급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日系人인 것으로 추정된다. 브라질 출신은 2004년 현재 28만 6,557명, 전체 대비 14.5%에 이르며 한국·조선,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日系人들이 많이 모여 사는 아이치현(愛知縣)에서는 입관법 개정 전인 1988년에는 브라질 출신 日系人은 248명에 불과하였으나 개정 후인 1991년에는 24,296명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현재 63,335명, 전체 대비 35.2%에 이르며 가장 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²⁰⁾

이 처럼 90년대부터의 남미 日系人 급증은 일본정부에 의한 日系人 우대 조치가

19) '정주자'는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한 체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표-3〉 입관법 개정 이후 日系人 노동자 추이 (단위: 명)

년 도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日系人 노동자 등	71,803	165,935	174,904	181,480	193,748	211,169	234,126	220,844	220,458	233,187	239,744	233,897

* 주: 1991년에는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
출처: 厚生労働省(<http://www.mhlw.go.jp/>).

〈표-4〉 남미 출신 외국인 등록자수 추이 (단위: 명)

년 도	1989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브라질	14,528 (1.5%)	56,429 (5.2%)	147,803 (11.5%)	159,619 (11.8%)	201,795 (14.3%)	222,217 (14.7%)	254,394 (15.1%)	268,332 (14.5%)	286,557 (14.5%)
페 루	4,121 (0.4%)	10,279 (0.9%)	31,051 (2.4%)	35,382 (2.6%)	37,099 (2.6%)	41,317 (2.7%)	46,171 (2.7%)	51,772 (2.8%)	55,750 (2.8%)

* 주: 괄호 내는 외국인등록자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法務省入國管理局(<http://www.moj.go.jp/>).

가져 온 결과였다. 겉으로는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노동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日系人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택하였다. 실제로 日系人 대부분이 비숙련 직종에서 일하는 단순노동자들이며 일본정부가 사실상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중요한 것은 일본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日系人 에 한하여 특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문제의 돌파구를 찾았다는 사실이다. 즉 혈통을 중시하는 일본정부의 자세가 개정 입관법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혈통주의는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강력히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영주권과 국적문제

입관법 상 체류자격 가운데 영주자 자격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일본에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이며 자격을 얻으려면 법무대신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주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일본에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와는 구별된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국적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시민권과는 다르다. 영주권을 가지는 자는 외국인으로서 입관법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20) 愛知縣國際課, 「愛知縣内の外國人登録者の状況」, <http://www.pref.aichi.jp/kokusai/tourokusyasuu/16touroku.html>(검색일: 2005년 11월 15일).

영주자 자격에는 '일반영주자'와 '특별영주자'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영주자'에는 영주허가를 신청한 자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법무대신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된다. 기본적인 영주허가 요건에는 첫째, 소행이 선량해야 하며, 둘째,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며, 셋째, 그 자의 영주가 일본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 외에도 체류실적이 필요하며 일반원칙으로서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체류실적은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가족, 난민, 정주자 등의 경우는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 체류기간이 짧아진다.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영주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반영주자'의 증가가 비약적이다. 2004년 현재 '일반영주자' 자격을 갖는 자는 30만명을 넘으며 6년전인 1998년 약 9만명에서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편 '특별영주자'는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발효에 의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이며 종전(終戰) 이전부터 일본에 체류하는 자 및 그 자손들"이 해당된다. 즉 구식민지 출신 재일한인, 재일대만인이다.

'특별영주자'에 해당하는 구식민지 출신 재일한인이 처음으로 영주권을 인정받은 것은 1965년이였다. 일본정부는 65년의 '한일 법적지위협정'에 의해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아이²¹⁾에 대하여 '협정영주'가 인정되었다. 이 '협정영주'는 1966년부터 5년 내에 일본정부에 신청한 한 경우에만 허가되었다. 이에 따라 재일한인 1세, 2세가

〈표-5〉 국적별 영주자수 추위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영주자	626,760	635,715	657,605	684,853	713,775	742,963	778,583
일반영주자	93,364	113,038	145,336	184,071	223,875	267,011	312,964
중국	31,591	37,960	48,809	58,778	70,599	83,321	96,647
브라질	2,644	4,592	9,062	20,277	31,203	41,771	52,581
필리핀	10,617	14,884	20,933	26,967	32,796	39,733	47,407
한국·선	26,425	28,766	31,955	34,624	37,121	39,807	42,960
페루	3,209	4,756	7,496	11,059	13,975	17,213	20,401
기타	18,878	22,080	27,081	32,366	38,181	45,166	52,968
특별영주자	533,396	522,677	512,269	500,782	489,900	475,952	465,619
한국·선	528,450	517,787	507,429	495,986	485,180	471,756	461,460
중국	4,349	4,252	4,151	4,060	3,924	3,406	3,306
기타	597	638	689	736	796	790	853

* 출처: 法務省入國管理局(<http://www.moj.go.jp/>).

‘협정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이는 한국 국적을 가지는 자에 한정된 것이었다.



일본이 나아갈 목표가 ‘공생’이라면, 다양한 문화, 사고,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존의 낡은 일본의 ‘국적’ 개념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 ‘협정영주’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조선 국적²²⁾의 재일한인, 그리고 재일대만인의 평화조약 국적이탈자와 그 아이에 대해서는 1982년에 특별영주 허가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1991년, 한일 양국 외상 사이에서 조인된 ‘한일 법적지위협정에 기반하는 협의에 관한 각서’를 바탕으로 ‘입관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평화조약 국적이탈자 및 그 자손에게 ‘특별영주자’ 자격이 부여되었고 이와 동시에 3세 이하의 재일한인 법적지위도 보장되었다.

즉 구신민지 출신의 재일한인과 재일대만인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하여 영주권이 완전히 부여된 것은 ‘입관특례법’이 시행된 1991년 11월로 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후 약 40년 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겨우 얻어낸 권리였다.

그런데 ‘특별영주자’는 ‘일반영주자’와 달리 근년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5>는 1998년에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특별영주자’가 매년 감소되면서 점점 ‘일반영주자’와 비슷한 비율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영주자’의 대다수인 재일한인은 1991년 69만 3050명을 정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²³⁾ 2004년에는 46만 1,460명까지 감소되었다.

1965년까지는 재일외국인 전체의 9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던²⁴⁾ ‘특별영주자’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귀화와 국제결혼 등에 의한 일본국적 취득의 증가에 있다. 특히 부계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전환된 84년 국적법 개정이 ‘특별영주자’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계 혈통주의에서는 딸이 재일한인 딸이 일본인의 경우 그 아이의 국적은 반드시 한국이었으나 부모양계주의가 되면서 재일한인과 일본인의 아이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근년 재일한인이 일본인과 결혼하는 경

21)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로 구신민지출신 재일한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일본정부는 그들의 체류 자격에 있어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결정될 때까지 체류자격 없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는 ‘법률 126호 2조 6항’을 적용하였으며 그 이후 이 법률 해당자는 ‘법 126’, 그 아이는 ‘법 126의 子’으로 약칭되었다.

22) 1947년의 외국인등록 시 재일한인의 국적란에는 ‘조선’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후 1950년 2월부터는 ‘한국’ 및 ‘대한민국’으로 표기병정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혈연은 남한에 있어도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하지 않고 ‘조선’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일한인들도 많다.

23) 『統一日報』, 2005년 7월 6일, <http://www.onekorenews.net/20050706/syasetu20050706.htm>(검색일: 2005년 11월 15일).

24) 法務省入國管理局編, 『出入國管理』, 平成16年版, p. 34.

우가 90%에 이르는 정도로 압도적이다.²⁵⁾ 또한 귀화하는 재일한인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배경이 ‘특별영주자’의 감소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특별영주자’의 감소는 일본의 국적정책의 하나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영주자’라는 체류자격 자체가 전후 구신민지출신자들에 대하여 그 역사적 경위를 고려하여 일본이 마련한 일종의 ‘특별 조치’였다. 그러나 이 ‘특별 조치’는 영주라는 체류기간이 무기한인 것 외에는 다른 외국인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었으며²⁶⁾ 일본인과의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귀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귀화의 증가와 ‘특별영주자’의 감소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방침과 재일한인의 현실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1년 자민·공명·보수 여당 3당 “국적등 프로젝트팀”이 “특별영주자의 국적취득 특례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특별영주자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데 현행 허가제도에서 신청제도로 바뀐다는 구상이다. 겉으로 보면, 전후 국적 선택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귀화절차를 요구받아 온 재일한인, 재일대만인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 문제를 억제시키려는 정치적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특별영주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전후 일본 외국인 사회의 주된 구성원이던 재일한인의 정체성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일본의 외국인 정책의 가장 핵심 부분은 특별영주자인 재일한인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참정권 문제,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 등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권리의 문제는 외국인 사회의 확대와 다양화라는 흐름 속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결론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공생’, ‘다문화 공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이 나아갈 목표가 ‘공생’이라면, 다양한 문화, 사고,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존의 낡은 일본의 ‘국적’ 개념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즉 일본국적을 가진 ‘일본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힘든 사회적 양상을 더

25) 『統一日報』, 2005년 7월 6일, <http://www.onekoreanews.net/20050706/syasetu20050706.htm>(검색일: 2005년 11월 15일).

26) 퇴거강제와 재입국허가 유효기간, 재입국 심사에 있어 우대조치가 마련되긴 하였으나 강제퇴거 대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 제도와 이에 따른 행사별 제도 등이 의무로서 가해지고 있다. 사회문제가 된 지문압날 제도는 91년의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특별영주자와 영주자에 한하여 폐지되었는데 1999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이 제도는 완전 폐지되었다.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적 관련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전후 일본 국적정책은 '혈통주의'와 '단일민족관'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인'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배외주의적인 사고가 기저에 흐르고 있다.

혈통주의와 국적유일 원칙을 유지한 국적법과 단일민족관을 보여주는 귀화제도, 그리고 역시 같은 민족을 우대하는 혈통주의를 담고 있는 입관법은 일본정부의 국적정책의 특징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정부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의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의 수용도 소극적으로나마 검토하고 있다. 일본이 기존의 '혈통주의' 적이고 배외주의적인 외국인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와 모순이 따른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다는 징조로 보인다. 일본이 '단일민족관'이라는 주술에서 해방될 때가 과연 올 것인가.

도서안내

민족문제와 민족정책을 통해 본
일본정치의 실제 규명

일본의 민족문제

■ 주요 목차 ·
일본의 민족상황
일본민족의 형성
일본민족론의 전개
재일외국인 정책
재외일본인 정책
일본의 민족적 과제
부록 / 일본인해외이주년표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폐쇄적 민족주의 극복의 과제

송 중 호 (한국 민족연구원 연구원)



2005년 국적 이탈과 국적법

한국에서의 국적이라는 것은 병역의 의무와 상관관계를 맺으며 “대한민국의 국민 정체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가 된다. “대한민국 국적”은 단순히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인, 특히 남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병역 의무를 다한 “토종 한국인”이라는 국적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탓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05년 5월 “이중 국적을 가지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나타난 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새 국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평소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사례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5년 5월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1287명, 6~19일 재외공관에서 533명 등 모두 1820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 2004년 한 해 국적이탈자 1342명을 훨씬 넘는 숫자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적포기자가 급증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후속 조치 성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정안』(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6월 29일 국회 본회에서 재적의원 2백32명 중 찬성 1백4, 반대 60, 기권 68명으로 부결된다. 홍 의원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의 국적포기를 원천봉쇄 시키겠다는 의지였고, 이에 반대한 의원들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인권보호 입장에서 맞섰던 것이다. 이 한 차례의 입법안은 이후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향후 세계화의 파고 속에 살아가야 하는 한국에게 끊임없이 제기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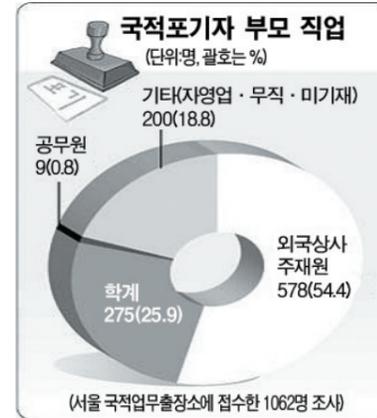
한국사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국제이주자의 비율로 인해 점차 다민족 사회로의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에 보여줬던 국적법에 대한 한차례의 해프닝은 한국 사회가 성역화 돼 있는 병역의 의무와 함께 일민족 일국가라는 신화 속에서 헤어날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 이에 본 기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국적법의 연혁을 통해 한국 국적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국적법의 의미와 그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 국적법의 변천

국적(nationality)이란 법적인 용어로서 개인을 어떤 국가의 인적 관할 하에 놓이게 해주는 개인·국가사이의 연결시켜 주는 법적 유대(legal tie)다. 이러한 법적 유대



▲ 국적포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5월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관련 업무 창구가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2005년 5월 19일자.



출처: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26일자.

가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 또는 법적 지위(legal status) 가운데 어느 편으로 분류돼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지만 국적은 관계와 법적 지위의 양요소를 포괄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적은 국내법상의 개념인 동시에 국제법상의 개념이기도 하다. 가끔 “국적이란 권리·의무를 부여하는 국가와 개인 간의 특수관계”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있다. 국내법의 개념으로서 국적에 관한 한 위의 진술은 상호의 권리 의무가 직접 국적으로 나오는 것인 양 하는 점에서 이것은 완전히 정확한 진술은 아니다. 실제로 국적이란 관련된 권리·의무의 전제조건이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연원은 아니다. 국적에 관해 국내법은 주로 국적의 취득과 상실을 규정하는데 국한하고 있지만, 국적의 당연한 결과로서 권리·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¹⁾

이와 같은 국적법의 특징은 한국 국적법의 연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국 국적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을 보면,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하에서 국적법 제정 전인 1948년 5월 11일 남조선 과도입법원의 법률 제11호로 “국적에 관한 임시 조례”가 공포 시행됐다. 동 임시 조례는 전 6개의 조문으로 국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고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조선의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에 관한 규정²⁾과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이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 국적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 헌법 제3조³⁾를 근거로 동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됐다. 현행헌법 제2조도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이에 기초해 국민 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국적법이다. 1948년 12월 20일 이후 한국 국적법은 1962년 11월 21일, 1963년 9월 30일, 1976년 12월 22일 3번 개정됐으나 제 1,2,3차 개정에는 제정당시의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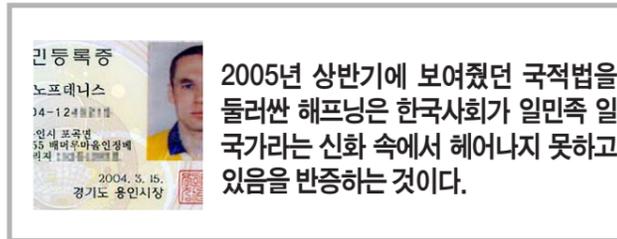
제1차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 국적을 상실할 것을 추가했고, 둘째 국적 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 해외동포도 외국에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제2차 개정에는 첫째 귀화자의 대통령 등 특정 공직에로의 취임을 금지하는 규

1) 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검토”, pp.39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1998).

2)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는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고 한다. 1)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2)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는 때, 3)조선 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는 때, 4)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혼인하여 처가 된 자, 5)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자, 또 임시조례 제4조는 “외국에 귀화한 자”와 “외국인의 처 또는 양자가 된 자”는 조선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조례 전문은 법원행정처 재판자료 제 42집(주요 구법령집) 1988년 pp. 438참조.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인권법』, 4호, pp.115(국제인권법:2001) 재인용.

3) 제헌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이로서 국적 법률 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정을 삭제했고, 둘째, 국적 상실 사유에 외국인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한자가 6월내에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제3차 개정을 보면 국적회복심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⁴⁾ 그리고 1997년 11월 18일 국회에서 국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또한 정부가 이미 가입한 각종 국제협약상의 남녀 평등원칙에 배치되는 당시 국적법을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변경하는 등, 지난 1948년 이후 50년간 유지돼 온 국적법상의 노후 요소와 기타 입법상의 충분치 못한 점을 정비했다.

당시 개정 국적법은 외국의 수반 취득 강제 조항 및 단독 귀화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 강제조항을 권리 조항으로 변경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원 국적 상실 의무를 예외로 인정했다. 또 이중 국적자의 국적 선택의 제도를 신설해 만21세까지 국적을 택일토록 하고 미 선택 자는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단 병역 미필자는 제외)토록 했으며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 현행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단 1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제외)했다. 또한 위장 결혼을 방지키 위해 결혼으로 인한 국적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남녀 공히 국내 2년 이상 거주한 후 귀화 절차로 한국 국적을 취득토록 했으며, 한국인 부모에게 인지된 자의 국적 취득자 요건 중 법무부 장관의 신고를 국적 취득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당시 국적법 개정은 헌법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및 '시민적 정치적 일치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일치하는 등 남녀평등의 구현에 큰 기여를 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⁵⁾

이후 2004년 5차 개정에서는 제6조의 간역귀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된다. 이는 5조 1항의 5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의 주소가 있을 시에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6조 1항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

4)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인권법』 4호, pp117(국제인권법:2001).

5) 네이버 법률정보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069700) 검색일:2005.11.1

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개정 2004.1.20> 그리고 금년 5월에 일부 개정된 조항은 병역을 기피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 역에 편입된 때에 한하여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 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 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05.5.24.〉』 ③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5.24.〉』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한국 국적법의 특징

한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인지(認知) 및 귀화로 인한 외국인의 국적 취득, 귀화의 요건과 허가, 배우자와 자녀의 국적 취득, 국적의 상실, 국적의 회복·귀화 등의 절차,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이다.(1997.12.13 법률 제5431호)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된 자가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해 미성년이거나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 한국 국적법의 변천⁶⁾

	1948년 제정	1962년 일부개정(1차)	1963년 일부 개정(2차)	1976년 일부개정(3차)	1997년 전면 개정(4차) 1997. 12. 13.	2004년 일부 개정 (5차) 법률 2004.1. 20.	2005년 일부 개정(6차) 2005. 5. 24.
제1조 목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목적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좌동	좌동
제3조 외국인의 국적취득	제3조중 "외국인으로서"를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6월 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외국인으로서"로 한다.	좌동	좌동	좌동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좌동	좌동
제4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좌동	좌동
제5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과 일반귀화 요건	제5조 제5호중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다음에 "6월내에"를 삽입한다.	좌동	제6조중 "전조"를 "제5조"로, 제7조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16조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중 "전조"를 "제5조"로, 제7조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일반귀화 요건	좌동	좌동
제6조 간역귀화 요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간역귀화 요건	5조 1항을 갖추지 않아도 6조 1항의 요건으로 귀화 가능 요건	좌동
제7조 특별귀화요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특별귀화요건	좌동	좌동
제8조 수반취득	제8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가한다. "단 국적이 없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6월 내에 그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 한한다"	좌동	좌동	좌동	수반취득 "처"의 수반취득 조항 삭제	좌동	좌동
제9조 외국인의 처의 귀화 제한 (처의 단독 귀화금지)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처의 단독귀화금지조항 삭제)	좌동	좌동
제10조 귀화인의 공적제한	좌동	제10조를 삭제한다	좌동	좌동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의무	좌동	좌동
제11조 관보 고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국적의 재취득	좌동	좌동
제12조 국적의 상실	좌동	제12조에 7호를 신설(7.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그 외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 때)	좌동	좌동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국적선택제도)	좌동	항의 규정에 의해 국적선택하지 않을시 1항의 만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국적 상실. 3항 신설
제13조 수반상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대한민국국적선택청사	좌동	좌동
제14조 국적의 회복	제14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전2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의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회복 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적 회복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5호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의 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좌동	제14조(국적의 회복)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의 회복을 할 수 있다. ②제5조 제5호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의 회복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좌동	1항의 해당자는 12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법무장관에 국적이탈 신고.	
제15조 대통령명예 대한 위임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외국국적취득에 의한 국적 상실	좌동	좌동
제16조 국적 상실자의 권리변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국적 상실자의 처리	좌동	좌동
제17조	관보고시	.	.
제18조	국적 상실자의 권리변동	좌동	좌동
제19조	법정대리인의 신고 등	좌동	좌동
제20조	국적판정제도	좌동	좌동

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해 성년이고 품행이 단정하며,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출생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이중 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의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법의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국적 자유의 원리 부재와 국적 단일주의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갖되,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국적단일주의 또는 국적 유일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누구든지 반드시 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무국적 상태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의 국적만을 가져야 하며 복수의 국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를 통해 국가 간에 속인적 관할권의 충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단일주의는 매우 유용한 원칙임에 틀림없다.⁶⁾ 한국 국적법도 이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즉 국적법 10조(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1항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 5월 4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더욱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이중국적에 대한 규제는 1963년의 스트라스부르그협약 및 1977년의 개정의정서에서 해외에서 상주하는 성인 국민의 국적이탈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고, 1997년 유럽국적협약도 국내 거주 국민

6) 제성호의 논문 pp.120의 표를 보강하여 편집.

7) 제성호, “한국 국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인권법』 4호, pp119(국제인권법:2001).

의 국적이탈 금지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개정 국적법은 “해외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남성은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닌 한 병역의무가 해제되기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굳이 병역미 이행자의 국적이탈을 제한하려면 출생 당시 부모의 체류 목적을 가지고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어디에서 상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정한 경우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국적변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 상주하면서 거주국 사회와 밀접한 유대를 형성한 자의 국적이탈마저 금지하는 것은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로써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국 국적법의 특징은 근본적으로는 “이중국적”에 대한 법의 태도와 국민정서에 근거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중국적이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중 국적자는 단일국적자와 마찬가지로의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싶는데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면 일찌감치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두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해준다면 과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일이 빈발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중국적은 병역기피의 수단이 아니라 병역 이행을 고무하는 유인이 되는 것이다.

부모양계 혈통주의

이는 지난 1997년 50년 만에 이뤄진 국적법의 전면개정 이후 한국 국적법이 갖게 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에 앞서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당시 개정은 「부계 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대신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확인하는 등 법정신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의 자녀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을 고쳐 우리 국적을 자동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 여성이 매년 1만명에 달해 그들의 자녀 20만명 정도가 당장 취학과 의료보험 등의 혜택과 관련한 고통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안이 남녀평등 원칙을 한층 분명히 한 것에 있다. 우리 헌법은 물론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 세계인권선언,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 등 국제조약의 남녀평등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때문에 당시의 국적법 개정은 양계 혈통주의 인정함으로써 남녀평등권 확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도 있다. 당

시 법무부는 ▲헌법과 국제조약의 남녀평등 원칙 ▲80년대 이후 선진국 대부분이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한 점 ▲국제결혼의 증가 등 시대변화를 반영,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 여자가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단 개정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성원에 대한 국적 다양성의 인정

1997년 전면 개정된 국적법에서부터 가족 성원에 대한 국적 다양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 전 국적법의 경우 가족국적 동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 그 처와 미성년의 자녀는 본국 법에 반대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처나 미성년의 자녀가 夫 또는 父를 따라 우리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을 수반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반취득제도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무시한 것으로서 인권을 무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⁸⁾ 그러나 97년 개정 국적법 이후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은 가족성원의 국적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인종 국가임을 인정한 의미를 담게 됐다. 국제결혼 자체를 막지 않는 이상 단일민족의 순수 혈통은 외국인과 섞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이런 부부와 그 자녀가 많다는 것이다. 또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70~80년대에 양계혈통주의로 바꿨고, 북한과 중국은 국적법 제정 당시부터, 일본은 84년 국적법을 개정하면서 부계혈통주의를 포기했다.⁹⁾

한국 국적법의 방향성

세계화로 인한 국제이주자는 한 해 평균 세계인구의 1/6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국적은 생애적인 것에서 점점 선택사항이 되고 있고, 여러 국적을 지닌 다국적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¹⁰⁾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이런 예측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에서의 국적은 병역의 의무와 맞물려 신성한 어떤 것이 돼버리고 말았다. 지난 6월 이후 새로운 국적법의 발효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8) 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검토", pp.24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1998).

9) 조선일보, 1997년 9월 29일자.

10) 동아일보, 2005년 6월 14일자.

포기한 2032명은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다. 까닭은 그들 중 98.6%가 남자이고, 73%는 15세 이하라는 점이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2005년개정국적법의 발효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중 98.6%가 남자이고 73%는 15세 이하라는 점이 병역의무를 바바 않기 위한 국적포기라는 의심을 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국적 포기 때문에 국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특권층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적 목표를 위해 자유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특수성을 교정하기 위한 보편성의 이탈이다.¹¹⁾

박효중(정치학) 서울대 교수는 “국적법은 국가정체성을 대변하는 엄숙한 법인데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금지의 대상이 돼야 할 병역을 징벌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개정 국적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직 진출에 병역수행을 의무조건화해 병역을 영예롭게 만드는 방식을 놔두고 규제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또 한국 국적을 가져야만 한국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적만능주의 사고는 ‘단힌 민족주의’ 일 뿐”이라고 말했다.¹²⁾ “단합”에서 “열림”으로 나아가는 것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규제가 아닌 긍정적인 방향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

속지주의 용인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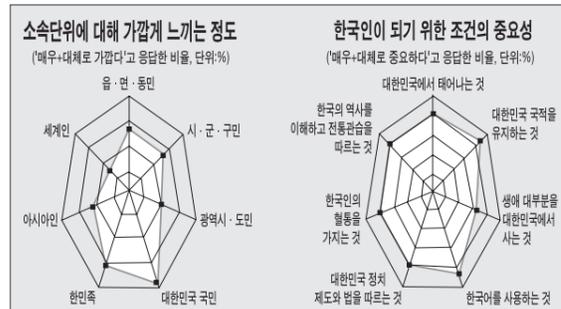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국적부여의 기준으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 속인주의란 국적부여 대상자의 국적부여는 부모의 혈연적 계승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통상 ‘혈통주의’라고 한다. 한편 속지주의는 국적의 부여 대상자가 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칭 ‘출생주의’라고 한다. 한국에서의 국적법은 단연코 혈통주의에 근거한 국적개념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국적의 부여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많았으나, 최근 인적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기준도 점차 국적부여의 기준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11) 권혁범, “우리는 누구인가 - ‘국민’적 정체성의 문화를 넘어서, 『국민으로부터의 탈피』, (삼인,2004).
12) 동아일보, 2005년 6월 14일자.



외국으로 국적을 옮긴 한국사람보다 대한민국으로 국적을 옮긴 귀화인을 한국인으로 여기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다. 혈통보다 국적을 중시하는 태도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얼굴 패인듯한 한국인은 2002 한·일 월드컵 응원단) 귀화한 방송인 이침씨, 이다도시, 전 프로 축구선수 신의손씨, 로이 토비마스 서울 발레시어터 예술감독, 허일 변호사,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출처 : 중앙일보 2005년 10월 13일자 .



출처 : 중앙일보 2005년 10월 13일자.

특성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됐다. 국인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 (82%) 하거나 '한국인의 혈통' (81%)을 가져야 한다거나 '평생 대한민국에서 거주' (65%)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 (88%)하는 것을 중시했다.¹³⁾ 때문에 대한민국 국

를 병행시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혈통적 순수성을 강조한 국가에서 조차 현재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와는 다른 속지주의적 영역을 확대시켜 가면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두가지 원칙을 공존시켜 가고 있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며, 현재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나라는 47개국에 이른다.

최근 중앙일보와 동아사이연구원(EAI)가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혈연 민족주의"가 아닌 "국적 민족주의" 경향이 분명히 나타났다. '한민족 되기' 보다 '대한민국 국민 되기' 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즉 한국인은 자신을 한민족(64%)보다 한국 국민(77%)에 더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한민족이나 한반도 같은 혈연, 지연적

13) 중앙일보 2005년 10월 13일자.

적을 취득한 외국인도 이제 한민족으로 봐줘야 한다(28%) 의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혈통을 중심으로 한 속민주의보다는 속지주의가 국민 정체성을 결정짓는 변수로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 건수는 1991년 5,012건에서 2001년 15,234건으로 10여년에 걸쳐



외국인과 혼인 건수 연도별 변화 추이

(※ 결혼 인은 한국 남자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경우)



전체 혼인 건수 연도별 변화 추이



(자료통계청)

〈표-1〉 국제결혼 건수 추이 〈자료: 통계청www.nso.go.kr〉

	일본	중국	미국	기타	총건수
1991	2,521	262	1,912	317	5,012
1992	2,970	566	1,584	414	5,534
1993	2,644	2,036	1,357	508	6,545
1994	2,539	2,184	1,336	557	6,616
1995	3,163	8,657	1,079	595	13,494
1996	4,159	9,462	1,193	1,132	15,946
1997	2,745	7,513	1,115	1,075	12,448
1998	2,822	5,202	2,495	1,669	12,188
1999	3,897	3,117	1,470	2,086	10,570
2000	4,072	3,804	1,330	3,113	12,319
2001	3,987	7,223	1,397	2,627	15,234

〈표-2〉 외국인과의 혼인(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일본	중국	미국	기타	총건수
1991	224	106	232	101	663
1992	1,223	429	249	156	2,057
1993	826	1,851	230	202	3,109
1994	561	2,043	227	241	3,072
1995	1,412	8,450	188	315	10,365
1996	2,370	9,271	228	778	12,647
1997	1,075	7,362	213	616	9,266
1998	1,004	4,688	1,514	848	8,054
1999	1,248	2,883	280	1,364	5,775
2000	1,131	3,586	235	2,352	7,304
2001	976	7,001	265	1,764	10,006

〈표-3〉 외국인과의 혼인(한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일본	중국	미국	기타	총건수
1991	2,297	156	1,680	216	4,349
1992	1,747	137	1,335	258	3,477
1993	1,818	185	1,127	306	3,436
1994	1,978	141	1,109	316	3,544
1995	1,751	207	891	280	3,129
1996	1,789	191	965	354	3,299
1997	1,670	151	902	459	3,182
1998	1,818	514	981	821	4,134
1999	2,649	234	1,190	722	4,795
2000	2,941	218	1,095	761	5,015
2001	3,011	222	1,132	863	5,228

서 약 3배가량의 증가했다. 즉 한국이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결국 전통적인 혈통주의 장벽은 한국사회에서 의미 없는 상징에 불과하다. 속지주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며 한민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아 가는 상황이다.

다문화주의 틀에 맞는 재외동포법

재외동포법은 1999년 9월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법률 제6015호로 제정된 법률을 일컫는다. 정식 명칭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로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법의 적용대상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과 그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 즉 이 법률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많은 중국 동포와 러시아 지역 동포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 차별적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1년)이 이뤄졌고, 이후 2004년 이들을 포함한 개정 재외동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 노동시장 교란’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 이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1948년 이전 출국한 중국 및 구소련 지역 재외동포들은 여전히 ‘추방대상자’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재외동포법에 대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동법이 시대착오적인 민족우대를 규정한 법이어서 국제법과 국제조류에 역행한다는 것



출처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2005/10/25.

과 여러 문제를 야기하므로 차제에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자는 견해이다. 먼저, 재외동포법은 성별·인종·종교·민족 등에 따른 차별 대우를 금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법에 반하며, 법적으로 외국 국적자들에게 민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특별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

인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반하고, 각국이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해 내·외국인 평등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국제추세에도 역행



대한민국에서의 국적은 “병역의무”와 “폐쇄적 민족주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다는 점이다.¹⁴⁾ 외교통상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 논리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논리중의 하나이다. 특히, 다른 법령에 이미 외국인에 대한 여러 경제·사회적인 규정이 존재하므로, 일반법으로 만들어 국제 분쟁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¹⁵⁾ 우리와 비슷한 민족문제의 특수성이 존재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책과 구소련의 독일인에 대한 독일 교포정책의 경우 우리와 같은 재외동포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정책으로 구체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외동포법 역시 민족 우대 원칙은 사라져야 한다.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다문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민족의식의 법률제정보다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그 밖에 외국 국적 동포들이 차별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모색이 세계화 시대의 틀에 맞는 일이다.

한국 국적법과 시민권

앞서 살펴봤듯이 대한민국에서의 국적은 “병역의무”와 “폐쇄적 민족주의” 의식으로 말미암아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법률과 국민의식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옆의 도표와 같이 영주권과 귀화신청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혈통을 중시하는 속인주의를 고수하는 것 역시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이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제



출처 : 경향신문 2005년 10월 4일.

14) 정인섭,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관련법제의 정비방안”, pp30 『재외동포정책 및 법제 정비를 위한 공청회』(2002).
 15)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pp.149 『한국과 국제정치』(2003).

정이야 말로 국가주의의 발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라는 물음에 시민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국가의 “식민”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도 국적이라는 국가주의적 목표보다는 넓은 시민권의 개념을 도입해 국제이주자들 역시 한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밖으로 나간 한국인들 역시 이중국적을 가지고도 자유롭게 시민권자로서 한국과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실 시민권(citizenship)이란 영토개념에 기초한 주권국가(territorial sovereign state)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entitled right)를 말한다.¹⁶⁾ 곧 지리적 민족주의 개념으로서, 인종이나 종교적 그것과는 대조된다. 본래 시민권은 국제적 무정부상태와 국내적 정치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는 국민과 국가 사이의 연대를 약화시키고 시민권을 비영토화시켰다. 시민권개념 변화의 국가역할의 변화란 근대 국경 내 영토적(territorial)민족주의에서 세계화에 따른 비영토적(nonterritorial)성격으로의 변화와 특히 냉전 이후 거시경제 정책의 의한 무역의 증가와 자본의 이동성, 걸프전쟁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공유된 국익에 따른 국가들의 공동행위 증가, 국가 간 정치적 차이의 감소 등의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에서 종래 시민권 개념은 변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⁷⁾

이런 상황은 최근 유럽연합(EU)이 고급인력 유치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학생에게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와 같은 현상을 낳고 있다. 학위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게 되는 등 영토적 민족주의가 희석되고 있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¹⁸⁾ 다시 말해 시민이라는 개념은 한 국가의 국민이나 자치체에 대해, 정치적 시민이라는 용어보다는 공적영역과 공공 서비스 부문의 고객(Client)내지 사용자(user)란 말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정치영역도 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선택으로 이뤄진다는 슈페터와 다운즈식의 기본경제원리가 수용된다.¹⁹⁾

이와 같은 시민권에 대한 정의는 국민 국가의 주권 개념이 상호 배타적이고 상호 제한적인 것과 상반된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의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 시민권 개념은 근대 국가 체제를 넘어오며 시장에서의 유동적인 Client와 user의 관계로의 변화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와 같은 시민권의 개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실 외국인이나 소수 인종은 자신이 속한 국민 국가 밖에서는 완전한 시민권

16) Bryan S. Turner, "Citizenship and Capitalism: The Debate over Reformism", pp.22 (Allen&Unwin:1986).

17) 정해조, "유럽시민권 행성에 있어서 민족성과 이질문화의 문제", (국제지역연구2003), pp.203.

18) 세계일보, 2005년 11월 15일자.

19) Erik Oddvar Eriksen & Jarle Weigerd "The End of Citizenship?" Arena Working Paper 99/26. pp.1.

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완전한 지위를 가질 뿐이고 지구상의 대다수의 국가가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을 포함한 한국의 경우 민족주의가 순혈(純血)에 기초한 자민족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시민권의 제한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협력과 상호의존에 따른 국제이주자의 확대 등으로 말미암아 시민권의 확대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05년 한국에서 국적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해프닝은 이와 같이 시민권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었음에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중국적이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믿지만, 이중 국적자는 단일국적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 두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중국적은 병역기피의 수단이 아니라 병역 이행을 고무하는 유인이 되는 것이다. 즉 국적은 세계화가 돼야 하고 폐쇄적 민족주의는 열림을 지향하며 시민권을 확대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 료〉

〈대한민국 국적법 전문〉

법률제5431호 전문개정 1997. 12. 13.
법률 제7075호 일부개정 2004. 01. 20.
법률 제7499호 일부개정 2005. 5. 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을 기피하도록 할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적법”을 “국적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그 기간이”를 제1항의 만22세 또는 2년을 “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제1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취득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허가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이상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0)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수반취득) ①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8조의 규정은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월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

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취득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재이하 "이중국적자"라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05.5.24>

③직계존손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5.24>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요건,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자는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때에 대한민국의국적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상실한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

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의 규정에 의한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호적관서 및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통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관보고시)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향유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권리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내에 대한민국의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그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행한다.

제20조 (국적판정)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판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시행일 현재 만 20세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 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 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 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칙 <2005.5.24 제74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 · 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도서안내

사상과 혁명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III 교양사회
조정남 편역 / 값 10,000원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국가명 알파벳순)

United States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근거법 제정일 1986년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 국적 불문 미국영토에서 출생.		
	By Descent	- 해외에서 출생, 부모 쌍방이 미국시민이며, 그 중 일방이 자녀출생 전 미국에 주소를 가졌던 자. - 해외에서 출생, 부모 중 일방이 자녀 출생 전 최소한 5년간 미국 거주.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으로, 미국에 최소 5년 이상 합법적인 거주자로 영어회화,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건전한 성격 소유자로 미국의 역사, 문화에 친숙한 자. - 미국시민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3년간 미국에서 살고 다른 제반조건이 충족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미국에 대한 반역죄를 범한 자. - 외국에 대해 충성을 맹세한 자. - 미국과 교전중인 국가의 군인이 된 자.		

Afghanistan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근거법 제정일 1992.3.19	불허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가 불명이거나 국적 없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영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부여.		
	By Descent	- 부, 모 어느 일방이 시민이면, 그 자녀는 시민권 부여.		
	By Marriage	- 자국민과의 결혼하면 시민권 부여.		
	By Naturalization	- 자국에서 출생하여 최소한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이중국적제'가 아닌 국가의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자.		

Algeria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근거법 제정일 1978년	불허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가 불명이거나 국적 없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영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부여.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이면 출생 장소 불문 국적부여.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21세 이상으로, 7년 이상 자국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 - 국가이익에 반하는 외국이나 외국기업 종사자. - 귀화자로 5년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Andorr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1992.10.27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부, 모가 불명이거나 국적 없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영토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부여.		
	By Descent	-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이면 출생 장소 불문 국적부여.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외국에서 외국에 사는 자국민인 부, 모에게서 태어난 자. - 자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자국민과 결혼한 자. - 자국민에 입양된 14세 이하인 자. - 25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 (이중국적취득 제외) - 외국군대에 입대한 자. - 외국정지단체에 가입한 자.		

Angol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1991.3.13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 불명이거나 국적 없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영토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부여.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이면 출생 장소 불문 국적부여.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 후 신청.		
	By Naturalization	- 성인(18세)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 자국에 거주 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 - 반역죄를 지은 귀화자. - 외국군대에 입대한 귀화자. - 거짓진술에 의한 귀화자.		

Argentin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Citizenship Law #346		
		불 허 (예외규정 있음)		
부여조건	By Birth	- 공인된 외국기관이 아닌 자국 내 출생자. - 자국공관이나 군함에서 출생한 자. - 공해상의 자국국기를 탄 선박에서 출생한 자.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 일 때.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2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자. - 자국민과 결혼한 자. (2년 이상 자국거주 의무)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국적 상실은 수도 Buenos Aires에서만 가능)		
	Involuntary	- 외국 국적 취득자. (이중국적 제외) - 허가 없이 외국에 고용된 자. - 기만적인 파산행위자.		

Armen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Armenia (1995.7.5) and Citizenship Law (1995.11.26)		
		불 허		
부여조건	By Recognition	- USSR시절 해당 공화국 시민으로 계속하여 자국에 살고 타국의 시민권을 획득치 않은 자. - 자국에 이 법이 발효되기 3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는 비국민 혹은 국적신청을 한 과거 USSR의 국민. - 1991.9.21이래 외국에 살고 있는 USSR시절 해당공화국 시민으로 타국의 국적을 취득치 않은 자.		
	By Birth	-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 일 때.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일 때, 출생지에 관계없이 부여. - 14세 이하의 자녀는 그를 부모국적 취득시 자동취득. - 자국민에 입양된 자.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인 자로, 신청 전 3년이상 자국거주, 자국어 소통, 자국헌법 준수 하는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국적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 부모가 국적을 변경할 경우, 14~18세 자녀들도 동시변경.		
	Involuntary	- 허가 없이 7년간 외국에 살고 있는 자. - 허위, 불법행위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자.		

Austral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ct of 1948		
부여조건	By Birth	- 1949.1.26일 이전 영국의 직접적인 통괄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호주 법에 의해 국적부여. - 1949.1.26~1986.8.19일까지 자국에서 태어난 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일부 예외) - 1986.8.20일 이후 태어난 자는 부, 모 중 일방이라도 자국시민이거나, 영주권자면 부여. - 국외 자국 영에서 태어난 자는 심사 후 부여.		
	By Descent	- 18세 이하의 자의 부모가 자국의 해외기관을 통하여 승인 신청가능.(단 부, 모 어느 일방이라도 자국민이어야 한다)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 과거 5년 이내에 2년 동안 자국에서 거주하고, 신청 전 2년 중 12개월을 자국에서 거주한 자. - 18세 이하의 외국에서 입양된 자 중,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일 때.		
국적상실	Voluntary	- 타 국적 취득시. - 자발적인 국적포기.		
	Involuntary	- 거짓에 의한 국적 취득.		

Austr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Law of 1965		
부여조건	By Birth	-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 자국 출생 자.(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이라도 임의 동거에 의한 출산은 제외)	불 허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 해외 출생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0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자. - 자국의 대학교수직을 가진 자. - 5년 이상 자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의 배우자.		
국적상실	Voluntary	- 외국의 국적 취득자.(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필한 자)		
	Involuntary	- 외국의 국적 취득자. - 외국 군대에 입대환자. - 자국의 국익에 해는 기치는 외국정부에 고용된 자.		

Azerbaijan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국적법 초안 국회 계류 중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도 자동 국적부여 불가.	불 허 (대통령이 이중국적 허용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이고 자국에서 출생한 자. - 부가 자국민인 해외 출생자.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전 국적포기 후 국적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불 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이중국적 제외) - 국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Bahamas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the Bahamas(1973.7.10)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도 자동적으로 국적부여 불가.		불 허 해외출생자는 21세까지 이중국적 보유가능.
	By Descent	- 자국 내 출생자라도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이어야 함. - 해외출생자는, 부가 자국민이어야 함.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 부모가 자국민이 아닌, 자국 내에서 출생한 18세 이상 자. - 외국에서 자국민 여성에게서 태어난 18세 이상 자. - 자국민에 입양된 자녀.		
	By Naturalization	- 영주를 목적으로 6-9년간 자국에 거주하고 일정 자격 갖춘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인 국적포기는 의회에서 허가.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		

Bahrain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불 허	
		근거법 제정일		
		Bahraini Nationality Law(1963.9.16)		
부여조건	By Birth	- 부가 자국민인 1963.9.16일 이후 자국에서 태어난 자. - 자국공관이나 군함에서 출생한 자. - 부모불명의 1963년9.16이후 자국에서 출생한 자.		
By Descent	- 1963.9.16일 이후 태어난 자 중 그 부 또는 조부가 자국에서 태어난 국민인 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963년9.16일 이후 최소한 25년이상 자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아랍계는 15년 이상)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		

Bangladesh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불 허 예외규정 있음.	
		근거법 제정일		
		Bangladesh Citizenship Order(1972)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으로 국적 취득 불가. - 1971년.3.26일 이전에 자국 내 출생자는 자국민으로 인정.		
By Descent	- 출생지에 상관없이 부가 자국민일 때. - 출생지에 상관없이 조부가 자국민일 때. - 출생지에 상관없이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아닐 때.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백만 달러나 그에 해당하는 산업투자를 자국에 한 자. - 1백만 달러를 공인된 금융기관에 이체한 자. - 영주권신청은 7만5천 달러를 투자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 - 투자에 의한 귀화자가 투자를 포기했을 때.		

Barbados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허용	
		근거법 제정일		
		Barbadian Constitution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의 국적이 상관없이 자국에서 출생한 자.		
By Descent	- 부, 모 그 일방이 자국민인 결혼에 의한 외국 출생자.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불 명		

Belarus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불 허	
		근거법 제정일		
		Law of Citizenship (1991.10.18)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출생자에 자동적으로 국적부여 불가.		
By Descent	- 출생지 상관없이 부모 모두 자국민일 때. -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이며, 자국 내에서 출생한 자. - 외국 출생이나, 태어날 때, 부, 모 어느 일방이 영주로 자국에 살고 있던 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7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한 자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외국군대, 외국정부 등에 근무하는 자. - 거짓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Belgium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de of Belgian Nationality(1984.6.28)		
		불 허		해외출생으로 출생국의 국적 취득자는 18세까지 이중국적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출생자에게 자동적으로 국적부여 불가.		
	By Descent	-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 부부의 자국 출생자. -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은 부부의 해외출생 자녀.		
	Children of Immigrants	- 자국에서 태어난 자국 출생 외국인 부모의 자식. - 자녀출생 10년전부터 자국에 살고 있는 비 국적자의 자녀. - 자국에서 출생 이래 계속하여 자국에 살고 있는 자는 18-30세 사이에 국적취득 가능.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으로 자국에 5년 이상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외국국적 취득자.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외국에서 출생하여 18세에서 28세까지 자국적 취득 없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elize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Belize Nationality Act		
		허 용		
부여조건	By Birth	- 1981.9.21 이후 자국에서 태어난 자는 부모 국적에 상관없이 가능.(외교관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1981.9.21 이후 출생한 자로, 부모 어느일방이 자국적인 자.		
	By Marriage	- 외국인으로 자국적자와 결혼한 자.		
	By Naturalization	- 자국에 5년 이상 거주자로 전의 국적을 포기한 자. - 경제적 귀화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국의 국적법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 자국 국적 취득 후 5년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형을 언도 받은 자. - 외국에 충성을 맹세한 자. -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		

Benin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Law of Civil Rights		
		허 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국적부여 불가.		
	By Descent	-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하고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0년 이상 자국에서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국적상실은 21세 이상자에 한 함)		
	Involuntary	- 거짓에 의한 국적취득자. - 중범죄를 범한 귀화자.		

Bhutan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Bhutan Citizenship Act(1977/1985)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적으로 국적부여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에 거주하던 자국민의 자식으로 1985.6.10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부여. - 부, 모 쌍방이 자국민인 1985.6.10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가능.		
	By Registration	- 1958.12.31 이전부터 자국에 합법적인 거주 사람들에게 1985.6.10 부로 가능.		
	By Marriage	-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여성의 경우, 남편과 자식 귀화가능. - 외국여성과 결혼한 자국민의 경우, 그 부인과 자식 가능.		
	By Naturalization	- 1985.6.10이전 ; 10년 이상 거주하고 21세가 된 사람. - 1985.6.10이후 ;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 경우 15년 이상 거주한 21세가 된 자.(비 자국민의 자식인 경우 20년 거주)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거짓으로 국적취득자. - 귀화 5년 이내에 구속된 자.		

Boliv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불명		
			불허 (예외 규정 있음)	1.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여성, 남편의 국적을 따를 경우. 2. 과거 스페인이나 라틴 아메리카 인으로 자국인으로 귀화한 자.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내 출생자.(부모가 외국정부 소속원일 때는 예외)		
	By Descent	- 해외에서 태어난 자로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의 경우 자국으로 돌아오거나, 해외 공관에 등록했을 때 부여.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2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자. - 자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독신이 되거나 이혼 후에도 계속 허용) - 자국민의 배우자나 자국에서 출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국적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전쟁 시 적군을 도운 자. - 이중국적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외국적을 취득한 자.		

Belize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Belize Nationality Act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1981.9.21 이후 자국에서 태어난 자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가능.(외교관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1981.9.21 이후 출생한 자로, 부모 어느일방이 자국적인 자.		
	By Marriage	- 외국인으로 자국적자와 결혼한 자.		
	By Naturalization	- 자국에 5년 이상 거주자로 전의 국적을 포기한 자. - 경제적 귀화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국의 국적법을 현저하게 위반한 자. - 자국 국적 취득 후 5년 이내에 12개월 이상의 형을 언도 받은 자. - 외국에 충성을 맹세한 자. -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		

Benin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Law of Civil Rights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국적부여 불가.		
	By Descent	-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하고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0년 이상 자국에서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국적상실은 21세 이상자에 한 함)		
	Involuntary	- 거짓에 의한 국적취득자. - 중범죄를 범한 귀화자.		

Bhutan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Bhutan Citizenship Act(1977/1985)		
			불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적으로 국적부여 불가.		
	By Descent	- 부가 당시 자국에 거주하던 자국민의 자식으로 1985.6.10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부여. - 부, 모 쌍방이 자국민인 1985.6.10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가능.		
	By Registration	- 1958.12.31 이전부터 자국에 합법적인 거주 사람들에게 1985년6월10일 부로 가능.		
	By Marriage	-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여성의 경우, 남편과 자식 귀화가능. - 외국여성과 결혼한 자국민의 경우, 그 부인과 자식 가능.		
	By Naturalization	- 1985.6.10이전 ; 10년 이상 거주하고 21세가 된 사람. - 1985.6.10이후 ;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 경우 15년 이상 거주한 21세가 된 자.(비 자국민의 자식인 경우 20년 거주)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거짓으로 국적취득자. - 귀화 5년 이내에 구속된 자.		

Bolivia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불명		
			불허 (예외 규정 있음)	1. 외국인과의 결혼한 자국여성, 남편의 국적을 따를 경우. 2. 과거 스페인이나 라틴 아메리카 인으로 자국민으로 귀화한 자.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국내 출생자. (부모가 외국정부 소속원일 때는 예외)		
	By Descent	- 해외에서 태어난 자로 부, 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의 경우 자국으로 돌아오거나, 해외 공관에 등록했을 때 부여.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2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자. - 자국에 살고 있는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독신이 되거나 이혼 후에도 계속 허용) - 자국민의 배우자나 자국에서 출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국적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전쟁 시 적군을 도운 자. - 이중 국적협정을 맺지 않고 있는 외국적을 취득한 자.		

Botswana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ct(1982.12.31)		
			불허 (예외 규정 있음)	1. 외국적을 취득한 21세까지 이중국적 인정.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자동적인 국적부여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일 때 출생지에 상관없이 부여. - 미혼모가 자국민일 때.		
	By Marriage	- 2년 반 이상 자국에서 거주한 자국민과 결혼한 자.		
	By Naturalization	- 12년 이상 자국에 살고, 특히 신청 전 1년간 계속하여 자국에 거주한 자국민화와 언어 등에 능통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		

Brazil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Decree Law #961(1969.10.13)		
			불허 (예외 규정 있음)	1. 자국민부모에 의해 해외에서 출생한 자는 어느 시기까지 이중국적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민부모에 의해 자국에서 태어난 자.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 해외출생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자동적인 국적부여 불가.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자국내 거주 사실 확인 필요)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에서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불명.		

Brunei Darussalam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General Islamic Law		
			불허 (예외 규정 있음)	1. 해외에서 자국민부모에게서 태어난 자, 18세까지 이중국적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 취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해외출생자.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무국적내지 국적불명인 해외출생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10년 거주 후 국적 신청 가능. - 자국여성과의 결혼한 외국남성, 15년 거주 후 국적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결혼이나 입양으로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		

Bulgaria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허용	기 타
	적	근거법 제정일 Law of Citizenship (1998.10)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적인 국적부여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불문 부여.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이상 자국 내에 거주한 자. - 자국민에 입양된 14세 이하의 자. - 박해에 의한 난민.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허위에 의한 귀화자. - 해외에서 자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범법자.		

Burkina Faso (Upper Volta)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허용	기 타
	적	근거법 제정일		
		불 명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자는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자는 결혼 후 6개월 후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자국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18세 이상자 - 자국 내 출생 외국인으로 2년 이상 거주하고 자국에서의 활동 가능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반국가, 단체 범법자.		

Burundi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불 허	기 타
	적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Code(1971.8.10)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자동적인 국적부여 불허.		
	By Descent	- 출생 국 불문하고 부가 자국민인 자. - 출생 국 불문하고,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무국적 또는 국적불명인 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과거 국적버렸을 때, 결혼 2년 후 가능.		
	By Naturalization	- 자국민에 의해 입양된 12세 이하의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Cambodia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불 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여성이 남편의 모국 법에 의해 국적취소를 강요 당하지 않을 때 이중국적 유지.
	적	근거법 제정일		
		Decree (No.913-NS) 1954.11.20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자동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 경우.		
	By Marriage	- 자국민의 외국인부인의 경우 결혼과 더불어 가능. - 자국민의 외국인남편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후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불 명.		
	Involuntary	- 자국정부의 의사에 반한 외국군대와 외국기관 종사자. - 외국 국적취득자.		

Cameroon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해외에서 자국민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21세까지 허용.
		근거법 제정일 Ordinance #2(1968)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자동적으로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결혼으로 태어난 부가 자국민인 자는 출생지 불문하고 부여. - 자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자. - 자국민 모와 불명의 부 사이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에게 허용.		
	By Naturalization	- 구체적인 규정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 - 외국정부에 근무하는 자.		

Canada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허용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Regulation(1977)		
부여조건	By Birth	- 1977년2월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의 국적불문 부여.(외교관 자녀 및 출생당시 부모가 자국에 불법거주자의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1977년2월14일 이후 해외에서 태어난 자로,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 일 때.(28세에 이르러, 자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국적신청 시, 국적 취소.(revoked))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으로, 4년 중 3년을 자국에 거주하고, 영어와 프랑스어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등의 자격조건을 구비한자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거짓으로 귀화한 자. - 귀화자로 10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Cape Verde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허용	
		근거법 제정일 불명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국적자동 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일 때 출생지와 무관 없이 가능.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 시 신청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 - 상당액의 자국에 대한 투자자 거주기간 무관하게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구체사항 불명.		

Central African Republic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허용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1995.1.7)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국적 상관없이 자국내 출생자.(외교관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자국민 부의 해외출생자녀. - 자국민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 부모의 신청에 의해.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By Naturalization	- 자국에 5-7년간 거주한자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거짓으로 귀화한 자. - 국적취득 후 중죄를 범한 자. - 반국가 행위를 한 자.		

Chad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불 명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Regulation (1962.8.14)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취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 자국적자의 자녀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5년 이상 자국거주자로 여타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반국가 행위자.		

Chile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불 허 (예외규정 인정)	1.스페인과는 이중국적합정 체결국. 2.자국민의 해외출산자녀, 21세까지 이중국적보유가능. 3.해외거주조건으로 거주국 국적을 필수적으로 요구 할 경우.
		근거법 제정일		
불 명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부여.(외교관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부모 중 일방이 자국적자의 자녀로 21세 이전에 자국 거주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거주자. - 이전의 국적포기를 완료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전쟁 시 적에게 도움을 준 자.		

China People's Republic of China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불 허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Law(1980.9.10)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인 국적취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적자의 자녀, 출생지 불문. - 해외 출생 자국민자녀가 해외 국적 취득 했을 때 불허. - 중국계 Macao거주자로 중국 내에서.(Macao포함)출생자. - Macao 특별행정구 거주자로 중국계나 폴루탈 계인 dsm 양 국적 중 선택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중국에 近親을 가진 자로 중국에 거주하는 자. - 과거 중국적을 가진 적이 있었던 자는 재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국가공무원이나 군인은 PRC 국적포기 불가)		
	Involuntary			

Colombia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허 용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Law No.43 (1993.2.1)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자동국적 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 자국내 출생자.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 내 합법거주자인 외국인 부부의 자녀.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 해외 출생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합법적인 자국거주자. - Latin American과 Caribbean 들은 1년 이상 거주자.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2년 이상 거주자 자 신청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거짓으로 귀화한 자. - 귀화자로 반국가 범죄자.		

Congo (Formerly Zaire)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Special Law on Congolese Nationality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자국적 부모의 자녀, 출생지 불문 가능.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 자국민에 의해 입양된 외국아동.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합법적인 자국 내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		

Congo Republic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golese Nationality Code and the Regulation(1961.7.29)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인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자국적 부모의 자녀는 출생지 불문 가능. - 부모 어느 일방은 자국민이며, 다른 일방은 자국출생자인 경우, 그 자녀는 출생지 불문 가능. - 부모 어느 일방이 자국민인, 자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5년간 자국 거주 후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10년 이상 자국 내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정부의 공무원. - 귀화자로 10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		

Costa Ric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Costa Rica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에서 출생한 자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외국출생의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자국출생의 Central Americans, Spaniards, Latin Americans. - 7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외국출생의 Central Americans, Spaniards, Latin Americans.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국적상실	Voluntary	- 불허.		
	Involuntary	- 불허.		

Cote d' Ivoire (Formerly IvoryCoast)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불명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인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상관없이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국 내에 5년 이상 거주자. - 자국에 대한 상당액의 투자자나 특별한 공헌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구체적인 규정 부재.		

Croat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w of Croatian Citizenship(1991.6)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 상관없이 가능.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고 자국에서 출생한 자.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고, 다른 한쪽 국적 불명인자의 해외 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한 18세 이상인자 신청.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18세 이상으로 군대의무 필한 자 신청 가능)		
	Involuntary	- 불명.		

Cub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부재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하고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외국 출생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외국 국적 취득자.		
	Involuntary	- 전쟁 기 적군에 종사한 자.		

Cyprus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Republic Law(1967)		
		허 용		
부여조건	By Birth	- 1914.11.5-1960.8.16사이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United Kingdom과 그 Colonies 국적자. - 독립(1960/8/16)이전 5년간 자국에 거주한 자.		
	By Descent	- 1960.8.16일 이후 그 부가 자국민인 결혼에 의해 출생한 자녀는 출생지 상관없이 가능.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고 자국에서 출생한 자.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고, 다른 한쪽 국적 불명인자의 해외 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 군대의무 필하지 않은 자는 불가. - 범죄자로 형기중인 자는 불가.		
	Involuntary	- 거짓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반국가 행위자. - 귀화 5년 이내의 자로, 허가 없이 계속 해외생활 중인 자.		

Czech Republic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zech Citizenship laws (1993.1.1)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5년 이상 자국에 거주하고, 모국이 그들의 국적포기를 허용치 않을 경우, 이중국적 인정.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으로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경우. - 외국인 미혼모의 자녀는 그 부가 자국민일 때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국 내에서 출생한자. - 과거 Czech나 Czechoslovakia 국적자. - 자국민과 결혼한 자 -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부부에게 입양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 자국 내에 정주하지 않는 자. - 자발적 외국국적 취득자. - 외국에 10이상 거주자.		
	Involuntary	- 불가.		

Denmark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Danish Nationality Law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인 결혼한 자국민 이중국적 허용. 2. 22세 이하의 해외서 출생한 자국민 자녀이중국적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자는 출생지에 상관없이 가능. - 1979년1월1일 이전 출생자는 모가 자국민이어야 함.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7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한 자. - 전 국적을 포기한 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Djibouti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w No.200/AN/81(1981.10.24)	불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 상관없이 가능. - 모가 자국민이고, 부의 국적 불명일 경우의 자국 내 출생 자녀.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 2년후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10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반국가 행위자 - 외국군대나 외국기관 종사자로, 자국정부의 이의 중지요청을 거부한 자.		

Dominican Republic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Law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해외 출생자로 현지국적 취득한 18세 이하인 자.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하고 가능.(외교관 자녀는 예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해외 출생자.		
	By Registration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합법적 자국거주자로, 전 국적 포기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Ecuador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Ecuador (1998)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Ecuador과 Spain 간에는 이중국적 조약 체결.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는 부모국적 상관없이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출생 자국민의 해외 출생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자에게 자동적으로 귀화 허용 없음. - 자국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외국인.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Spain은 제외) 취득자.		

Egypt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Egyptian Citizenship laws (1958.6.22)		
			불 허 (예외규정 있음)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결혼에 의해 출생한 자녀는 출생지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귀화에 대한 기본법이 부재.(사안별 처리)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자는 6개월 후 상실.		

EL Salvador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Salvadoran Citizenship Law		
			허 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해외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한 외국인.(Spaniards 나 native Hispano-Americans는 1년 거주) - 자국에 커다란 기여를 한 외국인.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5년 이상 허가 없이 외국에 거주한 자.		

Equatorial Guine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불 명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해외출생 자녀.		
	By Registration			
	By Naturalization	- 10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한 성인.(불특정)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으로 획득한 자.		

Eritre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Eritrean Nationality Proclamation1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일 경우, 자녀의 출생지에 상관 없이 가능. - 1934년 이전부터의 자국 거주자는 가능.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 후 3년간 자국거주 후 가능.		
	By Naturalization	〈1934-1951〉 - 1934-1951년 사이에 자국에 들어와 거주했던 외국인. 〈1951-현재〉 - 1974년 이전 10년간 계속하여 자국에 거주한 사람이거나 혹은 외국에 자주 다닌 20년간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자발적으로 외국을 위해 일한 자. - 귀화인으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거짓으로 귀화 한자.		

Eston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Estonian Law(1995.4.1)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면, 출생지에 관계없이 가능.		
	By Marriage	- 1992년2월26일 이전에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By Naturalization	- 1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자국에 상시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 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의 군대 등에 종사하는 자.		

Fiji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Federal Constitution (1997)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국적 취득자는 21세까지 이중 국적을 취소당하지 않는다.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자국 내 출생 자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해외출생 자녀.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 외국에서 태어난 21세 이상인 자로, 그 조부나 조모가 자국민인 경우. - 자국민에 입양된 자.		
	By Naturalization	- 계속하여 5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한 자. - 계속하여 12개월간 자국에 거주하고, 또 10년 동안 살면서 그중 5년은 집중적으로 자국 에서 생활한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 적을 취득한 자.		

Finland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Finnish Citizenship Act (1968.6.28)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부모 한쪽이 외국적인 부부의 자녀. 2.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민. 3. 해외에서 출생한 자국민의 자녀. (22 세까지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자동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결혼부부의 자녀일 때, 출생지 불문 가능. - 자국민인 미혼모의 자녀, 출생지 불문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으로 자국에 5년 이상 계속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 적을 취득한 자.		

France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French Nationality Code		
			허 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해외출생 자녀.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 1년 후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한 자. - 자국군대의 전투부대에 종사한 자. - 자국민의 배우자나 그의 미성년 자녀.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외국군대나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로 자국의 이에 대한 활동중지 요구에 따 르지 않는 자.		

Gabon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불 허	
		근거법 제정일		
		부재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와 상관없이 가능.		
	By Registration			
	By Naturalization	- 10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		

Gamb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자국민으로 결혼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
		근거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Gambia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가능.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외국출생 자녀.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관계정보 부재.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		

Germany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원칙적으로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국적을 취득했으나, 독일정부로부터 그의 보직을 허락받은 자. 2. 2000.1.1일 이후, 23세까지 이중국적 허용.
		근거법		
		German citizenship law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2000.1.1일부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독일에서 8년 이상 거주한 독일 내 출생자는 국적취득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부부사이의 자녀.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무국적이나 국적불명인 부 사이에 결혼의 출생자녀. - 부가 자국민이고, 모가 외국인인 결혼 외 자녀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모든 귀화자는 8년 이상 자국 내 거주요건 필요.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국정부의 이중국적 보유에 대한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Ghan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해외출신 자녀로 출생국 국적 소지는 21세까지 허용. 2.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민이 자국적 포기하고 외국국적 취득한 후 파혼하여 다시 모국국적 취득했을 때.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Ghana (1992.4)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나 조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출생지에 관계 없음.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신청가능.		
	By Naturalization	-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없는 외국들의 귀화를 권장하지 않음.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국의 국가안보, 국가이익에 위협을 가한 자. - 허위사실로 국적 취득자.		

Greece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불 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그리스는 자국민이 외국적을 취득했다고 자동적으로 자국적 박탈을 하지 않음. 2. 자국민의 외국적을 취득했을때는, 자국이 그리스 국적 이탈을 허락할 때까지는 기술적으로 이중국적 허용.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de of Greek Citizenship(1984)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결혼부부 사이의 자녀는 출생지 불문. - 자국적 모와 국적불명의 부사이의 결혼 외 출생자녀는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료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병역미필자나 중죄인은 불허)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을 위해 일하는 자. - 자국의 국가이익에 반한 행동을 한 자.		

Grenada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허 용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Grenada Constitution Order(1973.2.7)		
부여조건	By Birth	- 1974.2.6일 이전 자국출생자는 부모의 국적불문 가능.(외교관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고, 1974.2.6일 이후 해외 출생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1974.2.6이후) 신청가능.		
	By Naturalization	- 자국에 신청 전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로, 12개월 이전 자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Caribbean 국가 국민은 4년, 비 Caribbean 국가 국민의 경우는 7년)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불명.		

Guatemala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불 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Central and South America 국가들과는 이중국적 협정체결.
		Citizenship		
		근거법 Constitution of Guatemala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외국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자국 내 거주자로 그 간 1년 이상 외국에 나가지 않은 자로, 전체 거주기간 10년 이상으로 2년은 계속적으로 거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여타 Central American 국가에 살고 있는 자. - 과학, 예술 분야에 업적이 있는 자. - 무 국적자 / 자국에 봉사한 자 등도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한자.(이중국적 협정대상국 제외)		

Guinea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불 허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불명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국적불명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가능.		
	By Naturalization	- 자료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Guinea-Bissau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w of Nationality (1973)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자국민의 해외출생자녀 18세까지.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는 부모의 국적 불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해외출생 자녀.		
	By Registration	- 조부모가 자국민인 외국인.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타국적 취득자. - 자국정부의 허락 없이 외국정부나 군대에 종사하는 자. - 거짓으로 국적취득 한 자. - 1년 이상 신고 없이 외국 거주한 귀화자.		

Guyana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Guyana (1980)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결혼을 통한 외국적 취득.
부여조건	By Birth	- 1980년 이후 자국 내 출생자는 부모 국적 불문.(외교관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1980년 이후 해외출생자로, 부모 어느 한쪽 자국출생자 국민일 경우.		
	By Marriage	- 1980년 이후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신청가능.		
	By Naturalization	- 자료 부재.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결혼은 제외)		

Haiti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Constitution of Haiti		
			불 허 (예외규정 인정)	1. 자국민의 해외출생자녀 18세까지.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취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출생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계속하여 자국 내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외국정부의 정치적인 지위를 가진 자. - 귀화자가 허락 없이 장기간 외국거주 할 때.		

Honduras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Honduran Constitution		
			허 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국적 불문.(외교관 자녀 제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해외 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Central American 출생자로, 1년 이상 자국 내 거주자. - Spaniards와 Spanish-American 출생자로, 2년 이상 자국내 거주자. - 3년 이상 자국 내 거주 외국인. - 자국민(자국태생)과 결혼한 사람. - 자국 국회에서 인정한 사람. - 1년 이상 자국거주하고, 자국에 경제적 기여를 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 적을 취득한 자.(이중국적 대상자 제외)		

Hungary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w #55 (1993.6.1)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국과 인종적 연관 없는 자는 8년 이상 자국내 거주필요.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인, 자국민 미성년자의 부모, 자국민에 입양된 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은 3년간의 자국 거주 필요. - 해외의 자국민교포는 1년간의 자국 내 거주 필요.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거짓으로 자국국적 취득한 자.		
Iceland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Icelandic Nationality Act (1952.12.23)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자국민과 외국인 부부간의 자녀. 2. 자국에로의 귀화인에게 전국적 포기 요구치 않음.
부여조건	By Birth			
	By Descent	- 결혼한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인 결혼 외 자녀, 출생지 불문. - 자국민 부와 외국인 모간의 비 결혼 출생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국 내의 친척에 의존해 3-7년 간 자국에서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료 부재.		
	Involuntary	- 자료 부재.		
Ind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ct(1955)	불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는 부모 국적 불문.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불문하고 가능. - 자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의 경우, 모자가 계속하여 자국에 거주하고, 부가 자 기나라의 국적을 자녀에게 주지 않을 때, - 결혼 외 출생자녀로, 그 모가 자국민을 때는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하고 이전의 국적을 포기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한 자. - 거짓으로 귀화한 자. - 귀화 후 5년 이내에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		
Indones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Laws of Indonesia(1946.1.1)	불허	
부여조건	By Birth	- 1946.1.1-1958.8.1 사이에 자국 출생자는 부모의 국적 불문. - 1958.8.1일 이후 자국 내 출생자는 자동적으로 국적부여 불가.		
	By Descent	- 1946.1.1-1958.8.1일 사이에 자국적 부 혹은 자국적 모와 불명의 부 사이에서의 해외출 생자. - 1958.8.1일 이후 부가 자국민일 때, 출생지 불문 가능. - 1958.8.1일 이후 자국여성과 부 불명인 자, 출생지 불문.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전 국적포기한 후 가능.		
	By Marriage	- 21세 이하의 전 국적포기자로, 자국 내에서 태어났던지, 5년간 계속 자국거주 혹은 10 년 자국 거주인자 신청가능.		
	By Naturalization	- 1985.6.10이전 ; 10년 이상 거주하고 21세가 된 사람.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됨.		
	Involuntary	- 허가 없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허가 없이 외국군대 종사자.		

Iran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Iranian Civil Code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자국민 부의 자로 외국출생으로 그곳 국적 취득자. 2.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에게는 자동적으로 국적부여.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자국민 부의 자녀는 출생지 불문 가능.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내에 거주한 18세 이상자로 어느 나라에서나 군대 기피나 중대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자. - 귀화인의 처나 미성년자녀도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25세 이상으로, 군 복무필한 자 신청 가능.		
	Involuntary	- 자발적인 외국국적 취득자라도 이란국적을 자동적으로 잃지 않는다.		

Iraq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자료 불명		
부여조건	By Birth	- 불명		
	By Descent	- 불명		
	By Marriage	- 불명		
	By Naturalization	-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불명		
	Involuntary	- 불명		

Ireland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and Citizenship Act(1956)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는 부모국적 불문.		
	By Descent	- 부모 쌍방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 상관없이 가능. - 부모 어느 한쪽이나 조부모가 자국민인 해외출생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 3년 후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8년 4동안 집중적으로 자국내 거주자로 신청전 1년간은 계속하여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거짓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Israel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Law (1968)		
		허용		1. 1952.7.14일 이전 자국으로 이민해온 Jew. 2. 1952.7.14일전 전 팔레스티나 시민으로 현재 자국 거주자는 여타조건 충족하면 자국적 인정. 3. Jew나 이스라엘에 정착할 것을 표명한 후 이스라엘로 이민 온 나 Jew의 가족으로, 이민도착시 18세 이상이거나 외국적이 아니며, 도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스라엘 국적을 원치 않는다고 표명치 않은 자는 가능. ('Jew의 가족'이란 Jew의 배우자, 손자, 자녀나 손자의 배우자 등을 지칭)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 자국 내에서 출생자 자국민의 자는 가능. - 1948.5.14일 이후 자국 내에서 출생한 무국적자로 18-21세 사이의 자는 5년 이상 자국 거주 조건으로 신청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고 1952.7.14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지 불문.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 ('renaturalized' Jew, 혹은 거주자, 귀화자)의 해외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3년간 집중적으로 자국 내에 거주한 자로 자국에서의 영주를 계획하고 있는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귀화인으로 전 국적취소를 하지 못한 자나, 이스라엘 국적 취득 후 자발적으로 새로운 외국국적 취득자.		

Italy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허용	1. 1992.8.16일 개정국적법에 의하면, 미국적을 취득한 자국적은 자발적인 국적취소를 하지 않은 한 그들의 이태리 국적을 계속 보유한다.
		근거법 제정일		
Italian Law on Nationality(1992.2.5)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범법자가 아니면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자국에 3년 거주자. - EC국민은 4년 거주 - 난민, 자국민에 입양된 외국인, 이태리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자 등은 5년 거주. - 여타인은 10년 거주.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군대 입대자, 특히 전쟁을 선언한 국가 군대에서 활동한 자.		

Jamaica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허용	
		근거법 제정일		
Jamaican Nationality Act (1993.3.2)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는 부모의 국적불문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해외출생 자녀.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자는 신청가능.		
	By Naturalization	- 신청 전 최소한 1년간 계속적으로 자국거주. - 신청 전 5년 중 최소한 4년 동안 집중적인 자국내 거주. - 국적취득하면 자국에서 생활한 뜻이 있는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료 불명.		

Japan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해외에서 자국민 부모에 의해 출생한 자는 출생국에서 국적을 얻었을 때는 22세까지 이중국적 허용. 2. 20~22세 사이 하나의 국적선택 필요.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Act (1950.5.4)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자는 출생지 불문.(이 규정은 자가 출생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무국적자나 불명인 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료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		

Jordan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허용	
		근거법 제정일		
Jordanian Citizenship (1954)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 불문. - 아랍계로 1928년 과거로 부타 Transjordan에 살던 자. - 1954년 Act가 발효되었을 때 과거로부터 Jordan에 살던 1948.5.15일 이전 팔레스타인계 아랍인. - 5년이상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랍계 사람.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5년이상 자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반국가행위자. - 외국군대에 입대한 자.		

Kazakhstan	국 적 적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for the Republic of Kazakhstan(1992.3.1)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1992.3.1일 이전 자국출생자로 자국에 계속 거주하는 자.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자, 출생지 불문. - 부부 어느 한쪽이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국어 능통, 전 국적포기한자는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한 자.		
Kenya	국 적 적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 거 법 Kenyan Constitution		
부여조건	By Birth	- 출생시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1963.12.11일 이후 출생자.		
	By Descent	- 출생시 부가 자국민 1963.12.11 이후 외국에서 출생한 자.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By Naturalization	- 21세 이상 / 신청 전12개월 합법적으로 자국에 거주/전체 7년 거주 중 4년간의 집중거주 등의 요건을 갖춘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외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적을 신청한 자.		
	Involuntary	- 21세 이상에도 이중국적 유지하고 있는 자 등.		
Kiribati	국 적 적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Kiribati Independence Order(1979.7.12)		
부여조건	By Birth	- 1979.7.12이후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1979.7.12일 이후 출생자로 ; - 도착 자국민 부의 자녀는 출생지 불문. - 자국민 모와 불명 부 사이의 결혼 외 출생자녀는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의 외국인 처는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자료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결혼 이외로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 한 자. - 거짓으로 귀화한 자.		
South Korea	국 적 적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Act(1997.12.13)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출생시 자국민일 때. - 부가 자국민인 자녀는 출생지 불문.(출생 전 부 사망 시도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승인-Acknowledgement〉 1. 미성년자나 외국인 처를 포함한 모든 청원자는 외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6개월 이내 에 외국적 포기하고 자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 미성년자의 경우, 자국민인 부나 모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3. 결혼한 지 3년이 넘는 자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최소한 1년 간 연속적인 자국 내 거주자. 〈일반-General〉 1. 5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자료 언어 등 여타조건 구비한자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 한 자 등. - 자국적 취득 6개월 후에도 전 국적 포기 치 않은 자.		

Kuwait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Constitution of Kuwait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결혼에 의한 경우, 출생지 불문. - 모 자국민이고 부가 불명인 결혼 외 출생자,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의 외국인 처는 15년 거주 후 가능.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부는 불가.		
	By Naturalization	- 특별법에 의해 가능. (구체자료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불명.		

Kyrgyz Republic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1993,5,5)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자국 내 출생 자녀.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외국출생 자녀, 부모가 선택.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구체자료 없음.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외국적을 취득한 자.		

Laos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otian Citizenship (1990,11,29)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으로 일정 요건 갖춘 자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 거짓으로 국적취득 한 자. - 귀화자로 반국가 행위자.		

Latv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Citizenship Law		
부여조건	By Birth	- 자료 불명.		
	By Descent	- 부모 쌍방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 상관없이 가능.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고 자국에서 출생한 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By Naturalization	- 구체 자료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외국적 취득자. (국방의무 불이행자/국가의무 불이행자는 국적포기 불가)		
	Involuntary	- 자국의 허가 없이 외국적 취득자. - 자국의 허가 없이, 외국군대, 안보기관, 경찰, 사법기관 등에 고용된 자. * 특정인의 자국 적 포기는 그의 배우자, 자녀 등 다른 가족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음.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ebanon	국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기 타
		근거법 제정일		
Lebanon	국	Law of Croatian Citizenship (1991.6)	허용	
		국적 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Lebanon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경우. - 외국인 모에 의한 자국출생 자녀로, 자국민 부의 승인 없으면, 모의 국적 취득.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신청자에 한해 법의 의한 심사로 결정.	
Lebanon	국적상실	Involuntary	- 외국 기관 종사자. - 반국가 행위자.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esotho	국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근거법 제정일		
Lesotho	국	Lesotho Citizenship Order (1971)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출생자 21세까지 이중국적 허용.
		국적 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Lesotho	부여조건	By Birth	- 1966.10.3 이후 자국 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외교관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1966.10.3일 이후 해외출생 자녀. - 미혼모가 자국민인 1966.10.3일 이후 해외출생 자녀.	
		By Marriage	- 1966.10.3 자국민이 된 사람과 이미 결혼한 외국인 처는 신청 가능. - 1966.10.3 이후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처는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21세 이상으로 1966.10.3일 이후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Lesotho	국적상실	Involuntary	- 결혼 이외에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 자. - 귀화자로/거짓진술자/반국가적 활동자/5년 이내에 5년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신고 없이 7년 이상 해외거주자/외국적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 등.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iberia	국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근거법 제정일		
Liberia	국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Liberia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18세 이전까지 외국적 허용.
		국적 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Liberia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료 불명.	
Liberia	국적상실	Involuntary	- 18세 이상자가 외국적 취득했을 때.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ibya	국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기 타
		근거법 제정일		
Libya	국	Nationality Law(1954/1979)	불허	
		국적 상실	Voluntary	- 자료 불명.
Libya	부여조건	By Birth	- 1951.10.7 이후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1951.10.7 이후 출생자로 부모 및 조부모가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 상관없이 가능.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해서 2년이 지난 외국여성.	
		By Naturalization	- 자국여성과 결혼한 Arab인은 4년거주 이상. - 아랍계는 5년 이상 거주. - 아랍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는 3년 이상 거주 후 여타 조건 충족자.	
Libya	국적상실	Involuntary	- 자국정부 승인 없이 외국적 취득자. - 외국군대 종사자. - 자급 해외반출 기도자. - 이슬람에서 타종교로 개종자. - 1969년 혁명 후 자위를 감춘 자. - 자국의 요청에도 6개월 이내에 모국으로 귀국치 않은 자. - 반국가 행위자. - 귀화자로 반국가 행위자/2년이상 외국거주자/거짓으로 축적 취득자.	

Lithuan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불허	기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w of Citizenship(1991.12.5)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 자국민인 자, 출생지 불문.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해외 출생자녀.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으로 자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의 해외출생 자녀.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하여 3년 경과한 외국인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10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 자국 승인 없이 3년 이상 외국거주자. - 외국의 군대나 민간기관 종사자.		
Luxembourg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원칙적으로 불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자국민의 외국출생자녀는 18세까지 허용.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uxembourg citizenship law (1987.1.1)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 불문. - 자국민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결혼의 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귀화〉 - 10년 이상 합법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선택〉 - 자국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외국에게 부여.(자국 출생 / 입양 / 자국민과 결혼)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 반국가 행위자.		
Madagascar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불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해외 출생자 21세까지. 2. 외국인의 배우자가 된 자국민이 외국적 취득 때.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Ordinance No.60-064 (1960.7.22)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결혼에 의한 자녀. - 자국민 모와 불명의 부 사이의 결혼의 출생 자녀.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으로 신청 전례에 범법사실 없는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에 영주하는 자.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반국가 행위자.		
Malawi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불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외국출생자는 21세까지 허용.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Malawi Citizenship Act (1966.7.6)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아프리카계 토착자 국민으로 1966.7.6 이후 자국 및 해외 출생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African race나 Commonwealth or Malawian tie로 5년이상 자국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외국인의 권리 행사자. - 거짓으로 국적 취득자. - 반국가 행위자. - 승인 없이 외국에 7년 이상 거주자.		

Malays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Constitution of Malaysia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인 결혼에 의한 자녀는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외국인인 결혼한 부부로 자국 출생자. - 결혼 외 자국민 모의 자국 내 출생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By Naturalization	-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반국가행위자. - 귀화자 ; 귀화 후 5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유죄판결 받은 자/반국가행위자/무허가 외국 정부 종사자/허락없이 5년이상 계속 외국거주자/거짓으로 귀화한 자.		

Maldives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자료 불명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무국적이나 국적불명인 경우,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자동적으로 국적취득 불가.		
	By Naturalization	- 자국민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 신청 가능.(구체자료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구체 자료 불명.		

Mali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de of Nationality (1995)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신청 가능.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남자, 결혼 3년 후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외국인과 결혼하여 남편의 국적 취득한 자국여성. - 귀화 10년 이내의 범법자.		

Malt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Maltese Citizenship Act		
부여조건	By Birth	- 1964.9.21-1989.1.8일 사이 자국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 - 1989.1.8일 이후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인 취득 불가. - 1964.9.21이전 토착자국민 부모의 자국에서 출생한 자녀.		
	By Descent	- 부나 친조부모가 자국에서 출생한 United Kingdom 이나 Colonies(UKC)국적자의 1964.9.21이전의 해외출생 자녀. - 부가 자국민인 1964.9.21-1989.1.8일 사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1989.1.8일 이후 해외 출생자.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Marshall Islands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불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외국 출생자 17세까지 허용.
	적	근거법 제정일 Immigration Law (1978.12.21)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1978.12.21일 이후 출생자.		
	By Registration	- 구체자료 불명.		
	By Naturalization	- 자국 내에 5년 이상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결혼 외에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 귀화자로, 거짓으로 귀화한 자/반 정부행위자.		

Mauritania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불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여성.
	적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Code (1961.6.12)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Mauritius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허용	기 타
	적	근거법 제정일 Mauritius Independence Order (1968/3/4)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국적 불문.		
	By Descent	- 결혼한 부가 자국민인 해외출생 자녀. - 모가 자국민인 결혼 외 해외 출생자녀.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자동적으로 가능.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남성은 선별적.		
	By Naturalization	-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불명.		

Mexico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불명	기 타 1. 국적 (nationality)과 시민권 (citizenship) 구분.
	적	근거법 제정일 Federal Constitution (1998.3.20)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		
	By Descent	- 부모 쌍방 자국민의 해외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이상 자국 거주자. - 자국민과 결혼한 자. - 자국민에 입양된 자. - 자국에 공헌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외국의 영예지위를 받은 자. - 자국귀화자로 자기모국에 5년 이상 거주자. - 거짓으로 귀화한 자.		

Micronesia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Act(1979.5.10)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헌법채택이전의 이중국적자. 2. 1979.5.10일 이전 이중국적 소지자는 18세 생일 3년 후까지 외국국적 포기.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독립이전 Trust Territory 국적자이거나 독립 후 자국민의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거주자/자국민의 자녀이거나 배우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군대 입대자. (특별한 경우 미국군대 입대자는 허용)		

Moldova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w of Citizenship (1990.6.23)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대통령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했으 나, 독일정부로부터 그의 보직을 허락 받은 자. 2. 2000.1.1일 이후, 23세까지 이중국적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지 3년이 지난 외국인. - 자국민에 입양된 18세 이하인 자.		
	By Naturalization	- 19세 이상으로 자국 내에서 10이상 거주한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료 불명.		

Monaco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Acquisition of Monegasque Nationality(1987.1.1)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1979.7.12이후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결혼한 부가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이고 무국적이나 국적불명인 부 사이의 결혼 외 출생 자녀. - 자국민 사이의 결혼 외 출생자녀, 부모가 결혼 후 가능. - 귀화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가능.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자동적으로 가능. -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여성은 상대국의 강제규정 없으면 자국적 유지.		
	By Naturalization	- 자국내 10년 이상 거주자로 21세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 외국에서 자발적으로 군대활동을 한 자.		

Mongolia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Mongolia (1992.1.13)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 자국민이면, 자녀 출생지 불문.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면, 자동적인 인정 불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직접 대통령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해야 한다.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불 명.		

Morocco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de of Moroccan Nationality(1958.9.6)		
		허용		1. 이중국적 취득 전 정부허가 필요.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적인 자,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무국적이나 국적불명인 부 사이에 자녀,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의 외국인 부인 결혼 2년 후 가능.		
	By Naturalization	- 성인으로 자국 내에 5년 동안 거주자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한 자 -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적 여성으로 남편국적 취득자. - 외국군대 종사자로 자국정부의 사퇴요청을 거절한 자.		

Mozambique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w of Nationality (1975/1990.11)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출생 자 18세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한쪽 자국민인 부부 자녀로 자국에서 출생한 자. - 부가 자국민인 외국출생 자녀. - 모가 자국민, 부 불명의 해외출생 자녀.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즉시 취득 가능. - 자국민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편은 자국에 5년 거주 후 가능.		
	By Naturalization	- 18세이상, 5년 이상 자국거주하고 전 국적을 포기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한 자. -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정부의 요원이 된 자.		

Myanmar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자료 불명		
		불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인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불명인 자 사이의 자국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외국인의 자국귀화는 제한적.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국적취득 불허용, 단지 자국내 거주하면서 허가요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Namib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Namibia(1990/3/21)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출생 자녀는 18세까지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합법적인 자국 거주자 자녀로, 1990.3.21일 이전 자국출생자. - 1990.3.21 이후,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의 결혼에 의한 자녀는 출생지 불문. - 자국민 모와 불명의 부 사이의 결혼 외 출생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인 결혼 2년후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자국 내에 거주하고, 전의 국적을 포기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허가 없이 외국군대에서 일하는 자.		

Nauru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Nauruan Community Ordinance(1956-1966)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결혼에 의해 외국국적 취득자는 자국적을 잃지 않는다.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1968.1.31이후 출생자로, 부모 쌍방 자국민. - 1968.1.31이후, 자국민과 태평양제도나 출신 자 사이의 결혼에 의해 출생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의회가 자국적 취득자격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Nepal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Nepal Citizenship Act (1964)		
			불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		
	By Descent	- 출생시 부가 자국민일 경우. - 부모 불명으로 자국 내에서 발견된 자녀는 그의 부가 확인될 때까지.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15년이상 자국에 거주하고, 언어 등 여타 조건이 충족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Netherland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Act (1984)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에서 출생한 자, 성인이 될 때까지. 2. 비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에게 자국적 포기 요청치 않음.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결혼부부사이의 자녀.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부부에게 합법적으로 입양된 자. - 모가 자국민인 결혼 외 출생자녀. - 자국민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결혼 외 출생자는, 부에 의해 인정되기까지는 국적 취득 불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언어소통이 자유로운 자. - 자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 3년후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New Zealand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New Zealand(1949.1.1)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1949.1.1일 이후 자국내 출생자, 부모국적 불문.(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 아니면, 외교관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1978.1.1이후 외국출생자로,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 경우 22세 이전에 공식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무국적이나 국적불명인 부 사이에 결혼 외 출생 자녀. - 부가 자국민이고, 모가 외국인인 결혼 외 자녀 가능.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으로 영주희망자.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해외출생 자녀.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 3년 이상 자국거주하고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18세 이상자)		
	Involuntary	- 이중 국적제 채택으로 이에 대한 별도 규정 없다.		

Nicaragu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불 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이중국적 협약을 하고 있는 Central America와 다른 국가들과는 인정.(USA와는 협약 미체결)
		Citizenship		
		근거법 Constitution of Nicaragua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해외출생 자녀. - 부모 어느 한쪽이 과거 자국민이었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 국적취득 신청하면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 자국의 선박이나 비행기에서 출생한 자의 부모가 신청할 때. - 부모 어느 한쪽 과거 자국민이었던 자의 해외 출산 자녀.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이중국적협약 체결 안 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Niger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불 허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불 명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부부사이의 자녀,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대통령령에 의해 인정.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Niger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허 용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1989)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이면, 부모 국적 불문.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 17세(성인)이상으로의 외국출생자로, 그의 조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었거나 현재 자국민인 자. - 자국민 부모에 입양된 자.		
	By Naturalization	- 17세 이상으로 자국에 15년 이상 거주하고 여타 조건이 충족된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등록(Registered), 귀화자로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Norway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불 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출생시 부모로부터 이중국적을 얻은 자(acquired). 2. 자국민 부모에 의해 이중국적 부여 되는 국가에서 출생한 자.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Norwegian Nationality Act (1950.12.8)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부부사이의 자녀. - 모가 자국민인 결혼 외 출생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 / 7년 이상 자국거주 한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Oman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불명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여성, 결혼 후 자국거주하면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여성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규정 부재.		

Pakistan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Pakistan Citizenship Act (1951.4.13)		
부여조건	By Birth	- 1951.4.13일 이후 자국내 출생자, 출생지 불문.(외교관 자녀 제외)		
	By Descent	- 1951.4.13일 이후 자국출생 자국민 부의 자녀는 출생지 불문. - 1951.4.13일 이후 외국출생자로, 타국출생 자국민 부의 자녀는 인근 자국공관에 등록함.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여성.		
	By Naturalization	- 자료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거짓으로 국적취득한 자. - 귀화자후 5년 이내 범법자. - 신고 없이 7년 이상 외국거주자.		

Palau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1994)		
부여조건	By Birth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의 외국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귀화 기회 없음.		
국적상실	Voluntary	- 21세때 국적포기 가능.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을 위해 거짓을 범한 자. - 반국가 행위자.		

Palestine, Palestine National Authority for the West Bank and Gaz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관계법 개발 중		
부여조건	By Birth	* 1993년 협정에 의해 다음의 경우 팔레스타인 당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한다. 1. 현재 West Bank 거주자. 2. 현재 Gaza 거주자. 3. 팔레스타인 당국으로 돌아온 팔레스타인 난민.		
	By Descent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국적상실	Voluntary			
	Involuntary			

Panam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Panamanian Constitution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에서 출생한 자국민 자녀는 성인(18세)까지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국적 불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출생자국민의 외국출생 자녀. - 부모 어느 한쪽이 귀화자국민의 외국출생 자녀는 18세 지난 1년 이내에 자 국적 신청필요.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이상 자국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 7세 이하의 외국출생자가 자국민에게 입양되었을 때, 귀화 절차 불필요. 18세 지난 1년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 필요. - 스페인이나 여타 Latin American state 국적자는 다양한 조건으로 파나마 국적자가 될 수 있다.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적대국의 기관원이 된 자.		

Papua New Guine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ct(1976.2.13)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출생 자녀, 18세까지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1975.9.16일 이전 자국출생자로, 그의 친 조부모, 외 조부모가 자국출생인 자.		
	By Descent	- 1975.9.16일 이전 외국 출생자로, 그의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자국 출생자. 19세가 넘으면 다른 국적은 포기해야 한다. - 1975.9.6일 이후 출생자로,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외국출생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고 필요.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8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결혼은 제외) - 외국적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 - 자국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군대에 입대한 자. - 거짓으로 국적 귀화한 자.		

Paraguay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Paraguayan Constitution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출생 자국민의 외국출생 자녀. - 부모 어느 한쪽 자국출생 자국민의 외국출생 자녀로, 자국에 영주하고, 출생국 국적권 행사를 않는 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자국과 관계있는 자〉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국적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국출생 자국민의 자녀. - 자국에서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의 외국출생 자녀. 〈자국과 관계없는 자〉 - 18세 이상, 자국에 3년이상 거주하고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3년 이상 부당하게 외국거주한 자.		

Peru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Law(1996.1)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18세 때 등록.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자.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 부모가 자국민이 아닌 자국출생 18세 이상자. - 자국민 부부사이의 외국출생 18세 이상 자녀.		
	By Naturalization	- 2년간 계속하여 자국거주/정규적인 직장 가진 자등 여타 조건 충족시.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반국가 행위자. - 테러리스트 등.		

Philippines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the Philippines(1987.2.2)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 출생지 불문. - 자국민 모의 1973.1.17일 이전 출생자녀, 21세 되면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국내 10년 이상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Poland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ct (1962.2.15)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불문.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고, 다른 쪽이 불명일 때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국 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강제적인 국적상실을 금지하고 있다.		

Portugal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Law (1981)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 출생지 불문.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하여 3년이 지난 외국인. - 자국민에 입양된 외국인.		
	By Naturalization	- 21세이상, 폴투칼어 사용국자는 6년, 기타국 출신자는 10년이상 자국거주 등의 자료 기 타 요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21세 때, 공식적으로 자국국적 유지를 원한다고 표명치 않을 때.		

Qatar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w#2/Law#19/Law#17 (1961/1963/1966)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신청 전 20년간 합법적인 자국 거주자. - 다른 아랍국 국적자는 15년 거주 로 기타 요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자국과 전쟁하고 있는 상대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		

Roman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허 용	
		근거법 제정일 Law 21 (1991)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 출생국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3년 자국거주.		
	By Naturalization	- 5년이상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근거자료 불명.		

Russian Federation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허 용	1. 러시아 국민은 러시아와의 상호조약을 맺은 외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근거법 제정일 Law of Citizenship (1992.2.6)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고 다른 쪽이 무국적인 자의 자녀는, 출생지 불문 가능.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불문.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고 다른 쪽이 외국인일 때, 출생지 불문하고 부모의 서면 동의로 가능.		
	By Registration	- 자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직접적인 선조가 자국민일 때.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며, 출생시 외국적 취득자는 18세 후 5년 내에 국적등록 가능. - 과거 러시아연방 국적자는 18세 이후 5년에 등록 가능.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으로, 총 5년이상 자국에 영주 한자 신청 가능.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근거자료 불명.		

Rwand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출생 자녀는 18세까지 허용.
		근거법 제정일 Code of Rwandese Nationality(1963.9.28)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불문.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고, 다른 쪽이 불명일 때.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0년 이상 자국 거주 국익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		

St. Luc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허 용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ct of St. Lucia(1979.6.5)		
부여조건	By Birth	- UKC(United Kingdom and Colonies)국적자로, 1979.2.22이전 자국내 출생자. - 1979.2.22 이후 자국내 출생자는, 부모국적 불문. (외교관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으로 독립 전후 해외출생자는 독립당시 신청 가능. - 독립당시,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신청 전 8년간 자국내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거짓으로 귀화한 한자. - 반정부 행위자.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허용	1. 자국민의 해외출생 자녀로, 출생지 국적 소유자. 2. 외국인 부모의 자국내 출생자녀. 3.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민. 4. 귀화인.
		근거법 제정일				
		Saint Vincent Constitution(1979.10.27)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국적 불문, (외교관 자녀는 제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외국출생 자녀, 혹은18세 이하의 입양아.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 자국내에 7년이상 거주한 영연방 국적자. - 과거 자국적을 포기한 자. - 자국민에 입양된 21세 이하의 자.				
	By Naturalization	- 위와 동일.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18세 이상)				
	Involuntary	- 거짓으로 귀화한 자. - 반국가행위자. - 외국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Samoa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결혼으로 비자발적으로 외국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ct(1972.8.9)				
부여조건	By Birth	- 1972.8.9일 이후 자국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1972.8.9일 이후 자국내 출생자. - 모가 자국민인 1972.8.9일 이후 결혼 외 외국출생자.				
	By Registration	- 3년 이상 자국에 거주한 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By Naturalization	- 자국 내 5년이상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외국군대 입대자. - 외국여권 사용자. - 외국적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 - 외국에 출생명서한 자. - 외국에 계속하여 6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이사 없는 자. - 거짓으로 귀화한 자.				
Sao Tome and Principe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타		
	적	Citizenship			불허	
		근거법 제정일				
		Law of Nationality (1990.9.13)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자국 출생자.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해외 출생자. (부모가 자국민으로 등록해야 가능)				
	By Marriage	- 자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 외국군대 입대자. - 귀화자로 자국 습관 습득에 실패한 자. - 반국가 행위자.				
Saudi Arabia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여성은 상대국이 이중국적 불허하지 않은 한 자국적 유지 가능.
		근거법				
		Saudi Nationality Law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결혼한 부가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불문. - 자국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결혼 외 출생자는 모의 국적 취득 가능. - 자국 모와 불명의 부 사이의 결혼 외 자국출생자 가능.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5년 이상 거주 외국여성 등록 가능.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남성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거짓으로 귀화한 자.				

Senegal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de of Nationality(1960/1989)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새 국적 취득이유로 개인의 국적을 변경치 않음.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자국 부의 자녀, 출생지 불문. - 자국모와 불명 부의 자녀,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영주권 및 귀화를 통한 국적 취득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반국가 행위자.		

Seychelles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of Seychelles Act(1976.6.29)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자국출생 국적자로 경제적인 것 등 정당한 이유로 외국국적 취득한자. 2.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비자발 적인 외국국적 취득.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결혼 부부사이에서 자국내 출생자.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불명인 결혼 외 자국출생 자녀.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귀화로 국적획득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전 국적포기 실패자나 새로운 국적 취득자. - 무등록으로 외국에 7년이상 거주한 자. - 거짓으로 귀화한 자.		

Sierra Leone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w of Citizenship (1961)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African 흑인계로, 1961.4.26일 이전 자국출생자며, UKC 국적자. - 부나 조부모 모두 자국출생자가 아닌 자의 1961.4.26일 이전 자국출생자는 불가.		
	By Descent	- 부나 조부가 African Negro계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 불문.		
	By Registration	- 부모 어느 한쪽이 African Negro계인 경우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근거자료 불명.		

Singapore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Singapore (1965.8.9)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출생자는 21세까지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1965.8.9일 이후 자국내 출생자. - 부가 자국민인 1965.8.9일 이후 외국 출생자 자녀.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자로 2년 이상 자국거주자 .		
	By Naturalization	- 21세 이상으로, 총 10년 이상 자국 거주자 중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21세 이상).		
	Involuntary	- 22세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 거짓으로 귀화한 자. - 귀화자로 5년 이상 외국거주자.		

Slovak Republic	국 적 적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National Council of the Slovak Republic Law(1993.1.19)	허 용	1. 외국적 취득한 자국민은 자기의 자 국적 보유 가능.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불문. - 자국민에 입양된 자.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내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외국정부의 결정에 의해 자국적 소유 영향 받지 않는다.		

Slovenia	국 적 적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ct(1991.6.25)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비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예외 조항 있음.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자국내 출생자. - 부모 불명이거나 비 국적자의 자국내 출생 자녀.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인 경우.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 타방 불명인 경우.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자로, 자국내 10년 이상 거주자 중에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18세 이상으로 외국거주자 / 병역의무 없는 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Involuntary	- 반정부활동 가담자나 음모자. - 자국의 이익에 반한 외국기관 종사자. - 잦은 범법자.		

Solomon Islands	국 적 적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Solomon Islands Independence Order (1978.7.7)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비상주 국적자로 이중국적자는 2년 간 소유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1978.7.7일 이후 출생자,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료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이중국적 제한 규정에 의함.		

South Africa	국 적 적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South African Citizenship Act(1995.10.6)	허 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적자 가능. - 부모 어느 한쪽이 자녀출생시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자녀 가능. - 1995.10.6일 이전 혼외 자녀로, 출생시 모가 자국민을 때 가능.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의, 외국출생자녀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미성년자. - 합법적인 영주권자. - 1년 이상 계속 자국내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허가 없이 외국적 취득자. - 귀화자로 7년 이상 외국거주자. - 자국과 전쟁 중인 외국군대 종사자.		

Somalia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불 명	
		근거법 제정일		
		불 명		
부여조건	By Birth	- 불 명		
	By Descent	- 불 명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불 명		
국적상실	Voluntary	- 불 명		
	Involuntary	- 불 명		

Spain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원칙적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이중국적협약 체결국 ; Bolivia, Chile, Ecuador, Costa Rica, Guatemala, Nicaragua, Paraguay, Peru, Dominican Republic, Argentina, Honduras.
		근거법 제정일		
		Spanish Citizenship Law (1995)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경우, 출생지 불문. - 부모 어느 한쪽이 스페인 출생인 비 자국적자의 자국내 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0년 이상 자국내 거주 일반외국인. - 전 Portugal, Philippines, South American 국적자는 2년 이상 자국내 거주 필요. - 자국내 출생자, 자국민과 결혼한 자,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의 외국출생 자녀 등은 1년 거주.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이중국적 협약 없는 나라의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		

Sri Lanka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적	Citizenship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자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중국적제 입법.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ct of Sri Lanka (1987)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1972/5/22일 이전 출생자> - 부, 친조부, 친 증조부가 자국태생인자의 결혼으로 인한 자녀, 출생지 불문. - 모, 외조부, 외 증조부가 자국적자의 혼외 자녀. <1972/5.22 이후 출생자> - 부가 자국민인 결혼에 의한 자녀,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인 혼외 자녀, (외국출생자는 1년 내에 관계기관에 등록 필요.)		
	By Registration	- 22세 이상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By Naturalization	- 자료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한 자. - 거짓 귀화자. - 외국정부에 충성을 맹세한 자.		

Sudan	국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적	Citizenship	불 허	
		근거법 제정일		
		Sudanese Nationality #22, #55, #47(1957, 1970/1972)		
부여조건	By Birth	<1957.1.1일 이전 출생자> - 부모가 자국영주자인 자국내 출생자. <1957.1.1 이후 출생자> - 자국내 출생자에게 자동적으로 국적부여 불가.		
	By Descent	<1957.1.1일 이전 출생자> - 부나 친조부가 1924년 이래 자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 <1957.1.1 이후 출생자> - 자국출생 자국민 부의 자녀, 출생지 불문. - 부가 귀화인인 자녀, 출생지 불문. (자녀 출생전 귀화 필요)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으로 여타 조건 충족자.		
	By Naturalization	- 법적으로 성인으로, 자국에 10이상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새로운 국적 취득자. - 거짓으로 귀화한 자. - 등록 없이, 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귀화자.		

Swaziland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자료 불명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불문.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이나 자국민에 입양된 자 등록으로 국적 취득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내 거주자로 자국발전에 기여한 자. - 자국민을 고용, 자국에서 사업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전 국적취소 실패자. - 자국민과의 파혼한 외국여성. - 중대 범죄자.		

Sweden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Swedish Nationality Law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결혼에 의한 자녀,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이고, 부가 불명인 혼외 자,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 자국내 5년 이상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이중국적제에 해당되지 않는 자발적인 외국적 취득자.		

Switzerland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Swiss Citizenship Law (1990)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인 결혼부부의 자녀,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인 혼외자, 출생지 불문. - 자국민 부모의 외국출생자녀는 22세 이전에 등록 필요.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총 12년간 거주자로, 신청 전 5년 중 3년간 계속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18세 이상)		
	Involuntary	- 별도 규정 없음.		

Syria	국 적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규정 부재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 부 불명인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자국 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료 부재.		

Taiwan (Republic of China)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불 허	기 타
	적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Law of the Republic of China(1929.2.5)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출생당시 부가 자국민.(출생 전 부 사망해도 무방) - 모가 자국민, 부 불명인 자. - 자국민 부와 외국여성간의 혼외 자.		
	By Marriage	- 자국민의 외국인 처.(그녀의 모국국적 유지의무 있을 때 제외)		
	By Naturalization	- 20세이상 5년 이상 자국내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20세 이상자의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 적령자로 군대의무를 필하지 않은자. - 군대복무자. - 군대나 민간기관 종사자.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 결혼에 의해 외국적 취득한 자국여성, 파혼하거나, 독신이 된 경우 국적회복 가능.		
Tajikistan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불 명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불 명
	적	근거법 제정일 불 명		
부여조건	By Birth	- 불 명.		
	By Descent	- 불 명.		
	By Marriage	- 불 명.		
	By Naturalization	- 불 명.		
국적상실	Voluntary	- 불 명.		
	Involuntary	- 불 명.		
Tanzania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불 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외국출생자 21세까지 허용. 2. 외국인과 결혼한 자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상대국의 국적취득시 허용.
	적	근거법 제정일 Tanzanian Citizenship Act(1995.10)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1961.12.9일 이전 출생자〉 - 자국내에 거주하고 UKC국적자나 British Protected Person(BPP)국적자로,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내 출생자. - 외국출생의 UKC나 BPP 국적자로 그의 부가 자국적 자격자. 〈1961.12.9일 이후 출생자〉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자국 출생자. - 부가 자국민인 외국출생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등록 가능.		
	By Naturalization	- 21세 이상으로 5년이상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21세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Thailand	국	국적 형태 Citizenship	이 중 국적 제 불 허 (예외규정 있음)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1. 외국출생 자녀, 18세까지 허용. 2. 외국인과 결혼 상대국적 취득한 자 국여성, 파혼이나, 사망 등으로 결혼이 종식될 때, 다시 타이국적 회복 가능. 이것은 자국여성 보호를 위한 비공식 이중국적허용이다.
	적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Act (1965)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결혼부부 자녀,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 부 불명인 혼외 자,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내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Togo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불 명	허 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 모가 자국민, 부 불명이면,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등록 가능.		
	By Naturalization	- 자국내 5년 이상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불 명.		

Tong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Act (1988)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인 자국내 출생자. - 부가 자국출생인 외국 출생자. - 모가 자국민인 혼외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결혼 12개월 후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 자. - 거짓 귀화자.		

Trinidad and Tobago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Act (1962.8.30)	허 용	1. 1988.7.29일부터, 출생이나 세습 국적자는 이중국적 허용. (이중국적은 귀화자나 등록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있다)
부여조건	By Birth	- 1962.8.30이후 자국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1962.8.30일 이후 외국 출생자.		
	By Registration	- 영연방, Ireland, BPP 국적자와 외국인의 자국적 부인으로 여타 조건 충족자. - 1962.8.30일 이전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으로 현재까지 결혼 유지되는 자.		
	By Naturalization	- 8년이상 자국내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거짓으로 귀화한 자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 - 종전 국적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		

Tunisia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de of Nationality (1956.1.26)	허 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이면, 출생지 불문. - 자국적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 부의 요청으로 가능. - 모가 자국민, 부 불명,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결혼에 의한 자국적 포기를 요구하는 외국여성은 자국남성과의 결혼때 국적 취득 가능. - 국적포기 요구치 않은 외국여성, 2년 내 자국적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범죄자. - 군대의무 기피자. - 거짓으로 귀화한 자.		

Turkey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Turkish Citizenship Law (1964)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자,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자.		

Turkmenistan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불명		
			불명	불명
부여조건	By Birth	- 불명.		
	By Descent	- 불명.		
	By Marriage	- 불명.		
	By Naturalization	- 불명.		
국적상실	Voluntary	- 불명.		
	Involuntary	- 불명.		

Tuvalu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Tuvalu Ordinance(1986.9.15)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1986.9.15일 이후 자국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외교관 자녀 제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1986.9.15일 이후 출생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자료 부재.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료 부재.		

Uganda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of Uganda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자국민의 외국출생자녀, 18세까지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으로, 1962.10.9일 이후 자국 출생자. - 부가 자국민인, 1962.10.9일 이후 외국 출생자.		
	By Registration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자료 부재.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한 자.		

Ukraine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불 허	
		근거법 1991 Statute on Citizenship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자국 출생자.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으로 자국에 영주하는 자의 외국출생 자녀.		
	By Registration	- 자국민에 입양된 자. - 다른 나라의 국적이 없고, 부모나 조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 출생인 자.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 거주하고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외국의 군대, 안보기관, 사법부, 여타 국가기관 종사자.		

United Arab Emirates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불 허	
		근거법 제정일 Nationality Law (1972.1.1)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1972.1.1일 이후 출생자. - 부가 자국민인 자, 출생국 불문. (혼외 자일 경우, 부의 부의 신고로 가능) - 모가 자국민, 부 불명의 경우, 출생국 불문.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여타 조건 충족시. - 자국민의 외국인 남편은 불가.		
	By Naturalization	- Qatar, Oman, Bahrain 국적자는 자국내 3년 거주. - Arab계 국적자는 자국내 7년 거주. - 여타 국적자 30년 이상 자국 거주. (이중 20년은 1972년1월1일 이후)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거짓으로 국적 취득자. - 국가 범죄자. - 4년 이상 국외거주자. -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 자.		

United Kingdom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	국 적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허 용	
		근거법 제정일 British Nationality Act of 1984		
부여조건	By Birth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거나, UK에 정착자의 자국내 출생 자녀. - 부모 불명인 자국내 출생자.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인 자국내 출생자. - 연방을 위해 일하는 자국민의 해외 출생 자녀. - 자국과 가족적인 특별관계를 가진 자의 자국 이외 출생자. - 자국의 재판으로 입양이 허가된 자. - 자국민으로 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된 자.		
	Special Categories	- 자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신청전 12개월 간 계속 거주한 자 중 다음 조건 충족자 국적 신청 가능. (British Overseas Citizen, British Subject, British Protected Person, British Dependent Territory Citizen)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내 거주자 - 자국민과 결혼자는 신청 전 3년간 자국 거주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료 부재.		

Uruguay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Constitution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허용	1. 귀화자는 이중국적 불가.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의 외국출생 자녀 가능.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으로 3년이상 자국거주 자 중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귀화자 등의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 - 반정부 행위자.		

Uzbekistan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Citizenship Law		
			불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불문.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이고, 다른 쪽이 무국적일 때 출생지 불문.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료 불명.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자. - 외국권력 기관 종사자. - 5년 이상, 신고 없이 외국 거주자. - 거짓으로 국적취득한 자.		

Vanuatu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onstitution (1983.7.30)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폴란드 법률은 자국민의 외국국적 취득을 금지하는 하지 않으나, 다만 자국은 폴란드국적만을 인정한다.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거주 외국인 부부간의 자녀, 출생지 불문.		
	By Descent	- 부모 쌍방이 자국민일 경우, 출생지 불문. - 부가 자국민이고, 모가 외국인일 경우, 출생지 불문. - 자국민 모와 외국인 부의 자녀는 부의 국적 취득하나, 18세 이전까지 자국 국적 취득 가능.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자동적으로 국적신청 가능.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남성은 10년 거주후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10년이상 합법적 자국 거주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자.		

Venezuela	국 적 법	국적 형태	이 중 국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거법 Constitution of Venezuela		
			불허 (예외규정 있음)	1. 25세까지 이중국적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부모 국적 불문.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 자국민의 외국 출생자녀로 여타 조건 충족자.		
	By Marriage			
국적상실	By Naturalization	- 5년 이상 자국내 거주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 - 근래 귀화한 외국인 미성년 자녀.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한 자.		

Vietnam	국 적 법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Law of Vietnam Nationality (1988.7.15)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일방이 자국적자, 출생국 불문. - 부모 일방 자국적, 타방 무국적, 출생국 불문. - 부모 일방 자국적, 타방 외국인 사이의 자국출생 자녀.		
	By Marriage			
	By Naturalization	- 18세 이상자로 여타 조건 충족자.		
국적상실	Voluntary	-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는 한, 자발적 시민권 포기는 불허.		
	Involuntary	- 외국에 거주하며, 자국의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		

Yemen	국 적 법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거법 제정일 Citizenship Law (1975)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가 자국민일 경우, 출생국 불문. - 모 자국민, 부 불명인 자국 출생자.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결혼 2년 후 신청 가능.		
	By Naturalization	- 자국내 10년 이상 거주 모슬림으로 여타 조건 충족자. - 5년 이상 자국 거주자로, 자국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세 국적 취득자. - 범죄행위를 귀화자. - 승인 없이, 외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귀화자.		

Zambia	국 적 법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예외규정(이중국적 인정)
		Citizenship 근 거 법 Constitution	불 허 (예외규정 있음)	1. 외국출생자녀는 22세까지 허용.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By Descent	- 부모 어느 한쪽이 자국민일 때, 출생국 불문.		
	By Registration	- 10년 이상 자국거주, 21세 이상인자 중 여타 조건 구비자.		
	By Naturalization	- 불 명.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결혼 이외, 자발적으로 외국적 취득한 자.		

Zimbabwe	국 적 법	국 적 형 태	이 중 국 적 제	기 타
		Citizenship 근 거 법 Constitution of Zimbabwe	불 허	
부여조건	By Birth	- 자국 내 출생자 자동적 국적획득 불가.		
	By Descent	- 부모 일방 자국민이면, 출생국 불문. - 모가 자국민인 혼외 자, 출생국 불문.		
	By Registration	- 자국민에 입양된 자는 등록에 의해 가능. - 외국출생 자국민 자녀는 자국 공관 등록 필요.		
	By Marriage	- 자국민과 결혼한 사람은 신청 필요.		
	By Naturalization	- 자국에 필요한 기술 가진 자. - 부모와 거주 국적자와 친척관계. - 자국에 투자코자 하는 자.		
국적상실	Voluntary	- 자발적 시민권포기는 법에 의해 허용.		
	Involuntary	- 자발적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 - 등록에 의한 자국적 취득자는 7년간 계속 자국을 떠나 있을 경우.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Investigations Services, Citizenship Laws of the World (March 2001) 등을 중심으로 제작성.

논 단

‘다시 멜팅 팻(Melting Pot)으로!’ - 송태희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애국’ 모델 - 王敏

포커스

‘무슬림동포단’의 변천 - 후삼 탐맘

민족학

카자흐스탄민족들의 민족적 자각 - 압사달로프

기획연재

근대 문학과 민족 기표들 - 여태천





다시 멜팅 팻(Melting Pot)으로!

- 미국 네오콘의 민족정책

송 태 희 (경인방송 기자)

신보수주의자들의 민족정책은?

최근, '양극화', '정체성', '세대 대결'에 대한 논쟁은 가히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s)들이 주장하는 민족정책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탈냉전 이후, 특히 9. 11테러 이후 미국의 정체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단초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네오콘을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미국 외교 강경파로 해석한다. 하지만,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하고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5,60년대 학생운동, 다문화주의자들과의 대결을 통해 형성되었다.

현재 미국의 정치권은 물론 학계, 법조, 언론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탈냉전 이후, 특히 9. 11 테러 이후, 흔들리는 미국의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정치의 특징을 다양성과 양당제, 백인(WAPS)를 꼽는다. 미국의 다양한 인종 배경 속에서 나오는 다양성은 곧 미국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즉, 건국초기부터 다양한 이민자의 나라였던 미국은 스스로를 백인중심의 사회로 생각했다. 하지만 앵글로 색슨 중심의 일체화는 다양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용광로(melting pot)론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서 미국인(American)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로 발전한다. 하지만 다양한 정체성을 녹여 새로운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는 논리는 종교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현실적인 수정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이다. 다양한 인종의 조화적 공존은 이른바 샐러드 볼(salad bowl)론으로 불리운다.¹⁾ 이러한 문화적 다원주의는 1950년대 이후, 흑인 민권 운동과 여성 운동과 결합하고, 현실적으로 아시아계, 라틴 아

1) 조정남,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서울, 교양사, 2002, pp.239-241

메리카계 이민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다원론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으로 발전한다. 즉, 문화적 다원성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마이너리티에 대한 사회, 교육, 정치적 발언권이 확대된 것이다. 물론, 다문화주의를 에스닉의 문제로 국한 할 수는 없다. 다문화주의는 에스닉 문제는 물론 페미니즘, 차별 금지 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다문화주의 태동과 전개에서 흑인 민권 운동과 에스닉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의 민족정책은 이러한 다문화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신보수주의자들 또한 한때는 다문화주의 태동과 관련있는 60년대 미국 학생운동의 장에서 활동하였는 점을 상기하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제기한 문제 즉,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민족 정책이 무엇이나는 질문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보수주의자들은 '다시 멜팅 팻'으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새로운 아메리카인(New Amerian)이 신보수주의자들이 9. 11 이후 미국의 정체성으로 내놓고 있는 대안이다. 이들은 '다시 멜팅 팻으로'를 정책적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화당이 '다시 멜팅 팻으로'를 선거전략으로 택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개념과 분석 대상

신보수주의자들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며, 원래 좌파였지만 구소련에 반대하고, 60년대 베트남전 이후, 지나친 학생운동에 염증을 느끼고 우파로 전향한 일단의 미국 지식인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W. 부시 행정부내에서 활약하기도 하고, 싱크탱크와 정기 잡지를 통한 지식인으로 활약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이었으며, 레이건 추종파(Reaganites)이었으며, 학생운동가들이었다. 네오콘은 미국이 테러를 없앨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며, 비민주국가에게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현실정치에서 뿐만아니라 도덕적 차원에까지 정당하다고 믿고 있다.²⁾

신보수주의자들은 현재 외교정책, 교육, 법학 등 미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로운 세력(new breed)이라고 할 수 있다. W. 부시 대통령 집권 이후, 외교정책에서 신보수주의 세력의 활동이 부각되었으나 기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은 외교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신보수주의, 신보수주의자들을 개념화할 때는 다양한 수준(level)에서

2) John F Copper, 'Classical Liberalism as Modern Liberalism', Vital Speeches of the Day, New York, Oct 15, 2003. Vol. 70, Iss1. (검색엔진 <http://proquest.umi.com>)

검토가 필요하다.

첫 번째 수준은 W.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른바 네오콘(Neocons)이라고 하는 외교적 신보수주의 세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준은 이념적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신보수주의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와의 개념 속에서 보다 폭 넓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신보수주의는 대처류의 신보수주의,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와 가깝다.

세 번째 수준은 이념적 수준에서 신보수주의적 정향을 따르는 이들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에 보면, 신보수주의는 단순히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는 일련의 강경 외교론자들을 넘어, 미국의 교육, 법조, 사상가들로 확장된다.

이번 글의 목표는 신보수주의자들의 민족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기존 이념의 민족정책 즉, 자유주의자들의 다문화주의와 대결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를 세 번째 수준, 즉, 이념적 수준에서 신보수주의적 정향을 따르는 이들로 폭넓게 보기로 한다. 물론 이는 첫 번째 수준, 즉 미국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네오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글의 분석 대상은 신보수주의는 미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신보수주의는 미국 자유주의 흐름과 그 안의 다문화주의와 대결속에서 미국의 정체성을 형성에 나갔다.

이글에서는 신보수주의를 특징짓는

민족정책, '다시 맬팅 팻으로' 를 AEI(미국기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등의 싱크 탱크 중심의 학자들, 또한 위클리 스탠다드(Weekly Standard), 퍼블릭 인터레스트(Public Interest), 네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등의 정기 잡지에서 활약하는 이들과 그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문화주의 vs 신보수주의

다문화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반발

대공황시기,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커다란 위기를 맞는다.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했다. 케인즈의 사상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했다. 또한 2차대전을 겪으면서, 자유주의는 큰 정부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보수주의는 이러한 변화를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케인즈에 맞선 하이에크(F. Hayek)는 큰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신보수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상적 친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보수주의가 된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 자유주의의 간극이 크게 벌어진다. 현대 자유주의와 친화성을 갖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노동조합, 환경운동가의 지지를 받

았다. 자유무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이들도 민주당 지지세력이었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학생들은 60년대 벌어진 소수인종 차별 철폐와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결과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주당은 냉전을 고착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은 냉전을 고착된 것으로 보지 않고,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며,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을 지킬 수 있는 일명, 스타워즈 계획 SDI (Strategic



과거 대학 교육을 통해 최정상에서 인종을 융합시켜주던 공동의 원천이 오염돼 버렸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정당한 것으로 믿는 백인 학생들은 아무도 없다. 적어도 대학에 있어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미국의 인종 관계를 악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 같다.

action, 소수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성과를 얻기도 한다. 한편, 자유주의 좌파 성향의 학생들은 대학내, 대학간 연대를 강화하며,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또 졸업후, 교육계, 언론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다문화주의의 확산을 주도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 확산으로 교육학과 문학 분야에서는 이른바, '드웜(DWEM, Dead White European Males)'³⁾, 소수인종, 흑인들의 문학 작품들이 교과서에 등장한다. 이들 다문화주의자들의 정치적 대변자는 고립주의와 반전운동을 내건 민주당이었다. 당시 민

Defense Initiative)을 수립한다. 레이건은 미국이 악의 제국을 물리치고, 작은 정부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⁴⁾

6~70년대 자유주의 좌파 운동가들 중에 이러한 레이건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전향한 이들이 바로 네오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이들은 독일계 유대인 학자 그룹이었다. 레오 스트라우스(Reo Strausse), 알렌 블룸(Allen Bloom)은 다문화주의가 미국의 건전한 정신을 해치고 있다며, 고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3)을 보수주의자들과 다문화주의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극렬하게 대립했던 것이 바로 '드웜(DWEM, Dead White European Males)이다. 드웜은 미국 교과서에 그 작품이 실렸던 '이미 세상을 떠난, 유럽의 백인 남성 작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작가중에는 주홍글씨의 나다니얼 호손, 세계 3대 단편 작가라고 불리는, 에드거 앨런 포우, 톰 소여의 모험의 마크 트웨인 등이다. 20세기 작가로는 노인과 바다의 어네스트 헤밍웨이, 분노의 포도의 존 스타인벡 등이다. 미국의 다문화주의자들은 과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주로 '드웜'의 작품만 다들어서 문화의 다양성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비판한다. 다문화주의자들은 '드웜' 대신 '르웜(LWEM, Living White European Males)의 작품들이 교과서에 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르웜'은 '살아 있거나 최근 사망한 유럽의 백인 작가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칼 마르크스,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 피랑스 해체주의자 자크 데리다,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 등이 속한다. '르웜'의 면면을 보면, 좌파 성향의 후기 구조주의자 내지는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어지는 작가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문화주의자들 중에는 '르웜' 작가들도 백인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흑인, 여성, 소수민족 작가의 작품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4) John F. Copper의 앞의 글.

신보수주의의 역습

서양 백인 문명과 그 고전의 우월성을 옹호하는 블룸은,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소수인종, 그룹 우대 정책)⁵⁾에 의한 흑인 입학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블룸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해 입학한 흑인 학생들의 자질이 떨어지고,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가 흑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흑인을 고립시킬 것이라며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뒤에서 살펴볼 신보수주의자의 '다시 맬팅 팟으로'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블룸은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흑인의 대학 입학은 용이해졌지만, 이것으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의 구별은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블룸은 이러한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인과 백인의 융화를 가로막는 악법으로 파악한다. 즉, 분리주의의 원흉이 된다. 또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비판은 이후 90년대와 2000년대 신보수주의자들 다문화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과거 대학 교육을 통해 최정상에서 인종을 융합시켜주던 공동의 원천이 오염돼 버렸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정당한 것으로 믿는 백인 학생들은 아무도 없다. 적어도 대학에 있어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미국의 인종 관계를 악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 같다.⁶⁾

R. 번스타인(Richard Bernstein)은 다문화주의의 정치성에 주목하고 이를 비판한다. 즉,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야망과 권력추구를 문화의 이름으로 감추고 있다고 본다. 그는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이른바 1960년대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상향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환상의 세계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문화주의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 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비판적이면 곧 인종차별주의자나 성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히거나 협조한다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문화주의를 비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번스타인

5) 미국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차별을 받아 온 흑인을 비롯한 여러 소수인종집단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연방정부의 시책과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차별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우대조치이다.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수 인종, 그룹 우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후에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관공서와 민간기업에 이들 여러 집단의 일원을 일정비율로 고용한다든가,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의 입학정원 일부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되어 온 차별의 해소가 단순히 법의 이름으로 평등과 기회균등을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편, 잘못된 우대조치이며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 역차별이라는 것이 신보수주의의 주요한 논리가 되고 있다. 또 앞서 블룸의 저서에서 살펴 본 것처럼, 흑인의 고립을 더욱 자초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6) 'Allan Bloom,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Simon & Schuster, 1987. 알렌 블룸, 이원희 역, "미국 정신의 종말", 서울 범양출판사, 1989, pp. 106-108 블룸은 다문화주의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철학적 해답까지 내놓고 있다. 즉, 다문화주의는 상대주의적 전통에서 있는데, 그러한 입장으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좌파는 맑스와 니체의 철학적 전통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변종에 지나지 않다고 일갈한다. 블룸은 1983년부터 미국 고등학교의 위기에 대하여 저서를 집필하기로 하고 1987년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를 출판했다. 당시, 레이건의 신보수주의 노선과 맞물려, 발간 이듬해까지 8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은 다문화주의자들은 차이와 다양성의 포용을 무기로 삼아, 자신들에 대한 비판자들을 수세에 몰아넣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⁷⁾

J. 하이엄(Higham)은 20세기 서양사가 차별과 평등의 긴장 관계속에서 발전해왔는데, 다문화주의자들은 인종과 성의 문화적 차이에만 관심을 두고, 계층간 불평등과 실질적인 충돌에는 무관심해, 사회구조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한다.⁸⁾ 이러한 8, 90년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은 다문화주의 사회적, 정치적 성장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르러서는 다문화주의가 보수주의에 대해 정치적 수준에서도 도전하고 있다는 진단하에, 신보주의의 공세가 이어진다.

M. 울핀(Wolpin)은 다문화주의가 자유주의와 결합해 기존 보수주의에 정치적 도전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파악하고, 이러한 도전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미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울핀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맑시스트와 결합해, 사회적 정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등을 매개로 자유주의 개념 안에 끼어 들어 왔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여성, 소수민족이라는 개념에

계급문제까지 결부시킨 것이다. 울핀은 나아가 다문화주의가 리버럴리즘의 상징을 획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권력을 획득하려는 호전적(militant) 개념,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문화주의는 기존 전통적인 미국문화를 공격해 권력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⁹⁾ 울핀은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로-아메리칸 가치-범에의한 지배, 근면, 가족의 통합성, 개인의 책임성, 종교적 신념 등이 다문화주의에 의해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고 본다. 다문화주의는 각종 캠페인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대중 매체를 통해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부수고 있다며 비판한다. 울핀은 만약 미국이 이러한 다문화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언젠가 발칸 반도처럼 인종적으로 갈리고 서로 싸우는 상황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타낸다.¹⁰⁾

다시 멜팅 팻으로

미국의 정체성 위기

전쟁은 국가의 정체성을 제정립하는 가장 큰 기제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9.

7) Richard Bernstein, 'Dictatorship of Virtue: Multiculturalism and the Battle for America's Future', New York, Knopf, 1994, pp. 3-11.

8) John Higham, 'Multiculturalism and Universalism: A history and Critique', American Quarterly, Vol. 45, No. 2, pp.195-198.

9) Miles D. Wolpin, 'Illusion vs. Perversity: 'Multiculturalism and Prospects for Democracy',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Spring 2000, Vol. 25, 1, pp. 80-81.

10) Miles D. Wolpin, 앞의 논문, pp. 94-95.

11이후 미국 또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S. 헌팅턴은 90년대 민주당 정부와 다문화주의의 결합이 미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한다.

헌팅턴은 자유주의자들과 대중이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헌팅턴은 미국의 엘리트는 다문화주의를 옹호하는 편이고, 대중들은 동화를 지지한다고 지적한다. 헌팅턴에 의하면 미국의 여론과 정부 정책의 일치도는 1970년도 75%에서 84-87년도 67% 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했고, 다문화주의가 비교적 폭넓게 받아들여진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93-94년도에는 37%까지 떨어졌다. 또한 91년 조사에서, 인종별로 정체성도 매우 큰 격차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즉, 자신이 우선시

했던 앵글로-프로테스탄트 문화의 부활을 의미했다. 김리카(Kymlicka)는 60년대 이전의 이민자들은 미국 건국 초기의 앵글로-프로테스탄트 문화에 동화되었다고 보았는데, 헌팅턴은 이시절의 동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헌팅턴은 미국의 종교적 특성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미국인은 비서구인과 크리스찬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종교성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세계를 선과 악으로 구별하게 한다. 또 미국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중요시하면서 국가를 자랑스러워한다.’¹²⁾ R. 켈벨(Roger Kimball)은 이러한 다문화주의자들로 에드워드 사이드, 노암 촘스키 등을 지목하고 이들이 미국



‘켈벨(Roger Kimball)은 이러한 다문화주의자들의 에드워드 사이드, 노암 촘스키 등을 지목하고 이들이 미국의 단일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한다.’

하는 민족정체성(the priority of one's national identity)은 어디냐는 질문에,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의 31%만이 미국이라고 답했고, 흑인은 25%, 히스패닉은 19%에 그쳤다고 한다.¹¹⁾ 이렇게 흔들리는 미국의 정체성을 지적한 헌팅턴은 그 해결책으로 미국 건국 당시 정체성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이는 60년대 이후 다문화주의자들의 활동에 의해 조심스러

의 단일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한다. 켈벨의 비난 대상은 다문화주의 학자들에게서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다문화주의를 옹호했던 매스 미디어도 비판 대상이다. 매스 미디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반부터 ‘우리가(미국이) 오만하고, 무책임’ 하며, 결국에는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마치 60년대 미국 자유주의 좌파들이 베트남전을 비난한 것

11) Samuel P. Huntington, ‘Dead Souls’ -The Denationalization of the American Elite’,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2004, pp. 10 -11.
12) 헌팅턴, 앞의 논문, p.18.

과 똑같다고 비판한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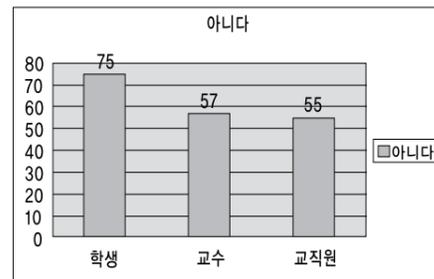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주장

이제 신보수주의자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극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60년대 흑인 민권 운동, 학생 운동의 산물이라고 본다면, 이를 폐지하자는 것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사상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정치화는 신보수주의가 제도정치의 공화당과 연계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97년 미시간 대학 입학이 불허된 백인 학생 3명의 소송¹⁴⁾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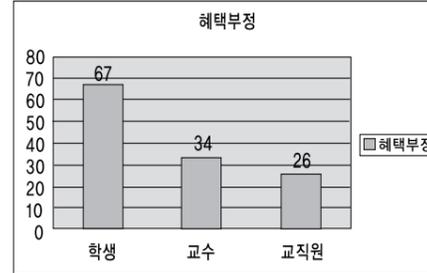
대중적으로 호소력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여론조사를 실시한 로스만(Stanley Rothman) 등은 회귀분석을 통해 학교의 인종 등이 다양할수록,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불만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흑인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입학허가에 대해 학생들에 비해 교수, 교직원들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R. 운즈(Unz)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하는 기준이 불명하다고 지적한다. 즉, 어퍼머티브 액션은 그냥, 흑인, 아시안, 히스패닉으로 구분하는 데, 이러한 광범위한 기준은 이들 안에서의 불평등을 무시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세밀하게 적

Q) 인종, 성이 입학과 취직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답변 비율¹⁶⁾



Q) 현재 기준을 더 완화해서라도 더 많은 소수 인종 그룹의 입학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13) Roger Kimball, Freedom and Duty,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2002, p. 85.

14) 97년 백인인 제니퍼 그레츠(Jennifer Gratz)와 페트릭 헤머처(Petrick Hamacher)는 미시건 대학 입학에 합격하지 못했다. 바바라 그루터(Barbara Grutter)도 법대입학이 좌절됐다. 그러자 이들 셋은 대학 입학 전형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해)이중으로 진행되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수정안 14조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미시건 대학은 흑인학생들에게 백인학생들보다 20점 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해, 어퍼머티브 액션의 정당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15) 위의 논문, pp. 31-35.

16) 로스만 등은 다문화주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통계적으로 접근했는데, 140개 대학, 4,083명을 전화설문을 통해 조사했다. 표본 집단의 구성은 학생 1천 643명, 교수 1천 632명, 교직원 808명 이었다. 위의 표 2개는 저자들이 서술한 결과를 도표로 재구성한 것이다. Stanley Rothman, Seymour Martin Lipset, Neil Nevitte, 'Racial diversity reconsidered', Public Interest, Washington, Spring 2003, Iss. 151 p. 25-30.

용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¹⁷⁾

G. 로리(Loury)는 피부색이 아닌 개인 능력차이에 따라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하며,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을 인용한다. 63년 킹의 유명한 연설 '나는 꿈꾼다(I have a dream)' 에는 '나는 나의 네 아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로리는 따라서 흑인이라고 피부색에 따라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며, 따라서 어퍼머티브 액션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M.바론(Barone)은 아시아인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 이상으로 우수 학교에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스스로 소수자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시아인들에게 어퍼머티브 액션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히스패닉에게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히스패닉계가 주로 레스토랑이나 할인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의 수혜를 덜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히스패닉들은 주요 대학 진출율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히스패닉들에게도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본

다.¹⁹⁾ 신보수주의자들은 또 어퍼머티브 액션이 인종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배경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부유한 흑인, 부유한 아시아인은 혜택을 받고, 가난한 백인은 혜택을 못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남부의 백인 노동자를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포섭하려는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공화당과의 선거전략과 맬팅 팻

최근 가난한 백인, 가난한 아시아인들이 민주당 지지에서 공화당지지로 선회하는 현상을 두고, 신보수주의자들은 어퍼머티브 액션과 같은 불합리한 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문화주의자들은 현상유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주의자들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유지하자는 현상을 지지하면서, 좌파계와 미디어가 중심이 되어 동화론을 공격한다. 그들은 동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동화론과 싸우고 있다. 제도 정치에서는 분열 양상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당원의 80%는 공립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좌파 활동가들, 다문화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주당 주류 생각에 반발하고 있다.

17) Ron Unz, 'The Right Way for Republicans to Handle Ethnicity in Politics', American Enterprize: Apr/May 2000, p. 34.

18) Glenn C Loury, 'Individualism before multiculturalism', Public Interest, Washington, Fall 1995, Iss 121, p 98-101.

19) Michael Barone, 'The New Americans: How the Melting Pot Can Work Again', Regnery Publishing inc. 2001. pp. 8-21.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들은 공화당과 연계한 자신들의 전략이 자유주의자들이 스스로 분열될 수도 있다고 본다.²⁰⁾

신보수주의자들이 멜팅 팻을 적극적인 아젠다로 삼는 계기는 부시와 고어간의 대선이었다. 유대인이며 신보수주의자인 바론은 고어가 미국의 정체성을 분열시키는 다문화주의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동화론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다. 바론은 지금까지 미국은 다양한 나라의 이민자들을 성공적으로 동화시켰다고 본다. 그러한 예로 미국 흑인들의 지위가 상승되고 있으며, 서구에서도 정체성이 유별났던,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유대인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뿔통'에 들어와 동화되었다고 본다.²¹⁾ 따라서 신보수주의자들은 '멜팅 팻'을 적극적인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운즈는 어퍼머티브 액션, 이민, 이중언어 교육 등은 최근 몇 년동안 미국 정치의 주요 문제였고, 공화당 후보들은 이것들에 대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선거를 분석했다. 예를 들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없애는 법안(187항),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안(209항), 이중언어 교육 해체(227항)은 모두 핫이슈 중에 핫이슈였지만, 공화당 후보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소수 인종에 대한 표가 달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후보들은 비껴나기 수법을 쓰곤 했다.

W.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말 대신 quato라는 말을 쓴다. 주지사 부시도 이중 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 programs)이라는 말 대신, 그저 그일(which work)라고 말한다.

공화당의 이러한 피하기 전략은 결국 더 큰 실패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이 신보수주의자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다른 대안은?" - 여기에 신보수주의자들은 자신있게 '다시 멜팅 팻으로' 라는 해답을 내놓는다. 즉, 공화당은 미국의 에스닉에 대한 문제 해결에 관한, 한 다시 멜팅 팻(A New American Melting Pot)을 최고의 목표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²⁾ 물론, 공화당이 멜팅 팻을 공식적으로 채택할 경우, 극렬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신보수주의자들은 멜팅 팻에 대한 큰 반대는 오히려 조용한 다수의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다시 멜팅 팻으로?'

'다시 멜팅 팻'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오늘날 동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더욱 성숙해졌다고 주장한다. 예

20) Unz, 앞의 글 p. 35.

21) Michael Barone, "The New Americans: How the Melting Pot Can Work Again", Regnery Publishing inc. 2001, pp. 4-10.

22) Unz 앞의 논문, p. 34-35.

를들어, 매스 미디어의 엄청난 발전은 영어와 영어권 문화를 어떤 곳에서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영어를 하지 못하거나,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민을 왔지만, 최근에는 이미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90%이상의 아시안, 히스패닉 3세는 집에서 완전히 영어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음 이민 와서 중산층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도 동화를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 합류하려면 적어도 몇 세대가 걸렸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태어났어도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바로 주류 사회에 합류한다. 최근에는 이민온지 30년 정도된 자들의 70%가 중산층에 합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력한 동화를 보여주는 것이 인종을 넘어선 혼혼(inter-marriage)이다. 60년대까지 유대인이나 이탈리아인들은 inter-marriage는 5%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대인, 이탈리아인,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인의 혼혼비율이 3분의 1에서 50%까지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동화의 경로에 대해서 M. 바론은 흥미로운 경로를 제시한다. 즉, 바론은 최근 제기되는 히스패닉과 아시아인들도 19세기말 20세기초의 아일랜드인, 이탈리아

인, 유대인과 비슷한 경로(three sets of parallel)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과거 미국의 어두운 곳에서 하층민이었던 아일랜드인의 성공을 오늘날 흑인이 경험할 것이며, 라틴노들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경로를 따라 갈 것이라고 본다. 아시아인은 유대인의 경로를 쫓아 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아시아인들은 높은 교육열과 성공에 대한 욕구가 유대인과 닮았고, 이미 미국사회에 잘 동화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하버드의 19% MIT의 28%, 스탠포드의 22%, 버클리의 39%가 아시안 계열학생이다. 바론은 하버드 대학에 재학하는 많은 아시아인들로 Cohen이 Chen으로 바뀌고 있다는 비유를 한다.²⁴⁾(Cohen은 유대인 이름으로 미국 명문대학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학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의 이름인 Chen을 미국 명문대에서 자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팻을 되살릴 수 있을까? 신보수주의자들은 교육기관과 공립학교가 동화의 강력한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을 꾀한다. 이민자들에게 영어, 미국의 역사, 전통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서, 그들이 폴란드인 후손이건, 이탈리아인 후손이건 모두 좋은 미국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널리 퍼지고 있는 교육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는 축소되어야 하고 미국의 가치나, 역사를 배우는 전통

23) Unz 앞의 글, p. 35.

24) M. Barone, 앞의 책 pp. 82-102.

교육의 부활의 확대를 주장한다.

M. 바론은 미국의 군대 모델(American military model)을 제시한다. 바론은 미국의 인종문제를 대학모델과 군대 모델로 나눈다. 대학모델은 어퍼머티브 액션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모델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최근 다시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에스닉 문제에 대해서 '다시 멜팅 팟으로' 라는 해답을 내놓고 있다. 이는 미국 정치의 특징을 다양성과 양당제, WASP 중심이라고 보았을 때, 다양성과 WASP의 관계를 강한 통합성으로 주



9. 11 이후 급격한 보수화를 겪고 있는 미국 사회가 '다시 멜팅 팟으로'를 택할지, 아니면 다양성을 포용할지, 다음 대통령 선거가 기다려진다. 왜냐하면, 미국의 에스닉 문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선거공학적인 측면을 띠고 있고, 이를 대표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역시, 에스닉 문제의 파괴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흑인 운동과 좌파 자유주의 운동의 결과로 생긴 대학모델은 인종별 쿼터를 입학에 적용했다. 그 결과, 흑인들은 혜택을 보는 반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아인은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 대학모델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미국 군대 모델은 인종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미국 군대는 흑인의 리더쉽과 인종 통합을 잘 이뤄 내고 있다. 미국 군인의 27%는 흑인이지만 그들은 때로는 백인에게 명령도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미국의 에스닉 문제는 아이비 리그식 모델이 아니라 군대식 모델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⁵⁾

아이비리그 모델에서 군대 모델로

최근 미국 정치 세력에서 부각되는 신

조하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또 가난한 백인과 흑인의 혜택에 반발감을 갖고 있는 아시아계와 히스패닉계를 지지자로 확보하려는 공화당의 선거전략이 숨어 있다.

신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멜팅 팟으로'를 외치기까지, 1960년대 이후 미국은 문화적 다원성 나아가 다문화주의로 다양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 여기에 블룸과 같은 보수적학자, 신보수주의의 정치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학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등과 같이, 일견 흑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에스닉의 분리를 확대시키고, 미국의 통합성을 해칠 것이라며, 다문화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그결과 다문화주의와 신보수주의와의 대결은 교육과 사회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25) Michael Barone, 'Racial preferences just died: What comes next?', The American Enterprise, Washington, Jan/Feb 1997, Vol.8, Iss 1, pp. 37-38.

이들의 영향을 받은 신보수주의자들은 다문화주의와의 대결을 정치영역으로 확장한다. 즉, 공화당으로 하여금 '다시 멜팅 팟으로' 정책을 취하도록 AI와 The National Interest, Public Interest 등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신보수주의자들은 단호하게, 미국의 에스닉과 다양성의 문제를 다문화주의를 존중하는 아이비 리그식(대학 모델식)이 아니라 군대모델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다문화주의자들은 최근, 그래도 60년대 이후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흑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반론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백인 거주 지역의 현직 흑인시장이 재선에 응할 경우, 민주당 계열의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인식에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또, 다문화주의자들은 신보수주의에 대항해, 과거 흑인 리더십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²⁷⁾

9. 11 이후 급격한 보수화를 겪고 있는 미국 사회가 '다시 멜팅 팟으로'를 택할지, 아니면 다양성을 포용할지, 다음 대통

령 선거가 기다려진다. 왜냐하면, 미국의 에스닉 문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선거공학적인 측면을 띠고 있고, 이를 대표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역시, 에스닉 문제의 파괴력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신보수의 이념의 승리하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신보수주의 이념의 승리가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국의 에스닉 문제의 동학이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26) 시민권 운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흑인들이 흑인 사회(black community)에서 선거를 통해 공직에 나서는 비율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백인 사회(white community)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 즉, 백인 사회에서 흑인이 시장을 맡고 있는 경우,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경험적 자료가 도출된다. 이 경우, 같은 백인이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백인 공화당원들 자신의 지역에서 다시 출마한 흑인 시장에 대한 태도 변화가 적고(반감이 여전히), 백인 민주당원들의 경우, 흑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백인 공화당원과 백인 민주당원의 흑인 리더십에 대한 인식 격차는 두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츠날은 1965년부터 1999년까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현직 흑인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경우를 데이터화해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 하츠날은 따라서 제한적이지만 미국에서 반흑인감정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Zoltan L. Hajnal, "White Residents, Black Incumbents, and a Declining Racial Divi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3 pp.603-617.

27) Debra J. Dickerson는 "The End of Blackness" (Pantheon, 2004)에서 미국의 흑인 운동이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그동안 미국흑인운동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말콤 엑스(Malcolm X), 프라지에르(E. Franklin Frazier) 등 모두 백인을 악으로, 나쁜 사람으로만 상대화했다고 보고, 이것이 흑인 운동의 한계였다고 지적한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을 옳다고 인식한다면 흑인만의 자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흑인운동 지도자의 세대교체를 주장한다.

〈참고 문헌〉

- 조정남,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서울, 교양사회, 2002
- 정상준, ‘포스트머더니즘, 실용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편
- “미국사회의 지적 흐름“, 1999년, 서울대학교 출판부
- Allan Bloom, “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Simon & Schuster, 1987.
- 알렌 블룸, 이원희 역, “미국 정신의 종말”, 서울 범양출판사, 1989
- John F Copper, ‘Classical Liberalism as Modern Liberalism’, Vital Speechs of the Day. New York, Oct 15, 2003. Vol. 70, Iss1.
- Richard Bernstein, “Dictatorship of Virtue: Multiculturalism and the Battle for America’s Future”, New York, Knopf, 1994,
- E.D. Hirsh,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Boston, Houghton, 1987
- John Higham, ‘Multiculturalism and Universalism: A history and Critique’, American Quarterly, Vol. 45, No. 2.
- Miles D. Wolpin, ‘Illusion vs. Perversity: “Multiculturalism and Prospects for Democracy’,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Spring 2000, Vol. 25
- Samuel P. Huntington, ‘Dead Souls’ - The Denationalization of the American Elite’,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2004
- Roger Kimball, Freedom and Duty,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2002
- Stanley Rothman, Seymour Martin Lipset, Neil Nevitte, ‘ Racial diversity reconsidered’ , Public Interest, Washington, Spring 2003, Iss. 151
- Ron Unz, ‘The Right Way for Republicans to Handle Ethnicity in Politics’ , American Enterprize: Apr/May 2000,
- Glenn C Loury, ‘Individualism before multiculturalism’, Public Interest, Washington, Fall 1995, Iss 121
- Michael Barone, “The New Americans: How the Melting Pot Can Work Again”, Regnery Publishing inc. 2001
- Michael Barone, ‘No, it’s not the American way’, U.S News & World Report, Washington, May 17, 2004, Vol. 136, Iss. 17,
- Stanley Rothman, Seymour Martin Lipset, Neil Nevitte, ‘Racial diversity reconsidered’, Public Interest, Washington, Spring 2003, Iss. 151
- Debra J. Dickerson, “ The End of Blackness”, Pamtheon, 2004
- Zoltan L. Hajnal, White Residents, ‘Black Incumbents, and a Declining Racial Divid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5. No. 3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애국' 모델

王敏 (일본 법정대학 교수)

미국 프로농구협회(NBA)의 휴스턴 로켓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국인 선수姚明은 2002년, 트래프트 1위로 NBA에 들어가, 루키시즌에서 올스타로 선발됐다. 2005년의 올스타에서는 마이클 조단을 제치고 역대최고득표로 선출된 슈퍼 스타다. 2005년 봄, 이姚明선수에 대해 중국내에서 한 차례의 논의가 진행됐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매년 5월1일 메이데이, '노동모범'을 표창하고 있다. 각 성, 각 지역, 각 직장에서 선발, 최후로 전국노동모범으로, 금년도 중국 전역에서 3천명을 표창했다. 그 주요한 선발의 기준 하나가 '애국주의정신'이다. 즉 애국적인 인물 밖에 선발될 수 없는 것이다.



요명선수가 노동모범의 후보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해,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아니라 미국의 상업조직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과연 애국적인 활동인가, 라는 비판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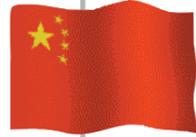
어났다. 이에 대해 중국의 스포츠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했으며, 그것도 애국의 한 형태라고 하는 옹호론을 통해, 전국노동모범 스포츠문예부문 30명 가운데 하나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요명선수가 "조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참가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애국적으로 보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인물평가에 '애국적인가 아닌가'는 늘 따라붙는다.

애국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면, 슈퍼 스타라도 칭찬하지 않는다. 망명지인 프랑스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에게 중국인들의 대부분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일본에서는 미국 빅 리그의 이치로, 마찌이나 축구의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나카타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많은 일본인들은 그들 선수들에게 순수한 기분에서 자랑스러움을 느



‘修身齊家治國平天下’가 요구하는 것은 ‘自強’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게 되면 나라도 강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중국사의 치란홍망을 빼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낄 것이다. 2004년 미국 빅리그에서 시즌 최대안타기록을 달성한 이찌로 선수는 국민영예상을 사퇴했으나, 이 심사때, ‘이찌로 선수는 애국적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의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같은 한자문화권이면서, 나는 일본과 중국 간의 ‘애국’ 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 오해를 염려하지 않고 말하면, 일본에서 ‘애국’ 은 내셔널리즘을 연상하는 말이며, 직선적으로 민족주의, 국수주의와 연결되기 쉽다. 중국에서도 같은 류의 말의 의미가 있기는 하나 윤리적, 도덕적인 의미가 확실히 더 크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내면을 규율하는 사용이 대단히 강하고, 개개의 생활의 목표로서, 아주 보통적으로 입에 담은 말이다.

이번 봄, ‘반일데모’ 가 일본에서 문제 되었을 때, “중국의 애국교육이 반일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중국은 “반일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그 진의는 일본에는 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본인들의 ‘애국’ 이라는 말을 가지고 중국의 ‘애국’ 을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유교정신’ 배양되어 뿌리내렸다

중국에서 ‘애국심’ 은 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또 인간에 있어 아주 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중국에서 애국의 시작은 유교의 교전, 4서5경의 하나인 <대학>(기원전 430년 경 성립)에 나오는 말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에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신체를 수양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화를 평화롭게 한다는 의미이며, 자기와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의 중요성이 설파되고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가 요구하는 것은 ‘自強’ 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하게 되면 나라도 강하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중국사의 치란홍망을 빼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며, 자기를 위해서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인에 있어서의 ‘애국심’ 은 자기가 중국인인 것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중국민에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중국

인의 정신구조는 '유교정신'이 있고, 애국심은 유교정신에 둘러싸여 중국인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유교의 가름침에서 '효'도 대단히 중시된다. 그 가운데서도 부모에 대한 효는 아주 대단한 것이다. 모친을 극진히 여기는 자식은 대단히 높게 평가된다. "아무리 추한 어머니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격언마저 있다. 모친에 돈을 보내는 자식들이 많다. 돈을 빌려서라도 부모에 돈을 부친다. 어렸을 때부터 '국가는 어머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국가가 나쁜 상태에 있더라도 자기의 모친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중국인에 있어 애국심이다. 부모에게 효의 연장선상에서 나라에의 효가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애국교육은 일관되나, 소, 중, 고교나 대학에서 교칙, 학칙의 제1조에는 '열애조국, 열애인민' 등 애국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우는 궁극의 목표는 인간을 사랑하고, 나라에 기여하는 인간이 되는데 있다. 중국에서의 교육은 애국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좋다. '교육' 그것이 '애국'이며, '애국교육'이라는 말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군인의 경우는 군복이나 휘장에 의해 그 사람이 군인인 것을 판단할 수 있으나, 지식인의 경우는 외견으로 판단할 수 없

다. 애국심의 유무가 지식인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된다. 애국심을 가진 지식인은 훌륭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가 되는 것이다.

杜甫나 屈原 등이 중국인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내포한 시를 불렀으며, 애국자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唐詩選>도, 침략에의 저항의 정신을 주장하고, 애국을 표현하는 것이 많다. 현대의 학생들이 잘 '애국'을 주장하는 것에는, 지식인으로서 '사'로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모형을 만들어 그 모델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모두에 소개한 '노동모범'도 그 일이다. 당연, 애국자에게도 모델이 있다. 전형적인 모델은 남송시대의 무장 岳飛(1103-1141)다. 그는 金軍의 침략에 대해 철저히 항전했다. 그러나 금과의 강화를 피하는 제상에 의해 옥중에 독살되었다. 외국으로부터의 침략에 철저히 저항한 것에 더해 악비는 '애국'의 전형적인 예가 된 것이다. 나라에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결의를 나타내기 위해 악비는 背中에 '精忠報國'이라는 刺靑을 넣고 있었다. 그 자청은 그의 모친이 넣었다고 알려져, 악비에게 자청을 넣은 어머니도, 애국자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자기 자식을 나라에 기여하는 인간이 되도록 키우는 것도 '애국' 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형적인 '賣國奴'의 모델이다.

외국에서 배워 나라를 강하게 한다

청조는 청불전쟁(1884-1885)에 이어, 청일전쟁(1894-1895)에도 패했다. 청의 전권대사 李鴻章(1823-1901)이 강화교섭에 임해, 下關條約에서 엄청난 배상금과 대만할양 등이 결정되었다. 이홍장은 자국의 국력을 인식, 그 이상 국민의 희생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 조약에 조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침략에 대해서는 철저히 항전해야 한다고 하는 중국고래의 애국모델에 반했기 때문에 그는 '매국노'로 취급되고 말았다.

굴욕적인 하관조약 조인에 대해서, '천도항진'을 호소, 과거 '진사'의 수험생 1200여명의 서명을 모은 청조정부에 정치개혁을 호소한 사상가 康有爲(1858-1927)의 행위는 의거로 여겨져, 애국자의 한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강유위는 외국을 배척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의식을 개혁하여, 서양이나 일본의 좋은 점을 받아드려야 한다. 외국에서 배워서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애국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새로운 근대적인 애국주의적 태도, 열린 애국주의의 맹아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고유의 문화에 부응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의 기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용의치 않다. 강유위는 '仁,義,禮,智,信'의 인과 서양의 박애를 결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한 개혁을 제창. 1898년에 제자

양계초(1873-1929)와 함께 정치개혁을 단행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두 사람은 일본으로 망명했다.

근대중국의 애국주의를 주도한 것은 이 양계초라고 여겨진다. 양계초는 망명 중인 요코하마에서, 민권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잡지 '清議報'를 창간, 1899년10월15일호에서 '국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愛國하려면 반드시 民權을 일으켜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해, 민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애국심은 자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에게는 민권이 있고, 한 사람 한사람이 자립한 인간이 되어 권리와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나라를 사랑할 수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애국심에 연결된다고 말한 것이다. 중국인에게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유교의 가르침에 근거 '자강'이라는 사상이 당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또 양계초는 같은 해 <中國魂>을 쓰고, 일본이 명치유신을 성공시킨 이유는 大和魂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일본에서 배워, 중국인들도 중국혼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902년에 발간된 문학잡지 <新小說>에서 "小說과 群治의 관계를 論함"이라는 대표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쳐, 魯迅(1881-1936)이 의학지망을 문학으로 전환한 것도 이 논문에 감격했기 때문이라고 알려

지고 있다. 여성혁명가인 秋瑾(1875-1907)도 “여성에게도 민권이 있다.”라고 하여, 나라를 변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일본에 유학, 망명 등을 경험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국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많은 것을 흡수해야 하며, 또 국민을 교육할 때는 애국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중국의 근대애국주의는 당초 일본을 참고하며 시작된 것이다.

양계초는 망명지인 일본에서, 명치유신의 성과를 보고 감복했다. 그는 “여기에 뛰어난 사람들의 나라가 있다. …그 문화와 사람들은 우리들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서양문명을 흡수, 대단히 짧은기간에 국력을 급신장시켜, 자국(청조)을 파괴시킬 힘을 가지게 된 일본을 모델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교육칙어에 의해, 유교정신에 근거한 애국교육이 전국의 학교에서 철저히 행해지는 것을 보고, 강한 충격을 받았다. 나라를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양계초는 일본체류중에 애국심의 중요성과 애국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어, 애국의 노래까지 짓고, 요코하마의 중화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

교육에 관해서는 ‘德育, 知育, 體育’의 세 가지의 방침을 일본에서 배웠다. 실은 이 세 가지 방침은 모택동도 답습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중국의 교육방침은 ‘德育, 知育, 體育’이다. 나도 어릴 적에,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암기했다. 애국주의와 덕육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중국의 유교정신에 근거한 것이나, 그것을 활성화시켜 근대일본이 급속하게 발전, 그 일본에서 중국이 다시 배우게 되었다. 인연의 순환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일이라는 감정이 당초의 애국주의에 포함되었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근대일본에 의한 중국침략에 의해, 중국 고래의 전통인 ‘침략에의 저항’이라는 애국적인 측면이 분출하고 있다. 가장 현저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1915년, ‘對華21個條 要求’에 대해서 일어난 항일운동이다. 일본의 침략이 추진되면 될수록, ‘애국=항일’의 요소가 강화되어 갔다. 고래 중국이 전란의 역사를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무력에 의해 타국을 침략하는 것은 왕도가 아니다. 그것은 중국인이 이상으로 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것에 더해, 일본어를 강요하는 등, 중화문명을 침략하려는 듯이 보이는 일본의 태도는 중국인들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이, “일본에 저항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와 연관된 것은 당연하다. 이후 30년여년 간 그런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애국=항일’이라는 사고가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1949년에 사회주의중국이 성립한 이후, 미국 진영의 일본은 적이라고 생각되는 점도 있어, 중



애국심이란 본래, 타국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타국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것도 애국주의이며, 다양한 형태의 애국의 표현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국민의 대부분은 현재도 그들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할 수 없는 것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죄가 아니다

2005년 반일데모에서는 ‘愛國無罪’라는 슬로건이 주창되었다. 많은 일본인들은 ‘愛國無罪’라는 문자를 보고, ‘애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무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인들이 한자를 해석하는데 빠지고 마는 오해의 하나다. 문자 그 자체로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은 중국에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배제한 인식이다.

‘애국무죄’라는 말은 1930년대의 七君子事件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1936년 11월, ‘全國各界救國聯合會’를 결성, 항일민주운동을 하고 있던 沈鈞儒, 章乃器 등 7명이, 정부, 국민당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는 국공합작에 의한 항일민족통일전선결성 이전으로, 蔣介石은 항일정책보다도 타도 공산당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7인은, 그러한 국민당의 대일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운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국민당을 비판하는 한편, 공

산당에 이해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당에 체포되었던 것이다. 이 체포에 대해서 孫文부인인 宋慶齡 등 16명이 항의, 7인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救國無罪’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그해 12월에는 張學良등이 장개석을 구속하는 西安事件이 일어나, 張學良이 국민당정부에게 요청한 요구 중에도 抗日7인의 석방문제가 들어있었다. 다음해 7월의 盧溝橋事件을 거쳐 제2차 국공합작이 시작, 그 사이에 7인의 재판이 시작됐다. 그들에게는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蘇州高等法院은 결국 정치적 판단으로 7인을 무죄 석방했다. 그러나 무죄판결을 내리기에는 무슨 이유가 필요했다. 거기서 제시된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죄는 없다는 ‘애국무죄’였다. 그 후 시간을 지남에 따라 넓게 ‘愛國無罪’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렇게 당초 ‘애국무죄’라는 말은 ‘나라를 구하는 운동이 나쁘다면, 우리들도 모두 투옥시켜라’라고 하는 운동에서 시작된 정치적인 말이다. 정치범죄와 형사범죄는 전혀 다른 것이다.

몇 해 동안, 과거 ‘매국노’로 여겨지

던 인물을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매국노의 전형으로 보여 지던 이홍장에 대한 재평가다. 1998년에는 이홍장기념관이 개관, 그를 재평가한 책도 다수 출판됐다. 이것은 적어도 중국인의 심리 면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그를 역사상의 인물로 보는 사람이 증가한 결과라고도 할 것이다.

이홍장은 중국의 리더였기 때문에,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무력으로 침략된 경우, 철저히 저항하는 것이 중국고유의 애국모델이다. 때문에 下關條約에 조인한 일본과 타협하는 것은, 그 모델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홍장에게는 객관적인 인식이 있었다. 당시의 중국은 국력이 약해, 일본과 전쟁을 계속하면 반드시 패배, 그것으로 다수의 중국인이 피해를 입는다. 그것보다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중국인 자신이 왜 중국은 뒤처지고, 일본에 지는 것인가를 인식키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 그러한 견해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 “굴욕의 무게가 중요한 것인가, 현실적인 중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한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당한 판단이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저항’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해 온 중국인들의 애국정신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다양한 애국의 형태

일본인들은 애국심이라고 하면 전전의 군국주의를 연관되는 부정적인 것을 상상할지 모른다. 그러한 안목으로 중국의 애국주의를 보고, 걱정하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알고 지내는 일본인에게 “애국심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는 언짢은 얼굴표정을 한다. 그러나 “일본이 좋습니까.”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좋습니다.”라고 답한다. 이것도 애국심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계절이 분명한 풍토, 화(和)를 존중하는 일본문화, 타국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능한 일본인의 유연성 등, 일본의 좋은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또 일본의 결점을 발견, 그것을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애국심이란 본래, 타국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타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애국주의이며, 다양한 형태의 애국의 표현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인 자신도, “애국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모색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애매한 점이 있다. “고대로부터 중국고유 문화를 지키고 싶다. 그러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발전된 문화를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등, 모순을 내포하면서 무엇이 애국인가에 대해 생각

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과격한 반일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인터넷 상에는 건전한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시작된 것이 '愛國賊'이라는 말이다. 폭동 등의 과격한 방법으로 애국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賊으로 여겨,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같이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화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 중국에 돌아갔을 때 젊은 학생들로부터, "왜 일본에서 일하고 있습니까?"고 질문 받은 적이 있다. 일본에서 일하는 것은 중국을 배반하는 행위며, 애국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농구선

수 姚明에 대한 반발도 그러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화교에 대해서 중국 정부나 재외대사관은 지원할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외국에서 활약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선양하거나, 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 등도 '애국'의 형태다.

중국의 지나친 애국주의는 문제이며,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봄 중국 데모를 교제로 하면, 일본인도 애국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중국인도, 일본인도, 사상과제로서 '애국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시기가 온 것이다.

중국의 '애국자' 모델



〈屈原〉; 전국시대의 楚의 시인, 정치가. 초의 귀족의 부패를 지적, 정치개혁, 현사중용 등을 주장. 그러나 讒言에 의해 파직. 굴원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離騷' 등의 시를 읊었다. 후에 초의 쇠퇴를 우려하여, 5월5일, 강에 몸을 던져 사망했다. '端午의 節句' 행사의 유래. 굴원 이후, 당시의 절대적 권력자였던

황제나 왕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이나 비판을 하는 것도 애국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魯迅〉; '중국현대문학의 아버지'. 젊었을 때 일본에 유학, 仙臺醫學專門學校(현 東北大學의학부)에서 배웠다. 수업에 본 리일전쟁의 슬라이드에, 러시아의 스파이로 처형당하려는 중국인을 다른 중국인이 태연하게 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중국민중의 계몽이 필요하다고 통감. 귀국 후, 호적등의 문학혁명에 가

담. 노신은 자국의 문화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설적인 의도에서, 당시의 권력자나 중국고래의 유교적인 문화를 비판. 굴원과 같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가를 위해 권력자를 비판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평가해야 할 지식인의 모델로 여겨진다. 무력을 사용치 않고, 문화의 힘에 의해 나라를 부강케 만들어 가자고 하는 행위는 중국고래의 '尙文'의 정신에도 합치하고 있다.



〈文成公主〉; 唐의 왕녀. 唐과 吐藩(7세기 초, 티베트에 성립한 왕조)은 대립관계였으나, 문성공주가 吐藩王과 결혼함으로써 평화를 이뤘다. 당시의 여성들은 문명이 낙후된 지역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으나, 문성공주는 나라를 위해 시집갔다. 그녀는 唐나라의 앞선 기술, 의학, 불교 등을 吐藩에 전해, 吐藩인들로부터도 숭배

받았다. 문성공주와 같이 외국과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도 애국자 모델로 여겨진다.

〈蘇武〉; 漢의 武帝時代의 장군. 匈奴에 사절로 가서 포로가 됐으나, 항복치 않고, 漢에의 충절을 지켰다. 밥도 주지 않고, 굴욕적인 취급을 받아 왔으나, 여전히 초지일관했다. 약 20년 후 생존해 있음이 알려져, 漢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孟母〉; 맹자는 성인군자의 한 사람이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애국자의 표본이나, 그러한 맹자의 어머니도 중국인들에 있어서는 애국자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孟母三遷’이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는 것과 같이,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세 번이나 이사했다. 岳飛의 어머니와 같이, 애국자를 키워낸 여성도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文天祥〉; 과거에 수석합격, 南宋의宰相이 된 정치가, 시인. 元나라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 철저항전을 주장. 지위를 버리고 스스로 병을 이끌고 싸웠으나, 원군에 체포된다. 자기에게 봉사하라고 강요하는 후비라이의 설득에 응하지 않고 처형됐다. 그는 ‘천하홍망, 필부유책’이라는 말을 남겼다. 男子인 자, 모두 天下興亡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의미. 나라를 수호키 위해 싸우고, 최후까지 적에 굴하지 않았다.

〈勾踐〉; 춘추시대의 越王. 勾踐은 吳와의 싸움에서 吳王 闔閭를 격파했다. 그러나 闔閭의 아들 夫差는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蠶나 무 위에서 잠자면서 복수를 맹세, 드디어 勾踐을 항복시켰다. 이에 勾踐은 쓸개를 방에 걸어두고 언제나 그것을 핥으면서 패전의 한을 되씹으면서, 최후에 夫差를 격파했다. ‘臥薪嘗膽’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한 인물. 구천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 실력 연마를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林則徐〉; 清代의 정치가. 중국 근대사의 문을 연 것은 1840년의 아편전쟁에서 부터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이 때 영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철저한 아편대책에 뛰어 들었다. 그는 아편 2만 상자를 폐기하고, 영국의 공격에 철저히 항전할 것을 주장. 바깥으로부터의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에서 전통적인 애국의 형태였다. 아편전쟁에서 영국과 싸운 장군, 鄧世昌도 애국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밖에, 漢武帝시대에 월씨에의 사절로서 파견돼, 도중 匈奴에게 붙잡혔음에도 사명을 잊지 않고 귀국을 단행한 張騫, 명의 永樂帝 시대, 유럽인들보다도 먼저 大航海를 했던 鄭和, 文成公主와 같이 평화를 위해 주변 이민족(匈奴)에게 시집간 漢의 미녀 王昭君 등도 애국자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또 황제에 덕이 없고, 악정을 할 경우, 의를 가지고 봉기한 농민들도 애국자 모델로 취급하고 있다.

중국인 뿐 만이 아니다. 외국인도 모델에 들고 있다. 그 하나가 노만 베춘(중국명 '白求恩')이다. 캐나다의 공산당원으로 의사. 항일전쟁때 중국에 파견되었다. 외과의술로 항일전쟁때 많은 중국인들의 생명을 구했다. 후에 모택동이 '위대한 공산주의전사, 백구은을 기념한다'고 하는 문장을 남기고 있으며, 백구은 의과대학도 설립되었다. (백구은의과대학은 그 후 길림대학에 재편되었다.)외국인 이면서 중국인에 의해 모델로 여겨져, 교과서에도 게재되고 있다.



‘무슬림동포단’의 변천

후삼 탐맘 (Hussam Tamam, 저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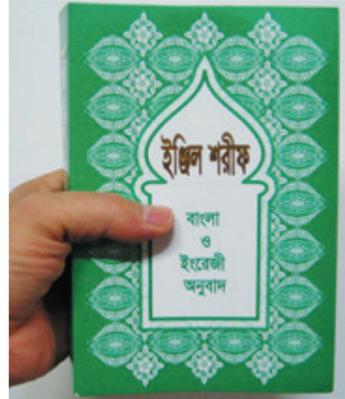
이집트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 개혁을 요구하는 데모가 이어지고 있다. 불평등에 가득찬 이 나라의 정치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많은 움직임들은 이슬람교를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슬람교의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나뉘고 있다. 강력한 조직의 하나인 ‘무슬림동포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집트의 정치정세는 헌법 제76조의 개정으로 복수후보가 인정되는 대통령선거가 2005년9월7일 실시되게 되었다. 많은 평론가들은 무슬림동포단이 이 상황을 이용하여 이전보다 넓은 자유를 활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은 그 반대였다. 이 조직은 미증유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1970년대 초, 형무소에서 석방된 무슬림동포단의 간부는 국가 통제아래서의 복수 정당제라고 하는 정치형태가 이슬람국가의 창설이라는 스스로의 구상과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아왔다. 체제에 불신감을 가지고, 정부와의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확신했다. 그러한 환경에서 스스로의 목적을 실현키 위해서는 국가와 치안 망에 구애 받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졌다. 더러는 극도로 곤란한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다트 대통령(1970년부터 81년)이, 54년부터 금지하고 있는 동포단의 현상을 묵인은 했으나, 합법화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상황아래서는 더욱 그러했다.

동포단의 재편전략은 비밀기관 출신세대에 의해 지휘됐다. 이 군사부문은 52년의 이집트혁명이전에 결성돼, 나셀이 이끄는 ‘자유장교단’의 정권탈취에 공헌했으나, 그 후 지하에 숨었다. 70년대 후반에는 이미 전략의 성과는 놀랍게 발전했다. 동포단은



라이벌을 흡수하면서 이집트에서 최대의 종교운동체가 됐다. 대학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이슬람단의 지도부는 재생을 만들어 내고 있던 무슬림동포단과의 가맹을 결의한다.

성공적인 세 확산에 이어, 동포단의 지도부는 이 노선을 계속하게 된다. ‘금지이긴 하나 묵인’이라는 입장에서, 합법정당에게 요청되는 투명성이나 명확한 강령을 요구당하지도 않았다. 81년 무바라크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이 방향성은 강요됐다. 무바라크는 취임 후 곧 대통령궁에서

무슬림동포단 이외의 모든 반정부세력 지도자와 면회했다. 무바라크가 사다트와 같은 무슬림동포단의 비합법화를 묵인하는 상태를 보아, 가까운 장래에 허가될 전망은 없다고 동포단의 지도부는 확신했다. 한편, 새로운 세대는 법적인 구조속에 들어가, 70년대 전반에 구축된 조직 거대화의 전략과 결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으나, 그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80년대 전반, 동포단은 『정당창설의 행정허가』라고 하는 법적인 구조에 들어가지 않은채, 정치적인 지위를 확립했다. 84년에는 와흐트당, 87년에는 사회노동당, 사회자유당과의 연계를 받아드려, 일부 당원의 당선을 지원했으나,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았다. 조직내부에서 조차도 정당을 만들고 싶다는 소리가 강해졌다. 그러나 최고지도부는 체제가 동포단에 관계가 있는 정당은 일체 인정치 않고 있음을 이유로 여전히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때문에 아부 아라 마티는 동포단을 떠나 우사트당(중도당)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당으로서의 허가를 수차례나 당국에 요청했으나, 허가는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데모에의 지연

동포단은 무슬림국가라고 하는 유토피아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정의를 확실히 하지 않고, 법적인 구조 바깥에 거대한 조직을 만드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나 국가, 노동조합, 행정기관 가운데 잠입하는 것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군, 경찰이나 대통령 부, 내각, 외무부에의 잠입이라는 경계는 넘으려 하지 않았다.

프랑스어로 ‘가능하게 하는 것’, 영어로, ‘엔바워먼트’ 로 번역할 수 있는 담킨이라

는 계획이, 70년대, 80년대에 가맹한 우수한 간부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미공포문서는 동포단의 재편과 근대화의 기본이 되었다. 그 중에는, 국가의 통치기구를 서서히 장악, 평화적으로 정권탈취할 단계 등으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 92년에 경찰에 의해 발견된 이 문서에 의해, 일대국가의 양상이 노정돼, 그것도 통상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간부의 노령화와 오직이라는 결합이 없는 동포단의 세력을 정부 측에서도 측량할 수 있었다.

동포단은 달마다 회비를 거둬, 말단 조직인 우스라(가족)의 멤버인 활동가를 10만에서 15만 명 두고, 거기에 더해 수많은 지지자도 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나, 동포단의 위치부여가 애매하고 지지자의 파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지도부도 데이터를 명확하게 하려하는 것은 일종의 배반행위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정치활동은 빈사 상태에 빠져 있고, 70년대의 복수정당제의 시도는 환멸로 변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무슬림동포단이 법망의 바깥에서 활동하는 선택을 옳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수십 년 간 움직임이 없었던 정치무대는 내외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헌법 76조의 개정과 대통령선거의 복수후보제의 용인은 정권 측의 후퇴 제1보였다. 결착의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동포단에 커다란 주목이 쏠렸다. 동포단의 봄은 가까워진 것인가.

그러나 꿈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반 무바라크운동을 지휘하는 키파야 운동이 2004년12월12일에 데모의 선두를 방해했을 때, 동포단의 행동은 둔화됐다. 그들이 새로운 상황을 피해, 3월27일에 데모를 행할 때까지에는 3개월 이상이 걸렸다. ‘소집단’이었던 키파야와 부딪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동포단의 지도부에 있어서는 통한이 됐다. 그러한 하부조직의 인원수가 키파야 전체보다도 많다고 하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의 주도권을 탈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다.

얽어진 이슬람 색

조직의 방대함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 2005년5월6일에는 동포단의 대변인 이삼아리안과 복수의 지도자가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구류자의 수는 2천명을 넘어, 그들과 그들 가족에 대한 지원 부담이 동포단에 압박이 되었다. 데모의 중단이 결정되었다. 이후퇴는 그 한편에서 이집트 국민을 자유의 길로 유도한다고 하는 의지보다도, 전술적인 우려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실패는 탄압 때문만은 아니다. 동포단의 지도부나, 그 비방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슬람 세계의 정세가 1970년대부터 격변한 것이었다. 당초 이슬람 동포단은 이



슬람주의의 이데올로기의 공식 담당자이며, 이슬람국의 건설을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이 주장은 빈곤층에 있어서는 사회적 억압에서의 해방수단, 중산계급에 있어서는 도덕심의 향상과 사회적 유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쌍방의 요구를 '포괄' 하는 주장이 될 수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슬람동포단도 벌써 과거의 동포단은 아니었다. 현재, 정치에의 관여를 강화한 동포단은, 이슬람국가라고 하는 장대한 이야기, 카리프제의 창설이라는 이슬람국가에 관한 주장도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 강령은 다른 정당, 특히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동포단은 이슬람색에 연연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 주라 (합의)의 개념마저 사용치 않으려 했다. 정권교체와 국민의 심판은 그것이 샤리아(이슬람법)과 합치하든 하지 않든 수용했다. 모든 시민의 시민권과 평등성을 역설한다. 무슬림교도와 코부트교도(옛 기독교도)와의 차별을 부정, 코부트교도가 모든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나, 코프트교의 정당이나 공산당의 창설마저 인정하고 있다.

이 주장이 모든 동포단 멤버들이 동의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주로 신세대의 간부에 의한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아부들 무누임 이불 푸투프로 지금은 동포단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당장의 대항세력도 없다.

무슬림동포단은 그런 한편, 경제분야에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인파타하(문화개방)이라 부르고 있는 자유화는 빈곤층을 희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때까지 모든 계층의 국민의 대표를 연결할 수 있었던 동포단은 97년에 결정된 농지개혁개약을 포함, 정부의 자유주의 노선을 지지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지자의 권유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심을 행동기준으로 하는 중간계급으로 중점이 옮겨지게 되었다. 동포단의 간부나 활동가에게는 중산계급출신자가 서서히 증가했다. 요컨대 실업가가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 무슬림동포단은 리버럴우파에로 향

하게 되었다.

조직의 확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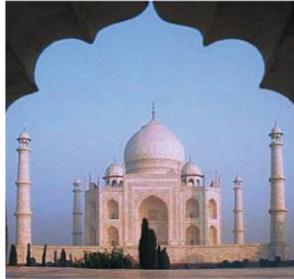
반대로, 빈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은 제외돼, 그리고 강령, 슬로건에서도 배제되고 말았다. 그들이 경제변혁에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에 동포단은 그들의 대변자가 되는 것을 그만두고 말았다. 전직 한 간부는 “동포단의 멤버에는 가난에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한편 정부발표에 의하면 17%의 이집트의 빈곤율은 반정부세력에 의하면 40%에나 달하고 있다. 동포단과 대중의 분열을 상징하는 것이, 이번 봄의 데모에 대중이 참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평론가들 중에는 동포단이 갑자기 데모 동원에 브레이크를 걸어, 폭주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밀약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빈곤층의 대변자가 된 것은 80년대에 동포단과 관계를 끊고, 정권과의 직접무력대결을 시작한 이슬람단이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전 마르크스주의조직에 속하고 있어 계급문제에 의식적인 무슬림사상가이며 정치가인 아딜 후세인이다. 그는 이 이슬람주의 조직에서, 교외의 빈민층 출신의 간부를 자기의 사회노동당에 끌어들였다. 단지 입당에 있어서는 무장투장은 포기하도록 요청했다. 서민층의 대변자가 되려는 이러한 시도는 사회노동당과 이슬람단과의 불화, 그리고 당국에 의한 동당의 금지에 의해 종지부를 찍었다. 그것도 정부는 2만에서 3만의 이슬람단의 멤버를 구속하고 있었다.

한편 동포단은 종교심이 깊은 중산계급의 유일의 대변자도 아시게 됐다. 특히 아물 하리드와 같은 새로운 선교사 등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분야에서의 선택지는 과거에 없던 다양화 되었으며, 또 정치적 색채도 엷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분야에 관해서도, 청년층의 신자는 동포단보다 더욱 엷어져, 위험도 적어진 단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유일의 정치적 이슬람을 대표하는 입장을 잃어버릴 동포단은 스스로 생각하는 일사불란한 견고한 조직체의 이미지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기생집단이 되었다. 동포단 가운데는 아스힐대학의 학생, 사라프주의자(원점회귀주의자), 지하드주의자, 다른 정치조직에서 경험을 쌓은 간부도 있다면, 일체 정치교육을 받지 않고, 상층부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할 뿐인 농민이나 노동자들도 있다.

회합출석율은 떨어지고 있고, 현재는 4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가입도 저조하여 멤버의 노령화가 진전, 규율은 허트러지고 있다. 가입의 목적마저 변화했다. 인맥을 이



용, 어떤 종류의 일상적인 절차도 완화되어, 특히 상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동포단의 멤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조직의 장래에 대해, 또 단순히 9월 7일의 대통령선거만을 보더라도 합의에 달하는 것은 곤란했다. 동포단은 투표를 호소했으나, 후보자를 내세우지는 않았다.

무슬림동포단은 새로운 시대에 돌입했다. 그들은 이전의 계획을 폐기했으나, 새로운 계획도 내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창설 이래, 정부와 대등하게 맞서면서 민중에게 기반을 확대해온 조직의 이미지는 과거의 것이 되었다. 체제는 유동기에 들어가고 있으나, 같은 지적은 무슬림동포단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Le Monde diplomatique>, 2005/9월호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치작업**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주요 목차〉

제 1 부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2. 개념 정의
3. 네이션
4. 내셔널리즘
5. 국민국가론

제 2 부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3. 러시아연방 : 마트로시카적 중층성
4. 미국 : '멜팅 포트'에서 '샐러드 볼'로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

라우산벡 압사따로브

(Абсагтаров Раушанбек, 카자흐스탄 알마티대학 교수,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위원)



민족적 자각의 문제는 민족관계와 에스닉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술문헌과 정기출판물을 보면 '민족적 자각'에 대한 개념 정의들이 서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의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차이는 첫째로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의 복잡성, 둘째로 이 개념이 학자들의 시야에서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던 점, 셋째로 민족적 자각이 민족의식과 동일시 된 점, 넷째로 이 개념에 대한 잘못된 강조점의 배치와 심지어는 민족적 자각의 본질에 대한 조악한 왜곡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먼저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의 변증법을 분석하기에 앞서 '민족적 자각'이 표상하는 것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자체적 특성과 내용에 따르면 민족적 자각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현상이다. 그 안에는 그 민족의 정신적 발전의 내용과 수준과 특성이 특징지어지며 민족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전체성이 반영된다. 이는 객관적으로 현존하는 민족 생활에 깃들인 민족적 요소들의 주관적 형식이다. 민족의식은 예를 들자면, 카자흐민족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별도로 그 표상으로 발생되지 않고 민족사회의 집단의식에서 생겨나며, 각기 다른 이유로 존재하는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민족적 자각은 종(race)들의 현존하는 민족의식의 구성부분이고 핵심이다. 그 자각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구체적 민족 집단을 자각의 대상으로 삼고 그 집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위치와 역할을 자각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카자흐 민족은 민족적 자각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의 교육, 각성, 공통적 성격의 이해, '자기의 것'과 '다른 이의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과 '그들에게 있는 것'의 차이와 관련하여 주

요한 형상으로 정착되었다. 사실의 실제적 상황은 민족적 자각 안과 각 개인의 '나' 안에서 굴절되면서 진실 되거나 왜곡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비과학적 기술과 민족주의적, 소비니즘적 감정에서 자유로우며, 전인간적이고 진실한 국제주의적인 것으로 출현한 자각만이 진실한 민족적 관심을 반영한다.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은 현재적 상황에서는 매우 역동적이며 가변적이다. 그들의 민족적 자각은 그들 자신에 대해 표상된 민족의 체계로서 그들의 고유한 본질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다. 카자흐스탄인들의 민족적 자각은 일정한 구조를 갖고



민족적 자각은 종(race)들의 현존하는 민족의식의 구성부분이고 핵심이다. 그 자각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구체적 민족 집단을 자각의 대상으로 삼고 그 집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위치와 역할을 자각의 대상으로 삼는다.

있다. 나의 관점으로는 그 구조적 요소에 민족 소속에의 각성, 자민족의 훌륭한 전통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발전과 인간적 진보에 대한 그들의 기여, 민족적 전형, 그리고 영토, 문화, 언어, 역사적 과거, 민족적 관심,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표상과 관련된 것 같다.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은 이와 같이 민족적 불가분성의 성격묘사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토·문화적, 민족언어적 총체의 표현과 반영이고, 사회진보의 과거와 현재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민족적 각성과 평가이며, 또한 자기 민족과 똑같이 다른 민족도 카자흐스탄인이라는 각성과 자민족에게 그렇듯이 다른 민족에게로도 향하는 카자흐스탄인의 인간관계의 총체를 표현하고 반영한 민족적 존재의 각성이다.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에는 전인간적, 국제적 특성과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제도의 본성이 강화된다. 민족적 자각은 전인간적 가치를 풍성하게 해주면서 인간화된다. 데 크쉬베코브(D. Kshibekov) 교수가 '민족적 자각의 급속한 성장은 합리적 과정' 이라고 기술한 것은 정당한 지적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낙후되어 있던 카자흐스탄의 변경에 매우 적합한 언급이다.

이제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은 어떤 연유로 성장했는가?' 란 질문이 제기된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의 혁신과 과학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부흥과 사회적 진보를 향한 강력한 경향이 자리한다. 민족생활의 확립과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질적으로 새로운 기초가 형성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인들의 사회정치적 적극성의 고양, 현재적 조건에서 민족적

자각의 정치화, 자민족의 역사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과 표상의 혁신, 민족적 관심의 역할과 의미의 각성과 인정, 이와 같은 요소들은 민족적 독자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할 길과 수단을 찾도록 강요한다.

내부적 통합과 규합의 과정, 우리나라 다수 민족 및 소수 민족 모두에게 고유한 민족 내부의 통일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민족적 자각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전 카자흐스탄적 의식의 형성에 따라 우리나라 내의 모든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 밖에 특정 극단주의자들의 민족적 관심의 모순과 부정적 현상, 충돌은 민족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민족의 민족성과 문제점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열” 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사회적 결과가 민족적 자각을 부단히 성장시킬 것인가?’란 질문이 제기된다. 민족적 자각은 민족 간에 소외와 긴장성을 유발시켜 민족 간에 충돌을 가져오고 민족주의와 소비니즘을 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적 자각의 발전이 민족 간 친선과 단결을 강화시키는 도정으로 향할 것인가?

사회·심리적 현상을 고려해 보면, 긍정적 요소가 부정적 요소를 품을 가능성이 있는 민족적 자각의 성장이 논리적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 자기 문화와 역사적 과거에 대해서 카자흐적인 것을 현저하게 과장하는 것은 자기 역사와 민족 생활제도의 이념화를 야기하고, 어떤 민족이 자기 민족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카자흐인 및 다른 민족들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체첸민족의 민족적 자각의 성장은 민족적 불손, 거만, 민족적 적의, 인내심 부족 기타 부정적 현상을 동반하고 있다. 1986년 12월 알마아타(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이름으로서 19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다. 인구는 150만이 넘는다.: 역자 주)라는 새로운 장소와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 간 충돌은 민족적 자각이 왜곡된 현상의 가시적인 실례이다.

자기비판의 부족과 과학성의 결핍은 자주 과장된 민족적 요소나 과장된 “국제주의적-세계주의적” 요소로 유도하거나, 민족적이고 전사회적인 정신적 가치를 축소하는 러시아화로, 고유한 가능성의 과대평가로, 자만의 극단적 비대화로 유도된다. 예를 들어 자기 고유의 업적에 대해 멈추지 않고 찬양을 해댄 것은 ‘골로쉐킨’과 ‘콜빈’ 통치기의 특성이었다.¹⁾ 민족 정치의 과학적 원칙을 위반하고 민족 간의 친선과 애국주의 교육의 허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민족적 자각의 결핍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민족적 자

1) 골로쉐킨과 콜빈은 각각 1930년대와 구소련 말기에 카자흐스탄을 통치했던 러시아인 카자흐스탄 공산당서기장이었다. 골로쉐킨 치세에는 카자흐스탄에 대기근이 생겨 기아로 다수의 카자흐인들이 사망했고 다수의 카자흐인이 조국을 등지고 주변국가로 떠났다. 콜빈은 고르바초프 치세에 카자흐스탄공산당서기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에 대해 카자흐인들이 반발해 저항한 것이 1986년 12월 대중시위로 이어졌다. 이는 페레스트로카 이후 구소련 최초의 민족운동으로 기록된다. (역자 주)

각에 있어서 민족적, 전인간적인 것들이 변증법적으로 결합된 올바른 발전으로 주의 력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우리나라에 사는 각 민족들은 그들이 다수민족이거나 또는 소수민족이거나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고유한 인간적 가치와 자신의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사람마다 자기 민족의 정신적 가치와 전통인 역사에 자긍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인들의 민족적 자각이 급격한 ‘국제주의화’로 지향된 것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것은 사실상 선수를 치려는 시도였고, 민족 간 관계에서 시간과 자연스런 과정을 추월하려는 시도였으며, 게다가 민족적 자각의 ‘국제주의화’가 모두에게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서 민족적 차이를 왜곡시키는 규격의 통일로 이해되었다.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민족의 기회주의적 중립주의 경향은 민족적 자각의 ‘국제주의화’와 같은 형식이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곧바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해하면서 발생한다. 현실이 보여주고 있듯이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생활에서 ‘국제주의화’가 촉진되는 경향은 민족적 요소의 위축과 축소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각의 사실 자체의 왜곡과 그 자각의 핵심적인 사회·심리적 성분인 민족적 자긍심까지도 축소시켰다. 예를 들어 민족적 관심의 왜곡, 학문적 성취의 비합리적인 이용, 여러 지역이 환경제양에 노출되도록 만든 카자흐스탄 자연자원의 강력한 기초다지기, 중앙관청에서 기울이는 관심의 절대화 등은 카자흐스탄 민족의 자각에 소외감과 슬픔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측면 또는 다른 측면의 사실성이 민족적 관심과 접촉될 때 민족적 자각은 그것들에게 고양된 감정적 관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영토에 40년간 거대한 규모의 핵실험이 있었고 그것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왜곡되었다. 그러나 단호한 결정을 내린 핵실험자들의 거리낌 없는 행위가 카자흐민족의 민족감정을 다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예를 든다면 잘 알려졌듯이 유일한 지하자원의 보고를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본질적으로 그 보고를 이용할 권리를 갖지 못한 굴욕적인 식민지적 상태에 있었다.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시대에)자국 산업의 7%만 관리했을 뿐이다.

전권을 쥔 중앙 모스크바의 부와 관청들이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필요성과 환경, 문화, 전통의 특성을 무시한 채 다른 나라의 침략자처럼 카자흐스탄의 민족적 부를 탈취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범죄적인 관료적 무관심은 단지 북쪽지역 강줄기를 돌리거나 한 방향으로 흐르게 했고 카자흐스탄에 단일 문화만 발전시키며 광대한 카자흐스탄 영토의 핵 실험장을 바꾸는 것과 같은 “세기의 계획”만 탄생시킬 수 있었다. 더욱이 카자흐스탄에는 강제이주의 탄압을 받아 들어온 12개의 ‘적성’ 민족이 150만이나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 카자흐스탄 처녀지개발을 위

해 “징집” 되어 온 수만 130만이나 되었다. 이는 모두 민족 간 관계에 충돌을 가져왔고 지역 민족정치를 평가절하 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둔감, 무관심, 불공정의 각성 등이 사회·심리적 결과로 나타났다.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과 민족감정은 아주 쉽게 상처받는다. 심지어 그것은 다른 민족들의 조심성 없는 무의식적 농담으로도 상처받고 그 결과는 통상 부정적으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1986년 12월 알마아타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대중매체에서는 그 현상이 ‘꾸나예브’ 공식화로 표현되었으나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카자흐 민족감정을 자극할 수 없는 “카자흐 민족주의”로 표현되었다.²⁾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카자흐 민족주의’ 공식화는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모든 카자흐 민족에게 모욕적인 평가였음은 전적으로 공정하다. 여기에 필자가 부인한다면 이는 카자흐 민족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사는 모든 다민족에게도 모욕적인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개방과 민주주의를 유발시킨 위원회는 모두 해체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평가와 결론은 낡고 교조적이며 제약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렇게 대중매체에 다시 불붙여 기름을 부었다. 모스크바가 콜빈을 당의 ‘특사’로 임명하여 카자흐 민족의 민족적 덕성과 감정이 상처를 입었을 때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친근한 가정 속으로 각기 다른 민족 일원의 통일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와 격분과 자연스런 반항이 일어난 건 당연했다.

구체적인 민족 일원의 탁월한 창조성과 정신적 생활의 현상이 되는 역사와 문화와 학문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의 일 방향적 조명은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 행위를 왜곡하여 촉진시킨다. 일부 저술에 보이는, 학문적 태도로부터 나오는 찌꺼기들은 사회생활의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켰다. 이런 현상은 까비로 바 엠. 엔(Kabipova M. N)의 저작 ‘세미레치예의 토착인 위구르’에서 두드러진다.³⁾ 저자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위구르민족의 역사와 유수프 발라사군, 마흐무드 까슈가리, 알리쉐르 나보이, 술탄 바부르 같은 탁월한 위인들의 전기를 곡해했다. 이는 위구르 민족과 다른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을 왜곡하는 것이다.

2) 1986년 고르바초프는 카자흐인인 꾸나예브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을 해임하고 러시아인인 콜빈을 새 서기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카자흐인들이 반발해 일어난 민족 간 충돌사건이 1986년 12월 사건이다.(역자 주)

3) 카자흐스탄의 구수도 알마아타를 포함한 카자흐스탄의 동남부 지역을 세미레치예라고 부른다. 세미레치예란 일곱 개의 강이 라는 뜻으로서 천산산맥에서 발원한 일곱 개의 강이 카자흐스탄 동남부 지역을 지나고 있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역자 주)

역사의 연구와 예술 및 문학 작품이 건전한 민족적 자긍심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의미만을 갖는 결론, 극단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오직 긍정적인 요소만 조명하는 것, 예를 들면 특별히 두드러진 역사적 사건이나 자기 지역의 위인이나 역사적 페이지의 퇴보적이고 복고적인 절대화를 두드러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카자크(카자흐가 아닌 카자크임)의 대장 로씨야 예르마크(Rossiia Ermak)의 외형을 뚜렷한 러시아 소비니스트들의 모든 결점이 천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잔혹한 식민지 착취자, 유혈적 압제자, 도둑 및 약탈자로 그려서는 안 된다. 카자흐민족은 오랫동안 도시와 농촌의 명칭에서 그 (러시아식)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전수받았고 “고마운 후손들로부터” 조각으로 새겨지고 기념대에 세워져 기억을 존경하도록 강요받았다.⁴⁾ 차르주의는 카자흐 민족 사이에서 종족 간, 부족 간 불화를 모든 측면으로 격화시켰다. 차르주의는 카자흐 스텝에서 러시아 식민정치의 모퉁이 돌(중요한 수단을 의미함: 역사 주) 중 하나였다. 이런 정치는 소비에트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카자흐스탄 종족과 부족들의 분열은 과거 카자흐 민족에게 많은 불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카자흐민족의 부족 간 적대의식은 암 질환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질병은 카자흐민족의 단결의 강화로 치료된다.

케네사리 카시모브 무스타파 초카예브, 알리한 부케이하노브 등과 같은 카자흐민족 활동가들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태도는 사회의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 역사적 활동가들의 역할과 활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표준적인 전형을 세운 다음 오직 우리의 현시대적 위치에서만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그 시대에 역사가 그들에게 내세웠던 엄격한 조건과 냉혹한 틀의 구체적, 역사적 문맥을 전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고서 그 인물의 활동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역사적 인물의 운명의 모순적이고 복잡한 성격이 생겨나오고 따라서 그 활동가들에게서 오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의 한 측면만을 찾는 무익함이 나온다.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의식의 혁신은 민족적 자각이 민족주의나 소비니즘적인 것으로 변형되지 않고 애국주의가 민족주의나 소비니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시킬 것을 요한다. 민족적 비관주의, ‘초국제주의’, ‘만쿠르티즘’⁵⁾과 같은 현상은 객관적인 민족적, 전민족적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비록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순진하게도 비관주의자가 국제주의자와 애국주의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민족

4) 즉 250 여 년 전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러시아화로 인해 카자흐스탄 고유의 지명들이 러시아식 이름으로 대체된 것을 말한다.(역자 주)

5) 소련에서 카자흐민족을 우민화시킨 데서 나온 말로서 ‘무지몽매주의’ 짝으로 이해하면 된다. (역자 주)

적 비관주의자를 키운다. 그러나 비관주의자로부터 국제주의자와 애국주의자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전인간적 가치를 창조할 능력이 없는 얼빠진 세계주의자, 냉소주의자, 반애국주의자, 만쿠르트들이 자주 형성된다.

소비에트정권의 거의 첫 해부터 민족적 자각의 모든 현상과 공식적으로 수용되는 의견에 반하여 진행되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에 관한 언급은 진실한 국제주의와 민족간 친선의 “모범”이라고 선전하는 소비에트 나라에 징벌원인을 제공하여 그런 언급을 하는 이들은 민족주의자로 정죄를 받고 가장 엄한 징벌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고안된 민족주의에 카자흐민족의 지식인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고통을 겪었다.

민족의 사회적 의식의 정적 구조에 “굳어진 고리”로 나타나는 민족적 자각은 동시에 언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족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적 자각현상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다.

독립국가 카자흐스탄에서 언어에 관한 문제는 민주적 기초 위에서 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제의 수단으로 100 여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출판물로는 10 여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각 민족들마다 고유의 문화와 언어가 발전되고 있다. 민족 언어의 자유로운 발전 없이는 민족적 자각의 성장과 민족의 상호필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어는 인식활동과 사람간의 교제의 주요수단인 것이다.

사회의 혁신과 재형성은 모든 민족 언어의 강력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사회의 재형성 이전에는 모든 측면에서 카자흐 언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사회의 혁신은 카자흐스탄 내의 카자흐 민족과 다른 민족들이 자기 언어와 민족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완전한 공간을 열었다. 독창적이고 풍부한 카자흐어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영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소비에트정부 시기에 카자흐민족의 언어생활에 침체하고 병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축적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어는 오랜 기간동안 실질적 차별을 받았다. 언어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약 40%의 카자흐인이 모국어를 모르거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가장 큰 도시 알마티에서는 90%의 청소년들이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적 비판은 카자흐스탄의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청에서도 카자흐어가 사무용 언어로 사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205개의 구역 중에서 사실상 23개의 구역만이(공식적으로는 38개 구역) 사무처리를 모국어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엇이 유발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인구비율로 전 세계 3천여 민족 중 70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카자흐민족의 언어는 자기의 역사적 고향에서 사회생활로부터의 소멸과 축출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카자흐어가 사회생활의 사용가능한 50개의 영역 중에서 단지 10개의 영역에서만 수용되고

있음은 각 진실한 사람의 가슴에 커다란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뒤틀림은 민족의 문화, 출판, 학문, 교육, 민족적 자각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곳으로 인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언어에 관한 법률과 카자흐어 및 다른 민족 언어 발전계획의 연구는 커다란 정치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 민족적 자각으로부터 첫 민족적인 계획과 함께 통일된 전인간적인 계획이 도출된다. 20세기 후반 학문적·기술적 진보의 영향 아래서 많은 현상들이 이러한 인간성의 이해 속으로 흘러들어 갔다. 특히 신기술, 새로운 에너지원, 자동화, 로봇 화, 신소재의 현 세기에 인간성과 연결된 수단의 발전이란 점차적으로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현대 과학기술혁명의 업적이 집중된, 그리고 인간문명을 여러 번 말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와 다른 무기들의 현존은 지구상 모든 민족운명의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성을 각성하도록 이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민족적 자각이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에스닉 적 통일성과 이와 유사한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각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적 자각의 성장과 발전이란 구체적인 민족의 생활능력을 보장하고 그 민족의 사회적, 역사적 기억과 민족적 독자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친근한 가정 속으로 각기 다른 민족 일원의 통일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 김병학 (알마티대학 박사과정)



근대 문학과 민족 기표들

여 태 천

시인. 2000년 '문학사상'으로 등단. 고려대학교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여대 강사. 계간 '서정시학' 편집위원.

시와 민족

올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60이라는 숫자는 동양에서 인간의 삶이 완성됨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가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미명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찬탈한 지 꼭 100년이 지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시간이 왔다. 그런데 이 즈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사건' 과 일본의 '독도침략사건' 은 우리에게 다시 그때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 이 사건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민족을 되살려 냈으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 그들의 행동을 비판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무엇인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동안 수많은 민족시인이 나고 죽었으며, 그들의 시는 민족의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져 험난했던 우리의 역사를 지켜왔었다.

최근 충남 홍성군은 만해 한용운 생가복원과 함께 '만해 민족시비 동산' 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곳에는 만해를 포함해 신동엽·이상화·정지용·조태일·박두진·김소월·김광섭·조지훈·백석·김수영·김달진·유치환·윤동주·심훈·이육사·변영로·정한모·김남주·구상 등 일제시대부터 해방이후에 활동한 민족시인 중 작고한 20명의 시비가 세워진다. 시비에는 겨레 혼을 일깨우고 광복을 염원했던 시인들의 시와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과 군부독재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며 자유를 외쳤던 시인들의 시대를 아파하는 시가 새겨진다고 한다. 여기에 포함된 시인들의 면면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겠지만 최소한 그들의 시는 어려웠던 시간에도 곳곳하게 민족의 혼과 정신을 잃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들끓게 했던 것이다. 이 글은 민족, 혹은 민족성이 우리 문학사에 어떻게 나타나고 형상화되었는가



를 두루 점검하고자 한다.

민족,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민족은 지금까지 수많은 담론에 의해 신비화되어 왔다. 민족은 그러나 발견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어떤 무엇이 아니다. 그것을 그림자에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림자란 개개의 어떤 불변하는 실체적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는 사라지고, 빛이라는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개개의 존재자 배후로 나타난다. 이러한 그림자의 속성은 민족이라는 존재형식과 여러모로 닮았다. 민족은 눈에 보이지만 잡히지 않는 그림자처럼 어떤 하나의 방향 속에서 상상될 수 있으나 좀체 그 실체가 파악되지 않는다. 민족은 흔히 우리가 민족의 실체라고 이해하고 있는 언어, 문화, 역사 등의 흔적인 셈이다.

민족에 대한 우리의 오해 중 하나는 민족의 구성원이 민족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을 낳게 하는 것은 민족의 구성원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다.¹⁾ 민족주의는 불특정한 대중들을 동질적 집단으로 통일시키는 동시에 구별시킨다. 그러므로 민족이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근대 이후 탄생한 상상된 허구물이다. 베네딕트 앤더슨이 이를 ‘상상의 공동체’²⁾라는 매력적인 말로 풀이한 바 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민족이란 근대적 구성물이며,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강력한 개념적 도구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족이란 개념은 100년 전 을사조약을 계기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여, 1910년 경술국치를 겪으면서 중요한 담론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근대화는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식민지 근대화로 시작되었으며, 이와 함께 민족주의도 생겼다. 우리의 민족운동이 무엇보다도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생존을 되찾으려는 정치운동으로 이해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민족이란 영어 <nation>의 역어(譯語)다. <nation>은 ‘국가’ 또는 ‘국민’으로도 번역된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근대화와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서 민족이 근대에 나타났다고 여기는 것은 개념과 실체를 혼동하는 것이다. 민족은 실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민족은 또한 실체일 수도 있다. 인종, 언어, 문화 등을 통해 볼 때, 우리 한민족의 형성은 근대화 이전에 이미 그 실체로서 존재했다.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이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우리 민족은 근대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지만, 우리 민족의 근대적 민족국가는 근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1) Ernest Gellner, 『근대화와 민족주의』, 백낙청 편,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창작과비평사, 1981, 160쪽.

2) B. Anderson,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윤형숙 역, 나남, 1993, 21~23쪽.

것은 민족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민족이데올로기라는 무형의 실체다. 민족이데올로기는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민족 / 국가 / 근대적 민족국가와의 차이를 모호하게 한다. 우리 민족이 '단군'이라는 한 조상의 후예라는 가설이 그 좋은 예다. 엄밀히 말해, 단군신화는 민족해방운동을 위해 하나의 '사실'로 확립되었던 것이다. 민족이데올로기는 민족 외부의 적에게 맞서도록 하는 동시에 민족 내부의 균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힘을 지닌다. 개인이 민족과 동일시되는 것은 공통된 조상과 공통된 과거, 그리고 공통된 미래를 가질 것이라는 민족 정서의 특별한 연대성 때문이다.

민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민족을 근대화의 부산물로 간주하는 경우와 민족의 영속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는 민족주의가 영원한 실체가 아니며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현한



민족시인 시비에는겨레혼을일깨우고광복을염원했던시인들의시와해방이후이승만정권과군부독재에맞서온몸으로저항하며자유를의젓던시인들의시대를이파하는시가새겨진다고한다.

이데올로기라고 간주하고 그 역사성을 강조한다. 반면, 후자는 인종적 공동체의 영속성에 주목하여 민족주의가 종족, 언어, 문화라는 원초적 유대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한다. 민족이 과연 특정 시기와 관련된 역사적 변수인가, 아니면 초역사적인 상수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되었으나 그 해답은 여전히 미궁인 상태다.

중요한 것은 민족이 근대 이후 구성된 허구물이라고 해도 그것이 허위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민족은 허구물이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필요한 허구물이다. 그것은 어떤 외적 자극으로 인해 내부의 차이를 넘어서도록 하는 의식이 생성될 때 비로소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역사적 산물이다. 문학 역시 특정한 민족의 자산으로, 민족정신의 표현으로, 민족의 자기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는 과정 속에서 그 개념이 정립된다. 우리의 문학 역시 근대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문학이 태생하던 시기로 올라가 보자. 그때 민족, 민족주의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는가. 문학을 거울삼아 민족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혹은 영웅

민족이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무렵이지만 실제로 민족이라는 단어가 문학 작품 속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이 당시만 해

도 민족이라는 무형의 실체에 앞서 대한제국(1897. 10. 12~1910. 8. 29)이라는 국가의 실체가 엄연히 존재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용된 국가라는 기표는 곧 민족의 다른 이름이었다. 이것보다 훨씬 앞선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우리는 '님'이라는 기표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이때 '님'은 군왕을 상징한다. 고려 말의 충신인 정몽주의 유명한 시조에 등장하는 '님'이 아마 그 전범에 해당할 것이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임 向한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 정몽주

“일편단심”의 대상으로서의 '님'은 이후 조선의 많은 유학자들에게 전수된다. '님'은 절개와 충군의 유교적 정신을 문면화하는 대표적인 기표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물론 이 '님'은 기방의 기녀들이 애타게 그리워하는 '님'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대상을 향한 절개와 강렬도는 다르지 않다. 까닭에 '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문학의 중요한 소재였으며, 때로는 상투화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님'이라는 기표가 국권상실의 위기에서 '국가'라는 말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민족주의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설치가」를 보자.

이 몸이 죽어 죽어 百千萬番 다시 죽어
 白骨이 塵土되고 그 塵土이 또 變히도
 甞 變히리 壹片丹心 디친 마음 爲國雪恥
 - 「雪恥歌」(『대한매일신보』, 1909. 5)



▲ 대한매일신보 (1904~1910)

정몽주의 시조를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이 시조에는 국가의 중심으로서의 군왕인 '님'이 사라지고 없다. 대신 그 자리에 국가가 들어앉았다. “위국설치”라는 말 속에는 나라를 욕되게 한 일본 제국주의를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강력한 욕망이 숨

어있다. 그러므로 ‘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충정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 아니었다. 국난의 시기에 애국지사들이 보여준 사랑은 단 하나의 초월적 대상인 국가를 향한 공적인 것이었다. 군왕과 국가를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사랑의 전이이자 투사임을 알 수 있다.

사학자이자 언론인, 그리고 문인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강직한 논설을 써 독립운동의 불꽃을 지핀 신채호의 시에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恩澤이 깊고나 나의 韓半島야
 先祖들과 모든 民族들이
 너를 依託 亨야 生長 亨았고나
 韓半島야
 (……)
 아름답고 귀한 너의 韓半島야
 너는 나의 사랑 亨는 바니
 나의 피를 썩려 너를 빗내고져
 韓半島야

— 신채호, 「韓半島」(『대한매일신보』, 1909. 8. 18) 중에서

이 시는 조국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움에 대한 자긍심을 노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지키겠다는 화자의 비장한 각오가 “나의 피를 썩려 너를 빗내고져/한반도야”라는 구절을 통해 제시된다. 선조들과 모든 민족이 의탁하고 있으므로 “한반도”는 국가의 제유인 셈이다. 신채호는 다른 시에서 “한반도”를 비록 지금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개를 보여준다.

간다간다나는간다
 너를두고나는간다
 (……)
 너가가면영갈손나
 나의 사랑 韓半島야

— 新島(안창호), 「去國行」(『대한매일신보』, 1910. 5. 12) 중에서

3)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중국의 위순 감옥에서 눈을 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국적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채호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호적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적이 없는 상태다.

이 시에서 떠남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너로 지칭되는 “한반도”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다시 돌아오기 위해 화자는 나라를 떠났다. 그러나 “훗날 다시 만나보자 나의 사랑 한반도야”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화자의 비극적 낙관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작품에서 “한반도”와 같은 ‘국토’, ‘땅’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진다. 아마 그것은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국토 사랑을 정당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목에서, 혹은 본문에서 “한반도”라는 우리 땅에 대한 환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땅에 대한 사랑은 나라에 대한 사랑의 은유가 된다.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랑 사이 칼로써 베면
 고우나 고운 핏덩이가
 줄줄줄 흘러내려 오리니
 한 주먹 덩석 그 피를 쥐어
 한 나라 땅에 고루 뿌리니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되어서
 봄맞이 하리

— 신채호, 『한나라 생각』(『단재 신채호 전집』 下, 형설출판사, 1975) 전문

위의 시에서 “한 나라 땅”은 곧 국가를 뜻한다. “칼로써 베면”과 같은 분열과 결별은 상심의 원인이 아니라 창조의 동력이 된다. “고운 핏덩이”를 땅에 고루 뿌리면 그것이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되어 봄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진술은 비극적이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으로 가득 차 있다. 흥미로운 것은 ‘피’라는 유형의 실체다. 그것은 죽음, 혹은 죽음을 불사한 절개를 은유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피는 한 가족, 한 민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같은 피를 나눠가졌다는 생각은 한 민족이라는 공감감을 유도한다. 말하자면 민족은 공감적 동일화에 의해 더욱 공고해질 수 있었다.



단재 신채호 (1880~1936)³⁾

1910년 8월 29일, 국권상실로 인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아픔과 상실에 대한 애절한 원망이 집단적 정서로 드러나게 된다. 국권상실로 인해 자주적인 민족국가 건설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었다. 이들의 저항은 ‘국(가)’에서 ‘민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수정된다. 민족은 국권상실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구심점을 형성한다. 식민지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되찾는 것은 사적이고

은유적인 차원에서 매우 은밀하게 소통될 수밖에 없었다.

1895년 을미사변을 겪고 난 후 일본에 대적되는 하나의 주권체로서 '한국'이라는 단위가 성립하게 되었다는 점은 중화사상의 華/夷 구조에서 벗어나는 한편 국가로서의 집단적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왕실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족'의 개념도 정착되어 갔는데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어 '大韓'이라는 국가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대한'이라는 국가체제가 없어지더라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족'과 '국가'가 통합되는 '민족국가'의 성립이 지상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⁴⁾

위 글은 왕실중심의 사고가 국가, 다시 민족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민족은 왕조와 국가가 동일하다는 생각이 사라졌을 때 이를 대체하였던 새로운 기호였다.⁵⁾

그러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애국계몽기는 '민족적'인 것과 '비민족적인'인 것들을 이분화하여 후자를 배제함으로써 '민족'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동일성을 창출하는 근거이자 목적으로, 사회 윤리나 인식을 지배하는 절대적 이념이 되었다는 점이다. 민족주의는 선형적 절대정신처럼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혼재하는 시기를 규정짓는 가장 강력한 시대적 담론으로 작동했다.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내적 동력이 바로 민족주의였다.

기화풍아 한번 부러 동반도를 움죽이니 오뵈어 년 오랜 물건 일쯤
간에 돌변이라 변환 혼이 시대에 신구물이 셋갓스니 형형식식 더 모양
은 얼능세계 되엿고나

— 〈시평론〉(『대한매일신보』, 1909. 10. 26) 중에서

인용문은 신·구물이 섞여 있는 대한제국을 비판한다. 머리모양이나 복색 등, 신식과 구식이 서로 섞여 있는 “대한형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민족주의라는 시대정신이였다.

오백년 이상 이어져 온 동양에 개화의 바람이 불어 신·구물이 하나의 공간 속에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낱짜, 화폐, 옷, 종교 등은 신구의 교체를 가장 첨예하게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담론 속에서는 개인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더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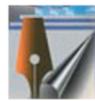
4) 장성만, 『개항기의 한국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세계의 문학』, 1993년 가을, 283쪽.

5)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33쪽.

일인보다 몇 갑절을 나흔 자가 만컨마는 단테 되지 못함으로 타인
의게 욕을 보니 주의할 일이 아닌가

— 〈시사평론〉(『대한매일신보』, 1909. 3. 9) 중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일성에 기초한 폭력적인 총체성이 있다. “일인보다 몇 갑절을 나흔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테 되지 못?”으로 인해 “타인의게 욕” 보인다는 생각은 전체에 대한 강력한 욕망의 발



애국계몽기는 ‘민족’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었으며 민족주의가 동일성을 창출하는 근거이자 목적으로 사회 윤리나 인식의 지배하는 절대적이념이 되었다는 점이다.

현이다. 개인의 능력은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단테”란 곧 작은 민족이며, “타인의게 욕”을 보인다는 것은 외세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뜻한다. 이처럼 민족은 개인보다 한 단계 우위에 있는 무정형의 실체로 구체적인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근대적 주체로서 개인은 사라지고 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만 남게 된다.

대신 ‘영웅’이라는 기호가 이 시대에 흘러넘친다. 그 이유는 근대계몽기가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아직 의식화되지 않은 동포들을 공공심이 투철한 국민으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영웅이 맡았다. 국민은 명분상 주체였고, 영웅이 민족 전체의 운명을 개척하였다. 역사 속의 영웅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계몽가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태백산 단목하에 시조단군 현심하사 삼한영웅 소집하야 보호방침
강구하다 을지문덕 왓나 슈양대의 벽만정병 일조에 소탕하던 슈단으
로 계림강산 삼천리가 위티힘이 털싯곳호니 스천여년 전력한 기업 보호할
경륜 칩입커다

— 〈시사평론〉(『대한매일신보』, 1910. 2. 27) 중에서

다소 과장스럽지만 국가의 위급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시조 단군이 태백산에 현생한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을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을지문덕”의 용맹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은 근대계몽기가 처한

내·외의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때 잘 드러난다. 영웅의 모습은 저 멀리 단군에 서부터 과거 역사 속의 인물들, 그리고 서양의 비극적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암흑의 세계를 헤치고 나갈 사람을 지금은 없는 동·서양의 영웅에서 찾는 것보다는 현실의 각계각층에 있는 작은 영웅들에게서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대일신보 구랍타가 시스평론 슝희보니 즈유비에 문명쥬로 전국동
포 권헛고나 이내 몸이 적드러도 국민 중의 일본즈니 통음대취헌 연후
에 삼척장검 썬여 들고 영웅가나 불너 불샤
— 〈시스평론〉(『대한매일신보』, 1909. 3. 17) 중에서

비록 역량은 모자라더라도 국민된 입장에서 조국의 위기를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스스로 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는 위의 텍스트는 민생의 역량을 강조한다. 가령, “강개불우 유지스가 이 시대 도 허드하다 남산통계 혼곡도로 슝은 영웅 불너 불가”(〈시스평론〉, 『대한매일신보』, 1909. 8. 7)에서처럼 과거의 영웅과 같은 인물이 이 시대에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대중과 같이 있는 영웅이라는 보통명사로 만들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밀려오는 외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혼을 부르”(〈시스평론〉, 『대한매일신보』, 1910. 4. 15)짓거나 새로운 영웅의 출현을 기대한다는 것은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영웅이 싸로 업고, 만인일심 영웅이라.
세월은 살 곱흔데, 썬 영웅을 구치 마소.
벼라노라, 동포들아 쥬져 말고, 나가기를.

— 설월랑주, 「쥬져 마라」(『대한매일신보』, 1909. 12. 4) 전문

영웅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만인일심 영웅”이라는 구절은 개개인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시기의 영웅은 ‘고독한 초인’의 이미지로 고착되지 않으며, 대중적 지반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영웅담론이 택한 또 하나의 수사적 전략은 이 기호를 모든 대상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민족의 흥망에 따라 개인은 운명을 함께 하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존재 의의를 가진다. 그 영웅은 “父母, 兄弟, 姊妹 — 한피, 난혼, 우리 同胞”(이광수, 『우리 영웅』, 『소년』 15호, 1910. 3)와 같은 민족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모든 동족이 영웅이라는 제유적 발상은 단시간 내에 민족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곳저 큰공을 일우게한 자는 곳 일흠업는 여러 영웅이라 (중략) 씩
여는 거슨 곳 세계잇는 무수한일흠 업는 영웅의 디표가 되엿스니
- 「일흠업는 영웅」(《대한매일신보》, 1908. 9. 15 별보) 중에서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된다는 제유적 사고는 개인 각자가 스스로 영웅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영웅이라는 기호는 초월적 기표로서 제국에 대한 열망으로 뭉쳐진 초인의 이미지로 그려지거나, 학생이나 청년 등과 같은 보편적 개인 속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영웅은 개인과 민족을 매개하는 동시에 개인이 민족의 차원으로 고양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영웅은 민족이라는 초월적 기표를 실현할 수 있는 인격적 화신이며, 일반 국민들의 능력을 최대한 고양시킬 수 있는 일종의 “공명기계”였다.⁶⁾

‘님’의 탄생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충심으로 섬기던 ‘님’은 근대계몽기에 이르러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교체되었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가시화되면서 국가와 민족은 더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1910년대 ‘님’의 탄생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 근대시 형성과정에서 ‘님’은 시적 상징을 넘어선다. ‘님’과의 이별로 인한 고통과 상실감, 즉 ‘님’의 부재에 대한 그리움은 한국시의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다.

1910년대 시에서 ‘님’은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명시적인 은유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님’은 취약한 자기 정체성 또는 민족 정체성을 보완하는 심리적 영역이며,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피난처이며 감상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님’의 부재란 곧 민족의 없음을 뜻한다.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인한 동요를 막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님’으로 형상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①

太白아 우리 님아
나간다고 슬허마라
나는 간다 가기는 간다마는

6)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67쪽 참조.

나의 가슴에 품긴 理想의 光明은 永劫無窮사지도 네가 그의 表象
이로다

(……)

우리는 다만 좁은 가슴이라도 큰 님을 容納할 수 있으므로 이 슬픔
을 너그럽게 하리로다

나는 이제 가난도다 - 너를 등지고 - 너의 껌뻌한 中에 피땀침을
보고

- 최남선, 『太白의 님을 離別함』(『소년』, 1910. 4) 중에서

②

닭이 운다 닭이 운다 그 닭이 또 우노나

한네적 한네메에 우리 님 나시던 날

그 날에 우리 님의 첫소리 듯던 닭이 또 우노나

네 부대 맘껏 울어라 잘즈른 해 내어 울어

행혀나 네 소리로나 님의 소리 듯과져

- 이광수, 『님 나신 날』(『청춘』 4호, 1915. 1) 중에서



(1908년에 창간된 최초의 잡지)



(1919년에 창간된 최초의 동인지)

시 ①은 ‘님’ 과의 이별에서 오는 고통을 극복한다. 신채호가 “나의 사랑 한반도” 를 떠나듯, 이 시의 화자는 “님” 을 떠난다. “한반도” 에서 “태백”, 그리고 “님” 으로 기표는 바뀌었지만 그 의미가 민족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님’ 과의 이별은 오히려 더 큰 ‘님’ 을 만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이 시에서 ‘님’ 은 절대적인 관념이자 이념으로 구축된 ‘민족’ 의 상징으로 자아를 지탱해 주는 존립근거가 된다. 민족적 정체성과 독립에 대한 꿈을 ‘님’ 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하였다. 시 ②에서 “한네메” 는 太白山의 우리말이다. “님 나신 날” 즉 민족의 원형적 시원을 환기하여 결여되고 위축된 민족 정체성을 보충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라도 ‘님’ 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이 형상화되어 있다. ‘님’ 이 떠나버린 현실은 국권상실로 인한 민족의 운명을 은유한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식인의 처지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안창호의 지도 하에 애국계몽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던 시기의 최남선의 작품 속에서 '님'에 대한 형상화가 두드러진다. 그는 강고한 민족의식을 견지하고 자기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님'이 부재한 시대를 감당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창가체 「경부철도의 노래」나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일제의 침략 현실을 외면하고 그들의 식민정책에 동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전통 질서와 가치관에 대한 부정,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이광수의 문학적 행로 역시 최남선의 그것과 비슷했다.

강제합방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민족은 문학 작품 속에서 절대화되는 '님'을 통해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진보적이며 낙관적인 애국계몽의 주체들에게 '님', 민족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들과는 달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던 1910년대 말 동인지 문인들에게 '님'은 다소 분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문학이 언어를 어떻게 다루고 보존하려고 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언어를 지키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민족을 지키는 일이며 가장 강력한 저항의 방법이 된다.

열적이며 내면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아아 새겨서 시들지 않는 꽃도 없겠마는, 가신님생각에 사라도죽은
 이마음이야, 에라 모르겠다, 저불셀로 이가슴태와 버릴가, 이서름살라
 버릴가 어제도 아픈발 싹면서 무덤에가보았더니 겨울에는 말랐던꽃이
 어느덧피엇더라마는 사랑의봄은 또다시 안도라오는가, 찰하리 속시언
 이 오늘밤이물속에…… 그러면 행여나 불상히 너겨줄이나 이슬가

— 주요한, 「불노리」(『창조』 1호, 1919. 2) 중에서

1910년대 시에서 국권 상실에 따른 좌절은 '부재한 님'으로 형상화된다. 최초의 자유시로 알려진 이 시는 사랑을 잃은 청년의 상실감이 극적인 어조로 표출되어 있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내밀한 방법으로 '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형상화한다.

'님'이란 바로 '민족'의 은유로 은밀하게 나라 잃은 슬픔과 회복의 욕망을 보여준다. 문학작품 속에서 '님'은 민족의 상징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특히, 식민지 시대 나라 잃은 슬픔이 떠나버린 '님',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로 형상화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젠더의 문제와 언어

흥미로운 것은 나라 잃은 시기에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중세사회에서 타자화되었던 여성과 어린이 등이 역사의 현장에 초대되어 당당하게 민족의 주체로 재탄생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모든 국민들은 동등한 교육과 지식, 위생과 의료 체계를 통해 동질적인 집단으로 재탄생되어야 했다. 지위나 계급, 성별,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애국심 넘치는 건강한 국민이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질적인 욕망은 엄격하게 배제되어야만 했으며, 그 모범형은 역시 건강한 신체의 남성이었다. 당시 우리 민족의 수난을 ‘여성의 수난사’에 빗대어 표현한 대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상실된 민족의 비유물인 훼손된 육체와 함께 민족국가로 표상되는 자기동일성이 훼손되기 이전의 충만함과 총체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진다.⁷⁾ 식민지 시대에 남성 시인들이 여성적 주체로 자신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그들의 심리가 고통을 받는 여성과 같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 동일시 역시 이러한 상황을 증명한다. 식민지 현실에서 고통 받는 남성의 영혼을 위무할 모성 세계에 대한 동경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봉건제와 식민지 시대의 희생자임을 보여준다.

식민지 시대 이후 자율적이고 온건한 국가, 조국, 민족은 대부분 남성으로 설정된다. 반면에 주체성을 상실한 패배한 조국의 땅은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민족의 경계 설정은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여성은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상징으로 정의 되고, 그들의 생활상은 민족의 문화로 규정된다. 이는 여성이 문화적, 언어적으로 더 큰 사회에 덜 통합되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언어다. 민족의 탄생은 지배자의 땅, 바로 제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났으며, 까닭에 지배자의 언어를 가지고 사고할 수밖에 없었음은 비극이다. 당연하게도 ‘민족’의 문제는 반드시 ‘언어’의 문제와 함께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문의 강조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대저 세계열국이 각기 제나라 국문과 국어(나라방언)로 제나라 정신을 완전케 하는 기초를 삼는 것이어늘 오직 한국은 제나라 국문을 버리고 타국의 한문을 숭상함으로 제나라 말신지 일허버린 자가 만흐니

7)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백조』 3호, 1923. 9)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개벽』, 1926. 6)는 여성적 이미지를 통해 민족의 순수성과 그 회복을 강조한 경우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 글에서 살펴볼도록 한다.

엇지 능히 제나라 정신을 보존 하리오

— 「사설」(『대한매일신보』, 1907. 5. 23) 중에서

위의 글은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문학, 특히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문학이 언어를 어떻게 다루고 보존하려고 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언어를 지키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민족을 지키는 일이며, 가장 강력한 저항의 방법이 된다. 모국어에 위기에 처한 식민지의 상황 아래서 모국어의 보존과 회복과 풍요와 세련에 바친 시인들의 시쓰기는 가장 치열한 저항적 실천의 하나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발행처 : 교양사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95
영동빌딩507호

편집인 : 조정남(☎010-4716-3616)

발행일 : 2005년 12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바 03304 / 등록일자 2004.3.3

ISSN 1229-2796 / 값 15,000원



정기구독 안내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시메이노의 민족연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메이노의 민족연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절차

1. 아래 <정기구독 신청서>에서 정기구독 희망 잡지를 <구독기간>란에 구독기간을 표시.
2. 해당하는 구독료를 <우체국 012187-01-002824> (예금주 : 교양사회)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연 락 처

<저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우편번호:142-881)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 교양사회

----- <절취선> -----

정기구독 신청서

||| 교양사회

저널명	간별	구독 권수	금액	구독희망	기타
시메이노의 민족연구	계간	4권(1년분)	₩ 60,000	~	
		8권(2년분)	₩ 100,000	~	
구독자	구독자명(기관)				전화
	주소	우편번호	E-mail		